

Territory and Seas

영토해양연구

Vol. 7 Summer 2014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례

특별기고

김병렬 · 유미림 | 『竹島問題100問100答』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그리고 우리의 대응 4

영토 · 해양 일지

영토 · 해양 일지 218

연구논문

남영우 | 독도에 대한 일본의 지도제작과 측량 26

황지욱 | 독도의 해양부유물 설치에 따른 예비시나리오 분석 52

이상균 · 유수진 | 남북한 지리교육의 공유면과 민족적 표상으로서의 독도 74

유미림 | 1900년 칙령 제41호 제정 전후 울릉도 ‘수출세’의 성격 98

정인철 · Pierre-Emmanuel Roux |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의 독도 발견에 관한 연구 146

장윤정 · 이호진 · 김재한 | 장소특정적 미술과 독도의 문화예술적 영토 180

『영토해양연구』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222

서평

양기호 | 동아시아 영토문제와 독도 20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竹島問題100問100答』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그리고 우리의 대응

김병렬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
유미림 한이문화연구소 소장

I. 「다케시마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와 『竹島問題100問100答』

일본 외무성은 2008년에 「다케시마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팸플릿을 홈페이지에 올려 국내외에 독도가 자국령임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다케시마(한국명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으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여 해결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내세우는 ‘고유영토’론은 일본은 옛날부터 울릉도로 건너갈 때 정박장 또는 어채지로 다케시마(竹島, 독도)¹를 이용하며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고,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데 두고 있다. 또한 17세기 말에 에도막부가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독도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으며, 1905년에 시마네현에 독도를 편입하여 영유의사를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이 독도를 인식하고 있다는 근거는 없으며 독도 영유권의 근거로 인용하는 안용복의 진술에는 많은 의문이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1 일본 측을 주제로 할 때는 사료상의 명칭을 제시할 때와 마찬가지로 ‘다케시마’로 칭하기로 한다. 『백문백답』에서는 한국 측 사료를 우산도, 석도, 독도로 하여 사료상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竹島問題100問100答』(이하 『백문백답』으로 약칭)을 발간하였다. 「다케시마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와 비교해볼 때, 『백문백답』의 내용이라고 해서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2008년 이후 새로 발굴된 사료나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한국 측 주장에 대한 반론을 강화하고 일본 측 주장을 보강한 것이 눈에 띈다. 그동안 일본은 태정관 지령이 자국에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공식적으로는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백문백답』에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이 의무성 팸플릿과 다른 점이라면 다른 점이다. 전체 구성은 9부 102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역사적인 문제가 3개부, 국제법적인 문제가 3개부다. 또한 ‘한국의 주장에 대한 반론’ 2개부와 ‘시마네현의 활동’에 대한 홍보 1개부가 추가되어 있다. ‘한국의 주장에 대한 반론’은 모두 31개 항목으로 역사적인 부분과 국제법적인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주장에 대한 일본의 반론을 역사학과 국제법 순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II. 역사학적 검토

1. 한국 사료에 대한 일본 비판의 비(非)논리성

일본의 주장 가운데 역사학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영토며, 고유영토임에도 편입조치를 취한 것은 모순이 아니고, 편입 후에도 일본은 행정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이미 영유권을 확립하고 있던 ‘고유영토’에 대해 영토편입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 정부가 근대국가로서 다케시마를 영유할 의사를 재확인”하기 위해서며, 따라서 “그 이전에 일본이 다케시마를 영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 더구나 타국이 다케시마를 영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본은 편입 후에 다케시마의 면적을 관유지 대장에 기재하고 강제어업을 허가제로 하

여 그 사용료를 받는 등 일련의 행정조치를 취했음을 거론한다.

이에 비해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역사적 근거는 희박하며, 자국이 편입하기 전에 한국이 독도에 대한 주권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했다. 우선 일본은 한국이 예로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한국이 독도를 예로부터 인식하고 있던 증거로 들어온 『삼국사기』와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관찬 지지의 기술을 부정한다. 이들 사료에 나오는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며, 무엇보다 이들 기술의 근거가 되는 『동국문헌비고』의 분주(分註)에 나오는 내용 즉 “여지에서 말하기를,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 땅이다. 우산도는 왜가 이르는 송도(현재의 다케시마)다라고 했다”는 내용은 본래의 『여지지』에는 없는 내용을 신경준이 개찬한 것이므로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며, 또한 18세기에 성립한 문헌을 근거로 그로부터 300년이나 앞서 지지의 기사를 실증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반론은 이미 필자가 행한 바 있다. 다만 여기서 지적할 것은 일본이 『동국문헌비고』의 분주를 인용하면서 해석조차 틀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엄밀한 고증을 강조하는 일본이 잘못된 번역에 의거하여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은 기본을 무시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일본은 한국이 주장하는, 우산도가 독도라고 주장하는 사실을 반박하기 위해 『태종실록』(태종 17년 2월 임술조)에 나온, “우산도에는 남녀 모두 86명이 살고 있으며 15호가 있다”고 한 내용이라든가,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이다”라고 한 내용, 『삼국사기』의 우산국 복속 사실을 들고 있다. 물론 한국 사료 가운데 지칭한 우산도가 모두 독도라고 주장하기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 사료에서 언급한 우산도가 독도인가는 사료의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일본이 우산도를 독도로 보기 어려운 사례만을 끄집어내어 비판하는 것은 올바른 학문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본은 우산도와 독도가 관계없다고 하는 것의 근거로 조선조의 지리지 편찬방침을 든다. 즉 지리지에서 도서의 경우, 관할하는 지방관청에서의 거

리와 방향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므로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경우 울릉도와 우산도는 울진현의 ‘정동 해중’에 있어 맑은 날에는 조선 반도에서 ‘보이는’ 거리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리지 편찬방침이라는 틀에 얽매어 각 문헌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결과다.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술은 엄연히 다른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필자가 발표한 바 있지만, 일본의 주장은 각 문헌에 쓰여진 대로 입각해서 해석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두찬(杜撰)이다.

2. 일본 ‘고유영토론’의 허구성

일본은 독도를 이용한 시기를 들어서 영유권과 관련시키고 있다. 즉 일본은 겐로쿠(元祿) 시대 오야(大谷), 무라카와(村川) 두 가문이 매년 교대로 오키(隠岐)를 경유하여 울릉도에 도해할 때 오키와 울릉도 사이에 있는 현재의 다케시마도 발견하고 마쓰시마라고 이름 붙여 중간기착지로서 이용하고 강치어로도 했으므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7세기 중엽 울릉도에서 조선 어부와 일본 어부가 만나 충돌하면서 이른바 ‘울릉도 쟁계’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는 막부의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으로 결착되었다. 이때의 금지령에 독도가 포함된다는 사실은 당시 막부에 제출한 돛토리번 문서와 회도로 알 수 있다. 막부가 다케시마에 대해 돛토리번(鳥取藩)에 질문했을 때, 돛토리번은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그 밖에 두 지역에 부속하는 섬은 없다”고 회답하였다. 이에 막부도 다케시마와 함께 마쓰시마도 돛토리번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금지령을 내릴 때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이라고 한 것은 다케시마로 도해하는 도중에만 들르는 마쓰시마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은 이때 마쓰시마(독도)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이를 후일의 하치에몬 사건과 연계시켜 독도 도해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조선은 안용복 이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지만 안용

복의 활동으로 인해 특히 자산도(우산도, 독도)에 대한 인식이 확인된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안용복의 진술에 의문이 많다고 하지만,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두 섬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을 주장한 사실은 일본 무라카미 집안 소장 문서의 발굴로 인해 밝혀졌다. 그러므로 일본도 『백문백답』에서는 「겐로쿠9병자년 조선주 착안 일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를 소개하고 있다. 이 각서에는 안용복이 지참한 지도를 보고 그 내용을 옮겨 적기를 “조선의 강원도에는 울릉도와 자산도가 있으며, 일본인은 이를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로 부른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 그런데 일본은 안용복이 자산도를 그린 것으로 보이는 〈八道圖〉를 고베시립박물관에서 발견했다고 하며 이 회도의 자산도는 “울릉도 바로 가까이 남쪽에 있으며, 울릉도에서 남동방향으로 멀리 떨어진 다케시마(에도시대의 명칭)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어, 자산도는 울릉도를 두 개의 섬으로 그린 가공의 섬이며, 따라서 현재의 다케시마가 아니라고 했다. 즉 17세기 말 ‘겐로쿠 다케시마일건’ 이후에 작성된 조선 지도에는 울릉도 가까이 동쪽에 우산도를 그린 것이 있지만, 이 우산도는 현재의 죽서리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안용복이 지참한 지도와 이 〈팔도도〉가 연관되는지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팔도총도〉의 우산도, 안용복의 자산도, 고베의 팔도도, 울릉도 쟁계 이후의 우산도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여 독도임을 부인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 언급된 지도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안용복이 말한 ‘자산도’는 겐로쿠 각서에 ‘마쓰시마’로 되어 있으므로 독도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일본의 고문헌과 지도에 표기되어 있는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울릉도와 독도에 해당되는 것이지 울릉도와 죽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은 일본 기록으로도 증명된다.

또한 『백문백답』은 안용복이 겐로쿠 9년 즉 1696년에 2차 도일을 하여 오키에서 관리에게 “이전에 왔을 때 울릉·자산 두 섬이 조선의 땅임을 인정한 관백의 서계를 받았었는데, 일본인이 지금 다시 그 땅을 침범하고 있기에 호키주(伯耆州)에 가서 담판지으려 한다”고 한 사실을 인용하고, 이 시기에 일본의 요나고 어부들은 도해금지령으로 인해 독도에 도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안용복의 말은 사실이 아니며, “울릉·자산 등의 섬을 조선 땅이라고 인정한 관백(關白)의 서계를 받았다”는 사실도 있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1696년 1월의 도해금지령을 막부로부터 전달받은 쓰시마번은 바로 이 사실을 돗토리번에 전하지 않기를 바랐고, 조선의 역관에게 전한 뒤에야 돗토리번에 전하게 되기를 막부에 요청했다. 그러므로 1696년 봄에 막부의 도해금지령이 요나고에 전해진 사실이 없음에도 일본은 이런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또한 『백문백답』은 ‘안용복에 대해 알고 싶다’는 항목에서 안용복을 매우 난폭하고 예의가 없으며 횡포를 부린 사람으로 묘사하여 외무성 팸플릿에 묘사된 거짓말쟁이로서의 모습을 뒷받침하려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1696년 1월의 도해금지령을 10월에 쓰시마번에 온 조선역관에게 전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당시 마쓰시마라고 불리는 현재의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조선과의 교섭에서 일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는 도해금지령에 울릉도만 포함되고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히려는 목적에서다.

이것이 후일 19세기 중반의 ‘덴포다케시마 일건[天保竹島一件]’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자원을 이용하려는 하마다번(浜田藩)의 초닌(町人) 이마즈야 하치에몬(今津屋八右衛門)의 제안에 대해 에도가 “다케시마(울릉도)는 일본 땅이라고 정하기 어려우니 인정할 수 없지만, 마쓰시마(다케시마)라면 좋다”는 회답을 하게 했다는 사실과 연결시켰다. 그리하여 이 사건이 “막부의 관리가 마쓰시마는 명확히 일본령이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한국의 주장이 틀렸다”고 한다. 그리고 이어진 일본인들의 이 섬에 대한 관심은 이 사건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근대기에 이른바 개척원으로 나타났다. 당시 제출된 개척원에서 칭한 다케시마 혹은 마쓰시마는 모두 울릉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를 1876년 시마네현의 지적 편찬사업과도 연계시켰다. 즉 일본은 “시마네현은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편찬방사[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向]」를 내무성에 제출, 내무성은 다음 해에 태정관의 판단을 요청하면서, 다케시마 외 일도는 본방과 관계없다고 지시했다. ‘외 일도’의 일도는 마쓰시마이지만, …… 덴포다케시마 일건 후의

후레가키[高札]에 현재의 다케시마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다(거꾸로 상기와 같이 다케시마를 일본령이라고 하는 인식이 보이고 있다)”고 하여 태정관 지령에서 언급한 ‘일도’인 마쓰시마(현재의 다케시마)를 오히려 일본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식의 궤변을 전개하고 있다. 나아가 “메이지 10년(1877) 당시는 서양 지도의 영향으로 울릉도가 마쓰시마로 불리고 있었으므로 메이지 10년의 지령도 현재의 다케시마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태정관 지령이 나오는 과정과 서양 지도에서 울릉도를 마쓰시마로 표기한 내용이나, 그 후 오야 겐스케의 개척원이 처리되는 과정에 나오는 마쓰시마는 서로 맥락이 다른 내용이다.

3. 일본, 태정관 지령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부정

일본은 1905년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면서 영유권자를 재확인했다고 하지만, 1870년대에 이미 두 섬에 대한 영유권이 한국에 있음을 재확인한 바 있다. 1876년에 일본은 근대적인 지적(地籍)을 편찬하기 위해 이 섬의 소속을 시마네현에 문의한 적이 있다. 이에 시마네현은 이들 섬이 17세기 후반에 조선 영토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보고하면서 <이소타케시마 약도>를 첨부했다. 시마네현이 제출한 문서와 내무성의 문서를 검토한 결과, 태정관은 1877년 3월 “다케시마 외 일도는 본방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을 냈다. 이 지령에서 말한 ‘일도’가 ‘마쓰시마’ 즉 독도임을 첨부한 지도에서 ‘다케시마’를 제외하면 남는 것은 ‘마쓰시마’밖에 없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백문백답』을 보면 태정관 지령의 ‘일도’가 마쓰시마(독도)임을 인정하되, 마쓰시마가 울릉도를 가리키기도 하므로 본방과 관계없다고 한 섬이 독도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 그러면서 첨부자료인 지령 원문과 <이소타케시마 약도[磯竹島略圖]>는 신지 않았다. 지령의 마쓰시마가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약도로도 분명히 드러나는데도 교묘하게 다른 사실과 연계시키고 있다. 일본은 17세기와 19세기 두 차례에 걸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

가 아님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런데 일본이 도해금지령과 태정관 지령 두 문서가 모두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했을 뿐 한국 영토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 ‘울릉도 쟁계’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 정부와 일본 정부가 주고받은 서한의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성립하기 어려운 논리다.

일본이 1905년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기 이전인 1900년 10월에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여 한국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칙령 제41호에는 울릉도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진도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명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죽도는 현재의 죽도를 가리키며, 석도는 현재의 독도(獨島)를 가리킨다. 『백문백답』에서도 여전히 석도가 독도임을 부인한다. 이규원의 지도에도 도항과 죽도만 보이고, 우용정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나온 내부의 칙령안에도 이 섬의 땅을 사방 “가로 80리, 세로 50리가 된다”고 했으므로 이 범위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 “1900년 칙령의 석도가 다케시마/독도라고 하려면 돌을 방언으로 ‘독’이라고 하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증거가 필요하다. 전쟁 이후의 신문기사에서 거문도 노인이 젊을 때 항해 중에 이 섬을 망건하고 선배로부터 ‘석도다’라고 들었다고 한 것이 있지만, 이것도 개인의 회상으로, 증거는 되지 않는다”고 했다. 1950년대 초 일본 외무성은 독도에서 어로운 경험이 있는 자들을 조사하여 채록한 사실이 있다. 자신들이 채록한 증언은 영유권의 근거로 이용하면서 한국인의 증언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인다. 석도를 우리말로 풀면 ‘돌섬’이 되고, 방언으로는 ‘독섬’이라고도 하는데, 독섬의 ‘독’자를 빌려와 한자로 표기한 것이 독도다. 따라서 석도는 독도가 된다. 돌을 방언으로 ‘독’으로 부른다는 사실을 입증한 학자는 바로 일본인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며 그는 1910년대에 이미 한국의 방언을 조사했다. 이 시기는 칙령이 나온 시기로부터 멀지 않은 때다.

4. ‘대한제국의 실효지배를 실증하라’는 일본 논리에 대한 반론

‘한국은 1900년 다케시마에 대한 주권을 행사했는가?’라는 항목은 외무

성 팜플릿의 논리, 즉 석도가 독도라는 의문이 해소된다 할지라도 칙령 공포를 전후한 1900년 전후로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한 사실이 없으므로 한국의 영유권은 확립되지 않았다는 내용과 상통되는 논리다. 일본은 “영유 의사는 칙령에서 울도군의 관할 아래 넣는 것으로 드러나 있으며, 칙령은 관보에 공포되었다. 그러나 1900년 칙령 전후로 한국에 의한 국가로서의 점유 행위가 있다는 증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는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의 점유 행위를 국가로서 추진했다”고 했다. 한국의 경우는 “1900년 시점에서 국민이 섬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도 증명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1904년에는 울릉도 주민이 일본인에 고용되어 다케시마에서 강치어로에 참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섬에서 일본인과 한국인의 활동을 울도 군수가 규제한다는 국가의 주권 행사와 결부지을 수 있는 사례의 존재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겨우 「울도군 절목(鬱島郡節目)」이라는 일종의 법령에 “이 섬의 ‘수출입’에 대해 과금을 행한다는 뜻의 규정이 있다. …… 그러나 울도군 절목의 이야기는 다케시마에서 포획한 강치를 울릉도에서 가공한, 그것을 섬 밖으로 수출할 때 과금한, 즉 울릉도의 산물에 대한 과금으로, 다케시마에 대한 주권 행위라고는 말할 수 없다(일본의 경우는 다케시마에 대한 직접 주권행위의 예가 있다. 이를테면, 1905년 편입 후 시마네현의 어업규칙을 개정하여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을 허가제로 하고 감찰을 교부하여 국유지 사용료를 매년 징수했다. 18 참조)”고 했다.

이렇게 길게 인용한 것은 이 부분이 최근 필자가 발표한 「울도군 절목」과 수세 관련 내용을 비판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비판은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울릉도 개척사와 그로 인해 형성된 일본인의 납세 관행을 무시한 데서 비롯된다. 울릉도는 정식으로 개척되기 전부터 전라도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일본인들도 건너와 벌목과 어로를 하고 있었다. 일본인들이 비개항장인 울릉도에서 불법 벌목과 교역을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들은 도감에게 일종의 구문을 납부하며 행위를 묵인받았다. 그리고 이런 행위는 1905년까지 지속되었는데 일본은 이 세금을 수출세라고 불렀다. 그런데 울릉도 수출품목에는 독도에서 잡은 강치가 포함되어 있고,

일본인들은 이 수출품에도 수출세를 납부했다. 일본인들이 수출세를 납부했다는 기록은 일본 외무성 기록에 보이며, 울릉도의 강치 수출통계 역시 외무성 기록에 보인다. 울릉도의 일본인들이 독도 강치에 대한 세금을 울도 군에 납부했다는 것은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이들이 독도가 한국령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울릉도의 산물에 대해서만 세금을 냈을 것이다. 당시 수출세는 물품에 따라 세금을 내는 이른바 ‘중가세’였기 때문이다. 이는 이들이 독도를 울릉도의 속도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군수에 게 납세한 것도 군수의 관할권 행사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제국이 울도 군수를 통해 일본인이 수출하는 독도 산물에 대해 수출세를 징수하게 한 사실은 독도를 실효지배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한편 일본 오키에서 독도로 와서 어로운 자들은 울도군이나 시마네현 어디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들이 독도를 한국령으로 보았다면 울도 군에 납부했을 것이고, 일본령으로 인식했다면 일본에 납부했을 것이다. 그들 세금의 납부처가 어디인지는 곧 그들이 독도를 어느 나라의 소속으로 보았는가를 말해준다. 일본은 에도 시대에도 세금 기록을 빼놓지 않았다. 이들이 어디가에 세금을 납부했다면 반드시 그에 관한 기록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울도군에 납부한 사실은 없다. 원칙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인들은 해관에 어업세를 납부하면 한국 연해에서 어획할 수 있었고, 울릉도와 독도도 이에 해당된다(한국령으로 보았다면). 그런데 당시 오키에서 울릉도로 온 선박의 대부분은 밀어 선박이었고 자국의 통어조합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나카이 등도 해관에 납세하거나 자국 조합에 신고한 적이 없는 불법조합이었다.

반대로 오키의 일본인들이 독도를 일본령으로 보았다면 자국에 납세한 사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키의 일본인들은 1906년부터 납세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 시기는 바로 독도를 편입한 이후에 해당된다. 시마네현은 1906년에 현령을 개정하여 독도의 강치에 세금을 매겼다. 그리고 이들 역시 울릉도의 일본인이 울도군에 낸 것과 마찬가지로 독도 강치에 대한 세금을 시마네현에 납부했다. 『백문백답』에서도 일본의 직접적인 주권행위

의 예로 든 것은 1905년 편입 후 시마네현의 어업규칙을 개정한 사례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으로 편입한 이후에야 독도 어로에 과세했다는 사실은 그 이전까지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일본은 나카이의 점유 행위를 국가로서 추진했다고 하지만, 나카이의 행위는 영토주권의 현실행위와는 아무 관련 없는 불법어로행위다. 독도 산물이 울릉도에서 가공되었지만 이를 울릉도 산물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울도군에 납세했다는 사실은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모두 한국령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울릉도의 일본인들이 납부한 구문에 굳이 '수출세'라는 이름을 붙여 자국민의 교역을 정당화하려 했던 것은 바로 일본 외무성이었다. 수출세가 국가 간에 성립하는 교역임을 감안할 때 울릉도에서의 수출세는 곧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국가 주권의 행사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일본은 울릉도 산품(이 경우에도 울릉도 가공품과 독도 산물을 혼동해서 쓰고 있다)에 대한 세금일 뿐 독도에 대한 주권과는 상관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III. 국제법적 검토

1. 1905년의 독도 편입은 러일전쟁의 필요성에 따른 불법 강점이다

일본은 나카이 요자부로의 청원에 따라 1905년 1월 28일 독도를 오키노시마의 관할로 한다는 각의 결의를 하였고, 각의의 지시에 따라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가 소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1903년부터 독도에서 불법적으로 강치를 잡던 나카이는 1904년 가을 도쿄로 와서 내무·외무·농상무 3개성으로 '리양코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제출한다. 그는 이 대하원에서 "이 섬은 영토 소속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1923년에 시마네현 교육회에서 편찬한 『시마네현지』[島根縣誌]에는 "나카이는 이 섬을 조선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상경하여

농상무성을 설득, 정부에 대하의 청원을 하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나카이가 오키노시마 도청에 제출한 이력서의 부속서류에도 "본도가 울릉도에 부속되어 조선의 영역인 것으로 생각하여 통감부에 이를 요청하고자 상경하여 여러 가지로 확책하던 중 당시 수산국장인 마키 나오마사[牧本眞] 씨의 주위에 연유하여 반드시 조선령에 속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이 생겨 그 조사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다니던 끝에 당시 수로부장 기모쓰키 가네유키[肝付兼行] 장군의 단정에 힘입어 본도가 전연 무소속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영상의 필요한 이유를 달아 본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한 후 임대하여줄 것을 내무·외무·농상무 대신에게 청원하였는데, 청원서를 내무성에 제출하자 내무성 당국자는 이 시기를 맞아 조선의 땅이라고 의심이 되는 황막한 일개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암초를 거둬으로써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여러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조선 병탄의 야심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의심을 크게 사는 것은 이익은 매우 적은 데 반해 일이 결코 용이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변명과 진술을 하면서 청원해도 각하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좌절될 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바로 외무성으로 달려가서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山座圓次郎]에게 역설하였다. 그러자 야마자 씨는 시국으로 보더라도 영토편입이 시급히 요구되며, 망루를 건설하고 무선 또는 해저전선을 설치하면 적함을 감시하는 데 매우 유리하며, 특히 외교상으로는 내무성과 같은 고려를 요하지 않으니 속히 원서를 본성에 회부시키라고 하여 크게 고무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마침내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었던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청원서를 내었던 나카이는 조선령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이를 접수한 내무성의 이노우에[井上] 서기관도 조선령으로 의심하여 나카이의 청원을 각하하려 했지만 외무성 정무국장 야마자가 전쟁의 필요성에 따라 편입해야 한다는 강요를 하여 편입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독도를 무주지라고 강변하면서 편입을 사주 또는 독려했던 마키 나오마사, 기모쓰키 가네유키, 야마자 엔지로가 모두 독도가 조선령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마키는 1903년에 간행된 『한해통어지침』[韓海通漁指針]의

발간사를 썼고, 기모쓰키는 『환영수로지(實瀛水路誌)』 1883년판과 1886년판, 『조선수로지(朝鮮水路誌)』 1894년판과 1899년판을 편찬했으며, 아마자는 1904년판 『최신 한국실업지침(最新韓國實業指針)』의 서문을 쓴 사람인데, 이들 책에 한결같이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독도가 한국령임을 알고도 마치 무주지인 양 나카이를 사주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나카이의 어로행위는 영토주권의 현시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하나의 범죄행위고, 이러한 범죄자를 사주 또는 독려하여 조선령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청원서를 내게 하고 이를 근거로 내각에서 편입을 결정할 후 시마네현에서 고시를 한 것은 평화적인 탈을 쓴 침략행위의 하나일 뿐 정당한 법적 행위가 아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1699년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였고, 1877년에 당시 총리대신 역할을 했던 우대신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지령을 하달한 바 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무시한 채 독도를 편입한 것은 호리 가즈오(堀和生)와 나이토 세이추(内藤正中) 등 일본 학자들이 지적인 바와 같이 조선령으로 알고 있던 섬을 리일전쟁을 위한 군사적 요충지라는 이유로 도취(盜取)한 명백한 불법행위일 뿐이다.

2. 고도(孤島) 선점시 통고는 당시 국제법상 의무였다

일본은 당시 무주지인 고도를 선점하는데 제3국에 통고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주지의 선점과 관련하여 통고의 요건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1885년의 콩고회의에서 체결된 베를린의정서 제34조에서는 통고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의정서에 따른 의무는 체결국 사이에 아프리카 연안에서만 존재했다고 하면서 독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조약상의 의무는 체결국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하지만 그것이 관습법상의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 라면 설사 체결국이 아니더라도 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렇다면 당시 통고가 관습법상의 원칙이었느냐가 논쟁의 핵심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학

설이 갈리고 있다. 즉 오펜하임 등 일부 학자들은 통고가 선점의 요건이 아니라고 하는 데 반해, 슈바르첸버거 등 또 다른 학자들은 선점의 요건으로 관습 국제법 규칙의 하나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통고는 실효적 지배와 관련하여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실효적 지배가 분명히 드러나는 지역에서는 구태여 통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통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무인고도에 선점의 통고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추후 이로 인한 분쟁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베를린의정서에 따른 통고의 의무는 1919년 상제르망조약에서 삭제되었다. 삭제한 이유는 실효적 지배가 따르기 때문에 구태여 통고를 하지 않아도 제3국이 혼동할 염려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상제르망조약에서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1905년 당시에는 베를린의정서에 따른 통고의 의무가 분명히 존재했었다. 국제법학술원도 1888년 로잔 결의 제1조에서 통고를 선점의 요건으로 명시하였다. 설사 국제법학술원의 로잔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독도가 조선의 영토였음을 편입 관계자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편입의 통고나 가능성 여부를 조선에 타진했어야 하는 것이 인접국 간 외교상의 도리가 아닌가? 그런데도 통고가 당시 국제법상의 의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주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3. 맥아더라인은 점령당국의 합법적 행정조치였다

맥아더라인은 SCAPIN-677과 1033에 따라서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제외되었거나 일본의 어부들이 어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설정한 선이다. 물론 SCAPIN-677의 제6항을 보면, 이 지령에 따른 조치가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이 문서를 대체하는 어떠한 훈령이나 지령도 발령된 바가 없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uti possidetis(점유물 우선)’ 원칙에 따라 독도의 지위는 SCAPIN-677에서 규정한 상태에서 어떤 변동도 없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4.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독도는 어떻게 취급되었는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조 (a)항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등을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용어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초안 작성과정을 보면, 1947년 3월 20일자 1차 초안부터 1949년 11월 2일자 5차 초안까지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명시하였다. 그러다가 당시 주일 고문관 시발드(William J. Sebald)가 독도를 일본령으로 해달라고 한 1949년 11월 14일자 전문 및 19일자 서면 의견서로 인해 독도가 일본령으로 변경되기도 한다.

하지만 당시 한국전쟁의 발발을 포함하여 냉전시대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역할에 대한 제고 등 당시의 정치적인 여건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전승국 간의 신속한 교섭 및 일본과의 조약 체결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게 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들을 조약문 자체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문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독도가 아예 표기에서 빠지게 된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 독도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한국 정부는 1951년 7월 19일 뒤늦게 독도를 한국령으로 명기해 달라고 미국 국무부에 요청하게 된다. 하지만 이미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으로 본문에서 제외되었던 독도는 재검토 없이 본문에서 누락되어 이후 영유권 논쟁의 단초가 되었다.

5.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 측의 요구가 거부되었는가?

1951년 7월 19일자 한국 정부의 요청에 대해 미국은 1951년 8월 9일자로 “독도에 관해, 달리 다케시마 혹은 리앙쿠르 암으로 알려진 이 섬은 보통

사람이 살지 않는 바위 형태인데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 한국의 영토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1905년경 이후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 지청의 관할하에 있어왔습니다. 이 섬은 이전에 한국에서 권원이 주장된 적이 없습니다. 일본이 권리를 포기하고 철수하는 섬 중에 과랑도를 명기해달라고 하는 한국의 요청은 거부된 것으로 이해됩니다”라는 답변을 보냈다.

당시 일본은 전술한 시발드의 의견서와 함께 독도에서 불법 조업을 한 나카이 요자부로 의 어로현황 등을 일방적으로 미국에 제출하였다. 미국의 의견서에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이라고 한 것은 이 자료들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본령으로 명기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런데 한국은 아무런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러한 답신을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답신에도 당시 미국의 국무부장관이었던 덜레스는 이 문제에 미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니고 서한의 공개를 거부했다. 그는 이 서한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서명국 중 미국 1개국의 입장일 뿐이므로 조약문에 명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독도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훈령을 내렸다. 즉 독도를 자국령으로 명시하는데 한국도 실패하고 일본도 실패했던 것이다.

6. 평화선은 합법적인 것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일명 평화선)을 선포한다.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 간의 수역 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위한 해양 경계선을 명시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독도가 이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1952년 1월 28일 항의 구상서를 보내왔다.

그러나 한국은 1952년 10월 4일 대통령 긴급명령 12호인 ‘포획심판령’을 제정, 공포하여 포획심판소와 고등포획심판소를 설치하고 평화선을 침범하는 외국선박과 밀무역선을 단속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평화선은 이후 1965년 한일어업협정의 체결을 통해 역할이 종료되었다.

당시 평화선은 1945년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 선언, 1947년 칠레와 페루, 1949년 코스타리카의 선언 등 당시 해양관할권을 강화하던 연안국들의 조치에 부응한 국제법상의 행위였다. 오히려 일본의 어선들이 이 선을 넘어와 조업을 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였던 것이다. 또한 독도 경비대의 주둔은 대한민국 정부의 합법적인 관할권 행사의 일부인데 이에 대하여 일본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이고 내정간섭인 것이다.

7. 독도를 재일 미군의 폭격기지로 제공한 배경은 무엇인가?

독도는 1947년 9월 16일자 SCAPIN-1778과 1951년 7월 6일자 SCAPIN-2160에 따라 재일 미군의 폭격훈련장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1948년 6월 8일 독도폭격사건으로 다수의 울릉도 어민들이 사상을 당하자 미국 극동항공대사령부는 1948년 6월 17일 공식성명서를 내고 ‘오키나와 주둔 미 전투기의 폭격연습으로 인한 우발적 사건’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6월 20일 이후 독도에 대한 폭격 연습을 일체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951년에 SCAPIN-2160으로 재지정한 후 1952년 9월 15일, 9월 22일 등 독도 현지 학술조사단이 독도에 접근할 때 폭격 훈련을 함으로써 이들의 접근을 막았다. 한국 정부의 항의에 1952년 12월 4일 미국 대사관은 독도를 폭격연습기지로 사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회신을 했다. 그리고 1953년 1월 20일에는 주한 유엔군연락기지사령부로부터 유엔군사령관이 독도를 폭격연습기지로 사용하는 것을 즉각 중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예하 부대에 지시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령으로 하는 데 실패한 일본 사람들은 독도를 미군의 폭격연습기지로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의 영유권을 인정받으려고 하였다. 실제로 강화조약 체결 당시 일본은 자신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일본령으로 명기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독도가 한국령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았다. 이는 1951년 10월 22일자 제12회 국회 중의원 회의록을 보면 명백하다. 그럼에도 이를 미군의 폭격연습기지로 제공하

면 일본의 영토로 확인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간교한 술책에 따라 이를 폭격연습기지로 제공했던 것이다. 이는 1952년 5월 23일 일본 제13회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아마모토(山本) 의원이 “이번 일본 주둔군 연습지 지정과 관련하여, 독도 주변이 연습지로 지정되면 이를 일본의 영토로 확인받기 쉽다는 발상에서 외무성에서 연습지 지정을 더 바라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라고 질문한 데 대하여 이시하라(石原) 외무성 정무차관이 “대체로 그런 발상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한 답변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처럼 남의 물건을 도둑질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는 자기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받았다고 떠들어대는 것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일인지 일본 사람들만 모르고 있는 것이다.

8.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독도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국교 정상화 회담 당시 식민통치의 무효 시점과 청구권 문제가 크게 대립되었을 뿐 독도 문제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았다. 1962년 3월 12일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일본의 고사카 젠타로(小坂善太郎) 외상이 “회담 의제는 아니지만 국민감정 문제도 있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 타결되기를 바란다.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진정한 국교 정상화가 되지 못하므로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공정한 제3자에게 조정을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 국교 정상화 전이라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자”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의 최덕신 외무장관은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상 아국의 영토이므로 여기서 논의할 성질이 아니다. 비록 작은 무인도라 할지라도 엄연히 우리의 영토이며 사실상 우리 수중에 있는 영토에 대해 일본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했다.

이후 1962년 11월 12일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일본 외상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소한다”는 데 합의해줄기를 원했지만,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원래 한일회담과 관계없던 문제를 일본 측에서 도중에 끄집어낸 것으로 양국 간 국교 정상화 후에 시간을 갖고 서서히 해결해나가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하면서 거부했다.

1962년 12월 10일 오히라 외상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으니 한국 측이 이에 응소할 것임을 국교정상화시에 약속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독도 문제는 한일회담의 현안이 아니며, 한국 민의 감정을 격화시킬 뿐이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1965년 4월 13일 제11차 수석대표회담에서 김동조 대사가 “독도는 공동규제 수역 밖에 위치하여 일본과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한때 시사했던 거중조정도 한국 여론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함으로써 더 이상의 논의를 거부하였다. 이에 일본의 다카스기 신이치(高杉晋一) 대표는 “이 문제를 계속 연구해보겠다. 이 문제는 외상 회담과 같은 고위층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좋겠다”고 하면서 논의를 종료했다. 그런데 일본은 로 다니엘의 ‘독도 밀약’이 어떻다는 등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을 인용하면서 한국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9.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의의 배경

일본은 1954년 9월 25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자고 하는 구상서를 한국 측으로 보내왔으며, 한국은 10월 28일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그리고 일본은 1962년 3월과 2012년 8월에 다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의해왔다. 마치 제3국인들에게 한국이 쟁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의를 거부하는 것처럼 오도하기 위하여 교묘한 술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이 왜 쿠릴열도와 조어도 문제를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하는 제의를 러시아나 중국 측에는 하지 않는지 그 속셈을 모르겠다. 쿠릴열도와 조어도는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인가? 일본은 조어도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중국이나 대만의 주장을 일축해버리고 있다. 그러면서 쿠릴열도는 러시아가 불법 점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왜 쿠릴열도

를 반환받기 위하여 러시아 측에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하자고 주장하지 않는가? 왜 중국이나 대만이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 못하는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하자고 하는 것은 한국이 러시아나 중국보다 만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렇다면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의 또한 제국주의적 발상에 따른 것이라고 비난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IV. 향후 한국 측 주장의 취약점 보강을 위한 제언

이번 『백문백답』의 특징은 그동안 일본이 주장해오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최근의 연구성과까지 반영하여 자세히 논하고 있고 자국에 불리한 사료까지 과감하게 제시하고 있어 얼핏 보면 공정하게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국에 불리한 사료를 맥락이 맞지 않는 다른 논리와 교묘하게 결부시켜 전문성이 깊지 않은 자들이 볼 경우 사실인 듯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사료 소개에서도 한국에 불리한 사료와 일본에 유리한 사료를 교묘하게 엮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왜곡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도 일본이 제시하는 사료 하나하나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반대로 우리가 그동안 내세운 우리 측 사료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번 『백문백답』을 통해서 일본의 취약점은 무엇이며, 우리의 취약점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백문백답』 전체를 관통하는 일본의 취약점은 1696년의 도해금지령과 1877년의 태정관 지령이다.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 일본은 에도시대 회도를 대거 거론하고 그 안에 그려진 섬의 모습이나 지명, 거리관계의 정확성을 지적하는데, 이 회도들을 분석해보면 그것들이 1696년 도해금지령을 내

는 과정에 제시된 자료라는 점에서 오히려 일본에 불리한 자료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태정관 지령 역시 명칭의 혼돈과 연계시켜 궁색하게 논리를 엮어가고 있지만 이런 내용도 전문가가 아니면 포착하기 힘든 내용이다. 일본이 이번 『백문백답』에서 논리는 부분은 아마 이런 부분일 것이다. 다만 『백문백답』에서 새로 제시된 사료와 지도 특히 일본 지도에 관해서는 아직 한국에 소개되지 않았거나 이에 대해 제대로 분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의 취약점은 안용복이 에도에 갔다거나 관백의 서계를 받아왔다고 하는 내용 등 착오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다. 이는 일본 측 사료를 통해 이미 많은 부분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으므로 한국의 공식 간행물에서 이런 내용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이 한국의 역사학적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은 첫째 우산도는 독도인가, 둘째 칙령 제41호의 석도는 독도인가, 셋째 안용복의 진술은 믿을 만한가, 마지막으로 일본의 편입 이전에 대한제국의 실효지배를 입증할 수 있는가로 압축된다. 이들 부분에 대해 최근 연구가 활발해져 많은 의문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일본이 수긍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 한국의 영유권 논리를 공고화하는 데 필요한 사료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석도가 독도임을 입증하는 사료와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입증할 수 있는 사료가 그것이다.

『백문백답』이 일본인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실상 내용을 보면 전문적이다. 굳이 이렇게 많은 양의 내용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과 함께 일본인들이 이런 내용을 소화시킬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그렇다고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기에 한국도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만한 일반인이나 전문가도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전문서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논리가 상충되어 비논리적이다. 역사학 관련 부분에서 특히 한국 주장에 비판적인 논리를 편 사람은 주로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와 쓰카모토 다카시[塚本 孝]다. 시모조의 논리는 이미 외무성 팸플릿에도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논리는 연구자의 식견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비논리적이

다. 그런데도 외무성은 과거 팸플릿에 그의 논리를 차용한 바 있다. 시모조의 논리는 이번 『백문백답』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궤적을 보건대, 시모조와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주장을 담은 『백문백답』이 결국에는 외무성의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백문백답』을 일개 연구자와 연구회의 논리를 담은 성과로만 볼 수는 없다. 일본 외교정책의 로드맵을 실천해가는 수순의 하나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지도제작과 측량

남영우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명예교수

I. 머리말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또 한국의 고유영토이며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에 대하여 여전히 자국의 영토라고 강변하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아베 [安倍] 정권이 집권하면서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쟁점은 독도를 둘러싼 역사적 사실, 1905년 일본 편입의 유효성 여부, 전후 연합국의 조치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최근 한일 간 독도 영유권과 동해 명칭을 둘러싼 논쟁이 역사학·법학·지리학·정치학 등의 학계에서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지도학적 관점에서 본 학문적 논의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부족한 면이 있다. 영유권 논쟁을 전개하는데 문헌적 고찰의 중요성은 물론이지만 영유권 논쟁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지도학적 고증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영토의 일부가 지도상에 표기된다는 것은 그곳의 지리적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

본고에서는 관심지역에 대한 실측지도뿐만 아니라 지도상에 묘사된 독

도 관련 지도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도를 개관해보려고 한다. 그것은 영토에 대한 인식의 발현이 역사적으로 지도로부터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서 학술적 의미는 물론 본 연구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고문헌과 고지도를 비롯하여 일제강점기의 문헌들을 분석하였다.

II. 지도상에 나타난 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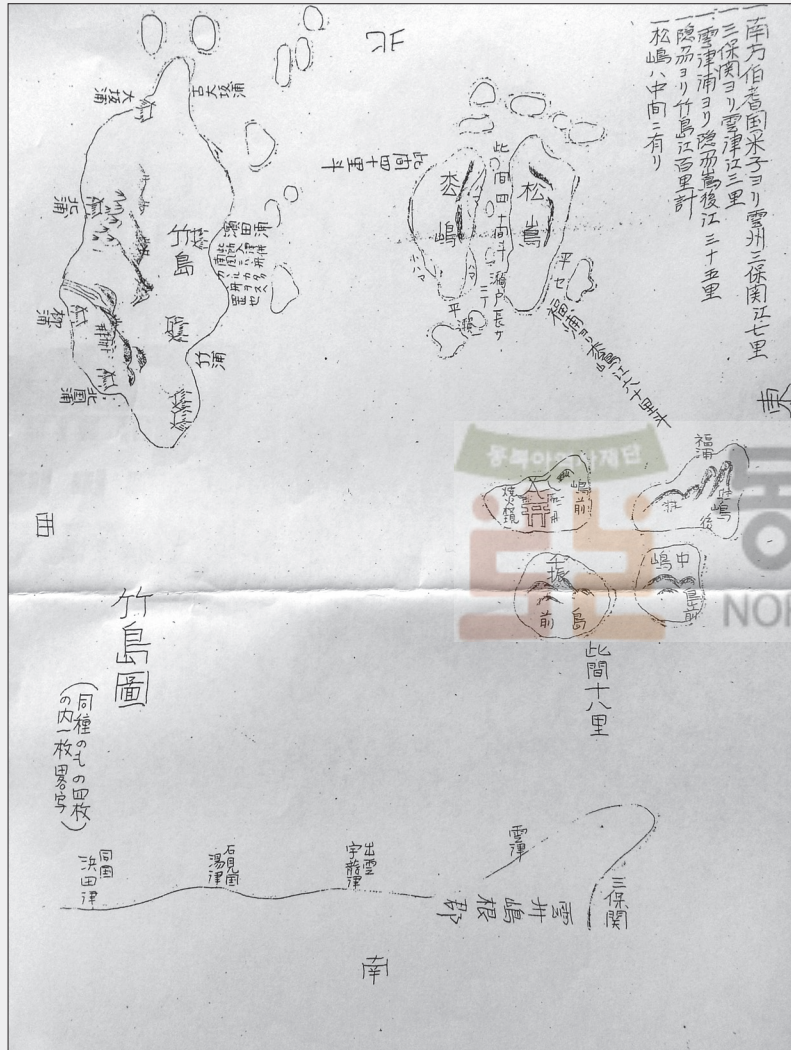
1. 19세기 이전

일본 문헌에서 처음 독도가 지도상에 나타난 것은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1724년 4월 이나바노쿠니[因幡國]의 시마네 번주[島根藩主]가 막부에 제출한 자료인 이케다[池田]가문의 문서일 것으로 추정된다(因幡國島根藩主池田家文書, 1724). 이것은 과거 현재의 돗토리현에 해당하는 이나바와 호우키[伯耆]의 2개국의 번주[藩主]였던 이케다가에 보관되어 전해 내려오다가 1969년 시마네현에 기증된 방대한 자료다.¹

돗토리번[鳥取藩]이 문서 가운데 <그림 1>의 <다케시마노즈[竹島之圖]>, 즉 다케시마의 지도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상황을 개략적으로 스케치한 지도인데, 여기에는 독도[松島]와 울릉도[竹島] 간의 거리가 40리, 독도와 오키[隱州島] 섬 간의 거리가 60리라고 주기되어 있다. 그리고 당시 '다케시마'로 불렸던 울릉도는 7개의 일본식 지명이 명명되어 있었다. 이 지도로 18세기에 도[江戸]시대 일본에서는 마쓰시마[松島, 현 독도]의 위치와 지형을 개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스케치 지도를 실측지도로 간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왜냐하면 스케치 지도라 할지라도 목측에 의한 지도는 실측지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 말부터 대한제국 기간 중

1 1871년 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하는 '廢藩置縣'으로 이즈모[出雲]는 시마네[島根], 호우키[伯耆]와 이나바[因幡]는 돗토리[鳥取]현으로 바뀌었다.



〈그림 1〉 因幡國島取藩主池田家文書の〈竹島之圖〉

출처: 島根縣立圖書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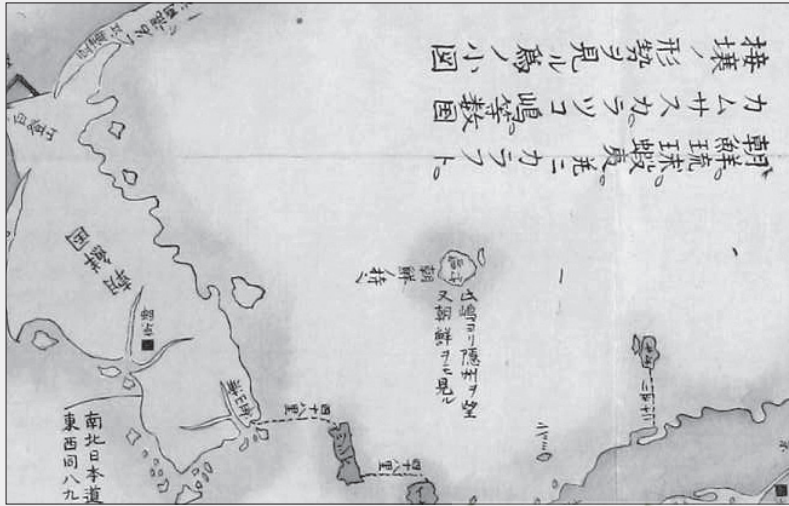
에 일본 참모본부 장교들로 구성된 간첩대가 한반도에 잠입하여 측량한 지도는 목측도 또는 목산측도(目算測圖)였다.² 이들 지도는 대부분 실측지도의 범주로 분류된다.

그 뒤를 이어 1779년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가 제작한 〈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지도는 이노우 다다타카(伊能忠敬)가 실측하여 1821년 제작한 〈大日本沿海輿地全圖〉보다 42년이나 빠른 시기에 제작된 지도이나 실측지도가 아니었다(이호상·北田悅司·남영우, 2009).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지도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그곳으로부터 고려국이 보임”이라 주기에 있는데, 이는 독도와 울릉도 가운데 어느 섬을 기점으로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만약 독도를 기점으로 한 것이라면 울릉도가 한국령이므로 올바른 표현이지만, 울릉도를 기점으로 한 것이라면 동해안이 보이지 않으므로 오류를 범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은 불분명한 주기는 『세종실록』 지리지(1454)에 기록된 “于山武陵二島在縣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風日清明則可望見”에서 비롯된 오류일 것이다. 즉 청명한 날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오류는 1785년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제작한 〈三國接壤之圖〉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이 지도에도 울릉도(일본명 竹島)로부터 오키와 조선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주기에 있다. 이 지도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명쾌하게 밝혀준 고지도로 명성이 높다. 〈三國接壤之圖〉에 따르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도 주변에 “조선의 소유”라 주기에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당시 울릉도 지명이 ‘竹島’였으므로 그 주기는 울릉도에 국한된 설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조선령으로 표시된 울릉도 우측의 섬 역시 울릉도와 마찬가지로 조선령을 의미하는 노란색으로 채색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일본 측은 그 섬이 독도가 아니라는 모순된 주장을 펴고 있다.

일본 측은 당시에 독도가 두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독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하야시의 지도는 한 종류만 전

2 그들은 고도의 측량훈련을 받고 한반도에 파견되어 나침반과 목측 혹은 보측으로 거리를 계산하며 측량하였다(남영우, 2011).



〈그림 2〉 林子平의 〈三國接壤之圖〉

해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하야시 시헤이의 〈三國接壤之圖〉가 1792년 『三國通覽圖說』과 함께 절판처분을 받게 되어 판본과 제본도 몰수된 후 복제본이 다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까닭에 지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그림 3〉에서 보는 〈三國接壤之圖〉에는 울릉도에 해당하는 일본명 竹島 우측의 독도가 2개의 섬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도와 서도를 묘사한 지도라 할 수 있다. 『三國通覽圖說』 중 함께 간행된 〈朝鮮八道之圖〉에는 울릉도는 표시되어 있으나 독도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 지도는 조선왕조 선조 때 일본으로 유출된 지도이므로 한글 표시가 그대로 기입되어 있으나(남영우, 1995), 후술하는 Klaproth의 복사본에는 한글이 삭제되어 있다.

하야시가 〈三國接壤之圖〉를 제작한 지 47년 후, 독일의 Klaproth가 1832년 프랑스어판 지도를 'SAN KOKF TSOU RAN TO SETS'란 이름으로 복제하였다(Klaproth, 1832). 그의 지도에도 하야시 시헤이의 지도를 복제하였으므로 당연히 독도를 한국령으로 주기하였음은 물론이다. 이 복제판 지도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쓰시마가 한국령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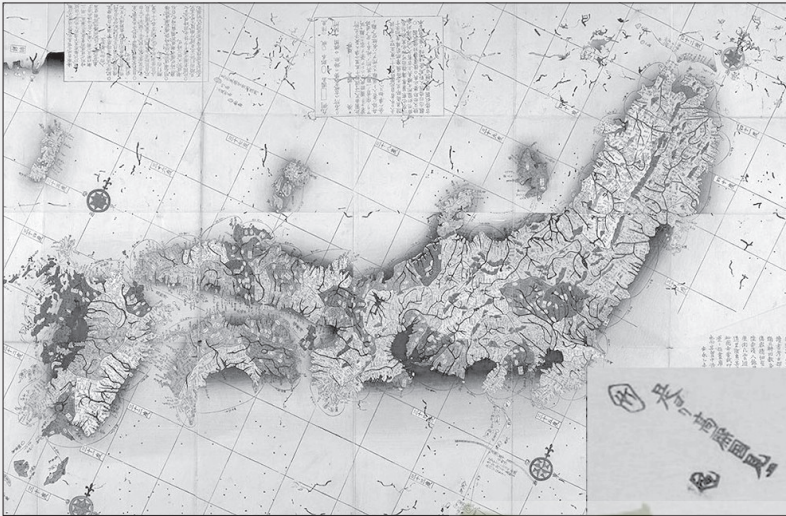


〈그림 3〉 〈三國接壤之圖〉에 나타난 독도 부분 확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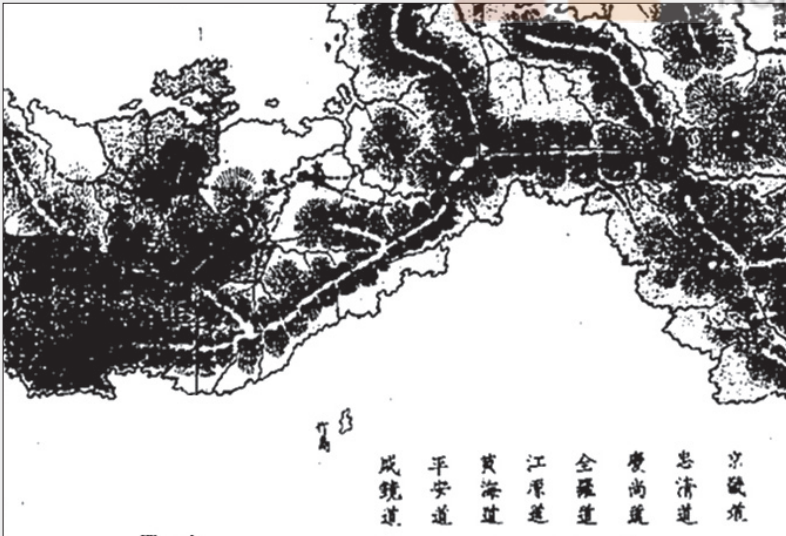
실이다. 그리하여 국내 일각에서는 쓰시마가 한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김상훈, 2012), 이는 불확실한 사실이므로 더 확실한 근거가 나올 때까지 유보해두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남영우·김부성, 2012).

전술한 바와 같이 울릉도와 독도 간에 서로 조망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두 섬과의 거리가 가시적 거리인지의 여부는 두 섬의 생성시기와 관계없이 지리적으로 독도가 울릉도의 자섬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가시적 거리에 존재하는 지리적 정보는 수송가능성(transferability)이 있고 거리마찰(distance decay)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한 공간적 교류를 실현케 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류는 그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교류를 하며 문명을 만들어왔다.

독도에 대한 경위선이 처음으로 측량된 것은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Liencourt)호가 섬의 위치를 북위 37° 14', 동경 129° 35.2'로 확정하여 1849년 프랑스 수로지에 실린 것이다. 1775년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제작한 〈그림 4〉의 〈改正日本與地路程圖〉에는 독도(일본명 松島)가 조선령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사항을 주기해놓았다(長久保赤水, 1775). 그는 에도시대 중기의 지리학자다.



〈그림 4〉〈改正日本與地路程圖〉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고베대학 도서관)



〈그림 5〉〈朝鮮國地誌摘要〉에 나타난 울릉도[竹島]

1853년에 제작된 〈大日本與地全圖略〉은 역시 나가쿠보 세키스이 계보에 속하는 지도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1870년대에 일본에서 제작된 대부분의 지도에는 울릉도 및 독도가 조선령으로 묘사되어 있다. 가령 일본해군수로료(日本海軍水路寮, 1873)의 〈朝鮮全圖〉를 비롯하여 사다 호쿠보(佐田白茅)가 제작하여 1875년 외무성이 출판한 『改訂新鐫朝鮮全圖』, 1875년에 제작된 세키구치 비마시(關口備正)의 〈朝鮮與地全圖〉와 이치바라 마사키(市源政樹)와 사와이 만키(澤井萬輝)의 〈朝鮮國全圖〉, 그리고 1876년에 발간된 일본 육군 대위(좌자마상)의 〈海左全圖〉와 곤도 호로쿠(近藤保祿)의 〈朝鮮國地誌摘要〉 등이 그것이다. 이들 중 〈그림 5〉의 〈海左全圖〉는 〈朝鮮全圖〉를 복제한 것이며, 〈朝鮮國地誌摘要〉에 나타난 다케시마 지명이 울릉도였으므로 일본 측은 독도를 일본령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19세기를 전후하여 일본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지칭하는 지명에 혼선을 빚어왔다. 특히 1876년 다케후지 헤이가쿠(武藤平學)가 외무성에 제출한 울릉도 개척안을 건의한 「松島開拓之議」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울릉도와 독도의 지명을 혼돈하고 있었다. 이것이 그 당시 일본에서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의 지명혼란을 빚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1877년에 육군에서 간행한 〈原版朝鮮全國之寫〉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령으로 묘사되었다.

2. 19세기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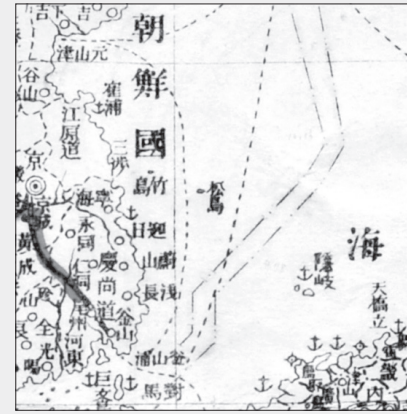
일본은 정한론이 대두되면서 한반도 침략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869년 조직된 병부성 육군부 참모국에서 장교들로 구성된 간첩대를 1872년부터 한반도에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1874년에 개편된 육군성 산하 참모국 소속의 장교들이 신분을 위장하여 속속 한반도에 잠입하였다(남영우, 2011, 42~45쪽). 그중 1877년 가이즈 미쓰오(海津三雄)가 측량한 〈朝鮮國長浦江口略圖〉는 일본 참모본부 간첩대가 한반도를 측량한 최초

의 지도였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그들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관심보다는 한반도 해안과 내륙지방에 대한 지도제작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였다.

1880년대에 접어들어 간행된 후쿠기 고마다로[福城駒多郎]의 <朝鮮國細圖>를 위시한 기무라 분지로[木村文三郎]의 <銅版朝鮮國全圖>, 스즈키 게이사쿠[鈴木敬作]의 <朝鮮國全圖>에는 독도가 조선령으로 묘사되었다. 그리고 문부성이 펴낸 우치다 마사오[内田正雄]의 『輿地誌略』에 실린 <大日本全圖>에 독도 표기가 없는 것은 독도를 일본이 한국령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1894년에 간행된 육지측량부·시바다 겐자부로[紫田源三郎]·도쿄지학협회(東京地學協會)·오하시 신타로[大橋新太郎]·고하시 스케비도[小橋助人]·와카바야시 마사부로[若林篤三郎]가 제작한 <朝鮮全圖>들은 모두 독도를 조선 또는 한국령으로 표기하였다. 일본 수로국에서 1896년 발행한 <朝鮮全岸>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지도는 울릉도 일대의 수심을 측량한 것으로 독도가 측량되었는지는 불명하다. 1894년에 간행된 한반도 지도의 특징은 대부분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시했다는 점과 과거의 고지도를 계승하되 산줄기를 우모식(羽毛式)으로 표현했다는 점이다. 우모식이란 독일 육군의 레맘(J. G. Lehmann)이 고안한 기법으로 지도에 지형기복을 새털 모양의 선 기호로 표현하는 방식을 뜻한다(김주환·강영복, 1990, 456쪽).

1900년대에 접어들어 제작된 고토 분지로[小藤文次郎]의 <조선전도>는 한반도에 대한 지질조사를 토대로 비교적 정확하게 작성된 지도인데, 이 지도 상에는 울릉도만 묘사되었을 뿐 독도는 누락되어 있다. 독일 유학을 거친 지질학자 고토 도쿄제국대학 교수는 69일간에 걸쳐 한반도 남부를 동서로 횡단하며 지질학적 조사를 하였는데(손일, 2010), 그의 조사결과는 순수한 학술조사라기보다는 어용학자로서 한반도에 대한 자원수탈의 목적을 내포한 것이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지도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본의 고지도 역시 울릉도와 독도의 표시에 오류가 있었다. 이러한 오류는 20세기에 들어서도 유사한 오류를 범하였다. 1903년 소속불명의 제국육해측량부(帝國陸海測量部)



<日露清韓明細新圖>



<朝鮮八道之圖>

<그림 6> <日露清韓明細新圖>(좌)와 <朝鮮八道之圖>(우)

출처: 북한 중학교 2학년 『지리교과서』, 6쪽; 이영민 외, 2011, 『고등학교 사회』, 비상교육, 15쪽.

가 편찬한 <日露清韓明細新圖>의 경우 <그림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울릉도인 일본명 '竹島'가 해안선 가깝게 묘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당시 <朝鮮八道之圖>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리적 정보와도 관계가 있겠



<그림 7> 와타나베 데쓰조[渡辺鐵造]의 <韓國全圖>(1904)에 표시된 독도와 울릉도

으나 동해안에서 울릉도를 가깝게 인식하던 것에서 비롯된 것 같다. 더 나아가 1904년에 제작된 와타나베 데쓰조의 <韓國全圖>에는 독도의 위치를 울릉도 서쪽에 잘못 표시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그림 7)). 이것은 20세기 들어와 울릉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지명혼동의 증거사례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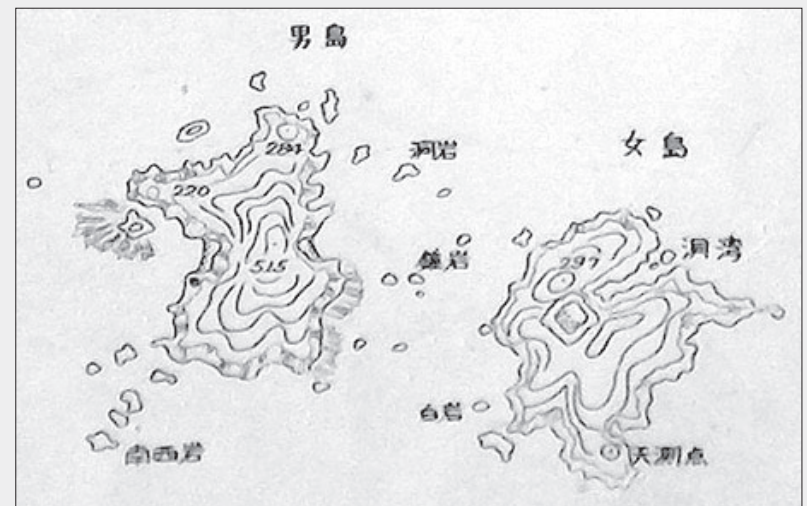
일본은 1905년 1월 28일 각의에서 독도를 '마쓰시마[松島]로부터 '다케시마[竹島]'로 변경하였다. 이는 일본 국내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지명 혼란이 많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1905년에 제작된 <韓國全圖>를 필두로 독도 지명은 다케시마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그림 8>의 지도에서 주목할 것은 한반도를 나타낸 지도임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표시했으며, 또한 이 지도에서 울릉도 동쪽의 독도를 표시할 만한 공간적 여유가 없음에도 도곽의 난외에 독도를 표시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본전도에서 독도를 표시하지 않은 여타지도류나 조선전도에서 독도를 표시하여 영토 근거로 삼는 것과 동일한 이치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만약 전술한 <그림 4>의 <大日本與地全圖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전도에서 독도를



<그림 8> <韓國全圖>의 독도 부분

표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영토임을 주기한 사실 또한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할 사항이다. 비록 이 지도가 작자 미상이긴 하지만 당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實測經緯度原簿	
位 置	朝鮮東岸 竹島 (隱岐國) 一 女島 南角上
測 量 年 月	明治卅一年 八月 4 日 至 5 日 同 觀 測
測 量 者	海軍水陸大監 荒畑岩次郎
測量方式及器械	ソリコト 緯度測法 子午儀
測量成果 誤差	緯度 37 14 18.46 ± 0.223 經度 131 02 23.77 ±
測地經緯度ノ關係	
測量標 名、數、高	高(平均水面上) 米
土地所有者ノ契約	
地 積、地 目、戶 數	



<그림 9> 최초의 일본 수로국 독도 실측지도(1908)

1907년 오쿠하라 후쿠이치(奥原福市)가 펴낸 『竹島及鬱陵島』는 일본의 울릉도 및 독도 시찰단이 작성한 도항일지(渡航日誌)인데, 여기에는 시찰단이 촬영한 현지 사진과 함께 지도가 포함되어 있다. 지도는 시찰단이 작성한 것으로 여겨지는 지질도와 강치 서식지도였다. 그 후 일본인들이 강치를 대대적으로 포획한 것으로 볼 때, 이들 지도는 자원약탈을 위한 예비조사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이듬해에 일본에서 간행된 한반도 지도 중 도미타 노우지(富田能次)의 <最近大韓國全圖>와 수로국에서 발간한 <朝鮮東岸竹島(隱岐圖)>를 꼽을 수 있는데, 이들 중 <그림 9>의 '隱岐圖'는 독도에 대한 실측지도였다. 이 지도는 1908년 수로국 대감(大監) 아라바다 이와지로(荒畑岩次郎)가 제작한 일본 최초의 실측지도로 1:18,204 축척이다. 이 지도는 일본 실측 경위도 원본에 수록된 것으로 탈코트법³으로 측량되었다. 이 지도에는 동도를 '女島', 서도를 '男島'로 표기하고, 이 밖에도 6개의 지명이 명명되어 있다. 일본은 이 무렵부터 독도의 동도와 서도를 각각 '여도'와 '남도'로 부르기 시작한 것 같다.

일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 말부터 한반도에 장교들로 구성된 간첩대를 밀파하여 측량을 시작하였다. 일본의 측량침략은 대한제국을 거쳐 일제 강점기로 이어졌다. 이 기간 중 일제는 세 차례에 걸쳐 1:5만 축척의 지형도를 발간하였다. 최초의 지형도는 참모본부 간첩대에서 제작하였다가 그 대부분이 한일병합 후에 '약도'로서 시판된 제1차 지형도였다. 그 뒤를 이어 1909~1911년에 걸쳐 측량된 제2차 지형도는 1913~1916년에 걸쳐 발행되었다. 이 지형도는 1914~1918년에 한반도 전역에 걸쳐 삼각점망을 설정하여 측량한 것으로 지적도의 간행을 위해 제작되었다(남영우, 2011, 214쪽). 이들 가운데 제3차 지형도의 수정판을 비롯하여 1:20만 축척의 지형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실측에 의해 지도 속에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朝鮮交通圖>라 불리던 제3차 지형도는 1915년에 발간되었으나 일본의 패전 직전인 1944년까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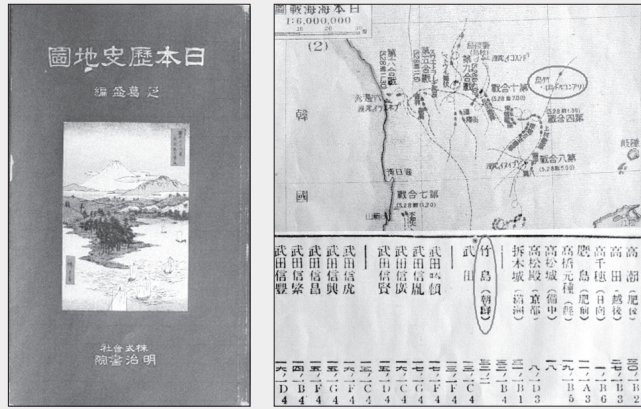
3 이 지도에서 사용된 측량법은 1834년 미국의 H. Talcott가 고안한 탈코트법(Talcott method)으로 관측지점의 자오선을 연속적으로 통과하는 행성을 기준으로 천정거리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림 10> 독도가 포함된 제3차 지형도 색인도

적으로 수정본이 발행되었다. 특히 이른바 대동아공영을 획책 중이던 1936년 일본 육지측량부가 발행한 한반도 지형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지도는 매우 정확히 작성되어야 한다. 지도에는 지방과 지방의 경계선은 물론 타국과의 국경선은 더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육지측량부의 지형도에는 일본 영역에 포함시킬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竹島'라 쓰고 울릉도와 함께 정확한 위치에 표시된 한국 구역에 포함시켰다. 또한 경위선을 한국과 연결하고 독도의 소속을 재확인하였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가 시행된 지 31년이 지났음에도 일본은 당시까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국제법에 의거 일본 영토에 편입했다는 시마네현 고시가 허구일 뿐만 아니라 러일전쟁에 의한 것이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4년 명치서원(明治書院)에서 출판한 『日



(그림 11) 『日本歴史地圖』에 나타난 독도

『本歴史地圖』 가운데 동해 해전전도(海戰全圖)가 들어 있는데, 이 지도상에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시한 바 있다. 일제강점기임에도 일본은 여전히 독도의 영유권을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러일전쟁을 설명하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지도를 1935년에도 편찬한 바 있다. 즉 일본학습사(日本學習社, 1935)가 펴낸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1904년의 <日露戰役要圖>에도 독도가 한국령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상에서는 일본에서 광복 이전에 발간된 울릉도 및 독도 관련 한반도 지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해방 후 필자는 일본 외무성이 출간한 『日韓漁業交渉資料』에 주목하고 싶다(外務省, 1952). 이 자료에서는 독도의 식물경관이 울릉도의 그것과 상이함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일본 본토의 식물경관과 유사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사실여부를 떠나 후술하는 나카이 다케노신 [中井猛之進, 1917] 및 나카이 다케노신(1919)에 이어 영토주권에 이어 생물주권을 강조하려는 일본 정부의 저의가 깔려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일본과 러시아 간에 영토분쟁 대상지인 북방 4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대목에서 4개 섬의 동식물 분포가 홋카이도와 같지,

4 실제로 독도의 식물경관이 울릉도와 유사한지, 일본 열도의 그것과 유사한지 확인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이북의 쿠릴 섬들과 다르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것에서 그 근거 중 하나를 찾는 용의주도함을 엿볼 수 있다.⁵

III. 일제강점기 일본의 독도 연구 동향과 시마네현의 독도 연표

1. 일제강점기 일본의 독도 연구 동향

일본은 러일전쟁 직후부터 어용학자를 앞세워 독도에 관한 연구를 본격화하였고, 한일합방 이후부터 독도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지도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가 제기되었다. 본고에서는 주로 지리학 분야에 나타난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기로 하겠다.

일본 학계에서는 20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 본토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었으나 부속도서에 관심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일본 메이지시대의 지리학자 다나카 아카마로 [田中阿歌麻呂]의 연구가 단연 독보적으로 발표되자 독도 및 울릉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1905년 동경지학협회(東京地學協會)의 주간 및 편집위원을 맡고 있던

다나카는 당시의 독도가 어느 나라의 영토에도 속하지 않는 무주지인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사실을 지학잡지 『雜報』에 게재하였다(田中阿歌麻呂, 1905a, 282쪽). 당시 지리학자의 오판이 일본의 역사를 왜곡시킨 결과를 빚게 될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였다. 그 뒤를 이어 다나카의 연구물이 아래와 같이 속속 발표되었다.⁶

5 임종건, 2013, 「일본의 북방4도를 바라 보며」, 자유칼럼그룹, www.freecolumn.co.kr.

6 이들 다나카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田中阿歌麻呂, 1905a, 「帝國新領土竹島」, 『地學雜誌』, 196, 282쪽; 田中阿歌麻呂, 1905b, 「隱岐國竹島に關する舊記」, 『地學雜誌』, 200, 594~598쪽; 田中阿歌麻呂, 1905c, 「隱岐國竹島に關する舊記(承前)」, 『地學雜誌』, 201, 660~662쪽; 田中阿歌麻呂, 1906, 「隱岐國竹島に關する地理學上知識」, 『地學雜誌』, 210, 415~419쪽; 田中阿歌麻呂, 1908, 「竹島の位置新測」, 『地學雜誌』, 239, 821쪽.

田中阿歌麻呂, 1905, 「帝國新領土竹島」

田中阿歌麻呂, 1905, 「隱岐國竹島에 관한 舊記」

田中阿歌麻呂, 1905, 「隱岐國竹島에 관한 舊記(承前)」



〈그림 12〉 1906년 田中阿歌麻呂의 논문에 실린 독도 지도

田中阿歌麻呂, 1906, 「隱岐國竹島에 관한 地理學上知識」
 田中阿歌麻呂, 1908, 「竹島の 位置新測」

상기한 연구물 중 1906년에 지학잡지 210호에 발표된 「은기국 죽도에 관한 지리학상 지식」(隱岐國竹島に關する地理學上知識)에는 〈그림 12〉에서 보는 것과 같은 실측에 의거한 독도 지도가 실려 있다(田中阿歌麻呂, 1906, 417쪽). 지도에 표시된 범례로 판단하건대, 이 지도는 전술한 바 있는 일본의 울릉도 및 독도 시찰단이 작성한 도항일지(渡航日誌) 내용을 1907년 오쿠하라 후쿠이치가 펴낸 『竹島及鬱陵島』에도 게재된 바 있는 지도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는 1906년 『歴史地理』에 기고한 「竹島沿革考」에서 ‘邊要分界圖考’(近藤守重 蔵, 1804)를 언급하며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한 바 있는 인물이다(奥原碧雲, 1906).

그러나 오쿠하라 후쿠이치의 주장은 그가 인용한 곤도우의 〈邊要分界圖〉가 1785년에 제작된 하야시 시헤이의 〈三國接壤之圖〉에 의거한 것이기 때

문에 그 내용과 상치되므로 왜곡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907년에 출판한 그의 저서 『竹島及鬱陵島』에 따르면 울릉도에 살던 한국인들이 1904년과 1905년에 독도에서 강치를 잡아 매년 가죽 800관씩 일본에 수출한 사실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독도가 한국 영토였음을 증명하기 때문이다(奥原碧雲 編, 1907). 그의 저서에는 비교적 독도의 정확한 면적과 지질도가 실려 있는데, 이 지도는 상술한 〈그림 12〉와 대체로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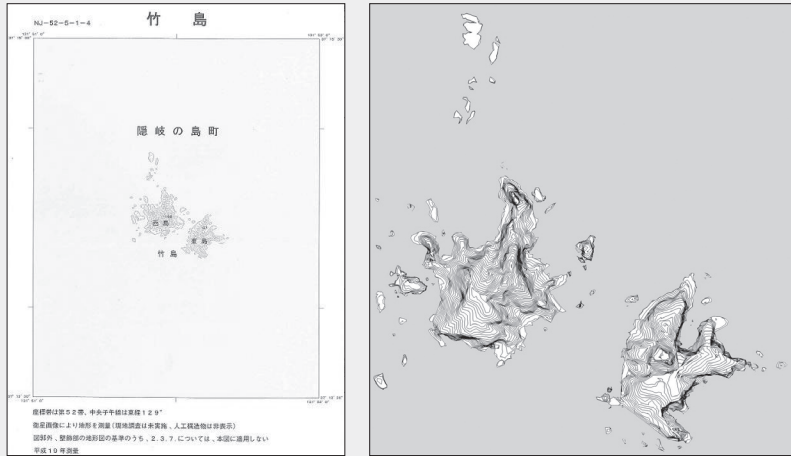
쓰보이 구메조(坪井九馬三)는 『歴史地理』에 투고한 논문에서 나카이 다케노신(1917)의 식물조사 및 나카이 다케노신(1919)의 식물조사보고서를 비롯하여 히라이 세이타로(坪井誠太郎)(1919)의 지질조사 및 다니이 사이이치(谷井濟一)의 고적연구를 소개한 바 있다(坪井九馬三, 1921). 그리고 그는 1930년의 논문에서 독도의 지명을 다케시마(竹島)로 호칭해야 함을 주장하였다(坪井九馬三, 1930). 이에 대하여 히비타 셋코(樋畑雪湖)는 1929년에 발표한 그의 논문에서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조선 영토임을 주장하였다. 그는 일본의 교통연구가이며 우편박물관의 창설자이기도 한 인물이다(樋畑雪湖, 1929).

이상에서는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에 대하여 정리해보았다. 이들 가운데 독도에 관한 실측지도를 정리해 놓은 것이 〈표 1〉이다.

일본은 1724년에 작성한 스케치 지도를 필두로 1896년의 수로국 수심측량, 1906년 일본시찰단이 작성한 지질도 및 강치 서식지도, 그리고 1936년 제3차 지형도에서 측량한 독도 지형도를 끝으로 독도에 대한 실측지도를

〈표 1〉 독도 측량 연표

연도	지도 및 내용	제작자
1724	竹島之圖(스케치 지도)	-
1849	최초의 경위선 측량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
1896	울릉도 및 독도 일대 수심측량	일본 수로국
1907	지질도, 강치 서식지도(竹島及鬱陵島)	일본 시찰단
1908	朝鮮東海岸竹島(최초의 실측지도)	해군 수로국
1936	제3차 지형도(최초의 삼각측량)	육지측량부
1952	식물조사	일본 외무성
2006	일본 최초의 지형도(1 : 25,000축척)	일본 국토지리원



〈그림 13〉 日本 國土地理院 발행의 독도 지형도(2006)



〈그림 14〉 시마네현(島根縣)이 신청한 독도 지명

제작하지 못하였다. 그 후, 일본의 국토지리원은 2006년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은 1:25,000 축척의 지형도를 간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지형도는 일본과 미국의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측량한 지도이므로 사실상 실측지도는 아니다.

2. 일본 시마네현의 獨島年表

여기서는 일본 시마네현 죽도문제해결촉진협의회(竹島問題解決促進協議會)가 작성한 독도 연표를 소개하기로 한다. 본 연표에 기재된 내용은 일본 시마네현의 입장에서 정리한 것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음을 유념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시마네현의 독도연표에는 1849년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호가 독도를 발견하고 최초로 경위도를 측량한 사실을 필두로 1904년 시마네현의 나가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郎)가 독도에 대한 편입원을 제출한 사실과 그 이듬해에 독도지명변경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놓았다. 또한 시마네현의 마쓰나가 다케요시(松永武吉)와 그 이듬해 제3부장이

독도를 시찰한 내용도 포함시켰다. 1939~1945년까지는 독도의 소속변경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일본은 6·25전쟁 중 시마네현과 해상보안청이 공동으로 독도를 조사하고 영토표식을 단행하고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한국 정부에 제의하기도 하였다. 시마네현의 독도연표에는 1965년 6월에 한일 기본조약을 조인하면서 독도 문제를 분쟁처리사항으로 유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사실은 한국 정부의 주장에 따라 독도가 영토 분쟁사안이 아니므로 독도 문제를 제외하였다.

시마네현이 작성한 연표 중에 주목할 만한 사항은 시마네현이 일본 국토지리원에 독도의 지명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불리는 지명을 변경하는 내용인데, 〈그림 1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서도를 남도(男島), 동도를 여도(女島)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하기 위해서는 한국식 지명을 따르면 불리하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IV.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일본 문헌에서 처음 독도가 지도상에 나타난 것은 1724년 4월 이나바노쿠니의 시마네 번주가 막부에 제출한 자료인 이케다가의 문서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과거 현재의 돗토리현에 상당하는 이나바 및 호우키의 2개국 번주였던 이케다가문에 보관되어 전해 내려 오다가 1969년 시마네현에 기증된 방대한 자료다. 이 자료 속에 포함된 다케시마노즈[竹島之圖], 즉 독도 지도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상황을 개략적으로 스케치한 지도인데, 여기에는 독도와 울릉도 간의 거리가 40리, 독도와 오키섬 간의 거리가 60리라고 주기되어 있다. 그리고 울릉도였던 당시의 다케시마는 7개의 일본식 지명이 명명되어 있었다. 이 지도로 18세기에 도시대의 일본에서는 독도의 위치와 지형을 개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일본에서 제작된 한반도 전체를 나타낸 조선전도 종류는 비교적 다양하고 많은 편인데, 비교적 정확한 지도는 1877년경부터 근대적 측량기법에 기초한 지도류가 제작되었지만 190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독일 유학을 거친 일본 지질학자 고토 분지로 도쿄제국대학 교수가 1903년 제작한 <조선전도>에 이르러 지도제작기술이 정확해졌다고 볼 수 있다. 고토 분지로 교수가 제작한 지도는 그가 한반도를 14개월간에 걸쳐 행한 지질조사를 토대로 간행된 것이었으나 독도는 누락되어 있다.

20세기 이전에 일본에서 간행된 조선지도는 지도제작자들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1906년에 간행된 일본의 지리학 교과서 『地理學各論: 外國地誌』에는 한국을 독립국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일본에서 독도의 존재는 미미한 편이었다. 가령 1904년에 제작된 와타나베 테쓰조의 <韓國全圖>에는 독도의 위치를 잘못 표시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와 같은 오류는 실측에 의한 지도가 아니라 기존의 지도들을 참고하여 제작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들이다.

그로부터 3년 후, 울릉도와 독도를 실측하여 지도를 제작하기 시작한 것은 1907년 일본의 울릉도와 독도 시찰단이 작성한 지질도를 위시하여 1919년 히라이 세이다로[坪井誠太郎]에 의한 지질조사가 그것이다. 그러나 삼각측량에 의한 측량은 1932년 육지측량부가 간행한 <제3차 지형도>이며, 이는 울릉도에 한정된 것이었고 독도에 대한 측량은 아니었다. 독도가 <제3차 지형도>에 처음으로 포함된 것은 1936년 수정판부터의 일이다.

결국 일본이 최초로 실측에 의해 제작한 지도는 1908년 수로국 대감(大監) 아라바다 이와지로가 제작한 1:18,204 축척의 <朝鮮東岸竹島(隱岐圖)>다. 이 지도는 일본 실측 경위도 원본에 수록된 것이다. 2006년 일본 국토지리원이 발간한 일본 최초의 1:25,000 축척의 지형도는 실측한 지도가 아니라 일본 및 미국의 위성관측자료를 이용해 간접측량으로 제작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관심지역에 대한 실측지도뿐만 아니라 지도상에 묘사된 독도 관련 지도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도를 개관해보았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일본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지도상에 독도에 대한 영토편입을 의도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있다.

지도의 중요성은 영토문제뿐만 아니라 민족의 자존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맥아더(MacArthur) 사령관은 일본 패전 후 1945년 8월 30일 요코하마에 도착한 즉시 “지도는 모든 것의 기본이니 그것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면서 육지측량부를 점검하고 지도를 압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맥아더는 일본의 학교교육에서 지리교육과 지도교육을 금지시켰다. 그것은 맥아더가 지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리교육과 지도학습은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국가관을 배양하는 데 필수적이다. 필자는 독도 문제를 둘러싼 지도의 발굴과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향후 일본의 독도 지도를 발굴하여 그 특징을 시대별로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문 초록

본고는 에도시대로부터 메이지유신을 거쳐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발간된 일본의 독도 지도와 실측지도를 개관한 연구다. 영유권 논쟁을 전개함에 있어서 문헌적 고찰의 중요성은 물론이거니와 영유권 논쟁의 대상이 되는 영토의 지도학적 고증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본 문헌에서 처음 독도가 지도상에 나타난 것은 1724년 4월 이나바노쿠니의 시마네 번주(島根藩主)가 막부에 제출한 자료인 이케다가(池田家)의 문서에 수록된 스케치 지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스케치 지도를 실측 지도로 간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그 뒤를 이어 1779년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제작한 <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지도는 이노우 다다타카가 실측하여 1821년 제작한 지도보다 42년이나 빠른 시기에 제작된 지도이나 실측지도가 아니었다. 다만 이 지도와 하야시의 지도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 사이가 가시적 거리에 있음이 주기되어 있는데, 여기서 울릉도와 독도 간에 서로 조망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두 섬과의 거리가 가시적 거리인지의 여부는 독도가 울릉도의 자섬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20세기에 들어와 1908년 수로국 대감(大監) 아라바다 이와지로가 제작한 일본 최초의 실측지도로 1 : 18,204 축척의 <朝鮮東岸竹島>가 제작되었다.

<주제어>

독도, 고지도, 측량, 에도시대, 명치유신

ABSTRACT

Japanese land-survey and mapping on Dokdo

Nam, Youngwoo

Professor Emeritus,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land survey and mapping of the island Dokdo conducted by the Japanese from the Edo period through the Meiji Restoration an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of Korea. Studying historical literature, particularly cartographic proof found in historical maps, have critical significance in international territorial disputes. Dokdo seems to first appear in Japanese literature in a roughly sketched map among documents from the Ikeda family (池田家), which the Hansyu (藩主) of Inabanokuni (因幡國) submitted to the then shogunate in April 1724. However, the question is whether this map was based on an actual land survey since the credibility of maps are negatively impacted when simply drawn without a land survey. Later on in 1779, Nagakubo (長久保赤水) produced the 'Revised Complete Map of Japanese Lands and Roads' (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 Although this map was made 42 years earlier than that by Inou (伊能忠敬) in 1821, it was not based on a land survey either. Nagakubo's map does however annotate that Dokdo and Ulleungdo are apart at a distance visible to the naked eye, which hands critical support to the fact that Dokdo has been in a filial relationship with the island Ulleungdo. In the twentieth century, Arahata of the Japanese navy's hydrographic service produced Japan's first map of Dokdo based on a land survey at a scale of 1: 18,204, titled as the 'Map of Takeshima on the Eastern Coast of Chosun' (朝鮮東岸竹島).

Keywords

Dokdo, old map, land survey, Edo period, Meiji restoration

참고문헌

김상훈, 2012, 『일본이 숨겨오고 있는 대마도·독도의 비밀』, 양서각.
 김주환·강영복, 1990, 『지도학』, 신라출판사.
 남영우, 2011, 『일제의 한반도 측량침략사』, 법문사.
 남영우·김부성, 2012, 『하야시와 Klaproth의 삼국점양지도 비교분석』, 2012년 추계 학술대회 요약집, 한국지도학회.
 손일 역, 2010, 『조선기행록』, 푸른길.
 남영우, 1995, 「林子平의 조선팔도지도 연구」, 『민족문화연구』 28.
 이호상·北田愷司·남영우, 2009, 「일본의 지도학자 伊能忠敬의 생애와 업적」, 『한국지도학회지』 9(2).
 임종건, 2013, 「일본의 북방4도를 바라보며」, 자유칼럼그룹. www.freecolumn.co.kr.

近藤保祿 編, 1876, 『朝鮮國地誌摘要』, 時習舎.
 内田正雄, 1887, 『輿地誌略』, 文部省.
 奥原福市 編, 1907, 『竹島及鬱陵島』, 報光社.
 外務省, 1875, 佐田白茅 著, 『改訂新鑄朝鮮全圖』.
 日本學習社, 1935, 『尋常小學 國史繪圖(下卷)』.
 奥原碧雲, 1906, 「竹島沿革考」, 『歷史地理』 8(6).
 外務省, 1952, 「日本海の竹島について」, 『日韓漁業交渉資料』 三.
 樋畑雪湖, 1929, 「日本海に於ける竹島の日鮮關係に就いて」, 『歷史地理』 55(6).
 坪井九馬三, 1921, 「鬱陵島」, 『歷史地理』 38(3).
 坪井九馬三, 1930, 「竹島に就いて」, 『歷史地理』 56(1).
 「因幡國島根藩主池田家文書」, 1724, 島根縣立圖書館 所藏.

關口備正, 1875, 〈朝鮮與地全圖〉.
 大橋新太郎, 1894, 〈新撰朝鮮國全圖〉.
 渡辺鐵造, 1904, 〈韓國全圖〉.
 東京地學協會, 1894, 〈朝鮮全圖〉.

藤守重 藏, 1804, 〈邊要分近界圖考〉.
 木村文三郎, 1882, 〈銅版朝鮮國全圖〉.
 明治書院, 1924, 〈日本歷史地圖〉.
 福城駒多郎, 1882, 〈朝鮮國細圖〉.
 富田能次, 1908, 〈最近大韓國全圖〉.
 森田桑, 1853, 〈大日本海岸全圖〉.
 小橋助人, 1894, 〈朝鮮海陸全圖〉.
 小藤文次郎, 1903, 〈朝鮮全圖(KOREA)〉.
 水路局, 1908, 〈朝鮮東岸竹島(隱岐圖)〉.
 市源政樹, 1875, 〈朝鮮國細圖〉.
 若林罵三郎, 1894, 〈朝鮮與地全圖〉.
 鈴木敬作, 1882, 〈朝鮮國全圖〉.
 陸軍大尉, 1876, 〈海左全圖(원판: 朝鮮全圖)〉.
 陸軍 編, 1877, 〈原版朝鮮全國之寫〉.
 陸地測量部, 1894, 〈朝鮮全圖〉.
 陸地測量部, 1918~1938, 〈朝鮮二十萬分一圖〉.
 陸地測量部, 1918~1938, 〈朝鮮五萬分一圖〉.
 日本水路局, 1896, 〈朝鮮全岸〉.
 日本海軍水路寮, 1873, 〈朝鮮全圖〉.
 日本國土地理院, 2006, 〈1:25,000 지형도〉.
 紫田源三郎, 1894, 〈朝鮮全圖〉.
 帝國陸海測量部 編, 1903, 〈日露清韓明細新圖〉.
 澤井萬輝, 1875, 〈朝鮮國全圖〉.
 海津三雄, 1877, 〈朝鮮國長浦江口略圖〉.

독도의 해양부유물 설치에 따른 예비시나리오 분석

황지욱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1. 머리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독도에 대한 한·일 간의 갈등의 원인은 일본이 구 강점기에 이루어진 대한민국 근대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곡해하는 의식에 근거하여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2013년 현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수상이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왜곡된 역사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관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한·일 간의 외교관계를 통해 독도의 갈등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독도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정치·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되 대내적으로 영유권 공고화를 위한 기능 강화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토에 대한 자주권을 확고히 하는 양면적 접근을 취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공고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여 보고자 한다. 특히 영유권 공고화를 위

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해양부유물의 활용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고자 한다. 해양부유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독도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여 독도 자체에 영구적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인위적 훼손이 발생할 가능성¹이 있어, 이를 예방하면서 독도에 대한 국민의 평화적 이용증진과 홍보효과가 큰 지배력 강화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독도 주변의 해양을 기반으로 임시시설물인 부유물의 설치와 이용방안이 핵심적 고려사항으로 제기될 것이다.

2. 선행연구

독도에 관한 연구는 대한민국 영토의 고유성에 기반을 둔 영유권에 대해 일본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독도 분쟁을 기점으로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왔다. 1960년대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의 연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독도의 영유권이 자국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고문서, 고지도 및 근세 이후의 외교문서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자국의 영토임을 입증하는 연구(김별렬, 1996; 양태진, 1996; 구선희, 2007)와 상대국의 영유권 주장에 모순이나 허구를 반박하며 국제법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왔다(김채형, 2007; 박병섭, 2012; 이기용, 2011). 최근에 이르러서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를 위한 법률적 정비를 다루는 연구(김명기, 2006; 이상면, 2008; 최병학, 2010)를 비롯하여 독도의 지형·환경·생태 및 주변 해역의 특성 등을

다루는 해양학적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도 광범위하게 관심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과거에 독도의 대한민국 영토성과 역사성만이 부각되던 연구에서 실질적으로 독도와 주변 해역의 가치를 재발견하며 외교와 해양주권 그리고 영토의 보존과 개발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고자 하는 연구로 진일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도 먼저 진정으로 독도의 영토성을 강화하는 실

1 영구적 시설물의 설치가 무조건 독도의 환경을 훼손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 문장의 기술에서 의도된 바는 시설 입지에 대한 환경생태적 분석, 시설의 사용 용도에 부합하는 시설의 규모설정과 같은 합리적 검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검증작업에 준하여 '자정적 환경용량'을 고려한 영구적 시설물 설치할 경우 독도의 생태환경적 여건은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행방안을 찾기 위하여 구체적인 독도 이용 전략은 어떻게 수립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의 방법

연구의 분석은 큰 틀에서 두 가지의 접근방법을 통하여 수행된다. 첫 번째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양의 장기적 이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외교적 입장, 지정학적 입장 및 생태·환경적 입장을 고찰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정치·외교적 고찰에서는 독도를 둘러싼 법리적 갈등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연구와 외교적 사실을 개괄하면서 실효지배의 기능강화가 끼칠 영향과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정학적 고찰이란 ‘국경지역’이라는 관점에서 독도와 주변 해역이 어떠한 가치를 띠고 있나 살펴보는 것을 말하며, 생태·환경적 고찰이란 실질적으로 개발이나 이용과 같은 특정의 행위가 발생할 때 어떠한 사회적 파급현상이 일어날지를 예측하여 타당성 여부와 한계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독도의 영유권 강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거나 이용과 개발을 위한 원칙을 제시하려 할 때 꼭 거쳐야 하는 검증과정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검증과정은 연구진행의 두 번째 단계인 예비시나리오적 접근방법을 위한 전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예비시나리오적 접근방법이란 시나리오 분석을 위해 논리적 전개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분석방법에 해당한다(황지욱, 2000, 36쪽). 본 연구에서 예비시나리오적 접근방법이란 독도와 주변 해역의 이용이나 개발을 위해 항구적 시설물이나 인공적 부유물을 설치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을 분석하고 풀어가기 위한 것이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논리적 전개과정을 거쳐 파악해보게 된다. 이러한 쟁점의 분석을 위해 거론될 수 있는 핵심적 주체는 시설물의 설치에 따른 환경·생태문제가 예상될 때 대한민국 내부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는 이해관계인, 외교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 그리고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업인 등이 주요 당사자로 거론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예비시나리오적 방법을 거쳐 특정시설의 설치가 쟁점의 이해당사자들에게 어떠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미래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항구적 시설물이나 해양부유물의 설치를 실효지배의 강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1. 예비시나리오의 이론적 접근

시나리오 기법(Scenario Method)이란 미래를 연구하는 기법 중의 하나이다. 이 기법은 하나의 미래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변수들과 기술들을 조건으로 몇 가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미래상을 그려내어 미래를 대비하는 유연성 있는 기법이다(Hwang Jeewook, 2000). 이러한 시나리오 기법은 정확한 ‘예측(forecast)’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가능한 미래, 즉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슈바르츠(Schwartz, 1991)의 정의에 따를 때에도 시나리오 기법은 ‘미래적 상황을 결정하기 위해서 미래에 변화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도구’에 해당하며, 슈메이커(Schoemaker, 1995)의 정의에 근거할 때에도 시나리오 기법은 ‘발생 가능한 미래의 모습들을 상상하게 해주는 숙련된 전문적 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예비시나리오 기법은 로드맵처럼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에 앞서 불확실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공동’으로 그려보고 이해하는 작업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첫 번째 단계는 미래의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는 추동력을 찾아내기 위하여 다자의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해 함께 논의하고 이러한 변화의 동인이 어떠한 미래를 구성해낼 것인가에 대하여 ‘공동’으로 구상해보는 작업이다(황지욱, 2004, 157쪽). 이렇게 작성된 예비시나리오의 정책결정가들에게 예측된 미래의 출현에 대한 원인론적 상관관계와

의사결정의 요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시나리오를 확정짓는 것과 연관지어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미래적 사태들에 관한 '잘 구상된 이야기(a well thought-out story)'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김갑식, 2012, 126쪽). 이렇게 최종적으로 시나리오가 구성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정확히 하나의 미래를 예측하여내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잘못된 예측은 더 큰 위험을 수반한다. 시나리오 기법의 장점은 '복수 혹은 다수의 미래'에 대비함으로써 미래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발생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안과 발생가능성은 낮을 수 있으나 대비의 필요성이 큰 시나리오 안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가능성을 정책결정자에게 제시하고 선택을 맡김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시나리오 기법이다.² 또한 미래에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 상황과 가장 유사한 시나리오를 채택하게 함으로써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바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시나리오 기법에서 중요한 것은 예비시나리오를 통한 시나리오의 도출과정이다. 이러한 도출과정은 전문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시나리오의 전체 줄거리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전체 줄거리는 어떤 작품이나 예측 속에서 개별적인 사건의 나열을 말한다. 시나리오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변인들의 합리적인 조합과 통합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나리오의 합리적 조합과 객관성의 확보는 변인들을 선정하는 작업에 달려 있는데 변인들이 어떤 성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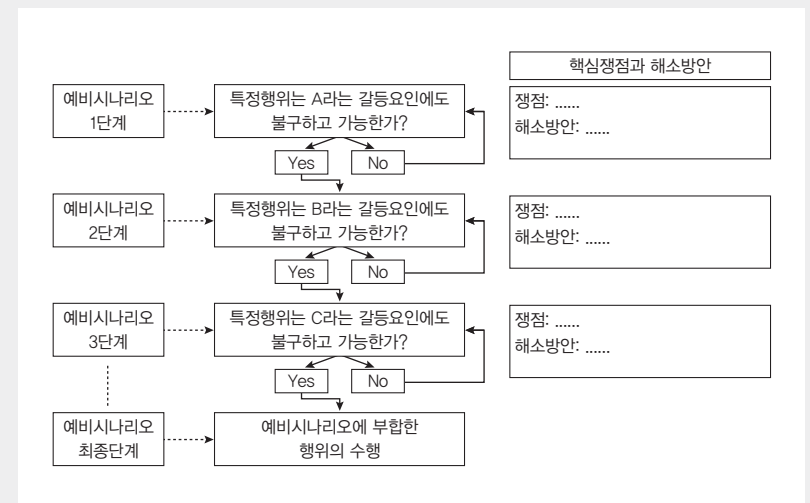
가졌는가에 따라 미래 시나리오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변수의 중요도와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시나리오의 전개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러한 변수의 성격, 중요도, 영향력의 크기를 판단하기 어렵다. 어떤 기술의 영향력이 향후 어떤 파장을 가져오는가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변수에 기인한다. 이러한 변인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델파이를 이용한 검증과 분석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각각의

2 문제는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얻어진 결과들에 대해 정책결정자가 임의로 하나의 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중요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배제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이를 김현곤 등(2008, 56쪽)은 시나리오 기법의 대표적 약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시나리오 기법은 최종적으로 하나의 결과물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대안적 미래상황의 전개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결정자가 하나의 안만을 선택하는 우를 피하고 다양한 미래를 대비하도록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기술 변수들을 서로 대결시켜 상대적인 중요도를 파악하게 되면 편하게 변인들의 관계와 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기법들을 이용하여 직관적인 시나리오를 만들거나 트렌드를 분석하여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으며 교차 분석을 통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한선관, 2011, 20~21쪽). 이러한 과정을 거칠 때 완결성 있는 시나리오 기법에 도달한다.

2. 예비시나리오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분석

본 연구에서는 예비시나리오의 적용을 통한 독도의 해양부유물 설치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양부유물의 입지, 규모 및 기능적 특성에 따른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우선 중심주제와 의사결정 사항을 규정한 뒤에 핵심요인을 결정한다. 그리고 변화를 주도할 변수인 동인을 규명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우선순위의 결정이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거나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을 놓고 '계속 진행의 가부(可否, Yes or No)'로 분류한 뒤,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결정해야 하는 판단요인이 포함



(그림 1) 예비시나리오의 작성방법과 단계적 접근

된 사항은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중지시키는 ‘부(否)’로 간주하여 더 이상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가(可)’의 시나리오로 선택하여 후속적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즉, <그림 1>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중심주제인 ‘독도의 해양부유물 설치’가 가능한지 혹은 불가능한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가 확인될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 작성의 과정을 정치·외교적 검증의 단계에서 시작하여, 지정학적 검증의 단계 그리고 자연·환경적 검증의 단계까지 지속하게 된다. 결국 이를 바탕으로 함축된 의미를 설정하고 주요 지표와 길잡이를 선택하여 시나리오를 평가하고 미래 기술에 대한 토론을 마감하게 된다.

III. 예비시나리오의 전개과정으로써 독도의 특성과 갈등분석

1. 독도를 둘러싼 역사적 사실과 정치·외교적 갈등

정치·외교적 고찰에서는 서론에서 밝혔듯이 독도를 둘러싼 법적 갈등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연구와 외교적 사실을 개괄하면서 영유권 공고화를 위한 기능강화가 끼칠 영향과 효과를 살펴보게 된다. 특히 정치·외교적 갈등의 분석은 예비시나리오의 첫 번째 단계로써 갈등의 문제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후속적 시나리오 작성단계는 중지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은 서기 512년(신라 진흥왕 13년) 이사부의 지략에 따라 우산국이 신라에 병합되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이시영, 2002; 김명용, 2010; 최병학, 2010). 그 이후에도 『세종실록』, 『숙종실록』, 『만기요람』 등 수많은 사료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이 기록되어 있다.³ 그러나 러일전

3 일본 정부는 1667년의 『은주시청합기』라는 사료를 근거로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나, 서기 500년대에 지어진 『삼국사기』에 비하여 1000년 이후의 사료일 뿐만 아니라 당해 문헌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고려의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어 역사적 권원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입증할 뿐이다(최병학, 2010, 218쪽).

쟁의 승리를 기회로 한반도에 침략한 일본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여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며, 1910년 한일합방조약을 체결하여 독도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영토를 일본의 영토로 귀속시켰다. 그 후로 1943년 카이로선언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분리·독립될 것임을 공약하였고 1945년 포츠담선언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포츠담선언의 내용을 무조건 수락하는 항복선언과 당해 연도 9월 2일 ‘항복문서’에 서명함에 따라 독도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영토는 일본의 불법적 병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독도에 대한 한·일 간의 갈등은 이로써 완결되지 못하였다.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1952년 ‘인접해양에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언)’을 발표하는데, 당해 연도 8월 28일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의 선언은 죽도로 알려진 도서에 대해 영역권을 갖는 것처럼 보이나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항의함에 따라 독도의 영역주권에 대한 외교적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김명기, 1999). 이후로 일본이 지속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자는 제의를 해왔으나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는 영토분쟁지가 아니며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고 천명하고 있다.⁴ 이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도 당사국 간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사항은 재판관할권이 성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방의 제소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의 영유권 공고화 방안으로써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방적으로 제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가질 필요도 없다.

4 일본의 경우 남쿠릴 열도(북방 4개 섬)나, 조어제도(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고 있다(출처: 우리당 독도, 2013. 5. 20 검색). 이 사실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 성립이 어느 일방의 국가가 제소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이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극히 배치되는 행태다. 이러한 이중성을 볼 때 우리가 불필요하게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상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확인한 핵심요인은 예비시나리오 작성의 지속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일방적 제소 가능성’이 존재하느냐 하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분석의 결과 일본의 일방적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예비시나리오의 다음 단계를 위한 작성과정은 ‘가(可,

Yes)'로 판정된다. 다만 독도의 이용과 관련된 사항은 정부 부처 사이에 업무의 특성에 따라 형성될 수 있는 독특한 입장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독도의 영유권 강화를 위해 적극적 이용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 외교부의 경우 독도에 대한 이용이나 인위적 개발에 대해서는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⁵ 이는 독도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실질적 실행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의 필요성이 상존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2. 독도의 국경지대로서 지정학적 갈등요인

지정학적 고찰이란 서론에서 제시하였듯이 '국경지역'이라는 관점에서 독도와 주변 해역이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띠고 있나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독도가 국경지역에 해당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영토고권이 미치는 영토의 최외곽지대에 입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도가 국경을 획정하는 과정에서 주변국과 지정학적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연유는 1999년 해양영토의 경계를 획정하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하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면서 부각된 사항에 근거한다. 즉, 독도가 한일이 공동으로 어로활동을 할 수 있는 중간수역에 포함된 것이다. 해양영토의 범위 설정과 관련된 1999년 이전까지 한국의 배타적 어업수역은 독도를 포함하여 독도의 남동방향 70여 km의 지점으로 경계 설정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나 신한일어업협정의 과정에서 중간수역이 설정되었으며, 이 중간수역 내에 독도가 위치함에 따라 한·일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게 된 것이다. 물론 신한일어업협정이 외교부가 주장하듯이 단순히 어업 질서를 관리하기 위한 사항만을 다루는 협정이라고 받아들여든지(출처: 노컷뉴스, 2012),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중간수역이 잠정약정(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3항, 1982)에

5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독도 북서쪽 1km 해상에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을 공포하고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완공을 계획하였다가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2013년 4월 현재 해양과학기지의 건설계획을 재공포하였다(연합뉴스, 2011. 4. 4; <동아일보>, 2013. 4. 16). 이러한 계획의 유보에는 부처 간의 내부적 의견과 입장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 한·중·일 어업협정수역도(1999년 현재) 및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출처: (a) 해양수산부, 2005, 『국가지도집』.
(b) 미국 공군 <항법지도>(1987년판), 2006, 『독도본부』(<http://dokdocenter.org/>)에서 재인용.

해당하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획정이나 도서의 영유권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한정짓기에는 이미 중간수역이 지정되어 배타적 영토고권이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학자들 간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⁶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해상활동은 신한일어업협

6 제성호(2007)는 어업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중간수역이 일종의 '분쟁수역'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중간수역 그 자체는 '분쟁수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분쟁수역화'의 가능성이 상존함을 지적하였다. 즉, 아무런 분쟁이 없는 상태에서 혹은 이해관계국이 아무런 시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도 중간수역이라는 조치를 채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7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은 (그림 2)에 제시된 도면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독도를 기준으로 남쪽 해상(한국방공식별구역의 경계부에 최외곽 경계선이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이 지정된 어업질서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타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다만 신한일어업협정은 어로활동에 국한된 협약으로 간주하는 것도 타당할 수 있는 근거는 1951년 미 태평양 공군이 설정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한국방공식별구역(Korea Air Defence Information Zone)이 명확히 독도와 그 주변 해양에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⁷

여기서 방공식별구역(ADIZ)이란 연안국이 영공에 접촉한 일정범위의 공해 상공에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한·일 간 방공식별구역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독도와 그 주변 해양은 우리나라의 영토고권이 미치는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도와 주변 해역에 설정된 다양한 협약은 현재의 시점에서 국경지대가 내포하고 있는 지정학적 장소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장소성으로 말미암아 정부 부처 간의 독도를 대하는 입장에도 미묘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독도를 중심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이 엄존하고 있는 이상 영해의 범위 내에서는 어떠한 주권적 행위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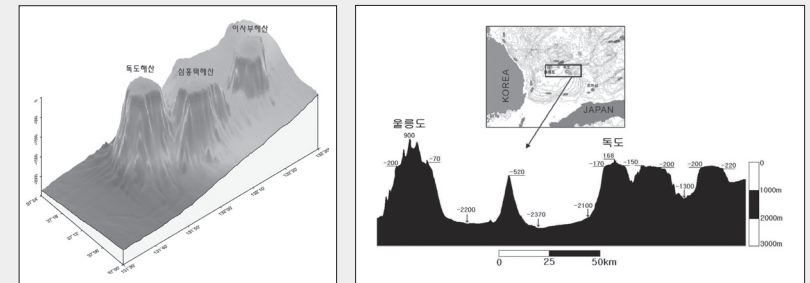
이상의 지정학적 사실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핵심요인은 예비시나리오 작성의 지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독도의 주변 해역에서 인위적 개발행위를 할 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에로의 일방적 제소 가능성’이 존재하느냐 하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실제적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백진현 재판관의 판단은 국제해양법재판소로의 제소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상대국의 동의가 없을 경우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3년 7월 8일 검색). 무엇보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때 연안국의 주권이 영토를 포함하여 내수 밖의 영해라고 하는 인접해역 그리고 군도국가의 경우에는 군도수역 밖의 영해라고 하는 인접해역까지 미치고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Part 2, Section 1, Article 2). 즉, UN해양법 협약 제245조(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따라 때 연안국은 영해 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규제, 허가 및 실시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주권의 절대적 인정에 따라 법리적으로는 일본의 일방적 제소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주권적 행위가 독도와 독도의 주변 영해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어떠한 제재의 사항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시나리오의 다음 단계를 위한 작성과정은 ‘가(可, Yes)’로 판정된다. 다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행위가 어떠한 것이냐는 주변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될 수 있다.

3. 독도의 자연·환경적 갈등요인

자연·환경적 고찰이란 실질적으로 개발이나 이용과 같은 특정의 행위가 발생할 때 어떠한 사회적 과급현상이 일어날 지를 예측하여 타당성 여부와 한계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도의 자연·환경적 특성은 해저 2,000m 지점부터 융기한 두 개(동도와 서도)의 화산섬으로 해저면 100~200m 지점에는 직경 9.5km의 원탁형 화산체 위에 해발 100m 가량의 침두부가 돌출한 섬(동도 해발 98.6m, 서도 해발 168.5m)이다. 해저지형을 살펴볼 때 독도 주변에는 해수면 위로 돌출하지 않은 해산이 해저면 1,000m 지점에 융기해 있다. 독도의 주변 해역에는 비슷한 크기의 3개의 해산으로 독도 1해산, 독도 2해산, 독도 3해산의 대륙붕 해저고원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해산은 독도가 위치한 독도 1해산을 제외하고 수중 100~200m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림 3>은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림 3>에서는 왼쪽부터 차례대로 울릉도, 안용북해산, 독도, 심홍택해산, 이사부해산을 나타내고 있다.

독도는 용암분출에 따른 화산암으로 이뤄졌으며, 화산암체의 증거인 수평절리와 수직절리가 발달하였다. 이에 따라 토양층이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두껍지 않아 식생 성장이 불리하며, 대부분 1m에 미치지 못하는 초본 및 목본들이 고밀도로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초본류의 초지는



<그림 3> 3D해저지형을 이용한 독도 주변 해역의 지형학적 특성

출처: 강무희 외, 2002; 한국해양연구원, 2000, 67·106쪽에서 재인용.

천이가 일어나지 않는 독도만의 독특성을 나타낸다. 해안의 경우는 파랑의 침식에 따라 파식대가 매우 평탄하면서도 넓게 분포하고 있다. 식물상과 달리 조류상은 바다제비·알락도요·각도요·괭이갈매기·큰유리새·바다직박구리·긴발톱할미새 등 8종 76개의 개체를 관찰할 수 있으며, 이 중 바다제비와 괭이갈매기 이외의 새는 철새에 해당한다. 즉 독도는 철새들이 쉬어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섬에 해당하며, 바다제비·습새·괭이갈매기 등의 번식지로서 이들 새는 천연기념물 제336호의 보호종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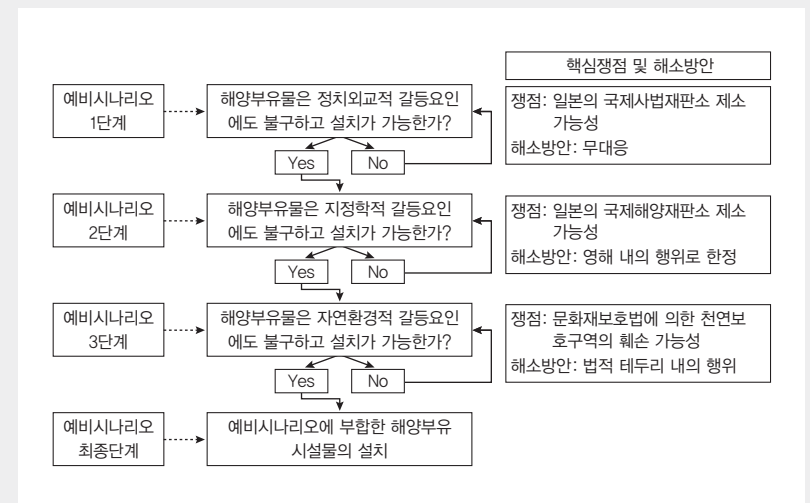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서 1982년 11월 16일 독도를 천연기념물 제336호 해조류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며, 1999년 12월 10일 '천연보호구역'으로 문화재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사항은 독도에 대한 시설물의 설치나 이용을 위한 예비시나리오 작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독도와 독도의 주변 해역에서 인위적 개발과 이용행위를 할 경우 국내법에 따라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는 보전과 보호의 가치가 높은 생태계 교란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독도와 주변 해역에 대해서 항구적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첫째는 독도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게 되는 것과 관련하여 문화재청과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둘째는 개발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서식처로 삼고 있는 보호종 조류의 생존에 교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 및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돌발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의 두 가지 갈등요인을 피해갈 수 있는 차선의 대안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항구적 시설이 아닌 탈부착식의 인공부유물을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되겠다. 이는 필요시에 시설을 활용하고 불필요한 사항에는 이를 쉽게 제거하여 독도의 원형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둘째, 시설의 설치는 여타의 장소에서 조립 등의 작업을 수행한 후 이를 독도로 가져오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또한 조류의 번식기 등 생태계에 교란이 발생하지 않는 시기적 혹은 공간적 범위 내에서 단기간의 설치작업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작업이 가능한 법적 근거는 2005년 11월 19일에 시행·발표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태계의 보호, 해양수산자원의 관리와 보호, 해양광물자원 연구와 개발, 독도 내 시설 관리계획 등과 같은 행위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4. 예비시나리오에 따른 갈등요인의 대응

앞서 3장 1~3절까지 살펴본 갈등요인과 예비시나리오에 기초한 대응방안은 독도와 영해에 해당하는 주변 해역에서 이용과 개발의 합리성과 법적 정당성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를 하나의 프로세스에 기초해 작성해보면, 해당 검증과정은 <그림 4>에 묘사한 절차에 걸쳐 이루어지게 된다.

<그림 4>에 나타난 3단계의 예비시나리오의 절차를 거쳐 검증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독도와 독도의 주변 영해 내에서 제한적이거나 이용과 개발행위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3장 1절에서 독도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입증되었다는 사실에 따라 독도에서의



<그림 4> 독도의 해양부유물 설치에 대한 예비시나리오의 작성과 검증과정

이용과 개발행위는 정치·외교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며, 이는 이용과 개발에 제한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3장 2절에서는 독도 주변 해양 중 영해 내에서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도 이를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두 개의 절에서 파악된 예비시나리오의 결과는 해양형 인공부유물과 같은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3장 3절에서는 국내의 법적 환경을 살펴보는 가운데 예비시나리오의 내용적 방향을 설정하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즉, 문화재보호법에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을지라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에 발생하고 있는 잠재적 훼손의 원인을 개선한다는 목적 아래 적절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제한적'이라는 형태의 이용과 개발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독도의 이용과 개발 등에 대한 행위가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정립하고 있다면 그에 준한 적법행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IV. 독도의 해양부유물 설치와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구상

1. 해양부유시설물의 정의와 설치방안

본 절에서는 먼저 인공구조물에 해당하는 해양부유물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어떤 형태의 해양부유물이 현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해양부유물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부유물에 대한 정의는 하천이나 해양 등, 수면 위에 떠 있는 자연적 혹은 인공적 물체와 시설로 항구적으로 수면의 지하에 매립된 채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독도는 해양에 둘러싸여 있는 섬이기 때문에 이곳에 설치될 인공구조물은 '해양부유물'이라 칭할 수 있다. 즉 부유시설물

은 매립시설물에 대비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독도에는 접안시설, 유인대, 해양경찰 숙소와 막사, 헬기장 등 항구적 고정시설물에 해당하는 시설들이 독도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설치되어 있으며,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숙소, 진입로, 간이기상측정소, 통신시설과 통신탑 등도 항구적 고정 시설물로서 민간의 접근과 답사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도의 이용과 개발행위는 국내법이 허용하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추가적인 고정시설물의 설치도 가능하다. 다만 항구적 고정시설물이 건설과정에서든 이용과정에서든 해당 대상지의 교란과 훼손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접근방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는 해양부유물의 설치를 통한 독도의 이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해양부유시설물의 종류와 특성

해양부유시설물 혹은 하천부유시설물로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대규모에 해당하는 부유시설물의 사례로는 한강에 설치되어 있는 새빛둥둥섬을 들 수 있으며, 소규모로는 공병대가 군에서 설치하는 부교나 생태학습장의 하천 혹은 연못에 설치되어 있는 데크형 관찰로부교, 해수욕장 등 물놀이시설의 경계를 표시하는 안전 울타리로서의 부표, 바다의 인공양식장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외에 넓게는 정부가 독도의 해양에 계획 중인 종합해양과학 기지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유시설물은 항구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시설물이 아닌 수면 위에 떠 있는 시설이라 홍수 등 수량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부유시설물이 조류 혹은 해류 등으로 떠내려가거나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정시키는 추가시설이 필요한데, 이때는 육지에 고착되어 있는 접안시설(고정형)을 활용하여 연결하거나 닻 등을 이용하여 고정(부유형)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독도의 경우 해양부유시설물을 설치할 때 이미 고정형 접안시설이 확보되어 있어 육지공간의 인위적 혹은



새빛등동섬

공병대의 부교

생태관찰로 부교

경계·울타리용 부표

인공 양식장

종합해양과학기지

<그림 5> 해양과 하천의 인공부유시설물

추가적 훼손이 없이도 안정적 설치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부유시설물이 가진 특징은 설치를 위해 해당 입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립, 가공하여 완성된 형태로 운반하여 올 수 있으며, 해체과정도 상대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건설과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설물의 형태를 필요와 용도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구축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이다.

3. 해양부유시설물의 평화적 이용방안

해양부유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이상 과연 이러한 시설물을 어떠한 용도와 목적으로 설치·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바람직한 용도는 독도가 지닌 입지적·자연환경적 특성을 근거로 삼을 때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해양부유시설물의 규모에 따라라도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입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독도가 대한민국의 국경지역에 해당하면서 일본에 의한 영토분쟁지역화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영토에 대한 공고화를 세계에 알

리며, 일본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적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평화를 상징하는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소규모의 부유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다. 입도가 가능한 시기에 단기간의 행사를 개최하여 방문객들에게 이를 알리고 행사의 종료와 더불어 시설을 해체한 후 반복적으로 이러한 행사를 지속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해양부유물의 설치에 접안시설과 동도의 진입로 주변을 연결하는 설치방식을 활용하여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중기적으로는 이를 확대하여 독도의 동도를 둘러 관람할 수 있는 부유물 형태의 관람과 관찰형 데크 혹은 부교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간만이 아닌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데크와 부교를 독도의 서도 해안으로까지 확대·연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독도의 자연환경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점진적 확대를 통해 자연생태를 교란하지 않으면서 탐방과 탐사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탐방 데크나 부교만이 아닌 종합해양과학기지과 같은 시설의 설치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라는 국제법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국내법에 근거하여 법적 준수사항을 지키면서 법률이 정한 행위를 영해 내에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 영토의 공고화를 세계 속에 천명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국문 초록

독도의 한·일 간 갈등은 근래에 들어 점차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독도 문제를 놓고 대한민국 정부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는 정치·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되 대내적으로는 영유권 공고화를 위한 기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독도에 대한 영유권 공고화는 국토고권을 확고히 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부유물의 설치와 활용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고자 한다. 해양부유물의 설치를 위해서는 전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외교적 입장, 지정학적 입장과 생태·환경적 입장을 고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예비시나리오라는 방법론을 활용하여 접근하게 되는데, 첫 단계는 독도를 둘러싼 법적 갈등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연구와 외교적 사실을 개괄하면서 독도의 기능강화가 끼칠 영향과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둘째 단계에서는 지정학적 고찰을 통해 ‘국경지역’으로서 독도와 주변 해역이 어떠한 가치를 띠고 있나 살펴보고, 셋째로 자연·환경적 고찰을 통해 실질적으로 개발이나 이용과 같은 특정의 행위가 발생할 때 어떠한 사회적 파급현상이 일어날지를 예측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독도 자체에 대한 영구적 시설물의 설치로 인위적 훼손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방하면서 독도에 대한 국민의 평화적 이용증진과 홍보효과가 큰 지배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독도 주변의 해양을 기반으로 임시시설물에 해당하는 부유물 설치와 이용방안이 핵심적 고려사항으로 제기될 것이다.

〈주제어〉

독도, 예비시나리오 분석, 해양부유물, 국토고권, 평화적 이용

ABSTRACT

A pre-scenario analysis on the installation of floating maritime facilities at or around Dokdo

Hwang, Jeewook

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Engineer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diplomatic dis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regarding the island Dokdo has recently been assuming a graver complex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seeking solutions to the issue externally by devoting efforts to keep up with political and diplomatic dialogues and internally by strengthening the role the island itself can play in consolidating Korea's dominium. To Korea, solidifying sovereignty over Dokdo is equivalent to securing the highest level of protection for its territorial supremacy. In this context, the present study takes a technical approach on how to install and use marine floating particles around Dokdo. Since the installation and use of such particles is likely to be premised upon political, diplomatic, geopolitical,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perspectives, those perspectives are foremost considered. In other words, preliminary scenarios have been methodologically used for this study's analysis. The first step of this study thus reviews previous studies on juridical conflicts surrounding Dokdo and how historical and diplomatic issues have proceeded so far in order to anticipate what sort of effect may be brought by strengthening Dokdo's functional role. The study's second step considers geopolitical factors by examining the value of Dokdo and its surrounding waters as a border area. The third step takes natural and ecological aspects into consideration by predicting and estimating the social ripple effect that may occur from developing and using the island. All these steps are ultimately a process of searching for a solution that promotes peaceful use of the island and contributes to consolidating Korea's dominium while preventing the possibility of damage that may occur by installing permanent floating particles at Dokdo. The study's conclusion covers issues to be primarily considered when temporarily installing and using marine floating particles around Dokdo that could open new prospects for the peaceful use of Dokdo.

Keywords

Dokdo, preliminary scenario analysis, floating maritime facilities, territorial sovereignty, peaceful use

참고문헌

- 해양수산부, 2005, 『국가지도집』.
- 강무희 외, 2002, 「동해 독도 주변 해산의 지구물리학적 특성」, 『한국해양학회지』 제7권 제4호, 한국해양학회.
- 구선희, 2007, 「해방 후 연합국의 독도 영토 처리에 관한 한·일 독도연구 쟁점과 향후 전망」, 『한국사학보』 제28호, 고려사학회.
- 김갑식, 2012, 「시나리오 기법에 기초한 북한의 변화와 한국의 전략」, 『현대북한연구』 제15권 제1호, 북한대학원대학교.
- 김명기, 1999,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주장과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15권.
- 김명기, 2006,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와 Critical Date」, 『법조』 제602권, 법조협회.
- 김명용, 2010, 「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를 위한 관련법제의 정비방안」, 『공법학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 김별렬, 1996, 「일본 고지도에도 독도는 한국땅이라 명시」, 『한국논단』 6월호.
- 김재형, 2007,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상의 독도영유권」,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 제3호, 대한국제법학회.
- 박병섭, 2012, 「안용복사건 이후의 독도 영유권 문제」, 『독도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양태진, 1996, 「문헌적 측면에서 본 독도관계 자료분석」, 『독도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기용, 2011, 「독도인식의 영사적 고찰과 일본 영유권 주장의 오류: 일제의 '독도영토편입'과 전후 일본의 영유권 주장」, 『평화학연구』 제12권 3호, 세계평화통일학회.
- 이상면, 2008, 「독도와 그 주변수역에 대한 한국의 주권행사」,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시영, 2002,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제성호, 2007, 「'동해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과 독도 영유권의 훼손」, 『중앙법학』 제9권 제3호, 중앙법학회.
- 최병학, 2010, 「해양영토분쟁과 독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지방정부학회.
- 한선관, 2011, 「시나리오 기법을 적용한 미래 기술의 상상에 대한 수업 전략 연구」, 『교육논총』 제31권 제1호, 경인교육대학교.
- 황지욱, 2000, 「시나리오 기법에 기초한 한반도 통일의 예측과 남북한 접경 지역의 균형적 및 환경친화적 개발구상」, 『국토계획』 제35권 제6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황지욱, 2004, 「텔파이 기법을 활용한 남북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 전망과 접경지역의 기능변화」, 『국토계획』 제39권 제1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생태계도 지켜주세요' 독도사랑 바다에 새긴다”, 『동아일보』, 2013. 4. 26, <http://news.donga.com/3/all/20130425/54711158/1> 2013.04.29 인터넷 검색.
- 국립해양조사원, 2013, 「우리땅 독도」, <http://dokdo.nori.go.kr/> 2013.05.11. 검색.
- 노컷뉴스, 2012. 9. 7, 「외교부, '한일어업협정 파기 불가...독도 영유권·EEZ 경계획정과 무관」,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50429>, 2013.5.11 인터넷 검색.
- 독도본부, 2006. 4. 27, 「'독도는 한국 방공 식별 구역' 미 공군지도 공개」, http://dokdocenter.org/dokdo_news/index.cgi?action=detail&number=3497&thread=16r05, 2013.5.11 인터넷 검색.
- 연합뉴스, 2011. 4. 4, 「정부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착공키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993519> 2013.04.29 인터넷 검색.
- 연합뉴스, 2012. 9. 13, 「독도, 국제해양재판소 회부 가능성 유념해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9/13/0200000000AKR20120913206600061.HTML> 2013.07.08 인터넷 검색.
- 우리땅 독도, 독도영유권 논쟁, <http://dokdo.khoa.go.kr/> 국립해양조사원, <http://dokdo.khoa.go.kr/basic/content/content.asp?sgrp=N02&siteCmsCd=CM0005&topCmsCd=CM2127&cmsCd=CM2132&pnum=1&num=0> 2013.5.20 인터넷 검색.
- Hwang, Jeewook, 2000, *Zur Regionalentwicklung des Innerkoreanischen Grenzgebiets auf der Grundlage eines Wiedervereinigungs-Szenarios*, Univ.-Dortmund, Dissertation.
- Schoemaker, Paul J. H., 1995, *Scenario Planning: A Tool for Strategic Thinking*, Sloan Management Review.
- Schwartz, Peter, 1991, *The Art of the Long View: Planning for the Future in an Uncertain World*, New York: Currency Doubleday.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유엔해양법협약).

남북한 지리교육의 공유면과 민족적 표상으로서의 독도

이상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유수진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

1. 머리말

남북한은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을 갖고 있음에도, 서로 다른 정치체제로 인해 대립과 긴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공동의 사안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남북한 양 체제가 한목소리를 내는 문제가 있으니, 바로 독도 문제다. 특히 북한은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회의’ 국제학술회의에서 “일본이 지난날의 죄악을 사죄하기는커녕, 조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땅으로 왜곡하는 망동을 부리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민족 주권 침해이자 침략 범죄”라고 성토했면서 독도 영유권을 강경하게 주장하기도 하였다(허진석, 2011. 5. 14). 과연 이러한 현상은 무엇에서 기인하는가? 한민족에게 독도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것일까?

독도 영유권을 지키려는 노력은 독도가 동해상에 있는 우리의 영토로서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독도에 대한 민족적 애착과 관심의 본질은 어쩌면 분단 이전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당했던 압제와 고통에서

기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의 행위로 인하여 남북한 모두 우리 민족의 기억 속에 묻혀 있던 과거의 아픈 상처까지 되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독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다.

한민족으로서 북한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독도가 현재 남한의 관리하에 있다는 이유로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문제에 대해 침묵하거나 무관심하지 않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독도 문제에서는 때로는 남한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독도와 관련하여 북한이 어떠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집요하고도 끈질긴 도발을 본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학술적·외교적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한국의 관점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면 이는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일본과의 또 다른 쟁점 상황에서 기존에 한국이 제시해왔던 논리를 보완해주거나 지지해주는 요소로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일본은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독도 관련 여론조사¹를 실시하는 등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

시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의도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독도의 역사적·지리적 가치 및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지키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한민족인 남북한이 교육적 측면에서 공통된 입장이나 인식을 나타낸다면 향후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학교교육에 반영된 독도 관련 한민족의 정서를 분석하여 양측의 공통분모를 찾는 노력은 향후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로

1 일본 내각부는 2012년 8월 1일 자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94.5%, 이들 응답자 중에서 ‘한국이 경비대원을 상주시키는 등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다’에 응답한 사람이 63%, ‘다케시마가 시마네현에 속한 다’고 응답한 사람이 62%,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응답한 사람이 61%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일본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이러한 방식의 여론 조사는 독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는 자국민들에게 독도를 알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표면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독도가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독도를 민족적 차원에서 하나의 아이콘 또는 상징체(iconography)로써 상징해보고자 한다. 아이코노그래피²는 국기·영웅·신념·종교 등과 같이 국민과 민족의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 상징체제로, 각국에서는 그들의 국가와 민족을 상징하는 인물·국기·국가를 그들만의 고유한 영토 및 전통과 함께 교육함으로써 국민적 통합을 시도한다.³ 이러한 관점에서 독도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영토적 상징체로서 여겨진다면, 한국과 북한의 지리교육에서 독도는 단순한 지형적인 특징이 서술되는 것을 넘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상징체로서 공통적으로 기술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북한의 지리교육의 분석을 통해 북한의 영토교육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지리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한의 지리교육의 측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것이다. 이어서 영토와 관련하여 남북한의 공유면을 찾고, 세부적으로는 남북한의 학교교육에서 독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정치체제와 교육이념의 상이함을 넘어 민족적 차원에서 남북한 전체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의미와 상징성을 도출하고자 한다.⁴

2 아이코노그래피의 사례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후지산은 신령스러운 이미지로 여기며, 외국에서도 후지산을 일본의 상징으로 생각한다. 프랑스의 경우, 보불전쟁(1870)에서 패한 후, 독일에 빼앗긴 알자스-로렌 지방이 프랑스인들의 국가주의와 영토의식을 자극하는 최고의 아이콘으로 작용하였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그들의 국토를 정육각형에 비유하면서 하모니를 강조하고 있다(Gerard Mottet et al., 1997, *Images et construction de l'espace*, Institut National de Recherche Pédagogique, pp. 148~149; I. Lefort, 1992, *La lettre et l'esprit géographie scolaire et géographie savante en France*, Editions du CNRS).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백두산을 민족의 영산으로 여겼으나 해방 후 북한에서는 백두산을 혁명의 기원지로 그 이미지를 바꾸었으며, 한국에서는 여전히 한민족의 특별한 상징으로 여기고 있으나 최근에는 독도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민족적 상징체와 아이콘에 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Brian S. Osborne, 1989, 'The iconography of nationhood in Canadian art', in *The iconography of landsca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62~178).

3 남상준, 1993, 「북한 지리교육의 정향, 『사회과교육』 제26호, 155~156쪽.

4 북한 지리교과서 분석과 관련된 연구는 『사회과교육』 제26호에 게재된 이양우·남상준·한봉희·손용택 등의 연구(1993),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논문집에 게재된 황재기의 연구(1993), 남상준·손용택·류재명 등의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1997), 김재완(2003), 손용택(2004)의 남북한 지리교과서 비교연구, 이진(2005)의 북한 지리교과서 분석연구가 있다. 기존의 연구는 남북한 지리교과서에 대한 내용분석 위주이며, 독도를 주된 테마로 수행된 것은 없었다. 다만, 남상준(1993)은 북한의 지리교과서 내용을 주제별로 분석하면서 독도를 영토 관련 내용으로 다루었다.

II. 북한의 교육이념과 지리교육과정

본 장에서는 북한의 지리교과서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을 통하여 북한 정권이 추구하는 지리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와 주된 학습내용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1. 북한의 지리교육과정의 특징

해방 이후, 북한은 러시아의 교육제도와 국가 교육과정의 주된 틀을 거의 그대로 도입했으며, 러시아의 모델을 바탕으로 그들의 교육제도와 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러시아와 같이 중등학교 5년 동안 지리를 배운다.

북한 지리교과서 서두에 기재된 머리말을 살펴보면, 북한이 추구하고자 하는 지리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북한 지리교과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비록 저자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교과서마다 머리말은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며, 전적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를 위하여 학교 교과가 존재하는 것처럼 구성되었다. 교과서의 머리말에 나타난 이데올로기 교육과 관련된 주된 표현은 <표 1>과 같다.⁵

각 학년마다 머리말의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 형식으로 지리를 배워야 하는 당위성이 제시된다. 머리말의 말미는 지리 학습을 통하여 장군의 명을 받들고 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으로 정리되는데, 이는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김재완, 200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지리교육은 국토의 자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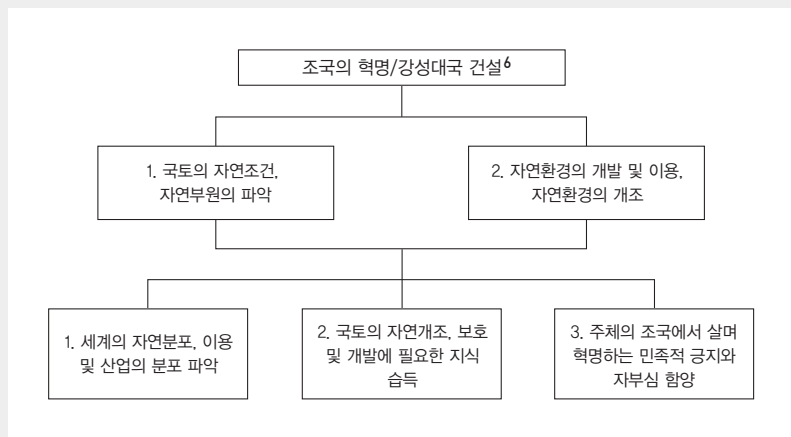
의 특징을 파악하고, 개발·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 습득을 통해 조국의 혁명과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그림 1)).

5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활용된 교과서 정보는 다음과 같다. 박홍준, 2005, 『지리1』, 교육도서출판사; 박홍준, 2005, 『지리2』, 교육도서출판사; 명응범, 2005, 『지리3』, 교육도서출판사; 김도성·차용걸, 2005, 『지리4』, 교육도서출판사; 문영빈·배인영, 2005, 『지리5』, 교육도서출판사.

〈표 1〉 지리교과서에 진술된 머리말 요지

학년	주요 내용
1학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지리를 모르고서는 풍부하고 아름다운 우리나라에 대하여 잘 알 수 없습니다." [...] 우리는 우리나라를 가장 살기 좋은 인민의 낙원으로 건설 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위업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리학습을 잘 해야 한다.
2학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을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자연환경에 대한 과학적 자료에 따라 리용할 수 있는 온갖 조건들을 인민경제 건설에 리용하며 자연부원 개발사업을 널리 하여야만 우리의 인민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지리학습을 통하여 경치 아름답고 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에서 사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빛내기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3학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다른 나라 경제를 학습하는데서 그 나라의 자연부원, 경제구조, 경제발전 전망을 자료적으로 깊이 파고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우리들은 지리학습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 따라 주체의 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혁명과 건설에 실지 써먹을 수 있는 산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4학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나라는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금수강산입니다." [...] 우리는 지리 학습을 잘하여 우리나라 각 지방들에 대한 자연 및 사회경제적 조건들과 그를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방도를 올바르게 찾아야 한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세워주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께서 빛내여주시는 사회주의 조국을 더욱 부강하고 살기 좋은 낙원으로 꾸리는데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 미래의 역군으로 자신들을 튼튼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
5학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지리학은 조선혁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학의 하나입니다." [...] 우리는 지리 학습을 깊이 있게 잘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강성대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출처: 박홍준, 2005, 『지리1』, 교육도서출판사; 박홍준, 2005, 『지리2』, 교육도서출판사; 명용범, 2005, 『지리3』, 교육도서출판사; 김도성, 2005, 『지리4』, 교육도서출판사; 문영빈·배인영, 2005, 『지리5』, 교육도서출판사.



〈그림 1〉 북한 지리교육의 궁극적 목표

출처: 남상준, 1999, 『지리교육의 탐구』, 교육과학사, 363쪽의 자료에서 재구성.

2. 북한의 지리교육과정 내용분석

본 절에서는 북한 지리교육의 학습내용 구성관점과 구성상의 특징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학년별 학습내용의 구성관점과 주된 학습내용은 〈표 2〉와 같다. 학습내용의 구성관점과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학제 및

6 남상준은 1991년도에 개발된 북한 지리 교과서를 분석하였으며, 북한 지리교육의 목적을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건설'로 보았으나, 필자는 '조국의 혁명과 강성대국 건설'로 재구성하였다.

7 한국의 경우, 1950년대 중반까지는 학교 지리를 자연지리, 인문지리, 경제지리의 세 영역으로 가르쳤지만, 195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과학교육에 지구과학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지리 및 지구과학 관련 내용은 학교지리 내용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국가교육제도가 러시아의 영향을 주로 받은 까닭에 북한의 학교지리를 관통하는 것은 러시아식 구성관점과 아주 유사하다. 즉, 학습내용이 자연지리(지구과학⁷) 및 환경지리(생태학)적 관점에 가까운 느낌이 든다. 학습내용의 구성관점은 계통지리 및 지역지리적 관점에서 고르게 구성하였으며, 지역지리 내용을 계통지리적 관점에서 구성하기도 하였다. 학습내용의 스케일은 조선지리, 세계지리 그리고 지구적 관점에서 고르게 구

〈표 2〉 북한 지리교과서의 내용 구성관점과 학습내용

학년	구성관점	학습내용
1학년	계통지리적 내용구성 (지구과학 및 자연지리)	제1장, 우리들이 사는 지구 제3장, 룡지우의 물 제5장, 지구우의 자연대
2학년	지역지리를 계통적으로 접근 (조선지리)	제1장, 우리나라의 국토 제3장, 우리나라의 기후 제5장, 우리나라의 바다
3학년	지역지리적 내용구성 (세계지리)	제1장, 아시아주 제3장, 아프리카주 제5장, 남아메리카
4학년	지역지리적 내용구성 (지역지리 및 경제지리)	제1편, 우리나라 지방 제1장, 서북지방 제3장, 중부지방 제5장, 서남지방 제2편, 우리나라 경제배치 제1장, 공업배치 제3장, 운수배치
5학년	계통지리적 내용구성 (지구과학 및 환경지리)	제2장, 날씨와 기후 제4장, 룡지결면의 모양과 변화 제6장, 지도 제2장, 우리나라의 지형 제4장, 우리나라의 강과 호수, 지하수 제6장, 우리나라의 식물과 동물 제2장, 유럽주 제4장, 북아메리카 제6장, 오세아니아와 랑크지방 제2장, 동북지방 제4장, 동남지방 제2장, 농업배치 제4장, 대외무역 제2장, 지구의 형성과 진화 제3장, 지구결면의 변화 제5장, 바다와 바닷물의 운동 제7장, 지구상의 자원과 보호 제2장, 지구의 구조와 운동 제4장, 대기과 날씨 제6장, 환경보호 제8장, 지도

출처: 박홍준, 2005, 앞의 책; 명용범, 2005, 앞의 책; 김도성, 2005, 앞의 책; 문영빈·배인영, 2005, 앞의 책.

성하였다.

둘째, 조선지리를 다룰 때, 한반도의 분단상황을 지도상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의 지리교과서에서는 휴전선을 경계로 남쪽지역을 먼저 다루는 데 반하여, 북한의 교과서에서는 중부지방에 황해도·경기도·강원도를 다루면서, 휴전선과 같은 군사 경계선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조선지리를 다룬 중학교 4학년 교과서에서 지역구분 방식은 아라비아 숫자 3자를 쓰는 순서와 같다. 예컨대, 서북지방(수도 평양이 포함된 지역, 평안도 지역) → 동북지방(함경도 지역) → 중부지방(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 동남지방(경상도) → 서남지방(충청도, 전라도)의 순서다. 중학교 4학년 교과서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동남지방의 맨 마지막 주제로 구성된 것이다. 독도에 관한 분석은 네 번째 장에서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셋째, 학습 내용 곳곳에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대한 이상화와 연관지어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아시아 대륙에 관한 내용 중 바이칼 호수에 대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발견할 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 90년(2001) 8월 러시아 연방을 공식 친선 방문하시던 날에 바이칼 호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자신께서 바이칼 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은 학교시절에 세계지리를 공부하면서 그에 대해 흥미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시었다.⁸

마지막으로, 편향된 세계지리 서술이 나타난다. 북한의 지리교과서에 구성되어 있는 세계지리 내용구성 방식과 그 특징은 참으로 흥미로운데, 북한과 이념적으로 친밀한 관계인 나라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그렇지 않은 서방국가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편이다. 예컨대, 유럽대륙에 대한 내용은 동유럽부터 시작되고, 이어서 북유럽, 서유럽과 남유럽의 순이다. 또한 동유럽 국가에 대한 학습내용의 첫 번째로 러시아가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구성 배경으로는 과거에 같은 공산권 국가들이 대거 동유럽에 몰려 있었으며, 공산권의 종주국에 해당되었던

⁸ 명응범, 2005, 『지리3』, 8쪽.

러시아가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유럽지역에 대한 내용구성에서 특별한 가치는 개입되지 않았으며, 비교적 객관적인 관점에서 짧게 구성되었다. 그렇지만 학습내용의 관점은 20~30년 이전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테면, 프랑스의 내용은 대부분 농업과 공업시대 위주로 구성되었다.

한편, 미국이 포함되어 있는 북아메리카에 관해서는 미국이나 캐나다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고, 단지 자연지리적 관점에서 학습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은 오늘날 미국을 적국으로 여기는 것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교과서에서는 미국에 관하여 거의 다루지 않고 있으며, 미국과 관련되는 부정적인 내용 일부만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구성 방식은 미국에 대한 부정적이고 나쁜 감정을 심어주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세기 후, 유럽식민주의자들은 이곳에 침입하여 미국, 캐나다 지역에 살고 있던 인디안들을 참혹하게 학살하였다. [...] 미국은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이 가장 혹심한 나라이다. [...] 흑인들은 제일 처음 남부에서 살면서 농작물 재배원에서 노예노동을 강요당하였다. 후에, 북부와 서부의 도시로 많이 이주하여 갔으나 대부분 가장 천한 일을 하면서 제일 낮은 임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실업자의 대부분이 흑인이다. 그 밖에 거치른 <지정보호구>에 갇혀 살고 있는 인디안들은 두말할 것 없고, 다른 유색인종들도 심한 인종차별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⁹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지리교과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5년 동안 배우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내용은 지역지리적 방식과 계통지리적 방식, 그리고 두 가지 방식이 결합된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습내용은 지구적 차원부터 세계적 스케일, 그리고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 그렇지만 학습내용은 김일성·김정일의 이상화를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국가들에

⁹ 명응범, 2005, 앞의 책, 97쪽.

관하여 객관적인 관점에서 다루지 않고, 심각하게 왜곡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컨대 지리학적인 탐구논리 및 학습이론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 아닌 이데올로기적인 방식에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

III. 남북한 지리교육에 반영된 양 체제의 이미지

이 절에서는 남북한 지리교과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각각의 교과서에 상대방 체제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의 지리교과서에 포함된 북한에 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북한의 지리교과서에 포함된 한국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 지리교과서에 반영된 북한 관련 내용

한국의 지리교과서 중에서 북한 관련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중학교 3학년 『사회』와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다. 여기서는 각각의 교과서에 포함된 북한 관련 학습내용은 무엇이며, 그러한 내용이 어떠한 관점으로 기술되었는가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에 포함된 북한에 관한 내용은 <표 3>과 같이 크게 북한의 개방지역, 백두산 및 비무장지대, 그리고 국토통일과 민족의 발전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동구권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이후, 경제사정이 어려움에 처하다보니, 1990년

10 1. 북한의 개방지역 (1. 북한 개방화의 배경, 2. 개방 지역의 지리적 특징); 2. 백두산과 비무장 지대 (1. 민족 통합의 상징, 백두산, 2. 국토분단의 상징, 비무장 지대); 3. 국토 통일과 민족의 발전 (1. 우리나라 위치의 중요성과 통일의 필요성, 2. 국토 통일과 우리 국토의 미래).

11 1. 지역의 개념과 지역조사 (1. 지역의 개념과 지역구분, 2. 지리정보와 지역조사); 2. 북한의 지리적 환경 (1. 북한의 자연환경과 주민 생활, 2.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 3. 생산성이 낮은 농업, 4. 군수 산업 위주의 공업); 3. 북한의 개방과 통일에 대한 대비 (1. 북한의 개방 지역, 2. 남북 교류와 통일의 대비).

12 한국의 지리교과서에 표현된 북한 관련 이미지 (조화룡 외, 2009, 『고등학교 한국지리』, 금성출판사).

13 한국의 지리교과서에 표현된 북한의 이미지 (기근도 외, 2013,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학사, 193·194·202·204쪽).

<표 4>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에 포함된 북한 관련 내용 (2009 개정)

VI.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 (1)	
1. 지역의 개념과 지역조사, 2. 북한의 지리적 환경, 3. 북한의 개방과 통일에 대한 대비 ¹¹	

출처: 기근도 외, 2013,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학사.

대부터 적극적으로 경제개방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에는 신의주 특별행정구, 금강산 관광특구, 그리고 개성공단 등지로 개방 지역을 확대하였다는 내용의 북한의 경제개방 정책이 한국의 지리교과서에는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백두산을 민족 통합의 상징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비무장 지대를 국토분단의 상징으로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는 분단된 국토를 통일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에서도 중학교에서 다룬 것과 대동소이하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테면, 전체적인 맥락은 북한의 자연지리, 북한의 인문지리, 북한의 개방지역, 남북교류, 그리고 통일을 위한 대비에 관하여 구성하고 있다. 그러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한국 지리교과서에 포함된 북한 관련 내용은 이념이 배제된 비교적 객관적인 측면에서 기술되었다.

한국의 지리교과서에는 북한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민족의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아픔(이산가족상봉)과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 상황(관문첩)을 극복하고, 남북통일을 통하여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희망(남북 간 교통로 복원)을 보여주고 있다.¹² 또한, 새로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교과서들 중에 하나를 보면, 북한의 지형과 천연자원, 경제특구, 금강산관광지, 음식문화(지역간 음식의 차이) 등에 관하여 천연색 사진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¹³ 그 외에도 평양에 관하여 자연환경, 역사와 유적, 도시구조,

<표 3>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에 포함된 북한 관련 내용 (2007 개정)

V. 통일 한국의 미래	
1. 북한의 개방지역, 2. 백두산과 비무장 지대, 3. 국토 통일과 민족의 발전 ¹⁰	

출처: 최성길 외, 2012, 『중3 사회』, 비상교육.

주민과 산업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¹⁴ 요컨대,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이념적으로 북한 당국을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민족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국토의 통일을 이루어 온전한 하나의 나라로 회복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2. 북한의 지리교과서에 반영된 한국 관련 내용

한국에 관한 내용은 주로 중학교 2학년과 4학년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다. 중학교 2학년에 포함된 내용은 계통지리적 관점(국토, 지형, 기후, 수계, 바다, 동식물, 지하자원)에서 구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남북한의 지리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중간에 미제, 일본 등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표 5>와 같다.

북한의 중학교 2학년 지리교과서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지배를 받고, 일본과의 경쟁에서 뒤처짐에 따라 어려운 삶을 살고 있으며, 미군기지 건설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고 기술되었다. 중학교 4학년 지리교과서에 포함된 한국에 관한 내용은

¹⁴ 한국 지리교과서에 표현된 북한의 수도 평양의 이미지(기근도 외, 2013, 위의 책, 197쪽).

<표 5> 북한의 중학교 2학년에 포함된 한국 관련 내용

북한의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포함된 한국 관련 내용
- 오늘도 미제는 공화국 남반부에 동지를 틀고 사회주의적 가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나라를 거머어 압살 하려고 미쳐 날뛰고 있다(2학년 5쪽).
- 중부지방 이남의 조선통해 수역에서는 미제침략자들이 해마다 벌이는 군사훈련과 일본 어선들의 여장 침범으로 남조선 어선들은 물고기 잡이조차 마음대로 못하고 있다(2학년 75쪽).
- 오늘 조선 남해는 연이어 진행되는 침략적인 군사훈련과 남해 바닷가의 공해산업지역에서 쏟아지는 버림물, 폐유로 인하여 오염도가 허용기준 값을 훨씬 넘어섰다. [...] 바다오염으로 가까운 바다어장을 잃은 남해어민들은 먼바다로 나가 고기잡이를 하고 있으나, 일본 어선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 힘겨운 생활난을 겪고 있다. [...]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은 고현성을 (포로수용소)로 만들어 놓고 포로들을 핵무기와 세균 무기의 실험대상으로 잔인하게 학살하였다. 우리 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감행한 야수적 만행을 잊지 않고 있으며, 천백배의 피값을 받아내고야 말 것이다(2학년 79~80쪽).
- 공화국 남반부에서는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속리산과 같은 명산들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변산반도, 해운대와 같은 명승지들이 환경보호구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곳들에도 미제의 침략적인 군사기지가 들어 있고 군사연습이 매일과 같이 벌어지며 공해산업으로 인한 버림물이 강과 호수, 바다에 마구 쏟아져 산들이 벌거숭이로 변하고 동물들이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2학년 87~88쪽).

출처: 박홍준, 2005, 앞의 책.

<표 6> 북한의 중학교 4학년 교과서에 포함된 한국 관련 내용 (1)

제3장 중부지방
제1절, 지리적 위치와 영역; 제2절, 자연조건과 자연부원 제3절, 원산만 지역; 제4절, 세계의 명산 금강산 제5절, 해주-사리원 지역; 제6절, 서울-인천 지역 제7절, 삼척-영월 지역
제4장 동남지방
제1절, 지리적 위치와 영역; 제2절, 자연조건과 자연부원 제3절, 동남해안 지역; 제4절, 령남내륙 지역 제5절, 마산수출자유지역; 제6절, 항구도시 부산 제7절, 울릉도와 독도
제5장 서남지방
제1절, 지리적 위치와 영역; 제2절, 자연조건과 자연부원 제3절, 호남벌과 농업; 제4절, 서남지방의 공업 제5절, 수산업과 양식업; 제6절, 다도해 연안지역 제7절, 제주도

출처: 김도성, 2005, 앞의 책.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부지방·동남지방·서남지방으로 구성되었다. 중부지방은 북한의 황해도, 강원도 일부 지역을 한국의 서울과 수도권, 강원도 일부 지역과 함께 구성하였다.

북한 교과서에 기술된 한국 관련 내용들은 1980년 무렵의 상황을 적고 있으며, 대부분의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 구로구의 공업지역이 미국에서 원자재를 가져다 샐가공을 하는 연속적 공장으로 기술되었으나 실제 구로구 공단 일대는 1964년부터 수출산업공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던 곳으로, 2000년대 들어서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첨단산업 위주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남조선의 고속도로·산업시설 등은 북침전쟁을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고 생산되며, 외국 자본에게 수탈되며, 노동을 강요당한다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 역시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다(<표 7>). 이러한 적대적 표현방식은 학생들이 남한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4학년 교과서의 뒷부분은 경제지리 내용으로, 대부분은 북한에 관한 것이며 남한에 관한 내용은 일부분씩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 역시 대부분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이거나 사실이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다.

〈표 7〉 북한의 중학교 4학년 교과서에 표현된 한국 관련 내용 (2)

북한의 중학교 4학년 교과서에 기술된 한국 관련 내용
<p>- 서울-인천 지역 / 서울시에는 구로구를 비롯한 공업지구가 있다. 이 지구공장들은 모두 미국과 일본 등 자본 주의 나라들에서 원자재를 가져다 싣가공, 싣조립하는 예측적인 공장에 불과하다. [...] 서울-인천 지역은 공 해가 심한 지역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 <식민통치의 중심: 서울> 서울은 미제 침략자들과 남조선 괴뢰도당의 파소통치기구가 집결되어 있는 반동소굴이며, 식민지통치의 아성으로 되고 있다. [...] 인천항은 화물수송 특히 군수물자를 끌어들이고 자원을 략탈해가는 곳이다(4학년 59~60쪽).</p> <p>- 삼척-영월 지역 / 탄광들의 기술장비가 몹시 뒤떨어져 로동재해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데, 굴이 무너 지거나 광차가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폭발사고와 화재사고가 많다. [...] 상동광산의 회중석은 세계적으로 손꼽이었는데, 미제의 식민지 략탈책동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대폭 줄어들어 폐광직전 에 있다(4학년 62쪽).</p> <p>- 동남지방 / 동남해안 지역은 포항, 울산, 부산, 마산, 창원, 진주를 연결하는 바다 가공업지대로서 외국독점자 본을 끌어들이어 건설한 화학섬유, 금속, 기계, 선박, 자동차공업이 있어 남조선에서 이른바 제1의 중화학 공업 지대로 불리운다. 이 지역에 공업이 집중되게 된 것은 남조선 괴뢰들이 유리한 항만조건을 리용하여 여러 가 지 원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수출하는 가공공업을 건설한 것과 관련된다. [...] 마산은 남해안 깊숙이 들어온 마산만 연안에 있는 도시로서 미제의 식민지 통치와 남조선 괴뢰도당의 파소통치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4,19 인민봉기(1960년)의 첫 봉화가 타오른 곳이다. [...] 남조선 괴뢰도당이 마산시를 "수출자유 지역"이라는 간판이라 외국독점자본가 농들에게 통째로 내맡긴 결과, 마산의 아름다움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 외국독점자본가 농들은 세금도 물지 않고 마음대로 들어와 공장을 세우고, 마산시의 넓은 지역에서 자기 나라에서처럼 주인 행세를 하면서 남조선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착취하여 폭리를 얻고 있다. [...]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이상의 고된 로동을 강요당하면서 천대와 멸시,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4학년 63~69쪽).</p>

출처: 김도성, 2005, 위의 책.

〈표 8〉 북한의 중학교 4학년 교과서에 표현된 한국 관련 내용 (3)

북한의 중학교 4학년 교과서에 포함된 한국 관련 내용
<p>- 화력발전소 분포 / 미제는 남조선의 전력공업을 완전히 틀어쥐기 위하여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건설을 극 히 제한하였다. 미제는 저들의 원유를 팔아먹기 위하여 원유 발전소 건설을 일면적으로 강요하였으며, 설비 와 부속품에 이르기까지 저들에게 의존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항구도시들인 울산, 인천, 부산에 원유발전소를 이 건설되었다(4학년 87쪽).</p> <p>- 금속공업 및 기계공업 분포 / 남조선 괴뢰들은 산업근대화의 간판 밑에 외자를 끌어들이어 금속공업을 건설하 였으며, 결과 제철소, 제강소들은 모두 미일독점자본가들에게 예속되어 있다. [...] 남조선의 유색금속공업은 어느 부문보다도 뒤떨어져 있다. 주요 제련소는 봉화와 장항제련소인데, 원료, 연료, 동력난으로 생산을 정상 화하지 못하고 있다. [...] 남조선의 기계공업은 침략전쟁 준비와 직접 관련되는 운수기계와 무기생산에 치우 쳐 있으며 전기기계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일반기계의 생산이 미약하다(4학년 88~91쪽).</p> <p>- 건재공업 분포 / 남조선 괴뢰들은 북침전쟁 준비를 위하여 항만, 고속도로, 비행장, 군사기지 건설에 필요한 건재생산을 위하여 외국 독점 자본을 끌어들이어 일련의 건재공장을 건설하였다(93~94쪽).</p> <p>- 경공업 분포 / 남조선의 경공업은 인민들에게 소비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출을 위한 경공업으로 되고 있다(94~96쪽).</p> <p>- 농업분포 / 오늘 남조선의 농업은 미제의 식민지 예측화 정책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 괴뢰도당의 반인민적 통치로 하여 전면적인 파산상태에 처하여 있다. 농산물 수입 개방책동에 의하여 몰몰듯이 쓸어드는 미국산 농산물 때문에 수많은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밀려들고 있다(97~99쪽).</p> <p>- 운수 분포 / 남조선의 운수에서 기본은 철도운수다. 남조선의 철도운수는 북침전쟁준비와 자원략탈, 외국독 점자본가들이 들이치는 물동을 실어나르는데 북부하고 있다. [...] 남조선에서 자동차 운수는 철도운수 다음 으로 화물수송량이 많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은 침략전쟁 수행에서 기동성을 운운하면서 군사분계선으로 향하는 도로와 주요 항구들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에 미쳐 날뛰고 있다. [...] 현재 남조선에는 경인, 경부, 호 남, 남해, 영동, 구마,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있는데, 특히 서울-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 로 등은 모두 북침전쟁준비와 관련하여 건설한 것들이다(102~106쪽).</p> <p>- 대외무역 / 남조선의 대외무역은 철저히 미제의 지배와 통제 밑에 있으며, 인민들을 수탈하고 자원을 략탈하 는 수단으로, 외국독점 자본가들과 재벌들에게 폭리를 가져다주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오늘 남조선이 진 빛은 수백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106~108쪽).</p>

출처: 김도성, 2005, 위의 책.

한편, 한국 정부와 미국에 관하여 심각하게 부정적이고 왜곡되게 기술하고 있다. 그러한 몇 가지 사례들은 〈표 8〉과 같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지리교과서에 반영된 한국 관련 내용은 왜곡된 채 표현되었으며, 남북한 교과서 내용구성의 관점이나 사례들 중 에 공통적인 요소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 간극은 대단히 커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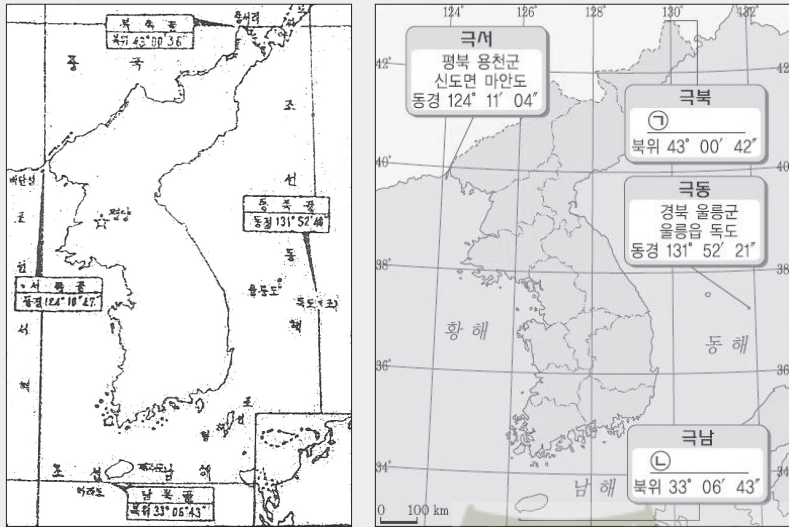
IV. 남북한 지리교육의 공유면과 독도 교육

마지막으로, 남북한 지리교육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관점이나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남북한 지리교육의 공유면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 한 한국과 북한에서 학교지리를 통해 각각 추구하고 있는 통일에 대한 입 장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파악하게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남북한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다룸으로써 민족적 차원에서 독도가 갖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지리교육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한반도 전체를 국가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고, 둘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셋째, 단일민족과 반만년의 역사를 강조하며, 넷 째,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다. 각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먼저, 남북한 모두 국가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제3 의 국가가 한국과 북한을 각각의 국가체제로 인식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아직 휴전 중인 분단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측면도 있을 것이며, 향후 통일된 영토를 상징하고 이를 교육내용에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그림 2).

두 번째 공통적인 요소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다. 독도는 한국이 실효지 배하고 있고, 영토분쟁 또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에 이루어져 있어 북 한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북한 교과서의 한반도 지도
 <그림 2> 한반도 전체를 국가의 영토로 인식¹⁵

출처: 북한 중학교 2학년 『지리교과서』, 6쪽; 이영민 외, 2011, 『고등학교 사회』, 비상교육, 15쪽.

북한은 한반도 전체를 그들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독도 분쟁에서도 영유권을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다. 북한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내용은 조선동해(2학년)와 영남지방(4학년)을 다루면서 나타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9>와 같다.

북한 교과서 내 독도 관련 내용은 크게 독도의 지리적 특징과 독도의 영유권 주장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지리적 특징과 관련하여 독도의 위치·구성·생태에 대해 간단히 서술하고 있으며, 독도의 지리적 가치로 수산자원이 풍부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비록 독도의 상대적 위치, 총면적, 높이 등과 관련된 수치나 독도 구성 및 지리적 특징에 대한 정보가 불분명하고,¹⁶ 내용도 길지는 않으나 이는 북한 내에서 독도에

15 북한 교과서에 표기된 한반도 주변의 바다 명칭(조선동해, 조선남해, 조선서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표기법은 북한 방식의 민족주의적 뉘앙스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바다 이름에 국적이 함께 표기됨으로써 한국에서 쓰고 있는 표기법(동해, 남해, 황해)에 비해 방향성과 기준점의 측면에서 볼 때 훨씬 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16 독도의 위치 기술에서 정확한 거리가 아닌 '정도'라는 불분명한 표현을 쓰고 있고, 섬의 총 면적(187,554㎡) 이나 가장 높은 곳의 고도(168.5m) 등은 실제와는 차이가 있다. 독도의 구성 역시 주변의 크고 작은 섬 30개가 아닌 89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한 바람과 염분으로 인해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에 있으나 이러한 환경을 극복한 여러 식물과 키가 작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표 9> 북한 교과서에 표현된 독도 영유권 관련 내용

-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독도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신성한 영토입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섬으로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활하던 우리나라의 신성한 영토다. [...] 독도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국토에 편입시킨 나라는 조선이며, 독도 영유권을 내외에 선포한 첫 국가도 조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나라의 고유한 땅인 독도를 <일본령토>라고 파렴치하게 주장하며 독도강탈에 미쳐 날뛰고 있다. 그러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허황된 망상은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2학년 4쪽).
- 독도는 울릉도에서 90km, 육지에서는 220km정도 떨어진 조선동해의 우리나라 섬이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제일 동쪽 끝에 있는 섬으로서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다. [...] 독도는 동도와 서도의 두 개 섬과 30여개의 크고 작은 바위섬들로 이루어졌다. 섬의 총면적은 0.117km²이며 제일 높은 곳은 171m이다. 동도의 꼭대기에는 화산이 분출한 흔적이 남아 있다. 섬의 기슭은 높은 벼랑이고 두 세 곳에 크지 않은 자갈밭이 있다. 독도는 기후가 따뜻하고 강수량도 풍부하다. 섬 전체가 바위로 되어있고 바닷바람이 세기 때문에 나무는 자라지 못한다. 독도에는 바다새들이 많이 모여들며 주변바다에는 물개를 비롯하여 수산자원이 풍부하다. 독도는 조상대대로 물려오는 우리나라의 땅이며,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신성한 영토다(2학년 75~76쪽).
- 독도는 그 주변바다에 오징어, 고등어, 공치 등이 많아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민들이 수산근거지로 리용되어 왔다. 오늘날 이 독도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빼앗아내려고 책동하고 있지만, 농들의 강도적 야망은 실현될 수 없으며, 독도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신성한 영토다(4학년 69쪽).

출처: 박홍준, 2005, 앞의 책; 김도성, 2005, 앞의 책.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할 수 없는 상황적 한계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독도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에서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김정일의 발언 등 다양한 관점에서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을 묘사하는 데에서도 '파렴치하다', '강탈', '미쳐 날뛰고 있다', '허황된 망상', '강도적 야망' 등의 단어로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북한이 독도를 '신성한 영토', '신성한 영토'라고 표현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글의 서두에서 논한 것과 같이 독도가 남한과 북한을 이어주는 아이코노그라피로써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그동안 남한의 영토에 대한 서술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남한령의 점입에도, 북한 입장에서 독도에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일본과의 영토분쟁 가운데 있다는 특징이 이러한 상징성을 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나, 독도가 남과 북이 공통적으로 애착을 보이고, 감정을 부여하는 장소임은 분명하다. 또한 교과서 서술에서 독도를 지키려는 북한의 강경한 태도는 독도를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과 일맥상통하고, 때로는 표현에서 우리보다 강력하기도 하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북한에서

도 보도를 통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적은 있으나,¹⁷ 교육적 측면에서도 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학생들이 독도의 중요성을 알게 하려는 노력으로, 북한 입장에서도 독도를 특별하게 여기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외에 북한의 화가들이 정치 이념 없이 독도 그림을 그려 전시하고, 독도 우표의 발행, 기념품에도 빼놓지 않고 독도를 표시하는 등, 교육 밖에서도 독도 수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 역시 독도 영유권을 향한 북한의 지원과 관심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¹⁸

한편, 한국에서는 독도에 관한 내용을 중학교 3학년 『사회』와 고등학교 『한국지리』에서 다루고 있다(표 10), (표 11)).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는 독도가 독립된 소주제로 구성되었으며,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에서는 ‘우리 국토’ 단원에서 독도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교과서뿐 아니라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발행한 『독도 바로 알기』라는 부교재를 이용하여 독도 학습에 활용하기도 한다. 북한의 교과서에는 독도를 조선의 동해와 영남지방을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구성된 반면,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독도를 특별한 주제처럼 다루면서 분쟁상태에 놓인 독도를 강조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 든다. 한국 교과서에서는 북한과 같이 독도를 신성한 영토라 직접적으로 칭하지는 않지만, 영토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박선미, 2010).

이를 종합해볼 때, 남북한 모두에게 독도는 단순한 섬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지켜야 하는 땅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독도

17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표명한 북한의 입장을 일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14. 1. 28) “일본 당국이 독도 영유권을 새 세대들에게 강제 주입해 군국주의를 고취하며 해외 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우려 하는 것”(『국민일보』, 2014. 1. 28. “日 독도 명기는 음흉한 심보” 北도 한목소리 비난.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pol&arcid=0007983129&cp=nv>).

(2013. 8. 12) “조선반도와 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뿐만 아니라 방대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인 독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제 것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야심은 끝이 없다”(『매일경제』, 2013. 8. 12., “일본 독도 야심 끝없다” 북한도 일본 규탄.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fmbn0006&news_seq_no=1444591).

(2012. 8. 6)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경유권’ 주장은 조선재침론”이라면서 “일본에서 심심찮게 울려나오는 독도 경유권 주장은 다름 아닌 ‘대동아 공영권’의 옛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재침시도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해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범죄국가”, “독도는 영원히 신성불가침의 조선땅”(『경향신문』, 2012. 8. 6. 북한 언론 “독도영유권 주장은 조선재침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061812001&code=910303).

18 2012년 8월, 미국 뉴저지의 리버사이드 갤러리에서는 조선의 유명 화가 선우영 화백과 정창모 화백의 독도 그림 전시회가 열렸고(연합뉴스, 2012. 8. 11. “北 유명화가 독도그림 뉴저지서 전시”.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2/08/10/0608000000A KR20120810197100072.HTML>), 북한은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시하며 독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노래가나 열쇠고리 등 기념품에서 독도가 표시된 것을 볼 수 있다(오마이뉴스, 2005. 3. 7. “북한, 기념품에도 ‘독도’ 안 빼뜨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41271). 또한 2004년 4월 북한은 독도의 전경을 담은 ‘조선의 섬 독도’ 우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표 10〉 독도가 포함된 중학교 3학년 사회 학습내용의 일부

IV. 세계 속의 우리나라
1. 세계로 진출하는 우리나라, 2. 우리나라의 다양한 자연과 문화, 3. 독도

출처: 최성길 외, 2012, 『중학교 3학년 『사회』, 비상교육.

〈표 11〉 독도가 포함된 고등학교 한국지리 학습내용의 일부

I. 국토와 지리 정보
1. 세계 속의 우리나라, 2. 우리 국토, 3. 국토관의 변화, 4. 지역의 의미와 지리 조사, 5. 다양한 지리 정보

출처: 이우평 외, 2012, 『고등학교 『한국지리』, 비상교육.

의 특수한 장소성이 둘 모두에게 장소 애착으로 이어져 독도가 북한과 남한 모두에게 특별한 영토적 상징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지리교육에서 드러나는 세 번째 공통적인 요소는 남북한 모두 단 일민족과 반만년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단일민족과 반만년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은 독도와 같은 특정한 영토를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통한 국민적 통합을 염두에 둔 하나의 상징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남북한 교과서에 표현된 각각의 내용은 〈표 12〉와 같다.

남북한 지리교육에서 드러나는 네 번째 공통적인 요소는 통일에 대한 의지다. 양국 모두 통일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나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낸다. 예컨대, 북한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로부터 목숨 걸고 조국을 지켜야 하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 따라 조선혁

〈표 12〉 단일민족과 반만년의 역사가 강조된 교과서 내용

한국	반만년의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각종 유물, 유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역사 도시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비상교육, 중3 『사회』, 95~96쪽).
북한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한 핏줄을 있고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한강토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이며,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우수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슬기로운 민족입니다(2학년 11쪽).

출처: 최성길 외, 2012, 『중학교 3학년 사회』, 비상교육; 박홍준, 2005, 앞의 책.

〈표 13〉 남북한 교과서에 표현된 통일에 대한 의지

한국	<p>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국토 개발의 균형이 왜곡되었고, 민족의 동질성마저 흐려졌다. 국토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아픔은 60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으며, 남북한 주민의 생활수준과 문화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군사적 대처로 인해 남북한은 막대한 국방비를 부담하고, 북한의 무기 개발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게다가 남한은 전쟁으로 전 국토가 황폐해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가 놀랄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했지만, 아직 국토가 분단되어 있어 세계무대에서 '분단된 나라', '전쟁의 위험이 있는 나라' 라는 이미지로 인식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국토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분단된 국토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 통일성 회복이 가능해진다.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통일을 통해 민족 차원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발전에도 공헌할 수 있다.</p>
북한	<p>- 제국주의자들로부터 침략을 받았고, 오늘도 남조선에서는 미제가 동지를 틀고, 북조선을 기어아압살하려고 미쳐 날뛰고 있으므로,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켜야 함(2학년 5쪽), - 미제와 남조선 괴뢰놈들은 온갖 북침전쟁을 위해서 산업시설이며 도로망을 건설하고 있으며, 북침전쟁 연습을 일삼는다. 한편, 남조선 인민들은 가난에 허탈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4학년 91~105쪽), - 지리학은 조선혁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학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리학습을 깊이있게 잘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강성대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5학년 머리말).</p>

출처: 최성길 외, 2012, 위의 책; 박홍준, 2005, 위의 책; 김도성, 2005, 앞의 책; 문영빈·배인영, 2005, 앞의 책.

명과 강성대국을 이룩하는 것'이 사명으로 표현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동질성의 약화, 이산가족의 문제, 국방비 부담 증가, 세계평화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통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표 13〉).

V. 맺음말

그동안 한국에서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일반적으로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의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졌으며,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이 독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의미 있게 취급되지 않은 감이 있다. 또한 북한 교과서에 대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부분은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영토적 측면에서 독도를 다루는 남북한의 지리교육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과연 한민족은 독도를 어떤 의미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남북한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독도에 관한 입장과 태도를 분석

하기 위해 독도를 학습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는 남북한 지리교과서를 분석하였다. 먼저, 북한 교과서의 학습내용 조직의 지침이 되는 교육이념과 교육목표를 파악하였으며, 이어서 주요 학습내용을 검토하였다. 그다음 순서로, 한국과 북한 교과서에 반영된 상대체제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남북한 지리교육 내용 중에 상호 교차하는 공통적인 요소를 '남북한 지리교육의 공유면'으로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요소를 추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남북한 지리교육의 공유면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남북한 양 체제는 한반도 전체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 독도 영유권 주장, 단일민족과 반만년의 역사 강조,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남북한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관계없이, 양 체제는 현재 휴전 중이므로 통일에 대한 의지가 무엇보다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상대방 영토까지 잠정적인 자국의 영토로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지도 모른다.

이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로서, 남북한 지리교육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독도 영유권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비록 북한의 학교 교육이 이데올로기적 특수성을 띠고 있음에도, 남북한 지리교과서에 포함된 독도 관련 내용에서 공통적인 관점을 포착할 수 있다. 즉, 남북한 모두 독도는 한민족 고유의 영토라는 전제하에, 일제가 강압적으로 침탈한 바 있으며, 오늘날에도 그들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일제 침탈사에서 독도를 첫 번째 희생물로 여기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제의 허황된 망상은 실현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조선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과 과거에 한민족을 35년간 강권적으로 통치했던 일본을 가장 대표적인 적으로 간주하고 있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게 북한은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독도에 대한 이러한 북한의 관점과 애착은 독도가 남북의 영토적 상징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요컨대,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전통적으로 한민족의 영토로 인식되었으

나 일제는 러일전쟁을 수행하던 시기인 1905년, 이 섬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깨닫고 독도를 그들의 영토로 불법적으로 편입시켰다. 해방 후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일본은 여전히 그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와 관점에서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영유권 문제에서, 비록 체제는 다르지만 일제의 침탈사를 함께 공유했던 북한의 입장이나 태도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 연구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남북한의 공통적인 관점을 확인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일본과의 영유권 마찰에서 북한의 지원과 공조를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측면에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남과 북이 분단된 이래 대립과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질적인 두 체제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민족적·영토적 상징체로서의 독도에 관해 조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독도를 학습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남북한 지리교과서를 분석하여, 상호 교차하는 공통적인 요소를 '남북한 지리교육의 공유면'으로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요소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남북한 양 체제는 한반도 전체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한다는 점, 독도 영유권 주장, 단일민족과 반만년의 역사 강조,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독도 영유권에서 남북한 모두 독도를 한반도의 고유영토로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을 강한 어조로 비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독도 연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독도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검토함으로써 한민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상징체로서 작동하고 있는 독도를 확인함과 동시에, 일본과의 영유권 마찰에서 북한의 지원과 공조를 끌어낼 수도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독도 영유권, 남북한 지리교육, 민족적 표상, 남북한 지리교과서



ABSTRACT

The interface between North-South Korean geography education and Dokdo as a national iconography of Korea

Yi, Saangkyun Research Fellow,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Yu, Sujin Graduate Program,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lthough North and South Korea have been continuously engaged in conflicts ever since their separation, this study examines education on Dokdo respectively conducted in the two countries in order to explore ways for Dokdo to serve as a symbol of national and territorial link between two different regimes. For this purpose, both countries' geography textbooks are analyzed to identify and extract similarities. As a result, four main similarities were found. First, the South and North both recognize the entire Korean peninsula, including Dokdo, as their national territory. Second, the two countries both claim sovereignty over Dokdo. Third, the two countries both emphasize that they are a nation-state with a history of five thousand years. Fourth, the two countries both show a strong desire for reunification. In addition to the mutual emphasis placed on Dokdo being an integral part of Korean territory, North Korea displays profound animosity toward Japan for claiming Dokdo as their own territory. By examining North Korea's perspective on Dokdo, which has so far been relatively neglected in academic research, this study is meaningful in demonstrating that both North and South Korea recognizes Dokdo as a significant and special territory and in revealing possibilities to draw support and cooperation from North Korea when South Korea deals with territorial issues, including that over Dokdo, against Japan.

Keywords

sovereignty over Dokdo, North-South Korean geography education, national iconography, North-South Korean school geography textbooks

참고문헌

[논문 및 단행본]

남상준, 1999, 『지리교육의 탐구』, 교육과학사.

한국교육개발원, 1988, 『북한과 중국의 교육과정 비교연구』.

김재완, 2003, 「남북한 중등지리 교과서의 비교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9권 제2호.

남상준, 1993, 「북한 지리교육의 정향」, 『사회과교육』 제26호.

박선미, 2010, 「탈영토화시대의 영토교육 방향: 우리나라 교사와 학생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8(1).

손용택, 2004, 「남·북한 지리교과서 내용구성의 체제 탐색과 대(對)북미관(觀)」, 『국토지리학회지』 제38권 제3호.

이진, 2005, 「북한의 지리교과서에 대한 일고찰: 북한의 고등중학교 지리교과서 1990년판과 2000년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1권 제6호.

Cosgrove, Denis · Daniels, Stephen, 1989, *The iconography of landsca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ottet, Gerard, et al., 1997, *Images et construction de l'espace*, Institut National de Recherche Pédagogique

Lefort, I., 1992, *La lettre et l'esprit: Géographie scolaire et géographie savante en France*, Paris, Editions du CNRS, Mémoires et Documents de géographie.

[신문기사]

허진석, 2011. 5. 14, 「남북한 한목소리로 “독도 수호”」,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10513/37219455/1>.

[교과서]

기근도 외, 2013,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학사.

김도성 · 차용걸, 2005, 『지리4』, 교육도서출판사.

명용범, 2005, 『지리3』, 교육도서출판사.

문영빈 · 배인영, 2005, 『지리5』, 교육도서출판사.

박홍준, 2005, 『지리1』, 교육도서출판사.

박홍준, 2005, 『지리2』, 교육도서출판사.

이영민 외, 2011, 『고등학교 사회』, 비상교육.

이우평 외, 2012, 『고등학교 한국지리』, 비상교육.

조화룡 외, 2009, 『고등학교 한국지리』, 금성출판사.

최성길 외, 2012, 『중3 사회』, 비상교육.

1900년 칙령 제41호 제정 전후 울릉도 ‘수출세’의 성격

유미림 한아문화연구소 소장

I. 머리말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공포는 독도 영유권을 입증하는 데 중요하다. 칙령에서 울도 군수의 관할구역 안에 ‘석도’ 즉 독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칙령 제41호의 중요성은 관할구역의 명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울도 군수의 징세권을 인정해준 것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징세권 인정은 다시 1902년에 「울도군 절목」으로 구체화되었는데, 거기에는 출입 화물에 세금을 부과하여 경비로 충당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때 화물의 수출지는 주로 일본인을 가리킨다. 그런데 일본은 1905년에 독도를 편입한 이후에도 울릉도에서 화물을 수출하고 있었고, 이 화물에는 독도강치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울도 군수가 독도강치에도 징세했음을 의미하므로 1905년 이전에 대한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¹

필자는 이런 경위를 이미 ‘수세관행’의 범주에서 포

괄적으로 다룬 바 있다.² 수세관행이 독도 영유권과 관계되는 것은 그것이 일본인의 수출화물에 매겨진 것이기 때문이며, 정부가 이 관행을 인정해준 것이 바로 「울도군 절목」이라는 사실도 함께 밝혔다.³ 그런데 이전 논문에서는 세금의 명목이 다양하다는 점과 일본 정부가 ‘세금’으로 통칭하는 것이 울릉도민이 일컫는 ‘수출세’와 다르다는 점만 지적하고 그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었다. 이 글은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일본인의 수세관행이 중요하게 작용한 사실, 그리고 일본이 자국민의 납세명목을 ‘수출세’라고 고집한 정치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칙령 제41호에 있는 ‘석도’가 독도라고 보고 이를 영유권의 관점에서 논했을 뿐 칙령 제정의 배경에 ‘수세’의 관점에서 다룬 연구는 별로 없었다. 그런데 1900년 이전 울릉도 상황을 보면, 일본인들의 정황, 그 가운데서도 일본인에게 징세한 기록이 1899년에 집중되어 있고 여러 건이 보인다. 필자는 이것이 칙령 제41호를 제정하게 된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필자는 ‘세금’의 성격에서 대한제국 관리와 일본 외무성 관리 사이에 인식의 격차가 보인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일본은 일종의 ‘구문’에 ‘수출세’라는 명목을 붙여 거주권을 주장했고, 독도강치를 수출하던 1905년에도 ‘수출세’ 명목을 고집하고 있었다. 이는 일본이 울릉도를 침탈할 의도에서 ‘수출세’ 납부를 주장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독도를 울릉도의 속도로 보았음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2 세금 명목으로 나온 구문, 증개수수료, 출항세, 수출세, 관세 등을 모두 ‘수세의 범주’에서 다루었다.

3 일본이 과연 세금을 울도군에 납부했는지, 세금 납부가 독도 영유권과 관계있는지, 그리고 강치가 독도만의 산물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필자는 이에 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논문을 완성할 즈음 필자의 이전 논문에 대한 반론(김호동, 2013, 「鬱島郡節目」을 통해 본 1902년대의 울릉도 사회상, 『장서각』 30,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일본의 『竹島問題100問100答』(이하 『100問100答』,으로 약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반론의 요지는 「울도군 절목」의 세금 관련 내용은 일본인이 아니라 본국인에 적용되는 조항인데 필자가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다. 『100問100答』은 일본인의 수출입에 대한 과세는 인정하면서 다만 울릉도 산물에 대한 과세이므로 독도에 대한 주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편다. 과연 「울도군 절목」의 수세조항이 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일본인의 수출세와는 무관한 것인지, 그리고 일본의 비판대로 울릉도 수출품(독도강치)에 대한 과세가 독도에 대한 주권행위와는 무관한 것인지, 이 글은 그에 대한 논구다.

1 유미림, 2013, 「수세관행과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 『우리사로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그 요지는 대략 아래와 같다. 즉 1900년 이전부터 일본인들은 불법 상행위를 묵인받는 조건으로 도감에게 이른바 ‘구문’을 납세했는데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에서 이를 인정하고 1902년에는 「울도군 절목」으로 구체화시켰다. 그리고 이 규정은 1904~1905년 수출품인 해산물과 강치에도 적용되므로 일본인 화주가 독도강치에 대해서도 납세했을 것으로 본다. 일본인의 납세는 그들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기 때문으로 보고, 이런 사실이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II. 1899년의 '수세' 기록과 100분의 2세율

1. 라포르트와 배계주의 공동조사

청일전쟁 이후 울릉도에 일본인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국내 다른 지역의 상황과 비슷하다.

1895년 8월에는 울릉도를 관장하던 도장의 호칭이 도감으로 바뀌었고,⁴ 울릉도 사람 배계주가 도감에 임명되었다.⁵ 정부는 9월 20일 배계주를 도감에 차정하고 관임관과 같은 대우를 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도감제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1898년에 칙령 제12호 '지방 제도 중 울릉도 도감 설치 건(地方制度中鬱陵島監設置件)'을 반포하면서부터다.⁶ 1899년 5월 이후 배계주는 일본인과의 소송건이 중앙정부의 인정을 받아 서울로 호출되었다.⁷

이에 앞서 1880년대에 일본 선박들이 전북 채취를 위해 울릉도를 드나들었고 연안 3해리 이내 어업이 허가된 후로는 출입이 빈번해졌지만, 조선인은 전라도 선박이 와서 벌목 후 배를 건조하고 미역을 채취해가는 정도였다. 울릉도 한인은 어업을 활발히 하는 정도는 아니었다. 1896년과 1897년에도 울릉도는 선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한인은 일본 상선 편에 출입해야 했고 의복과 식염을 일본인의 공급에 의존해야 했다. 이에 비해 일본인들은 벌목꾼과 어로자가 늘어났고 나무를 반출하는 일도 잦아졌다.

배계주가 울릉도에 오기 전부터 이미 수장을 자칭하는 자가 일본인과 거래하고 있었다. 1896년에 배성준⁸이라는 자가 도감을 자칭하고 "장사하는 배에 잡세를 함부로 매기고, 이사해오는 백성에게 돈을 건"⁹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때 도감이 벌목이 금지된 규목과 향목을 허가 없이 함부로 베어 외국인에게 몰래 팔

기도 해서 백성들이 이를 금지시킬 정도였다는 사실을 보면, 배성준이 도감을 빙자하여 대가를 받고 일본인의 벌목을 묵인해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97년 울릉도는 12동리에 397가호, 인구는 1,133명인데, 남자가 662명이요, 여자가 672명이었다.¹⁰ 다음 해인 1898년 5월 내부에 보고된 울릉도 가호는 277호, 인구는 1,137명이다. 인구에는 큰 변동이 없는데 가호는 100가호 이상 차이가 난다.

배계주는 울릉도에서 무단 벌목을 일삼고 있는 일본인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에 가서 소송을 일으켰다. 조선 정부가 일본인의 벌목과 밀반출 및 거주에 대해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동안 울릉도 도감은 일본인에게 벌금을 받고 묵인해주거나 화물에 징세하는 형태로 방조하고 있었다. 일본인은 이런 형태의 징세를 '세금'으로 여겼다. 세금이 매겨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1896년경부터 이뤄진 듯하며 1898년과 1899년에도 배계주가 없는 동안 오성일이 지속했던 것으로 보인다.¹¹

1899년 즈음에는 울릉도에서 러시아인이 일본인의 벌목에 항의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직원과 월급조차 없던 도감의 힘은 미약했다. 도감이 필요한 경비를 보충하는 방법은 미역에 세금을 매기는 방법밖에 없었으나 이것조차 내부의 승인을 요했다.¹² 1898년 배계주는 도감의 지위를 관임관으로 대우해줄 것을 중앙에 요청하기도 했다. 1895년에 정부는 도감을 관임관 대우로 하기로 결정했었지만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계주는 1898년 마쓰에 소송에서 목재를 되찾아 온 공으로 1899년 5월에 도감에 재임명되었고, 부산에 있다가 부산해관 세무사 서리 라포르트(E. Laporte, 羅保得)¹³와 함께 울릉도의 진상을 조사하라는 명을 받았다. 이 조사는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었다(1899. 6. 29~30). 6월 28일 오후 4시에 부산을 떠나 29일 오후 1시에야 해안에 도착했다.¹⁴ 해관의 김성원¹⁵과 일본인 아

4 1895년 8월 13일에 청의하여 16일에 재가 받음(관보)의 휘보 「울릉도에 도감을 설치하는 건을 상주하여 재가를 원함」, 1895. 8. 16).

5 배계주는 배편이 없어 오지 못하다가 1896년 5월에 왔다.

6 「고종실록」 고종 35년(1898) 5월 26일(양).

7 「島監嘉尙」, 《황성신문》, 1899. 4. 26. 접보.

8 《독립신문》 「외방 통신」, 1897. 4. 8)에는 배성준이 나오며, 『울릉도지』에는 배상삼이라는 인물이 나온다. 『울릉도지』에 배상삼은 1893~1894년경 도수라는 직책을 맡아 도민의 아사를 막기 위해 애쓴 인물로 되어 있다. 초대 도감 배계주는 1898년과 1899년 초 소송으로 인해 잠시 도감직에서 떠났다가 1899년 5월 부산에서 다시 도감에 임명되어 라포르트와 함께 울릉도를 조사하라는 명을 받았다. 그 사이에는 오성일이 도감직을 대리했다.

9 「외방 통신」, 《독립신문》, 1897. 4. 8.

10 「외방 통신」, 《독립신문》, 1897. 4. 8.

11 1900년 우용정이 조사할 때 일본인이 "저희는 3년 전에 이 섬에 와서 …… 화물을 내갈 때 도감이 매번 사람을 파견하여 적발하여 100분의 2를 세금으로 납부했다"고 했으므로 1897년 전후가 된다.

12 「외방 통신」, 《독립신문》, 1897. 10. 12.

13 공식명칭은 Acting Commissioner이다. 라포퇴(羅布退), 라보덕(羅保德)으로도 표기된다. 「울도지」와 「고종실록」(1905. 11. 2)에 프랑스인으로 되어 있다. 《한성순보》 제7호(1883. 12. 29)에도 인천 해관에 근무한 프랑스인 라포퇴(羅布退)로 표기되어 있다. 『東萊港報牒』(제3책, 奎17867-2), 『昌原港報牒』(제1책, 奎17869-2, 1899년 11월 2일 보고서 55호), 『慶尙南北道來去案』(奎17980)에는 羅保得으로 나오며, 『仁川港關草』(4책, 奎18075. 1891. 6. 20)에는 羅保德으로 나온다.

14 홍성근, 2013, 「라포르트의 울릉도 조사

라키(Araki)가 동행했다.¹⁶ 조사 목적은 울릉도 주민이 일본인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배계주가 일본인의 침탈을 자주 상부에 보고했기 때문에, 배계주의 보고를 받은 정부가 부산해관에 조사를 일임한 것이다. 《황성신문》에 “내부에서 해관 총세무사 백탁안(柏卓安, 브라운)¹⁷에게 위탁하여, 서양인 한 사람을 파견하여 섬의 정형을 살펴서 보고하게 했는데”라고 했는데¹⁸ 프랑스인 라포르트가 대행한 것이다. 조사 후 배계주와 라포르트는 각각 보고서를 제출했다.

《황성신문》에 따르면, 배계주가 라포르트의 조사 보고서 내용을 내부에 보고했고, 내부는 다시 이를 외부에 보고하여 외부가 일본 공사에게 일본인의 철수와 상행위 금지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라포르트의 보고서(7월 6일 작성)를 받은 브라운은 이를 영국 대사 조던을 거쳐 본국에 보내면서 외부 대신 박제순에게도 전달했다(7월 30일자). 그러므로 배계주의 보고서나 《황성신문》의 보도 모두 라포르트의 보고서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라포르트의 보고서¹⁹에 대해서는 《황성신문》 보도로 대략을 알 수 있었는데, 최근 그 전모를 알 수 있는 문서가 발굴되어²⁰ 1899년의 징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배계주는 도감에 책임명되어 입도하기 전 여러 사항을 지시받았다. 외국인의 가옥 건설과 벌목, 조선을 금지시키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다. 징수한 세금은 내부로 상납해야 했다.

조선 정부는 울릉도 재류 일본인의 철수를 요청하는 공한을 일본 외무성에 자주 보냈다. 일본 정부는 1899년 8월 말 원산영사관 외무 서기생 다카오 겐조(高雄謙三)를 울릉도로 파견하여 일본인을 철수시키는

보고서와 1899년 울릉도현황, 『영토해양연구』 6, 동북아역사재단, 109쪽.

15 라포르트 보고서에는 김용원(Kim Longwon)으로 되어 있고, 『慶尙南北道來去案』(奎17980, 1899년 4월 9일 제1호 보고서)과 『올도기』에는 김성원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동래감리서리가 훈령을 보내, 동래항세무사 羅保得과 參署 金聖遠를 마산포에 보내 해관기지를 택정하게 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함께 갔다는 말인데, 라포르트가 보고서에서 이름을 김용원으로 잘못 적고 있다는 사실이 의아하다. 김용원은 사검관으로, 그리고 울릉도에서 특별한 인물로 따로 나온다.

16 홍성근, 2013, 앞의 글, 108쪽.

17 柏卓安: J. McLeavy Brown을 말하는 데 『승정원일기』 1896년부터 기록이 보인다. 1899년 8월 5일에 정2품 총세무사에 임명되었다. 영국인이다. 명칭이 총세무사(Inspector General)와 수석세무사 두 가지로 나온다.

18 “鬱陵島事況”, 《황성신문》, 1899. 9. 23, 별보.

19 라포르트는 1899년 7월 6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브라운에게 보고했고, 브라운은 7월 30일자로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구한국외교관계부속문서』, 2권 해관안 2, 문서번호 1231번 ‘鬱陵島調查報告書送로의件’, 1899. 7. 30).

20 홍성근에 따르면, 이 자료의 서지사항은 아래와 같다. 「Further Correspondence respecting the Affairs of Corea, Part XII(1899)」, 영국 국립문서보관소(The National Archives), 청구기호 F0881/7264.

임무를 맡겼다. 다카오는 9월 25일에 마야호로 울릉도에 도착하여 일본인들에게 11월 말까지 철수하라고 지시했고 각서(御受書)도 받아냈다.²¹ 이때 마야호에 타고 있던 해군 소속원 가운데 후루카와 신자부로(古川鉦三郎) 대위도 다카오와는 별도로 일본인을 조사하여 보고했다. 회항시간 때문에 7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자, 두 사람은 오래 거주한 사람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로써 1900년 6월 우용정의 조사 이전에 이미 울릉도 조사가 여러 방면에서 이뤄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이 남긴 기록에서 공통적인 것은 울릉도의 수세 정황이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1899년에는 6건, 1900년 10월 이전에는 4건 여가 나온다. 이들 기록을 비교해보면,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제정 배경, 특히 칙령에 ‘수세’조항을 두게 된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세 정황과 독도 영유권과의 연관성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1899년의 세금 관련 기록

1899년의 세금 관련 기록은 대략 아래와 같다.

(1) 1899년 6월 29~30일 조사한 라포르트의 보고서

농민이나 상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 관리는 바다에서 채취하여 섬에 가져온 모든 해채(all the sea-weed)에 대해 10%를 징수하고, 선박 건조에 사용된 나무에 대한 세금으로 건조된 범선 1척당 평균 현금 10,000원을

징수합니다. 물품 매각을 돕는 중개인과 중간상인에게 주는 2%의 중개 수수료(commission)를 제외하고 일본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²²

(2) 1899년 9월 23일자 《황성신문》: 라포르트와 배계주 보고서에 근거

21 대표 서명자는 하타모토 기치조(畑本吉藏)와 아마노 겐조(天野源藏)다. 25일에 조사하고 오후에 출발하여 26일 오후 5시에 부산에 도착하자 바로 공사에게 전보로 보냈다(『주한일본공사관기록』 「각영사관 왕복」, 메이지 32년, 원산영사관 공 제28호: ‘일본외교문서」, 32 사할9 문서번호 171~176).

22 홍성근, 2013, 앞의 글, 123쪽.

농민과 상민의 세금은 원칙으로 정한 것이 없고 다만 도감이 해체에 10분의 1세를 징수하고, 목재에는 선박 한 척당 엽(葉) 일백 냥²³을 징수하며, 일본인은 화물을 팔 때 구문(口文) 100에 2 외에는 납세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고 합니다.

(3) 1899년 9월 25일자 울릉도 출장 재 원산영사관 외무 서기생 다카오 겐조의 포달문²⁴

…… 생각해보면, 우리 일본인이 본도에 재주하며 특히 수목을 남벌하여 밀수출(密輸出)을 꾀하는 것이 매우 꾀잡한 일이니, 앞으로는 결코 남벌해서 안 됨은 물론 본도에 재주하는 일본인은 올해 11월 30일까지 모두 본도를 떠날 것. 이상을 엄히 시달함.²⁵

(4) 1899년 9월 25일 아마노 겐조²⁶에게 들은 비에 의거한, 9월 27일자 해군성 중위 후루카와 신자부로²⁷의 보고

…… 점차 남벌을 기도하게 되었으나 현재는 본방인이 도감과 협의하여 수목을 채벌(採伐)하고 대두를 매수하는 등 모두 이익 예상금의 100분의 2를 세금으로 선납하여 (작년까지는 100분의 5였다고 한다) 실행하고 있다.

(5) 1899년 9월 25일 조사에 의거한, 10월 3일자 원산영사관 다카오 겐조의 복명서²⁸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로지 규송(機松)을 벌채하거나 끈끈이를 제조하고 검하여 울릉도에서 나는 콩을 수출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 수입화물은 주로 호키국 사카이 또는 하마다항에서 100석 내지 200석을 화선에 싣고서 연 3회 즉 1회는 3월에, 2회는 5월에, 3회는 7월에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채한 수목과 콩 등의 수출품은 쓰루가(教賀)·바칸(馬關)·하카다(博多)에서 하역한다고 합니다. 이 섬에서 생산되는 콩은 매년 4~5,000석

23 《독립신문》에는 4원씩 거둔다고 되어 있다.

24 방위성방위연구소, 해군성 『공문비고』, 함선3 권9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소장). 모두 9가지 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3권 「각 영사관 왕복」, 17 「鬱陵島出張復命書 送付件」 부속서(문서번호 8호) 에도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제목이 위와 같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는 포달문 외 에도 관련 문서가 더 많다.

25 이 내용은 원래 8월 22일 경성 주재 하야시 공사가 내린 것이다.

26 그는 5년 전(1895~1895년경)에 와서 울릉도 사정에 밝다고 했다.

27 방위성방위연구소, 해군성 『공문비고』, 앞의 글.

28 다카오가 원산 영사 무토 세지로(武藤精次郎)에게 보고(10월 3일자)한 것을 영사가 다시 하야시 공사에게 복명(10월 4일자)한 것이다. 『鬱陵島出張復命書 送付件』, 『주한일본공사관 기록』, 13권 「각 영사관 왕복」, 17.

에 달한다고 하며, 콩에 대해 도감이 징수하는 수출세액이 100석에 대해 백분의 2의 비율로 과징된다고 합니다.

(6) 1899년 10월 31일자 《독립신문》 “울릉도 현상”

…… 육지와 통상하는 일은 매우 드문데 상인들이 수입하는 물품은 식물과 담배와 포목 등이고, 울릉도에서 수출하는 것은 해체가 많고 관목도 간간이 수출한다. …… 세금은 다만 도감에게 해체 10분의 1세를 물고, 목재는 배 한 척에 4원씩 문다. 일본 사람이 물화를 매매할 때 구문은 100분의 2를 낸다고 부산 해관장이 조사하여 보고하였다고 한다.

위 기록들은 세목이나 세금의 성격에서는 약간씩 다르지만 1899년에 울릉도에서 수세가 관행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징세는 크게 울릉도 수장이 조선인에게 징세하는 경우와 일본인에게 징세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조선인이라 해도 울릉도 주민²⁹에게는 가호별로 징세하는 식이었고, 주로 타도의 상인이 육지로 운반해가는 미역과 선박용 목재에 대해 징세하고 있었다. 세목은 주로 해체세, 조선세로 불렸다. 일본인에 대한 징세는 벌목꾼과 중간상인에게 징세하는 형태가 있었을 것이다. 위 기록에 수입품에 징세했다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 세금은 수출품인 목재와 대두 등의 곡물에 주로 부과되었는데 벌금, 벌목료, 화물에 대한 구문, 수출세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다. 아래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3. 100분의 2세는 구문인가 세금인가?

1899년 6월 라포르트는 해체세와 조선세,³⁰ 중개수수료를 언급하고 있다. 그는 “도민의 직업이 풍부한 목재를 활용하여 배를 만드는 사람, 그다음으로는 농민, 상인, 어민 순이다. 다만 어민은 수적으로 많지 않았는데, 고기들이 풍부하지 않고, 바다가 너무 깊어 짐수부

29 가호당 보리와 콩을 봄·가을로 나누어 징세하는 방식이다.

30 선박 건조에 사용된 나무에 대한 세금은 선박 한 척당 부과되는 것인데 그것은 기록에 따라 10,000원, 엽 100냥, 4원으로 나온다. 조선(造船)용 목재에 대해서는 파(把)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었다.

들이 해채(sea-weed, 海藻)나 패류³¹를 채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³²고 보고했다. 이 부분은 《황성신문》에도 “바닷물이 너무 깊어 물고기는 그리 많지 않고 다만 해채 운반이 매년 2천 짐(擔)에 이를 만큼 많다”고 되어 있는 상황과 유사하다. 라포르트가 10%를 징수한다고 한 sea-weed는 《황성신문》과 《독립신문》에서 ‘해채’라고 했지만 주로 미역을 가리킨다. 당시 전라도인에게 부과한 해채세는 바로 미역세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해채가 김이나 우뚝가사리를 의미할 때도 있지만 우뚝가사리는 수출화물이었으므로 10%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아니었다. 1890년대 초기까지도 미역에 대한 세금은 중앙정부에 상납했다.³³

라포르트는 “물품 매각을 돕는 중개인과 중간상인에게 주는 2%의 중개수수료(원문은 commission)를 제외하고 일본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라고 했고, 《황성신문》은 “일본인은 화물을 팔 때 구문(口文) 100에 2 외에는 납세하는 것이 없다”고 보도했다. 해채세와 조선세를 제외하면 둘 다 중개수수료(구문)를 언급한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이들은 모두 일본인에 해당되는 세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라포르트나 《황성신문》 모두 화주(貨主)가 중간상인에게 주는 구문을 제외하면 “일본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구문과 세금을 다른 것으로 보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해관 관리인 라포르트 입장에서는 밀수출에 따른 수수료를 관세로 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외무성의 다카오 겐조는 9월 25일 포달문에서 일본인들이 (목재) “밀수출을 꾀하고 있다”고 했는데, 조사 후에는 콩에 대해 “도감이 징수하는 수출세액이 100석에 대하여 백분의 2의 비율로 과징된다”고 보았다. 같은 날 조사한 해군성의 후루카와 신자부로는 “수목을 채벌하고 대두를 매수하는 등 모두 이익 예상금의 100분의 2를 세금으로 선납한다”고 했다. 두 사람이 같은 일본인의 진술에 근거하고 있지만, 징세 품목이

목재인지 콩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후루카와 신자부로는 “수목을 채벌하고 대두를 매수하는 등 ……”이라고 해서 수목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하는 듯 말했지만, 다카오는 대두에 대해서만 수출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말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다카오가 위에서 목재를 밀수출한다고 본 것과 일맥상통한다. 라포르트의 조사를 보고한 《독립신문》도 수출품으로 10분의 1 해채세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전라도인에게 부과한 10분의 1세가 해채세라는 사실과 일치한다. 이 외에도 《독립신문》은 “일본 사람이 물화를 매매할 때 구문은 100분의 2를 낸다”고 하여 구문 100분의 2를 분명히 언급했지만 ‘물화’가 무엇인지는 명기하지 않았다.

한편 울릉도의 일본인들이 후루카와에게 말할 때는 100분의 2세가 “작년까지는 100분의 5였다”고 진술하여 마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로 줄어든 것처럼 말했다. 이는 한편으로는 일본인들이 개항장의 수출입 관세율이 100분의 5 즉 5%의 증가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그러나 이들이 5%를 납세했다는 사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5%에서 2%로 줄여 납부한 데 따른 문책을 피하기 위해 임기응변을 한 것이다. 이들은 100분의 2세가 정식 관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들을 조사한 외무성의 다카오는 ‘수출세’로 칭했다. 다카오는 일본인들이 콩을 수출하고 있었으며, 일본에서 미국·옥양목·잡화류를 수입해온다는 사실을 언급했지만³⁴ 그 역시 수입 관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인의 벌목에 대해서는, 배계주가 울릉도를 잠시 떠난 사이 도감을 자칭하던 배성준이나 오성일이 벌목료를 받고 묵인해준 사실이 있었음은 이미 밝힌 바 있다.³⁵ 물론 이때 일본인과 결탁한 한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배계주는 벌목료를 내지 않고 밀반출한 목재를 찾아오기 위해 일본에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인은 벌목료를 납부했다고 했지만, 도감은 이를 벌목료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종의 벌금으로 본 것이다. 배성준이나 오성일은 일본인의 불법행위를 묵인해주는 대가를 구문 내지 벌금으로 생각한 반면, 납부하는 측은 벌목료로 생각한

31 라포르트 보고서에는 shell-fish라고 되어 있으나 전복을 가리키는 듯하다.

32 홍성근, 2013, 앞의 글, 112쪽, 자료 2-①.

33 조선 후기 해세는 주로 어염세다. 중앙에서 감관(사검관)을 징수원으로 파견했으나, 갑오개혁 이후 1899년에는 지방관에게 해세 관할권이 귀속되었다. 1901년에는 관할권이 탁지부에서 공내부로 이속되었다가 1903년에는 다시 내장원으로 이속, 다시 탁지부로 환속되었다(박성준, 2008, 「1901~1910년 해세 징수체계의 변화」, 『역사문화연구』 31, 34쪽). 울릉도 사검관은 1900년 이전에는 평해 군수가 겸했고 이후에는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가 맡았다. 그러나 울릉도에서 사검관에 의한 해세 징수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해채세가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세를 대신한 듯하다. 해채세는 중앙정부로 상납하다 후에는 수장이 관장했다.

34 「조선국 해관세목」에 따르면 미국 등의 곡물에는 5%, 직물에는 8%의 관세가 부과된다(『한해통어지침』 부록).

35 박병선, 2009, 『한말 울릉도 독도 어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유미림, 2013, 앞의 책 참조.

것이다. 그러나 세목이 어떠한 별목 자체가 불법이므로 징수도 불법이다.

한편 일본인들은 1899년에 화물액의 2%를 '수출세' 명목으로 납세한다는 약속을 도감과 했고, 도감 오성일은 수출세를 대두로 받았다. 다만 배계주는 불법임을 의식해서인지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 라포르트는 일본인들이 관리의 허가를 받아 별목한 것으로 기록했다.³⁶ 이는 그가 일본인이 납부한 세금(별목료이든 수출세이든)을 도감 측이 받아들였다면 정부의 허가를 의미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900년에 우용정이 "도감이 …… 간혹 벌금을 내라고 질책하고 또한 화물을 살피 100에 2를 거두었는데 ……"라고 한 것을 보면, 벌금과 100분의 2세가 구분되어 있다. 벌금이 목재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100분의 2세는 화물에 해당되는 것이다.

위의 세목을 다시 정리하자면, 라포르트와 《독립신문》은 2%의 중개수수료, 《황성신문》은 100분의 2구문, 후루카와 신자부로는 '이익금의 100분의 2선납, 다카오는 '100석에 대한 100분의 2비율' 등이다. 일본인들이 오성일과 약조할 때는 "수출액의 100분의 2를 대두로"³⁷ 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듯 1899년의 납세기록은 저마다 다르지만 모두 100분의 2를 언급한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즉 명칭은 중개수수료·구문·수출세 등이고, 과세 품목도 목재·콩·화물·끈끈이 등으로 일정하지 않지만, 일본인들이 2%의 세액을 대두로 납세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사자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파견된 일본인 조사자는 이런 납세 정황을 '수출세' 명목으로 본국에 보고했다.

1899년 라포르트가 파악한 울릉도 인구는 3,000명, 가호는 500호였다. 《독립신문》 기사에, 1897년 인구가 1,133명³⁸ 가호가 397호였던 것과 비교하면 빠른 증가세다. 라포르트는 거주민이 증가하는 이유가 토질이 비옥한 데다 세금이 거의 또는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개척 초기에 약속한 세금 면제가 라포르트 당시에도 실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인에게

는 육지로 수출하는³⁹ 해체에만 세금을 매긴 것을 보면 가호당⁴⁰ 세금은 없었던 듯하다. 1899년 당시 울릉도와 조선 본토의 교역은 미미했지만, 일본 상선들은 쌀과 소금·질그릇·술·석유 등을 들여와 팔았다. 이들은 물건을 섬 백성들과 물건으로 서로 바꾸었다.⁴¹ 본토에서 상인들이 범선에 쌀과 연초, 피륙 등을 싣고 와서 팔되 돌아갈 때는 대개 해체(미역)나 나무판자를 싣고 갔다고 한다.⁴² 바꾼 물건이 대두인지는 몰라도 위의 언급으로만 보면, 본토 상인에게는 2%의 구문을 징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울릉도에서 필요한 일용품은 본토에서 공급된 것도 있지만 일본인과의 교역에 의존한 것이 더 많았다. 이때 울릉도의 일본인들은 일본으로의 수출품에만 구문을 납부했고 일본에서의 수입품에는 납세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후에 박제순도 지적했다.

후루카와는 울릉도의 일본인이 100석 내지 300석적(石積)의 화선(和船)을 지니고 많을 때는 1년에 3회 왕복하지만 대부분 1898년 이후에 온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4~5년간 울릉도에 재류한 자는 드물다고 보았다. 반면 다카오는 이들이 5년 전에 왔다고 보았다. 후루카와는 일본인의 대부분이 선승(船乘)을 업으로 하는 자이며 시마네현 사람이 가장 많고 간혹 돗토리현이

나 오이타현 부근에서 온 자가 있다고 했다. 또한 그들 양식은 대부분 화선으로 수입하는데 대부분 호키국 사카이, 이와미국 하마다에서 오는 것들로 밀수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목적지를 숙이고 수출해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조선인에게는 잡화와 금건(金巾), 마포(麻布) 등을 판매한다고 했다. 후루카와는 일본인들의 차별이 처음에는 조선인이 수목을 태워 화전을 일구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가 점차 남벌을 기도하게 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현재는 일본인과 도감이 협의하여 차별하고 대두를 매수하되 모두 예상 이익금의 100분의 2를 세금으로 선납한다는 재류 일본인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그는 근래 일본인

36 흥성근에 따르면, "와키다 쇼타로(Wakida Shotaro)와 아미노 겐조(Amano Genzo)라는 두 일본인은 별목에 관한 책임자인 것 같고, 관리의 허가를 받아 일을 하고(저는 수석 세무사님께 그 사건의 한국어본을 드리고, 이 허가장이 어떻게 수여되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동자를 고용하고, 일본으로 보내는 주요 수출업자들인 것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다.

37 「수명조사사항 보고서」 중의 '수출세 건' (일본 외무성 자료 3.5.3.2. 『靑陵島に於ける 伐木關係雜件』).

38 당시 인구가 가구당 5~6명이었을 것임을 감안하면 397호에 1,133명은 적은 숫자다.

39 일본 기록에는 한국에서 들여오거나 한국으로 내가는 물품에 대해서도 수입, 수출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다만 한국과 관련된 경우 반드시 '한국에서 수입', '한국으로 수출'이라고 명기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수출(수입)'이라고 한 것은 통상 일본 수출(수입)을 의미한다.

40 절목에 관리를 두도록 했고 관리 급료로 가호당 거들 곡물을 정한 것으로 보아 1902년까지도 가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1 "울릉도 현상", 《독립신문》, 1899. 10. 31; 《황성신문》 9월 23일자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42 흥성근, 2013, 앞의 글, 115쪽의 자료 3-①.

과 조선인은 매우 원만한 관계에 있으며 조선인이 잡화와 기타 쌀 등을 얻는 데 편리함이 있으므로 일본인의 재류를 좋아한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다카오도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 모두 울릉도에서 일본인이 한인과 공생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다카오는 일본인들이 벌목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⁴³ 그 역시 일본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은 것이다. 그는 울릉도 인구가 2,000여 명이고 500호이며, 농부와 어부가 각각 반수이고, 선박을 건조하는 목공들이 있다고 했다. 한편 그는 울릉도에 오기 전 부산 체재 중에 라포르트의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 이때 그는 울릉도 거주 일본인을 200명이라고 들었기에 11월 30일까지 이들을 철수시키되 한꺼번에 군함에 태우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았다. 울릉도는 군함 정박지가 없어 연안에만 잠시 유박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시간 안에 퇴거시키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들을 한꺼번에 철수시키겠다고 언명한 것 자체가 애초 철수 의사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다카오가 울릉도 남양동에서 조사한 시간은 7시간 이내였다. 9월 25일 오전 5시 울릉도에 도착한 뒤 마야호 함장에게서 7시간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라는 권유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시마네현 오키에서 온 하타모토 기치조와 호키 도하쿠에서 온 아마노 겐조(天野源藏) 두 사람을 면담했다. 두 사람은 오성일과 약조할 때 서명한 명단에도 들어 있다. 다카오는 일본인이 200명이라는 사실을 라포르트에게 들었지만, “현재 인원은 모두 100명 정도지만 작년부터 올해 봄까지는 150~160명에 달했는데 올해 3월에 철수했다”고 했다.

다카오는 하타모토 기치조와 아마노 겐조 두 사람을 통해 조사했고 후루카와도 아마노 겐조에게서 들은 사실을 기록했다. 두 사람이 같은 사람에게서 들었지만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다. 북명서도 따로 제출했다. 이렇듯 1899년 울릉도 상황 조사는 여러 사람을 통해 이뤄졌다. 라포르트는 6월 말의 조사결과를 7월 6일 총세무사인 브라운에게 보고했다. 원산영사관 소

43 “이 섬의 都監 즉 島守라고도 말하는 한국 관리(현재 이 섬의 도감은 襄季周라는 자임)의 공식 허가를 얻어 수목의 크기에 따라 이에 상당한 벌목료를 납부하고 채벌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목하여 도벌자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으며 거의 매매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1899년 10월 4일 『鬱陵島出張復命書 送付件』 중 별지 ‘外務書記生 高雄謙三의 북명서’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3권, 『각역사관왕복』 14, 10월 3일).

속의 다카오는 영사 무토 세지로에게 보고했고(10월 3일), 무토 세지로는 다시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공사에게 보고했다(10월 4일). 해군성 소속의 후루카와도 마야호 함장 중좌 마쓰모토 아리노부(松本有信)에게 보고했고(9월 27일), 마쓰모토 아리노부는 여러 문서⁴⁴를 첨부하여 해군대신 아마모토 곤베(山本權兵衛)에게 보고했다(9월 28일). 이렇듯 울릉도 상황이 동시에 여러 경로로 보고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1899년에 이 섬이 문제의 섬이었음을 의미한다.

울릉도는 비개항장이므로 교역이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그런데도 일본인들은 ‘구문’ 납부를 ‘세금’ 가운데서도 ‘수출세’라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 일본 관리들(외무성, 해군성)은 ‘구문’이나 ‘수수료’보다 ‘수출세’라는 표현을 선호했다. 한편 부산해관이나 대한제국은 “구문 외에는 세금이 없다”고 했다. 구문과 세금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는 1900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인의 납세 정황을 파악한 일본 외무성은 ‘수출세’ 납부를 주장하며 울릉도 거주권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대한제국은 울릉도 수세 정황을 감지하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일본인 철수를 요청하고 있었다.⁴⁵ 대한제국이 일본 측에 철수를 요청하는 일은 ‘수세’를 포괄적으로 인정한 칙령 제41호 공포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울릉도에서 행해지는 비공식적 수세 관행은 인정하되, 공식의 정부차원에서는 일본인 철수를 요청하는 것이다.

1899년 라포르트와 외무성, 해군성 관리의 잇따른 조사는 울릉도에 대한 위기의식이 심화되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대한제국은 일본인의 불법 교역 행위를 조약에 의거하여 다스릴 것을 검토했지만 여전히 일본인의 상행위와 밀교역은 단절되지 않았다. 다카오의 보고로도 알 수 있듯이, 일본 정부

는 일본인의 상행위가 일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한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벌목도 도감의 공식적인 허가 아래 이뤄진 정당한 행위임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1899년 10월 25일자 주경성 특명전권공사 하야시의 회답⁴⁶은 일본인의 주거권을 주장하고 있어 조일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음을 암시했다. 이해에는 러시아 함대도 울

44 다카오의 포달문, 하타모토와 아마노 두 사람의 각서, 후루카와의 보고서(『공문비고』, 함선3 권).

45 1899년 9월 내부는 불법으로 통상하는 외국인을 영사에게 보내도록 13도에 신칙하는 한편 비개항장에서의 외국인의 범법을 신칙했다.

46 『외아문일기』 광무 3년 10월 26일; 『일안』 4 문서번호 5383.

릉도에 기항하여 일본 사람들의 동태를 살피고 돌아갔다.⁴⁷ 러시아 함대는 1899년 10월 1일 남양동 포구에 와서 정박했는데, 장관 한 명, 통사(通事) 한 명, 병정 7명이 내려 울릉도를 두루 돌아보고 도형도를 그렸으며, 일본인에게서 규목 한 그루를 75냥에 샀다는 정황을 우용정은 1900년 6월 조사 때 파악했다.⁴⁸ 1899년에 러시아인들은 8일 동안 머물러 있었고 1900년 3월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갔다고 하지만 이후 다시 왔다는 기록은 없다.

한·일 간의 각축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러·일 양국의 각축장으로서도 울릉도의 상황은 긴박했다. 이를 반영해서인지 대한제국은 울릉도의 관제 개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에 1900년 도감을 감무(監務)라 개칭하고 주임관으로 해서 내부의 지휘를 받게 하되 수하직원을 두기로 결정했다.⁴⁹ 감무는 5년 임기로 하고 수하의 관리는 울릉도 호구와 전결을 조사한 후 도민이 결정하여 봉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배계주는 일본인의 무단 벌목 사실이 여전함을 1899년에 보고한 바 있는데, 그 사실이 내부에 도착한 것은 1900년 3월이다. 대한제국은 1899년에 부산해관장이 100분의 2세 정황을 보고했을 때 수세관행을 파악했고 일본 외무성에도 항의한 바 있지만, 울릉도에서 이를 정식으로 저지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 1900년 우용정의 조사가 있기 전까지 울릉도 행정은 배계주가 주관하고 있었고, 정부도 그의 보고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칙령 제41호의 제정에 배계주의 보고가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III. 1900년 우용정의 조사와 수세정황

1. 한·일 양국의 조사와 우용정의 보고

대한제국은 1899년 11월 말까지 기한을 정해 일본을 철수시키겠다고 한 일본 공사의 약속을 믿었다. 그러나 일본인은 철수하지 않았고 오히려 비리 보고

47 "아라사 함대", 《독립신문》, 1899. 11. 14.
48 우용정, 「후록」.
49 "鬱島官制의 改定", 《황성신문》, 1900. 3. 1. 잡보.

가 계속되자 대한제국은 계속해서 철수를 독촉했다. 그러자 경성의 하야시 공사는 양국 공동조사를 제안했다.⁵⁰ 그는 일본인의 왕래와 거류를 기정사실화할 것도 함께 주장했다. 이때 일본은 제3국인이 입회하여 조사할 것을 제안했고, 이 때문에 라포르트라는 제3국(프랑스) 해관원이 포함되었다. 이 점에서 조사단은 국제조사단의 성격을 띠고 있다. 대한제국은 1899년 9월 말에 우용정의 파견을 결정했고, 1899년 12월 15일에는 우용정을 울릉도 시찰위원에 임명했으므로 일본의 제안 이전에 자체 조사를 계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용정 일행은 1900년 5월 말 울릉도로 향했다. 5월 20일의 사전 회동에서 양국은 조사요령 4개항에 합의했다.⁵¹ 하야시 공사는 5월 21일 부산의 노세 다쓰고로[能勢辰五郎] 영사에게 '울릉도 재류일본인 조사요령'을 전달, 공동조사에 대비하게 했다.⁵² 이때 하야시는 도감의 허가 아래 벌목료를 납부한 사실을 들어 항의할 것과 벌목을 승인 내지 묵인했다는 사실을 주로 내세우도록 노세에게 지시했다. 조사 이전부터 그는 벌금을 벌목료로 둔갑시키고, 벌목료 '납부'를 '묵인'이라고 주장하도록 획책한 것이다.

1900년 5월 31일 울릉도에 도착한 일행은 6월 1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에는 동래 감리서리 주사 김면수, 방관(幫辦) 김성원도 참가했다. 일본 측에서는 부산영사관의 부영사(영사관보) 아카쓰카 마사스케[赤塚正輔],⁵³

경성 주재 일본공사관의 경부보(警部補) 와타나베 간지로[渡邊鷹治郎] 등도 참가했다. 조사는 양국 조사위원이 도감 배계주와 일본인, 한인을 대질 심문하는 형식이었다. 우용정은 먼저 「고시(告示)」를 통해 조사 목적을 알렸고, 보고 이후 정부의 대책이 있을 것임을 알렸다. 그는 우선 도민들에게 긴급한 사안을 조목별로 고시하여 실행을 촉구하고, "각항(各項)의 사안과 항구에 들어오는 화물에 거두는 세금은 일체 도감(島監)의 약속을 따라야 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말하자면 도감이 관행적으로 징세하던 권한을 인정해준 것이다. 13동

50 「구한국외교문서」 제4권, 일안4, 문서번호 5572 '울릉도 일인문제에 대한 반박 및 공동조사 제안'(1900. 3. 23, 제24호).

51 「구한국외교문서」 제4권, 일안4, 문서번호 5652 '울릉도공동조사차 관계관원 파견의 건'(1900. 5. 4); 「내부래거안」 조회 11호.

52 「주한일본공사관기록」 「각영사관 기밀 래신」 기밀 5호(1900);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4권 「각영사관 기밀」 제6호, 「日韓官吏鬱島島出張ニ關スル件」(1900. 5. 21) 중 별지.

53 아카쓰카 쇼스케[赤塚正助]로도 나온다.

의 도민에게 이를 지키게 했고, 특히 일본인과 결탁하여 혼란을 야기하거나 일본인에게 고용되는 자를 엄벌에 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⁵⁴ 한편 그는 전라도민의 청원으로 5%로 감세된 미역세를 10%로 회복시켰다. 좀 더 많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양국 조사위원회는 일본인 심문을 통해서도⁵⁵ 수세관행을 확인했다. 후쿠마 효노스케(福間兵之助), 가타오카 히로치카(片岡廣親), 마쓰모토 시게요시(松本繁榮) 등은 1900년 기준으로 3년 전에 와서 벌목을 한 사람인데, 그들은 “화물을 내갈 때 도감이 매번 사람을 파견하여 적발하여 100분의 2를 세금으로 납부하였으니 이는 화물을 몰래 운송한 것이 아닌”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나무값으로 전 도감 오상일에게 500냥을 선납했다고도 주장했다. 1899년 9월 해군성 후루카와 신자부로가 “구매시 예상 이익금의 100분의 2를 선납”했다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나무값으로 선납한 것과 이익금의 일부를 선납한 것은 다르다.

일본인의 진술은 배계주의 진술과도 달랐다. 배계주는 우용정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즉 자신이 1896년 5월에 부임했을 때 도민들이 일본인 수백 명으로 인한 폐단을 호소하기에 울릉도가 통상항구가 아님을 역설하고 벌목에 관한 표기를 조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납세 책자를 바치며 화물에 대해 100분의 2세를 지원한 사실을 밝혔다는 것이다. 배계주는 병신년(1896)과 정유년(1897)에 화물 출항세로 100분의 2구문을 납입한 사실은 있지만, 이것이 본래 바치겠다고 한 금액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배계주는 이 구문을 화물출항세로 본 것이다. 배계주는 일본인들이 벌금표만 바치고 도망한 증거도 있다고 진술했다. 이로써 보자면, 일본인들은 벌목료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벌목 대가로 '구문' 명목으로 100분의 2세를 지불한 것이고, 배계주는 이것을 화물출항세라고 간주한 것이다. 배계주가 일본인들이 본래 바치겠다고 한 금액과 차이가 있다고 한 것을 보면, 본래 약속한 금액은 100분의 2를 초과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인은 규목 한 그루에 50원으로 치거

54 우용정, 「13동에 내린 훈령(訓令十三洞)」(국한문).

55 「울도에 있는 일본인 조사요령(鬱島在留日本人調査要領-韓日人分日査問)」(국한문).

나 500냥으로 산 경우를 들어 벌목료를 치렀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한 그루의 값으로 온 산의 규목을 베어가려 했다. 이는 정당한 벌목료가 아님은 물론 정당한 납세도 아니다. 그런데도 일본인들은 100분의 2세를 '세금', 나아가 '수출세'라고 주장했다. 조사 후 시찰위원 우용정은 내부대신 이견하에게, 동래 감리서리 주사 김면수는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영사관보 아카쓰카 마사스케는 하야시 전권공사에게 각각 보고했다.

우용정은 조사를 통해 일본인들이 목재를 반출하면서 도감에게 100분의 2세를 구문으로 바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그는 오성일이 일본인에게 나무값을 선납받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배계주는 일본인들이 부산항으로 가야 하는데 불법으로 왔으므로 벌금을 지원한 것이고, 그나마 화물값의 100분의 2를 무는 벌금도 내지 않고 벌금표만 바치고 도주했다고 진술하여 일본인의 진술을 부정했다. 영사관보는 일본인들이 콩으로 납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써 울릉도에서는 이른바, 여러 형태의 징세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무 한 그루당⁵⁶ 지불하는 벌목료, 벌목료를 대신하는 벌금, 목재나 화물에 대한 100분의 2세, 대두에 대한 수출세 등이다. 세목이 다양한 만큼 불분명하므로 내용을 명확히 알기는 어렵다. 아카쓰카는 울릉도민이 기록한, 일본인에 관한 성책(「日人結幕及人口成冊」)과 벌목에 대한 성책(「日人斫伐機木成冊」)을 모두 열람했다. 그런데 그는 이들 기록의 진위에 대해 항의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일본인의 납세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면수는 이들 문서를 열람한 후 원본을 외부에 올려보냈다. 이들 문서 외에도 김면

수는 일본인의 납세 관련 책자(「日人納稅冊子」), 도민의 벌목 기록(「島民犯斫機木成冊」)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도 열람했음을 알 수 있다.⁵⁷ 울릉도의 일본인들은 오도감에게 규목 값을 납부한 것을 기록으로 남겼고⁵⁸ 우용정은 일본인의 벌금표를 가지고 상경했다. 이런 상황은 일본인과 한인들의 벌목이 널리 행해지고 있었으며 특히 일본인들의 무단벌목이 횡행하고 있었음을

56 규목 한 그루에 50원 혹은 500냥에 사는 경우로 각각 다르다.

57 유미림·조은희, 2008, 『개화기 울릉도·독도 관련사료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58~159쪽.

58 오(吳) 도감에게 규목 값 500냥을 바친 표(吳島監機木價五百兩奉上票) 1 (이 표의 등본).

말해준다.

우용정은 조사 후 올린 보고서(「후록」)에서, 일본인이 납세를 거부하고 있고 도감이 징수하지 못한 정황을 기술했다. 그는 도감이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이유와 세금을 받지 않게 된 원인도 파악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울릉도가 비개항장임을 들어 수세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에 배계주는 우용정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후에 칙령에 수세조항을 넣은 것은 결국 배계주의 관행을 묵인해준 것이다.

우용정은 일본인들이 오 도감의 표기를 빙자하여 규목값을 지불했음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그루 수를 정하지 않고 납벌한 정황을 따졌다.⁵⁹ 반면에 아카쓰카는 오 도감이 없음을 핑계대어 미결로 두고자 했다. 우용정은 조사과정에서 배계주와 일본인의 진술이 매사에 엇갈리는 점을 간파했다. 이때 라포트는 “전에 다카오 서기생이 귀 공사의 지휘를 받아 그들을 물러가게 하였습니다”고 한 사실을 거론하며 일본인이 철수를 약속한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아카쓰카는 허락받은 80그루의 규목을 다 베고서야 일본인들이 돌아갈 것이라고 했지만, 우용정은 이미 83그루가 베어진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런 정황으로 보건대, 우용정은 무단벌목에 대한 벌금과 화물에 대한 100분의 2구분이 다른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구분이 세금과는 다른 것이라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용정에게 세금은 수출입 관세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대한제국 관리나 해관원에 공통된 인식이었던 것이다.

2. 아카쓰카의 '수출세' 언급

우용정과 함께 조사에 참여했던 아카쓰카는 조사내용을 본국에 보고했다.⁶⁰ 아카쓰카는 (울릉도의) “대두 산출량은 연평균 대략 5,000석(石)이고 그중 3,000석은 주로 일본에 수출한다. 그 값은 일본 시세로 평균 2만 엔(圓) 정도다”라고 했다. 대두의 절반 이상이 일본으로 수출되는 것이다.

해산물로는 미역·우뭇가사리·전복 종류로 그 산출량은 별로 많지 않다고 했다. 그는 ‘수출입 통계표’를 작성했는데 규목은 별도로 하더라도 주요 수출품이 대두·보리·호태(胡太)·전복·우뭇가사리·끈끈이(鱸) 등으로 되어 있다. 규목을 제외한 다른 물품의 수출통계(1897~1899)가 적혀 있는데, 대두가 2만 엔, 호태가 770 엔, 보리가 960 엔에 상응하는 금액이고 ‘한인이 산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전복의 수출액은 2,960 엔, 우뭇가사리가 1,200 엔, 끈끈이가 6,000 엔인데, 이들은 ‘일본인이 가지고 온 것’으로 되어 있다. ‘한인이 산출한 것’은 한국 본토로 수출한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 수출한 것을 의미한다. 구매자는 일본인이므로 100분의 2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아카쓰카는 100분의 2세를 ‘수출세 건’⁶¹으로 다루었다. 또한 목재 외의 물품에 대해서도 수출품이라고 했다. 목재나 곡물, 해산물 등의 수출품에 모두 ‘수출세’라는 세목을 붙인 것이다. 위 수출품에 콩·보리·전복·우뭇가사리·끈끈이 등은 보이지만 미역은 보이지 않는다. 해체세 품목이기 때문이다.⁶² 전복과 우뭇가사리 같은 해산물에는 2%의 수출세가 부과된다. 다만 전복이나 우뭇가사리가 울릉도에서만 채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독도에서 조업했음은 일본 학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⁶³ 독도에서 채취한 해산물도 수출품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본다. 당시 한인의 어업 기술과 수요를 고려해볼 때 내수를 위해 독도에 채취하러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카쓰카는 울릉도의 일본인은 주로 시마네현 사람이며 숫자가 일정하지는 않지만 1900년 현재 100명 안팎이라고 보았다. 또한 그는 울릉도에 있는 사람 100명은 대부분 원산 내지 부산의 출항면장 및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당시 일본 선박들이 부산항에서 어업세를 납부한 뒤 울릉도에서 어로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해초 채취 및 통상은 통상장정 33조 위반이다. 그런데도 아카쓰카가 자국민의 교역을 ‘수출세 건’으로 보고한 것은 어째서인가? 반면 대한제국 관리가

61 위의 글.

62 1906년에도 미역은 한인의 독점 품목이었으므로 일본인이 채취 수출하는 것이 불가능했다(『大日本水産會報』 282호 27쪽, 『韓國鬱陵島の水産』, 1906. 2. 10(이중환, 2000, 『한일어업관계조사자료』, 554쪽에서 인용).

63 가와카미 겐조는 울릉도에 와서 채취하며 잠수기로 전복과 우뭇가사리를 채취하던 자들이 독도에서도 조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川上健三, 1996,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 古今書院, 201쪽).

59 우용정, 「올도기」 부록 ‘조사요령’.

60 「受命調査事項 報告書」 중 ‘輸出稅の件’, 1900 (일본 외무성 자료 3.5.3.2, 『鬱陵島に於ける伐木關係條件』).

'수출세' 대신 '구문'으로 표현한 것은 어째서인가? 위에서 보았듯이, 대한 제국 관리는 '구문'과 '세금'을 구분했다. 반면 일본 관리가 자국민의 교역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수출세'라고 고집한 이유는 한인들이 목인의 대가를 받아들이었으므로 이를 수출세라고 고집하면 거주권과 교역권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인이 납세한 세율은 2%였다. 이는 개항장에서의 수출세가 보통 5%⁶⁴의 중가세인 데 비하면 현저히 낮은 세율이다. 2%라면 밀어선박의 입장에서 득이 될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로서도 피할 이유가 없다.

1900년에 일본인들은 울릉도에 조합을 두고 있었다. 아카쓰카는 조합의 전 간사 가타오카 기치베[片岡吉兵衛],⁶⁵ 현 간사 마쓰모토 시게요시를 인지하고 있다. 그는 조합과 배계주의 관계가 좋으며 일본인들과 도민의 감정도 좋다고 했다.⁶⁶ 이는 우용정이나 김면수의 보고와는 다른 내용이다. 또한 그는 규목의 전망이 밝지 않으므로 입도를 금지하더라도 손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는 "올 1년간 이 섬의 일본인 문제를 미결로 두어도 지장 없게 할 수 있다면 규목은 대체로 다 베어질 것이다"라고 했다. 이 말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의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황성신문》도 1900년 당시 세금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⁶⁷ 이 기사는 우용정이 도민에게 훈령(訓令開運會社中)⁶⁸을 내릴 때 밝힌 내용과 중복된다. 다만 우용정은 수출입을 구분하지 않았고 '세금'이라고 범칭했다. 그러므로 부산에서 들여온 화물에 일본 수입품도 포함되는지는 알 수 없다. 일본에서 들어오는 물품을 포함한다면 이에 대한 세금은 관세다. 그런데 세금은 도감의 약속을 따른다고 했지만 관세가 매겨진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관세라면 부산항에서 납부해야 하므로 울릉도에서 징세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후 일본 측도 수출입세를 언급했으나 수입화물에 대한 세금 즉 관세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우용정의 조사 이후에도 대한제국은 일본인의 철수를 계속 요청했다. 그러나 일본 공사는 대한제국 관리와의 면담 자리에서 울릉도 문제는 한인과 일본인 모두에 책임이 있다며 철수를 거부했다.⁶⁹ 게다가 되거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까지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⁷⁰ 일본 측은 수목 벌채는 도감의 부탁으로 이뤄진 것이며, 합의에 따른 매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섬에서 본방인과 도민과의 사이에 행해지는 상업은 수요 공급상 긴요하여 도민의 바람에 따라 촉발된 것으로서, 도감은 수출입 화물에 대해 수출입세 같은 것을 징세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⁷¹ 그러므로 일본인이 철수할 경우 "귀 정부도 종래 징수하던 수세(收稅)에 결손이 생기는 불이익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니 "퇴거를 고집하기보다 출입화물에 관세를 징수하고, 수목 벌채에 대한 방략을 강구하고,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편의함이 될" 것이라고 했다. 즉 일본은 수출입세, 관세 등을 운운하며 현상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카쓰카가 주로 수출세로 칭한 데 비해, 하야시 공사는 수출세와 수입세를 병칭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한국은 이를 거부했다.⁷²

3. 박제순의 '수출입세' 인식

외부대신 박제순은 하야시 공사에게 조목별로 반박했는데⁷³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즉 조선인이 울릉도에 들어온 지는 18년 전인 반면 일본인이 들어온 지는 5~6년 아니면 3~4년 전이며, 연월을 따질 것도 없이 비(非)통상항구에 멋대로 들어와 거주하고 투운(偷運)하는 것은 분명한 조약 위반(違章)이다. 도감이 벌목에 합의한 것은 전 도감의 한때의 과실에 지나지 않는데, 일본이 이를 빙자하여 남벌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제순은 일본이 칭하는 수출입세와 100분의 2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론했다.

64 수입관세는 면세품도 있지만 보통은 5~35%까지로 다양하다(해관세칙).

65 우용정의 '울도기'에는 가타오카 히로치카로 나온다.

66 「鬱陵島 調査概況 및 山林調査概況 報告의 件」, 『주한일본공사사관기록』, 14권.

67 "울릉도 도민들이 합자하여 울릉도에 개운회사(開運會社)를 두고 부산의 뚝단배 개운환(開運丸) 한 척을 구입하여 섬 안의 여객과 상품을 실어 운송하되, 그 섬에 들어오는 화물에 대한 세금은 도감의 약속을 일체 따른다고 한다.", 『鬱陵島船運』, 《황성신문》, 1900. 6. 20, 잡보.

68 "각항(各項)의 사안과 항구에 들어오는 화물에 거두는 세금은 일체 도감의 약속을 따라야 할 것이다."

69 "鬱陵島事件의 會議", 《황성신문》, 1900. 6. 29, 잡보.

70 「구한국외교관계부속문서」, 제7권 교섭국일기 1900. 9. 5; 「구한국외교문서」, 제5권 일안 5 문서번호 5901(1900. 9. 5).

71 「구한국외교문서」, 제5권 일안 5 문서번호 5901.

72 「구한국외교관계부속문서」, 제7권 교섭국일기(1900년 9월 7일 회답서).

73 「구한국외교문서」, 제5권 일안 5 문서번호 5905. 이것은 일본의 95호 조회에 대한 조목이다. 「내부래거간」, 8(광무 4년 9월 7일 자 조목 64호).

도감이 세금(稅款)을 징수한 것은 다만 수출화물(出口貨)을 가지고 100분의 2세를 매겨 벌금(罰款)을 대신했으니(百抽⁷⁴以代罰款), 이것은 일인(日人)의 자원으로 인한 것이다. 수입화물(進口貨)의 경우는 이 예에 있지 않다. 수출입세의 경우라면 어떻게 수출품(出貨)에는 징세하면서 수입품(進貨)에는 징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한 어떻게 100분의 2를 징세하는 법이 있을 수 있겠는가.⁷⁵

일본 측이 수출세와 수출입세, 관세를 혼용하고 있는 데 비해, 박제순은 수출입세, 수출세, 수입세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울릉도의 일본인들이 수입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음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일본인들이 수출세라고 주장하는 100분의 2세가 터무니없이 적은 세율임으로 수출세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100분의 2세는 수출세라기 보다는 벌금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에 “만일 이로써 화물에 관세를 징수하고 벌목에 대한 방략을 세우고 현상을 유지할 계획을 한다면, 조약이라는 것이 다시 강구할 만한 곳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후에도 정부는 울릉도 징세가 불법임을 계속해서 지적하였다. 박제순의 불법성 운운은 그가 우용정의 보고를 통해 도감의 징세사실을 파악한 이후다. 그렇다면 이는 1900년 9월까지도 도감에 의한 징세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었고, 일본 측도 이를 ‘수출세’라고 주장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수출입세’라는 표현은 우용정이나 김면수보다 아카쓰카가 더 선호했다. 아카쓰카는 ‘수출입세’ 납부를 부각시켜 일본인 거주와 교역의 정당성을 주장할 의도에서였다. 이에 비해 우용정은 1897년 전후의 수세관행을 포착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일본인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에게 세금이란 정식 수출입 관세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1900년 울릉도 조사 전후에는 ‘수세’를 불법으로 여기던 박제순이 칙령 제41호를 제정하던 무렵에는 ‘수세’에 대한 인식을 확대해갔다. 칙령 제41호의 제4조에 “경비는 5등군으

74 원문에는 推로 되어 있으나 抽의 오류다.

75 ‘三. 島監之徵收稅款者 只將出口貨值百抽二 以代罰款 此由日人之自願 至進口貨 則不在此例 倘如輸出入稅 則何可徵之於出貨 而不徵於進貨 又寧有值百抽二之法’ (1900년 9월 7일 외무대신 박제순의 조복 64호) 『구한국외교문서』 제5권 일안 5 (문서번호 5905).

로 마련하되, 지금은 이액(吏額)이 미비하고 모든 일이 초창기이므로 울릉도에서 수세(收稅)한 것 중에서 우선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초창기이니 수세한 것 중에서 우선 비용을 마련하라”고 한 것은 비정상적 수세라도 일단 ‘수수’로서 활용하도록 인정한 것을 의미한다. 당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울릉도 문제를 두고 논박한 과정을 보면, 세금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었다. 일본인 납세의 불법성도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인의 해체세만으로는 재정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일본은 “수세(收稅)에 결손이 생기는” 운운하며 한국의 약점을 건드리며 수세관행을 인정할 것을 유도했다. 이에 그동안 불법으로 간주하여 금지했던 일인 납세를 묵인하는 양상으로 칙령 단계에 와서 바뀐 것이다. 칙령에는 “우선 마련할 것”이라고 하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군수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일본인의 거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단계는 아니었으므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는 계속해서 철수를 요청했다.

4. 미등록 일본 선박의 울릉도 출어 증가

1900년 8월에도 “일본에서 한국 연해 어장으로 곧바로 와서 감찰 없이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⁷⁶ 즉 불법 도항자들이 많았다. 이어 1901년 5월에 조사한 부산해관의 스미스⁷⁷는 사카이에서 300~400명이 울릉도에 온 것

으로 보았는데, 이들도 말하자면 불법도항자인 셈이다. 이들을 불법도항자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조선어업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선박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조선어업협회는 1897년 부산에서 설립되었다. 조선어장에서 일어나는 일본 어민의 풍기단속 신민통제법안 실행을 독촉하기 위해서였다.⁷⁸ 조선어업협회는 매월 조선 연해를 순라하고 그 내용을 『대일본 수산회보』⁷⁹에 실었다. 이 회보에는 선박의 출신지역과 부속선 현

76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제14권 「日韓貿易 振興擴張 등에 관한 件」 [別紙 2] 『朝鮮沿海漁業 保護 및 取締에 관한 卑見』, 1900. 9. 1(1900년 8월 29일자 보고).

77 보고서는 8월에 올렸고, 《황성신문》은 이를 1902년 4월에 보도했다.

78 김수희, 2010, 『근대 일본어민의 한국진출과 어업경쟁』, 경인문화사, 47쪽.

79 이하 『수산회보』로 약칭함.

황, 인원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안에 돛토리현이나 시마네현에서 온 선박현황은 기록이 없다.⁸⁰ 1899년 하반기 현황을 기록한 『수산회보』는 입회 출어선의 현별 현황을 표로 보여주고 있는데, 시마네현에서 온 선박은 모두 11척으로 나오지만, 돛토리현에서 온 선박 수는 나와 있지 않다.⁸¹ 같은 해에 부산해관에서 면장을 교부받은 4인승 이하 선박은 모두 1,095척이었고 납세액은 3,165엔이었다.⁸² 천여 척이 넘는 선박이 부산항을 통해 조선 연안으로 들어왔고 울릉도에 수백 척의 선박이 왕래하고 있었는데도 시마네현에서 온 선박으로 등록된 것이 11척에 그쳤다면 대부분 등록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11척을 제외한 선박이 울릉도에 오면서 자신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한 협회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협회의 보호를 포기하고 불법조업으로 인한 이익에 눈을 돌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00년 5월에는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朝鮮海通漁組合聯合會)가 부산에서 설립되었다.⁸³ 1900년 러시아가 마산포를 조차하자 일본은 자국어민을 통제하고 감독할 기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⁸⁴ 이어 일본은 1902년에 외국영해수산조합법을 제정했고, 기존의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 명의를 변경하여 조선해수산조합을 설립했다. 조선 어업 근거지 결성과 어업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런 제도적 정비는 지정된 문권(文券) 주인만이 어장 주인과 계약을 맺어 판매권을 획득하게 할 목적에서였으나⁸⁵ 울릉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울릉도에는 어장이 없었고, 목재와 곡물이 주 교역물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어업협회나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 등의 기구를 통해서도 울릉도로 오는 선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 본부는 1900년에 울릉도로 출어한 선박의 현별 조사를 한 적이 있다.⁸⁶ 히로시마에서 622척, 아마구치에서 210척, 오이타현에서 62척의 어선이 왔으며, 후쿠오카에서는 23척이 온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시마네현은 18척이고, 돛토리현에서 온 선박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때도 실제로 울릉도를 드나들던 선박의 대부분은 돛토리에서 온 선박이었다. 이들은 미등록의 선박이었기 때문에 연합회가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한해통어지침』을 쓴 구즈우 슈스케(葛生修亮)는 조선해통어조합의 순라시찰원이기도 했다.⁸⁷

이렇듯 미등록 일본 선박의 울릉도 출어 및 일본인 거주가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음에도 대한제국은 여전히 일본인의 철수를 요구했다. 특히 1900년 9월에는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울릉도 문제를 두고 갈등이 첨예했다. 9월 7일자 박제순의 조복에 대해 하야시 공사는 9월 10일자 회신에서 철수를 약속했으나 일본인들은 여전히 철수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야시는 조약이란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일본에게만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조선 관리에게 전가하기까지 했다.⁸⁸ 나아가 울릉도에서 한일 양국인의 거래는 서로의 편익을 위한 것이며 그 책임은 도감이 이를 관습화한 데 있다고 했다.⁸⁹ 이는 도감에 의한 수세관행을 일본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는 위에서 언급한 주장의 반복이기도 하다. 내부대신 이견하는 10월 2일자 조회에서 일본인의 울릉도 철환(撤還)을 또다시 강력히 요청했다. 그 역시 이전에 일본이 했던 진술

을 반복하면서 논박했다. 이견하는 일본 측이 편선을 보내면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한 것이 술수라는 사실도 간파했다.⁹⁰ 일본 측은 일본인의 거류와 통상행위를 선교사의 행위에 비겨 합법성을 주장했고, 자국인의 울릉도 재류를 거의 기정사실화했다. 이런 상황은 대한제국으로 하여금 일본인의 퇴거가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도록 유도해왔다.⁹¹

80 『수산회보』 214호(1900. 4. 30.)·215호(1900. 5. 30.).

81 『수산회보』 218호(1900. 8. 30.).

82 한 척당 세액금이 3엔인 것이다.

83 1899년 6월 일본은 마키 나오마사[牧朴愼]를 부산에 파견했다. 葛生修亮, 1903, 『한해통어지침』, 9쪽.

84 『수산회보』 147호·188호·208호.

85 『한국수산지』 1집, 340쪽; 김수희, 앞의 책, 58쪽.

86 1900년 1~10월 사이 출어선 현별 표(6월 이전 조사에 따름) (『메이지 33년 업무보고』,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본부, 1900년 12월 인쇄, 52~53쪽).

87 『朝鮮海通漁組合聯合會報』 4호(1901).

88 『구한국외교문서』 제5권 일안 5 문서번호 5907; 『내부래거문』 1900. 9. 12: 1900. 9. 15.

89 『구한국외교관계부속문서』 제7권 교섭국일기 9월 12일; 『구한국외교문서』 제5권 일안 4 문서번호 5909.

90 『내부래거문』 조회 제19호(1900. 10. 2). 내부대신 이견하가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보낸 조회에 나온다(…… 如差便船 則飭發召喚狀等說이 只事延拖之計이오니 ……).

91 『내부래거문』 조회 제19호(1900. 10. 2) (此次該公使來文辭意가 此推彼捩의 惟事延拖호오니 茲案出梢가 渺無其期이오며 徒事虛文이 亦非良策이온즉 ……).

IV. 칙령 제41호의 제정과 '세금'의 성격

1. 칙령 전후 '수세'의 인정과 양상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위와 같은 배경 아래 나온 것이다. 즉 일본의 침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의 하나로 칙령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울릉도를 울도(鬱島)라 하고 감무(監務)를 설치하기로 내부에서 제안했는데 의안이 갑자기 변해 청(廳)을 신설하기로 했다”⁹²고 했듯이 감무제에서⁹³ 청의 설치로 바뀌었다가, 칙령 제41호로 다시 울도군의 신설로 바뀌었다. 이런 관제의 잦은 개변이야말로 그 자체가 울릉도의 급박한 상황을 말해준다. 10월 22일 내부대신 이건하는 ‘鬱陵島를 鬱島로 改稱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에 關한 請議書’⁹⁴를 의정부 의정 윤용선에게 제출했다.⁹⁵ 이 청의서는 말하자면 칙령안이다. 내부는 이 청의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배계주의 보첩과 내부 시찰관 우용정의 보고서, 동래 세무사의 시찰록⁹⁶을 대조하여 조사한 바 있다.⁹⁷ 청의서는 10월 25일 칙령 제41호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것’으로 제정되었고, 27일 관보(1716호)에 게재·공포되었다. 이 칙령에 울도 군수의 관할구역으로 ‘석도(石島)’를 명시한 점이 독도 영유권과 관계되지만 세금 관련 조항이 삽입된 점도 독도 영유권과 연관성이 있다. 청의서가 제출된 배경에는 배계주의 보고서와 1900년 6월 조사단의 영향이 컸다. 대한제국이 칙령 제정에 도감의 보고를 참조한 것은 일본인과의 교역을 인정한 것이며, 수세도 인정한 것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칙령 제41호 이후 울릉도의 수세 양상은 어떠한가? 1901년 5월, 울릉도를 시찰한 부산해관 세무사 스미스(土彌須)는⁹⁸ 일본인의 어업 현황을 보고했

다. 그에 따르면, 일본인은 규목을 벌채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며, 쌀과 소금, 장, 술, 식품과 기타 포목을 울릉도로 수입하여 잡곡과 물물교환하거나 화폐로 바꾼다. 그런데 그는 목재와 곡식 등 각종 수출입에도 세금이 없다고 했다. 이는 앞서 해관 세무사 라포르트가 세금은 없고 중개수수료만 있다고 본 것과 같은 인식선상에 있다. 수출품으로는 말린 전복과 해삼, 황두(黃豆) 삼백 석 및 끈끈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비슷한 시기에 구즈우 슈스케⁹⁹도 세금에 관해 언급했다. 그는 “본방은 화물을 매각할 때 구전 100분의 2를 관에 납입하고, 목재에 대해서는 선박 한 척당 100냥(우리 20원)을 납입하여 공공연히 밀무역을 해왔다”¹⁰⁰고 했다. 구전으로 100분의 2세가 그대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물론 1898년 이전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언급은 1901년 당시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시까지 이런 관행이 남아 있지 않았다면 그에 대해서도 언급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즈우는 일본인이 대부분 돛토리현에서 직접 온 자들로 수목 벌채 및 대두와 우뭇가사리 밀수출에 종사한다고 보았다.¹⁰¹ 그는 ‘양코도’ 즉 독도에 대해서는 근해에 전복과 해삼, 우뭇가사리가 풍부하며, 해마 즉 강치도 무수하고 상어잡이가 유망하다고 했다. 그의 세금 관련 언급은 1899년 9월 《황성신문》 기사와 유사하다. 구즈우는 1901년에 이들 내용을 기술하면서 ‘밀수출’이라고 했고, 『한해통어지침』(1901년 탈고, 1903년 발간)을 저술할 때도 이를 반영했다.

앞에서 해관 세무사인 라포르트와 스미스는 둘 다 ‘세금’이 없다고 했음을 언급했다. 그런데 조선어업 현황에 가장 밝은 구즈우도 ‘밀수출’이라는 말과 함께 100분의 2세를 언급하고 있다. 라포르트나 스미스가 ‘세금’이 없다고 했을 때의 세금은 ‘관세’를 의미한다. 이보다 1년 전 울릉도를 조사한 아카쓰카는 ‘수출입’ 통계를 말했고, 하야시 공사는 납세를 구실로 거주권을 주장하기까지 했는데, 해관의 스미스가 이런 양태를 파악하지 못했을 리는 없다. 구즈우가 100분의 2세를 파악하고 이를 밀수출로 보았다면 그도 세금으

92 “鬱島設郡”, 《황성신문》, 1900. 10. 8. 집보.

93 도감을 감무로 바꾸어 5년 임기제로 하고 내부의 지휘를 받도록 결정했다(“울도 관제의 개정”, 《황성신문》, 1900. 3. 1. 집보).

94 『각부 청의서 존안』(奎 17715)에 들어가 있다.

95 『각부 청의서 존안』 17 ‘鬱陵島를 鬱島로 改稱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에 關한 請議書’.

96 동래 감리 서리는 김면수이고, 청의서 내용은 라포르트의 보고서와 일치하는 바가 많으므로 「시찰록」은 라포르트의 보고서를 말한다.

97 1900년 10월 22일 청의서. 『각부 청의서 존안』.

98 1901년 8월 20일 제출했는데 《황성신문》(1902. 4. 29. 별보)에 “스미스의 울릉도 시찰보고”로도 보도되었다. 《山陰新聞》(1902. 5. 14)에도 “울릉도의 일본인”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99 구즈우는 1899년 2월 초순 부산을 출발, 조선 연해를 시찰한 뒤 6월에 부산으로 돌아와 조선어업협회에 가입, 다시 이 협회의 순람선에 탑승, 4도의 연해를 시찰했다. 그는 1902년에도 시찰했다.

100 葛生修亮, 1901. 6. 15, 『韓國沿海事情』, 『黑龍』, 第一卷 第二号, 92쪽.

101 葛生修亮, 1903, 『韓海通漁指針』.

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모두들 관행적인 구문과 통상적인 관세를 다른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후에도 울릉도에서 관세로서의 세금 납부현황은 보이지 않지만 수세관행은 지속되었다. 다만 그 세율이 「울도군 절목」에서는 100분의 1로 낮아졌다.

2. 100분의 1세의 잔존과 수출입 현황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에서 '수세'를 인정했지만, 그 세목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아니었다. 수세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은 1902년에 나왔다. 1902년 4월, 내부는 「울도군 절목」을 울도 군수에게 내렸는데¹⁰² '상선 및 출입 화물에 대한 징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절목의 세금 규정을 보면, 1899년과 1901년까지 지속된 세금 규정과 같은 맥락에서 언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해채세와 조선세, 화물세라는 세 가지 세목의 연장선상에서 언급한 것인데 다만 이 시기에 조선세는 없어졌기 때문에 해채세와 화물세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채세가 조선인에게 해당되는 것임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그 밖에 출입하는 화물'에 대한, 이른바 '화물세'가 본국인이 아니라 일본인 수출입(주로 수출) 화물에 대한 세금이라는 것은 앞에서 인용했던 1899년의 여러 기록으로 알 수 있다. 수출품은 주로 목재와 곡물, 해산물인데, 이는 앞에서 나왔던 2%의 구문(수출세)과 같은 맥락에서 언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기존의 2%에서 「울도군 절목」에서는 종가 100분의 1세'로 줄어들긴 했지만 이것도 엄연한 과세다. 이런 내용이 절목에 언급되고 있음은 대한제국이 1902년에도 울릉도의 관행을 인정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며, 세율을 감소해서라도 명기한 것은 한편으로는 그만큼 일본인의 세수를 무시하기 어려웠던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일본인의 조세저항이 심해졌음을 보여준다. 절목의 작성에는 배계주가 관여했지만 절목을 낸 것은 대한제국 내부다. 대한제국이 칙령 이후 울도군의 행정정비와 일본인 축출을 위해 부단히 방책을 강구하고 있었고 그것이 「울도군 절목」으로 나온

102 「울도군 절목」과 수세 관계에 대해서 는 유미림, 2013, 앞의 글 참조.

것임을 보여주는 문서가 있다. 외부가 1901년 10월 울도군에 낸 훈령이다. 그 내용은 “울도군이 신설되어 아직 시작단계인데 외국인이 가옥을 짓고 영업까지 하게 되는 사태에 이르렀으니 조약위반일 뿐 아니라 우리 백성의 이해와도 관계되니 엄하게 더 금칙(禁飭)하라”는 것이었다. 이 훈령을 보면, 문맥이 절목의 문맥과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훈령에는 “貴郡新設 庶事草創 外國人藉稱遊歷”¹⁰³이라고 했는데, 다음해의 절목에는 “本郡陸設 今既兩年 全島庶務尙多草創之中”¹⁰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훈령에서 가옥을 짓고 영업하는 자를 '외국인'으로 칭했는데 절목에서도 가옥과 전토를 몰래 사는 사람을 '외국인'으로 칭했다. 또한 훈령에는 '금칙'이, 절목에는 '영칙(令飭)'이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이는 주로 관문서에서 보이는 용어다. 대한제국이 칙령을 공포한 이후 훈령과 절목을 잇따라 내어 울도군의 정비와 외국인 즉 일본인의 불법행위 단속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이로써도 알 수 있다. 울도군에서 점차 일본인 세력이 강해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수출세 납부를 거부한 흔적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일본 정부는 이를 의도적으로 '수출세'라고 불렀다.

대한제국이 칙령에 '수세'조항을 둔 것은 수세관행의 인정이다. 나아가 대한제국은 세금을 상납하게 하는 대신 군수의 사용권을 허락했다. 당시는 배계주가 도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인과의 갈등도 심하던 때였다. 그는 하타모토 에이지로와 와키타 쇼타로(脇田庄太郎)의 불법 교역을 인지하고 그에 결탁한 한인들도 징계하려 했다. 1902년에는 일본이 경찰서를 신설할 정도로 세력이 강해지고 있었지만 납세를 거부하지는 않았다. 일본인은 한인에게서 화물을 구매하고, 어로와 가공에 한인을 고용해야 했으므로 한인과 원만히 지내는 것이 중요했다. 한인에 의한 수출은 한인 중개상이 조선

내륙으로 수출하는 경우와 일본인에게 판매·수출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화물수출은 통상 대(對)일본 수출이었고 납세자도 일본인이었다. 한인이 수출하는 품목에 해산물은 없었다. 1902년 울릉도의 니시무라 정부는 “본도인이 랑코 도로 전복을 채취하러 간다”고

103 「구한국외교관계부속문서」 제7권 교섭 국일기, 1901. 10. 30(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1972).

104 “본 군(울도군)이 승설(陸設)된 지 두 해가 지났는데도 전도(全島)의 서무(庶務)가 아직 초창(草創)함이 많은 가운데 ……”.

했듯이, 독도 근해 어업은 주로 울릉도인(일인 포함)이 담당했다. 랑코 도 즉 독도의 어업에 대해서는 “이 섬에 음료수가 없으므로 오래도록 출어할 수 없고 4, 5일이 지나면 본도로 귀항한다”¹⁰⁵고 했으므로 울릉도에서 계획해 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때의 ‘본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울릉도에서 계획적으로 출어할 수 있는 지는 선박과 자금력을 보유한 일본인이었다. 니시무라는 “수출입 화물은 모두 도동에 모인다”고 했다. 구즈우도 돛토리현에서 울릉도로 도향한 자들이 우뭇가사리를 수출한다고 했으므로 이것도 수출품에 포함된다. 랑코 도의 전복과 우뭇가사리, 울릉도의 전복과 우뭇가사리가 모두 수출품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화물도 대두와 마찬가지로 종가 100분의 1세가 부과되는 품목인 것이다.

1905년 12월에도 부산영사관보 스키 에이사쿠는 울릉도의 현황을 외무성에 보고했다. 여기에는 1904년과 1905년의 수출입 현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 현황과 거주지, 직업 등이 나와 있다. 여기에는 대부분의 일본인이 도동에 거주하면서 수출입과 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¹⁰⁶ 나와 있다. 이는 수출입화물이 도동에 집합된 것과 관계있지만, 이로써도 일본인이 수출입과 어업을 활발히 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역시 일상조합을 언급하고 일본인의 상행위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수입품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직접 울릉도로 화물을 수입한다고 했다. 말하자면 부산항을 거치지 않은 밀수인 것이다. 오키하라도 1906년 당시 수출품이나 수입품 어느 것에도 관세가 필요없다고 했다.¹⁰⁷ 그가 구문에 해당되는 수출세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도 구문을 관세로 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수출품에는 세금이 매겨졌다 할지라도 수입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관세 개념으로 본다면, 수출품에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음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았지만 납세행위 자체가 없

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도 이미 언급했다. 한국 정부도 울릉도에서 이뤄지는 수출입과 세금에 대해 관세로 공식 인정한 바는 없다. 그런데도 일본인은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여전히 ‘수출세’를 거론하고 있다.

3. 1906년에도 ‘수출세’ 등장

일본인들이 이른바 ‘수출세’를 납부한 사실은 1906년 3월에도 확인된다. 그들이 만든 ‘일상조합 규약’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일상조합(日商組合)은 재도(在島) 일본인의 질서 유지, 풍기 진작, 무역 장려, 공익 증진을 위해 조직되었다.¹⁰⁸ 1901년 4월에 조직하여 1902년 6월에 인가받았으며 도동에 사무소를 두었다. 조합 규약에 따르면, 모든 도향자는 “3일 이내에 조합 가입료로 한전(韓錢) 1백 문(文)을 내도록 하고, 귀국자는 5일 이전에 내도록 한다”고 하여 가입을 의무화했다. 귀국자도 가입료를 내게 했으므로 단기 출어자에게도 이 규정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규약 가운데 “조합 유지비: 화물 주인에게서 수출세의 5/1000를 징수한다”는 것이 있다. 이 규약은 모든 수출업자 즉 화주(貨主)에게 수출세를 부과했음을 보여준다. 「울도군 절목」이 이때도 적용되고 있었다면 화주는 100분의 1세를 수출세로 울도군에 납부했다는 말이 된다. 설령 절목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해도 ‘수출세’세목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어떤 식으로든 화물에 대한 세금을 울도군에 납부했으며 이 수출세 가운데 다시 1000분의 5를 조합 유지비로 충당하도록 일본인끼리 규약을 맺었음을 알 수 있다. 조합은 1902년 6월에 인가받았지만 수출세는 조합 설립 이전부터 징수해오던 것이었다. 오키하라가 울릉도를 방문한 1906년에 조합장과 부조합장의 이름을 언급한 것을 보더라도 조합이 존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06년에도 일본인들이 수출세를 납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수출세’가 관세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울릉도에 온 일본 선박들이 불법 도항자였음을 반증한다. 다카오 서기생은 조선통어조합연합회본부의 조사에 의거하여 1899~

105 「韓國鬱陵島事情」(1902. 5. 30), 일본 외무성 자료 6.1.6.10, 『부산영사관 보고서 2』(『通商彙纂』10책 제234호, 1902년 10월 16일 에도 동일본 내용이 실려 있음).

106 1905년 12월 조사 당시 일본인 95가호, 인구 302명 가운데 51호, 180명이 도동에 거주했다. 이 가운데 수입상 13명, 수출상 9명, 중개인 9명, 어부가 24명이다. 한인은 남양동(90호), 천부동(76호), 저동(62호), 사동(53호), 태하동(40호) 순으로 거주하고 있다(일본 외무성 자료 6.1.6.10, 『부산영사관 보고서 2』, 「울릉도 현황」, 1905년 6월 조사 당시는 110가호, 인구 366명이었다(『통상회관』, 50호).

107 유미림, 2009, 『「독도와 울릉도」 번역 및 해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1쪽. 오키하라는 만 하루 이상을 울릉도에 머물며 조사활동을 벌였는데, 관세가 없다고 기술한 반면 수출세도 언급하고 있어 서로 맞지 않는다.

108 유미림, 2009, 앞의 책, 74~75쪽.

1902년까지 조선해로 출가(出稼)한 현별 어선의 수를 아래와 같이 밝힌 바 있다.¹⁰⁹

출신현/연도	1899	1900	1901	1902	합계(척)
미에현	10척	13	10	21	54
시마네현	11	18	12	0	41
돗토리현	0	0	0	4	4
히로시마현					1627
아마구치현					655

위 통계로 알 수 있듯이, 시마네현과 돗토리현의 선박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적다. 마찬가지로 농상무성이 출어자 수와 현별, 중별, 포어 중별 및 어획고 등을 원산 지부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잠수기/잠어선/부속선/합계/승조인원 등이 나가사키는 10척/0척/4척/14척/112명인 데 비해, 돗토리현은 0척/3척/0척/3척/14명으로 나온다. 시마네현에 관한 통계는 안 보인다. 『한국수산행정급경제(韓國水産行政及經濟)』에는¹¹⁰ 1900~1902년 통어조합에 신고한 선박 수가 나와 있는데, 1902년에 돗토리현은 4척으로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울릉도에 있던 선박의 대부분은 돗토리현에서 온 것이었다. 따라서 울릉도 선박의 대부분이 통어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미등록 선박임을 알 수 있다.¹¹¹ 『한국수산행정급경제』에도 “한국의 수출세는 모두 중가(從價) 5분(分)이며, 본방 내지에서의 수입세는 일본의 개정 세율에 의한다”고 했다. 그러나 울릉도 수출세는 중가 5분이 아니었고 수입세는 없었다. 또한 『연합회 회보』 「잡보」의 ‘한해 출어 조합규약’에 따르면, 12조에 “어획물과 제조물을 내지로 운반할 때는 바로 본부(부산)에 통지하여 역원(役員)이 입회한 뒤에 매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¹¹² 그러나 울릉도에서 운반할 때 일

본인들이 부산에 통지하여 관리 입회하에 매각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울릉도에서 일본으로 직송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본래 개항장의 세금은 어업세·채어세(晒魚稅)·출구세가 있었고, 수입세와 수출세가 있었다. 정식 수출입세는 해관을 통해 징수되지만, 울릉도는 비개항장이므로 징수 자체가 불법이다. 1883년 「조일통상장정」에 따르면, 7조에는 해관 허가증 없이 화물을 선적·이동·하역하는 모든 경우, 관에서 화물을 몰수하게 했다. 18조에는 “조선국 통상 항구에 들어와 관세를 완납한 각 화물을 조선국 각처로 운송하는 것은 모두 운반세 및 내지의 관세와 기타 일체의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조선 각처에서 통상 항구로 운송하는 화물도 운반세, 내지 관세 및 기타 일체의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일단 부산항에서 관세를 납부한 뒤 다시 울릉도로 가져간다면 그 화물에는 일체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수출할 때도 하역지에서 관세를 납부했다면 울릉도로 들어올 때는 수입 관세를 물지 않는다. 그러므로 울릉도에서 사카이로 출항하거나, 사카이에서 울릉도로 입항한 화물에 대한 징세는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다.

통상장정 41조로 인해 양국 어선이 상대방 국가 연해에서 어로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는 어세를 납부한 선박에 한해서이고 그 경우에만 매매가 허락된다. ‘조영수호조약(朝英修好條約, 1883. 10)도 마찬가지로 “입출항하는 화물은 먼저 검열을 받은 뒤 세금을 정하여 세금 항목을 완납해야 출입할 수 있다”고 했고, “이미 납부한 출항세는 처음에 출항한 통상 항구에서 전부 환급해주도록” 규정했다. 그러므로 울릉도 입도 전 부산항에서 출항세를 납부했다면 울릉도에서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1889년 통어장정에 이어 통어규칙¹¹³이 체결되자, 어업허가증 소지자의 연안 3해리 이내 어업이 허가되어 일본 선박은 면허세를 1년으로 하되 선원 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냈다.

그런데 울릉도에 입도하여 어로와 교역을 한 선박은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은 밀어선이었다. 이 때문에 ‘구문’이라는 비정상을 택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구문’을 ‘수출세’라고 주장하며 재류와 교역의 합법화에 이

109 시마네현과 돗토리현의 숫자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히로시마와 아마구치는 합계만 써주었다(『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회보』 [이하 「연합회 회보」로 약칭함] 4호, 1903년 1월 인쇄,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본부 발행, 부산).

110 한국정부재정고문본부 편, 1904, 『韓國水産行政及經濟』, 124쪽.

111 울릉도에 와 있던 일본 선박은 1889년에 24척, 일본인은 186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統署日記』 20책, 고종 26년 6월 28일조; 한우근, 1971, 「개항 후 일본어민의 침투」, 『동양학』 1, 18쪽에서 재인용). 이후에는 더욱 증가했을 것이다. 1902년 울릉도 재류 일본인 가운데 돗토리현 출신은 모두 60명, 시마네현 출신은 307명이다(『메이지 35년 울릉도 상황』, 『통상회관』 234호, 1902년 니시무라 조사에 따름).

112 『연합회 회보』 4호(1903).

113 주요 내용은 어업면허세 건, 포경 특허 건, 탈세자 처분 및 어민 단속에 관한 건으로 이 규칙은 조인일로부터 2년간 시행된다(『韓國水産行政及經濟』, 1904, 1~2쪽).

용하려 했지만, 오히려 이런 사실이 독도 영유권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4. 독도강치와 수출세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불법 편입했지만, 1904년과 1905년의 울릉도 수출통계에는 강치가 들어 있다. 이 강치는 울릉도에서 포획한 것인가, 독도에서 포획한 것인가, 독도강치라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울릉도에서의 수출세는 독도강치에도 적용되는 것인가? 강치는 본래 독도만의 산물은 아니었다. 울릉도에서 강치를 잡은 사실은 에도시대 기록에도 보인다. “다케시마(울릉도)에서 강치를 잡아 그 자리에서 기름을 짜 돌아와 장사를 합니다. 기름에 대한 운상(運上)은 없습니다”¹¹⁴라고 했다. 이 기록은 에도시대에 요나고(米子)어업자들이 울릉도에서 강치를 잡아 장사해왔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운상’¹¹⁵은 없다고 했다. 즉 세금을 낸 적은 없다는 것이다. 한편 독도에서 강치를 잡았다는 기록도 있다. 에도시대에 “1656년 요나고 오야 구에몬(大谷九右衛門)이 울릉도에 왕복하는 도중 숙박하였고, 강치(원문은 아사카)를 사냥하여 약간의 어유(魚油)를 채취하고 있다”¹¹⁶는 기록이 있다. 1906년에 오쿠하라 헤키운은 1897년경 오키의 어민이 울릉도에서 난파한 어선을 수색하다 독도(원문은 리양코 섬)에서 강치 50~60마리를 잡아온 사실을 기록했다.¹¹⁷ 또한 그는 “(울릉도로) 무리지어 오는 것 중에 드물게는 강치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¹¹⁸고 했다. 다만 1906년에 강치는 울릉도의 주요 어종이 아니었다. 조선시대 문헌에도 강치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가지어가 나오므로 ‘가지도’라 한다고 했는데, 이때의 가지도가 독도인가 울릉도인가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울릉도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¹¹⁹ 1696년 안용복이 강치기름을 달이고 있던 일본인을 쫓아낸 곳은 ‘자산도’ 즉 독도

로 되어 있다.¹²⁰ 조선인들은 17세기부터 울릉도와 독도에서 강치를 목격했지만 상업을 목적으로 포획한 적은 없었다.¹²¹ 그러나 20세기 초엽이 되면 강치는 주로 독도에서만 서식하는, 이른바 ‘다케시마강치’다.¹²²

강치의 특성에 대해서는 오쿠하라, 나카이 요자부로외의 ‘대하원’, 다케시마어렵합자회사 관련 기록 등에 나오는데 대체로 비슷하다. 그것은 강치가 생식을 위해 조용한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인도에만 모여드는 동물이라는 것이다. 독도는 무인도였으므로 생식을 위한 안전지대였다. 1906년에 오쿠하라가 독도에서 수천 마리의 강치를 목격했던 것도 생식을 위해 왔을 때였기 때문이다. “다케시마 강치는 생식을 방해받고 위해를 심하게 느낄 때는 절멸한다.” “강치는 매우 민첩하여 멀리서 선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금이라도 사람 냄새를 맡으면 재빨리 도망친다.”¹²³ 따라서 다케시마어렵합자회사원들이 독도에서 어렵할 때도 함부로 행동하면 강치들이 상륙하지 않고 도망가버렸기 때문에 매우 조심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린 강치뿐이었다. “(강치의) 성질은 굼뜨고 둔하지만

120 『속중실록』 22년(1696) 9월 25일(무인).

121 19세기 후반 이형오는 고종의 밀명으로 울릉도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울릉도기」(규장각 古 3428-207)에서 “뱃사람들이 가지어를 만나면 죽여 고기는 먹고 가죽은 이용한다”고 적었다.

122 다케시마강치와 지시마강치는 종이 다른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中渡瀨仁助 古술서, 「竹島漁業の變遷」, 「涉外關係綴(竹島關係綴)」, 昭和 28년). 이 글에서는 다케시마와 독도를 화자(話者)의 입장에 따라 칭하기로 한다. 『백문백답』 11항에도 ‘강치’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니혼아사카’ 즉 강치가 20세기에 들어와 울릉도에서는 모습을 감추었고 독도가 최후의 번식지라고 했다.

123 「諸官署雜書類」 중 「東島司執事侍史」(1906. 4. 2), 「竹嶋貸下海驢漁業書類」.

124 유미림, 2009, 앞의 책, 24쪽.

125 「諸官署雜書類」 중 「答申書」(1908. 4. 12), 「竹嶋貸下海驢漁業書類」.

항상 바위 위에서 숙면을 취한다.”¹²⁴ 그러나 “강치는 머리를 맞추지 못하면 죽지 않는” 특성을 지녔다. 1904년에 본격 어로에 나선 나카이 요자부리가 강치를 포획할 때 폭발음을 내지 않으려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어구로는 자망을 선호했다. 총살과 박살의 방법도 있으나 총살은 육상에 올라와 있을 때만 가능하고 그나마도 명중하지 않으면 잃을 가능성이 컸으므로 세 가지 방법이 혼용되었을 것이다. 강치는 분만을 위해 3, 4월부터 몰려들며 분만이 끝나면 흩어지므로 독도에서의 어기도 7~8월까지였다. 나카이 요자부리는 독도의 주요 어종을 강치로 보았고, 따라서 독도의 가치도 강치에 있었다.¹²⁵

『군함니타카 전시일지(軍艦新高戰時日誌)』(1904. 9. 25)는 “리양코루도 암, 한인은 독도라고 쓴다”고 한 사실

114 「竹嶋之書附」 중 「1693년(元祿6) 5월 23일 覺」.

115 에도시대 잡세의 하나로 상업, 공업, 어업, 운송 등의 영업자에게 부과하는 영업세를 의미한다.

116 「竹島漁業の變遷」, 「涉外關係綴(竹島關係綴)」(昭和 28年).

117 유미림, 2009, 앞의 책, 20쪽.

118 유미림, 2009, 위의 책, 58쪽.

119 유미림, 2013, 앞의 글, 84쪽.

외에도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다.¹²⁶ 즉 울릉도에서 독도로 출어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어업자가 한인인지 일인인지 명시하지는 않았어도, 독도에서 40~50명의 인원이 열흘 동안 체재하면서 할 수 있는 어업은 강치 외에는 없다. 부산 영사관보 스킨키 에이사쿠[鈴木樂作]는 1905년 독도 출어자를 30인으로 보았고, 한인과 일인이 함께 간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¹²⁷ 니타카호가 기술한 40~50명도 한인과 일인 둘 다 포함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¹²⁸ 독도에서 이 정도의 규모로 열흘 동안 어로했다면 출어가 활발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독도로 출어하여 강치를 잡았는데 울릉도 수출통계에 강치가 들어 있다면, 이 강치는 독도강치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강치가 울릉도 수출품이었다면 수출세 징세대상임에도 틀림없다.

스킨키가 기록한 강치 수출통계에 따르면, '랑코도'의 강치잡이는 1904년경부터 울릉도민¹²⁹이 잡기 시작했다. 10명의 어부가 하루 평균 5마리를 잡았으며, 모두 3조, 30인이 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¹³⁰ 1904년에 니타카호는 '독도'라고 호칭했는데, 스킨키는 편입 이후 '다케시마'로 명명된 뒤인데도 '랑코도'로 호칭하고 있다. 일본 기록에는 1904년에 울릉도에서 온 이와사키 조가 한인을 데리고 와서 어로했으며, 한인이 포함된 이와사키 조는 1905년 3월에도 한인 7명, 일본인 3명, 배 2척으로 약 200여 마리의 강치를 포획했다고 했다.¹³¹ 이에 비해 나카이는 1904년 9월까지 한 철에만 강치 2,760마리와 염장한 가축 7,690마리를 얻었고,¹³² 1905년에 포획한 어획물 가격의 총액은 2,723엔 40전이였다. 이는 1905년 울릉도 수출액 824엔¹³³보다 거의 3배나 더 많은 금액이다.

1905년에 울릉도에서 온 어로자는 이와사키 조 외

126 "마쓰시마(울릉도-역자)에서 해마다 어업하러 오는 사람은 60~70석적(石積)의 일본배를 사용한 듯하다. 섬 위에 임시 소옥을 짓고 10일간 체재하여 많은 수확이 있다고 한다. 그 인원도 때때로 40~50명을 초과하는 일도 있지만 담수가 부족하다고 보고된 바는 없다."

127 『鬱陵島現況』(1905. 7. 31. 보고), 『통상회찬』 제50호(1905. 9. 3. 관보 9월 18일).

128 이 글이 일본인의 납세에 근거하여 실효지배를 입증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한인들이 독도에 가서 어로를 하고 임금을 받는거나 전복 등을 채취하여 일본인에게 매매하는 형식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울도군이 이들을 관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129 '울릉도민이 잡기 시작했다'고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본방인'이라고 하지 않고 '울릉도민'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일인과 한인을 모두 가리키는 듯하다. 실제 포획을 담당한 사람은 주로 한인이었다. 1905년에 출어한 3조 30여 명 중 한인은 19명, 일인은 13명이였다.

130 『鬱陵島現況』(1905. 7. 31. 보고), 『통상회찬』 제50호(1905. 9. 3. 관보 9월 18일).

131 「다케시마 강치잡이 실태 각서」, 『秘』竹島.

132 「리양고 섬 영토 편입과 대어 요청 설 명서 사본」, 『秘』竹島.

133 유미림, 2009, 앞의 책, 61쪽. 강치가죽(700)과 기름(124) 수출액을 합친 금액이다.

에도 2개 조가 더 있었다. 와키타 조, 우라고 조인데 이들은 모두 오랜 재류자들이다.¹³⁴ 이들도 독도강치를 울릉도로 가져와 일본으로 수출했다. 스킨키는 울릉도에서 강치가죽과 기름, 절임 형태로 일본으로 수출한 통계를 엔화로 환산하여 적었다. 1905년에 강치 수출통계가 보이는 것은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뒤에도 울릉도민이 독도로 출어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일본이 어업을 허가제로 하여 다케시마어렵합자회사에게 권리를 준 시기가 1905년 6월이기 때문이다. 이후부터는 다케시마어렵합자회사 사원만이 포획할 수 있었고 울릉도에서의 도해는 더 이상 허락되지 않았다. 1906년 울릉도 어종에 오징어·김·전복·미역은 보이지만 강치가 보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¹³⁵ 따라서 1905년에 강치가 울릉도 수출품인 한, 일본인들은 수출세를 납부해야 했다. 울릉도 해산물 가운데 수출세가 부과된 것이 강치만은 아니었다. 1904년 울릉도 수출품에는 말린 전복과 오징어, 김, 미역이 들어 있고, 1905년 수출품에는 이들 외에 전복 통조림이 추가되어 있다. 독도의 전복은 대개 2~3길 전후의 얇은 바다에 부착되어 있고 심해에는 거의 서식하지 않으므로 잠수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¹³⁶는 사실로 미루어보건대, 독도로 출어한 강치잡이들이 전복도 채취하여 울릉도에서 수출한 것으로 보인다.

1904년과 1905년에 울릉도민이 독도강치를 포획했다는 사실은 한인과 일본인이 함께 독도를 이용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수출 주체는 일본인이었다. 「울도군 절목」과 일상조합 규약대로라면 화주는 100분의 1세를 납부해야 한다. 같은 시기에 오키에서 온 나카이 요사부로 등의 일본인도 독도에서 강치를 잡았지만 이들은 오키로 가져가 가공해서 오사카 등지로 수출

했다. 이들이 독도에서 어로하려면 부산해관에 어업세를 내거나 조선해통어조합에 등록했어야 하지만 그런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은 당시 독도가 무주지였으므로 오키 섬에서도 와서 어로할 수 있었고 한국 측에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만일 일본의 주장대로 무주지였다면 어디에도 납세할 필요

134 이에 대해서는 유미림, 2013, 앞의 글, 226쪽 참조.

135 「한국 울릉도의 수산」(『수산회보』 28호 1906. 2. 10), 554쪽.

136 「諸官署雜書類」중 「東島司執事侍史」(1906. 4. 2), 『竹嶋貸下海驢漁業書類』.

가 없었을 것이다. 반대로 일본 영토로 보았다면 편입 근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일단 일본 영토로 보았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지만, 만에 하나 일본령으로 보았다면 오키 섬의 일본인은 시마네현에 어떤 형태로든 납세한 흔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1904~1905년에 독도에서 어로운 오키 섬의 일본인은 시마네현에 납세한 사실이 없다. 이를 입증해주는 사료가 시마네현령 제8호다. 시마네현은 1901년 3월에 제정했던 현령 제11호 '현세 부과규칙(縣稅賦課規則)'의 일부를 1906년 3월에 개정했다.¹³⁷ 개정 규칙은 1906년부터 시행된다. 이 규칙은 지조할(地租制), 어업 채조세, 영업세 부가세, 광업세 부가세, 도축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세 및 잡종세' 부분에서 강치에 대한 세금을 규정하고 있다. 즉 외해(外海)의 해려(海驢, 강치)와 고래어업에 대해 어획고의 1000분의 15(15/1000)¹³⁸를 잡종세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외해에서 포획한 것은 바로 독도에서 포획한 고래와 강치를 말하는데, 이들에 1000분의 15의 잡종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마네현이 규칙을 개정할 시기는 독도를 편입한 다음 해인 1906년 3월이다. 따라서 이 사실은 일본이 독도를 편입하기 전에는 독도강치에 과세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위에서 말했듯이, 일본 영토로 보았다면 편입 근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편입 이후에야 시마네현은 강치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어업단속규칙을 개정하여 강치어업을 허가제로 전환했다(1905. 4. 14, 시마네현령 18호). 이어 다케시마를 오키국 스키·오치·아마·치부군의 관유지대장에 올렸고(1905. 5. 17, 제32호)¹³⁹ 나카이 등 4명에게 공동어업을 조건으로 허가했다(1905. 5. 20, 乙農 제805호). 이들 4명은 1905년 6월에 다케시마어업합자회사를 설립했고, 시마네현은 독도 어업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했다. 사용료와 잡종세 모두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이후이므로 그 이전에는 독도를 자국령으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¹³⁷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 다케요시[松永武吉]가 내무대신과 대장(大藏)대신의 허가를 얻어 공포했다.

¹³⁸ 울릉도의 일상조합은 "조합 유지비로 화물 주인에게서 수출세의 5/1000를 징수한다"고 했다.

¹³⁹ 1940년 8월 공용이 폐지되었다.

V. 맺음말

일본인의 울릉도 침탈은 18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했고, 이들은 목재에 대해 벌목료 혹은 벌금의 형태로 납세했음을 이유로 거주권을 주장해왔다. 화물에 대한 납세 명목으로 보이는 것은 중개수수료 내지 구문, 수출입세, 수출세, 출항세 등이다. 외부인들의 울릉도 조사는 1899년부터 본격화했는데 그 주체는 일본 영사관, 해군성 군인, 제3국인(부산해관 세무사 서리, 부산해관 그리고 대한제국 내부(시찰위원)와 외부(동래감리) 관리 등이었다. 조사자가 다양한 만큼 보고도 상이했으므로 세금 관련 내용이나 명목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조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일본인들이 '(수출)화물'에 대해 100분의 2세를 납세했다는 사실이다. 납세 주체는 화주로서 일본 인임을 명시했다. 수출화물은 목재와 곡물에서 점차 해산물로 확대되어갔다. 그런데 수출화물에 대한 납세를 해관 관리와 한국 정부의 관리는 '세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외부대신 박제순은 1900년에도 100분의 2세를 '수출세'가 아닌 벌금으로 보았다. 반면 일본 측 관리(아카쓰카, 니시무라)는 '수출세'라 이름하며 수출입 행위를 의도적으로 내세웠다. 외무성의 하야시 공사는 이에 동조하고 일본인 재류의 합법화를 위해 적극 이용했다. 울릉도 재류 일본인들도 일상조합 규약에 '수출세'를 명기했으며, 일상조합은 1906년에도 존속하고 있었다.

'수출세' 명목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이것이 독도 실효지배와 관련되는 것은 독도강치에 대한 납세 때문이다. 울릉도 수출통계에는 1904년과 1905년의 강치 수출고가 적혀 있다. 강치의 수출지는 울릉도지만 포획지는 독도였다. 일본의 관행대로라면 강치도 수출세 부과품목이다. 「울도군 절목」에 '독도'라는 말은 없지만 화물에 대한 세금을 명시했고 수출자가 일본인이었으므로 납세자는 일본인이었다. 그리고 수출품에 강치가 들어가 있었으므로 절목은 독도와도 연관된다. 절목에 '독도' 명기가 없다고 해서 독도 산물에 대한 과세까지 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설령 「울도군 절목」이 없었다 해도 일본인들이 1906년에도 수출세를 납부했음은 자

선들이 작성한 '일상조합 규약'으로도 입증된다.

비슷한 시기에 오키에서 독도강치를 포획한 나카이 요지부로 등은 1906년 이전에는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 이들은 어업세를 납부하거나 해관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독도 어로를 했으므로 불법조업이다. 그렇다고 그가 일본 측에 납세한 사실이 있는가? 시마네현이 독도강치에 잡종세를 부과한 시점은 1906년부터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으로 편입한 이후야 독도 어획물에 대해 과세했다는 사실은 그 이전까지는 독도가 자국령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자국령이 아니었다고 해서 한국령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의 주권 행사는 스스로 입증하라는 것이 일본의 논리이고, 이는 『백문백답』에도 반영되어 있다.

최근 일본은 울릉도에서 가공한 산품에 과세한 것은 독도에 대한 주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¹⁴⁰ 당시 한인들이 독도에 가서 어로한 사실은 독도가 우리 땅임에 비취볼 때 당연한 일이다. 이때는 일본인도 함께 어로했다. 그런데 일본인의 어로활동을 문제삼지는 않았으나 그들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했다. 군수가 일본인에게 과세하는 것이 합법적이 아닌데도 이른바 수출세라는 명목을 붙여 과세했다. 그리고 일본인은 납세를 자원했다. 이 경우 일본인들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했다더라도 군수의 과세에 응했을까? 당시 수출세는 품목에 따른 종가세이므로 일본인들이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원산지가 울릉도인 것과 독도인 것을 구분해서 강치과세를 거부할 수 있었다. 즉 일본의 주장대로, 울릉도 산품¹⁴¹에 대한 과세이므로 독도에 대한 주권행위와 관계없다는 논리가 성립하려면, 일본인들은 울릉도 산물에 대해서만 납세할 것을 주장했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독도강치를 제외하지 않고 울릉도에서 수출하는 물품 전부에 대해 납세했다.¹⁴²

140 「100問100答」 85항.

141 「100問100答」은 독도강치를 울릉도에서 가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울릉도 산품에 대한 과금'이므로 독도와는 관계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

142 혹자는 울도 군수가 당시 나카이를 비롯한 오키의 어로자에게도 주권을 행사했다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이 더 확고해졌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군수가 오키에서 온 어로자들을 방치했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그들이 한국 정부에 어업세를 납부했다고 여겼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을 저지할 만한 세력을 갖추지 못해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입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군수가 보인 반응이 "본군 소속 독도가 ……"라고 하여 울도군 소속을 당연시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 이전에 독도 인지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면 나오기 어려운 반응이다. 당시 군수가 생각한 본연의 임무는 나카이

문제의 핵심은 강치를 울릉도에서 가공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다. 가공은 오키에서도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한 울릉도 수출품에는 우뚝가사리나 전복처럼 가공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일본인들이 독도 산물에 대한 세금을 냈다는 사실에 있다. 그리고 그 납부처가 울도군이던 시마네현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¹⁴³ 당시는 지금과 같이 먼 지역(타국)의 산물을 자기 지역(자국)으로 가져와 가공해서 수출하는 시스템이 아니었다. 부산영사관은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이후인 1905년 4월부터 6월 사이의 강치수출액을 '울릉도 현황' 안에서 보고(7월 31일)하고 있다. 이 자체가 울릉도의 속도 인식을 보여준다. 일본의 논리대로라면, 무주지에서 포획한 강치에 대해서는 울도군에 수출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다. '수출'은 도서에서 내륙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수출'이라고 하지만, '수출세'는 타국과의 관계에서만 성립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울릉도에서 수출세가 성립해 있었다는 사실은 강치 산지인 독도를 무주지가 아닌 울릉도의 속도로 간주했음을 의미한다. 납부처가 울도군이라는 것은 울도군의 관할을 인정한 것이므로 울도군 즉 대한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등이 불법 어로자인가를 의심하고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구역인 독도에서 산출된 강치에 과세하는 것이었다. 군수가 나카이 등에게 어업면허를 확인하거나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인식이 미약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은 칙령 제41호를 전후하여 성립한 독도 인식 및 '과세' 행위를 주권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칙령에 석도(독도)가 명기되었고, 「울도군 절목」에는 이것이 칙령의 사후조치임이 밝혀져 있는 이상 석도에서 독도로 이어진 영유권 인식은 계승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1906년에 울도 군수와 대한제국 관리, 언론의 한결같은 반응은 이런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143 일본이 1906년부터 거두기 시작한 잡종세도 독도강치 어획고에 대한 세금이며 그 납부처가 시마네현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도 시마네현에서의 가공 여부가 과세의 직접적인 이유가 아닌 것이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편입하기 전까지는 오키의 강치 어로자에게 과세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적이 없었던 것도 위의 논리를 뒷받침한다. 울릉도의 한인과 일본인이 독도에서 어로하는 것을 목격한 오키의 일본인들이 독도를 무주지로 보았을 가능성도 위의 논리로 볼 때 당연히 희박하다. 나카이는 해군성과 외무성의 획책으로 독도 무주지론으로 선회한 것이지 처음부터 무주지론을 편 것이 아니었다. 일본이 『백문백답』에서 무주지를 선점하여 편입의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편입 이후의 조치를 주권 행위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더욱 논리가 맞지 않는다.

일본은 에도시대에도 울릉도 강치포획과 관련하여

세금에 관한 기록을 내놓지 않았다. 17세기에 일본에서 '운상'으로 표현되던 명목이 대한제국시대에는 구문·출항세·수출입세·수출세 등으로 표현되다가 '수출세'(다카오, 아카쓰카)로 정착해갔다. 제3국인은 '중개수수료'로 이해한 자가 있는가 하면(라포르트), 울릉도 수출입에는 세금이 없다고 이해한 자(스미스)도 있었다. 대한제국 관리(박제순)는 수출품에만 부과되고 수입품에 부과되지 않는 세금은 벌금일 뿐 '수출입세'가 아니라고 보았다. 모두 '세금'을 '관세'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울릉도를 조사한 일본 관리나 하야시 공사는 자국민의 교역행위에 '수출세'라는 명목을 붙이기려고 집했을까? 하야시 공사는 납세한 적도 없는 '수입세'까지 거론했다. 그 이유는 수출입세가 국가 간 교역을 의미하므로 수출입세 납부는 곧 울릉도 거주권 주장의 강력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출세'는 1906년의 일본인 기록에도 보인다. 일본인이 붙인 세목이 1890년대에는 '구문'으로 시작했다가 아카쓰카에 오면 '수출세'로 바뀌었고, 하야시 단계에 오면 '수출입세'로 바뀌었다. 일본은 세목을 교묘하게 에스컬레이트하여 정식세금인 듯 포장해갔다. 이렇듯 1905년 전후 일본은 '구문'을 '수출세'로 둔갑시켜 불법을 합법화하고자 했으나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오히려 독도 영유권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는 당시로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일본의 관심은 울릉도였지 독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이 주장한, 자국민이 울릉도 수장에게 납세했으므로 거주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울릉도가 한국 영토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래야 그들도 한국령 울도군에 납세한 사실을 근거로 거주와 교역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독도 산물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결국 1906년 이전 일본이 울도군 납세를 주장한 사실이 오늘날에는 자승자박하고 있다. 이는 울릉도의 일본인과 외무성 관리가 1905년에 본국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울릉도 침탈만을 획책한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도 하겠다.

〈표 1〉 1899~1906년 세금 관련 기술 일람표

조사일	보고일	세금 관련 또는 어로에 관한 기술 (고딕은 필자)	출처
1899년 6월 29~30일	1899년 7월 6일	농민이나 상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 해체에 대해 10%를 징수하고, 선박 건조에 사용된 나무에 대한 세금으로 건조된 벌선 1척당 평균 현금 10,000원을 징수 하고, 물품 매각을 돕는 중개인과 중간상인에게 주는 2%의 구문(commission) 을 제외하고 일본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라포르트 보고서
	1899년 9월 23일자	농민과 상민의 세금은 원칙으로 정한 것이 없고 다만 도감이 해체에는 10분의 1세를 징수하고, 목재에는 선박 한 척당 엽(葉) 일백 냥 을 징수하며, 일본인은 화물을 팔 때 구문(口文) 100에 2 외에는 납세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고 합니다.	《황성신문》
1899년 9월 25일	1899년 9월 27일	본방인이 도감과 협의하여 수목을 채벌하고 대두를 매수하는 등 모두 이익 예상금의 100분의 2를 세금으로 선납하여(작년까지는 100분의 5였다고 한다) 행하고 있다고 한다.	해군성, 古川鈿三郎
1899년 9월 25일	1899년 10월 3일	공에 대해 도감이 징수하는 수출세액이 100石에 대해 백분의 2의 비율로 과징된다고 한다	외무성, 高雄謙三
	1899년 10월 31일	울릉도에서 수출하는 것은 해체가 많고 판목도 간간이 수출한다. …… 세금은 다만 도감에게 해체 10분의 1세를 물고 목재는 배 한 척에 4원씩 문다. 일본 사람이 물화를 매매할 때 구문은 100분의 2 를 낸다고 부산 해관장이 조사해갔다 한다.	《독립신문》
1900년 6월	1900년 6월 9일	과세는 미역세가 위주인데 미역은 100원마다 5원을 세금으로 거둔다. 조선세는 1파마다 5냥의 세금을 거두는데 …… 일본인에게 세금을 거두는 조목은, …… 간혹 벌금을 내라고 질책하고 또한 화물을 살 때 100에 2를 거두었는데, …… 그대로 놔두고 거두지 않는 것뿐이다.	우용정, 울도기 후록
1900년 6월		日人納稅冊子	김면수, 후록
1900년 6월 12일		1897~1899년간의 수출입 통계-전복 2,960엔, 우룻가사리 1,200엔, 끈끈이 6,000엔-모두 3만 160엔, 일본인이 가지고 온 것	아카쓰카 쇼스케 보고서
	1900년 9월 12일	수출화물을 가지고 100분의 2세를 매겨 벌금 을 대신했으니 …… 수출입세의 경우라면 어떻게 수출품에는 징세하면서 수입품에는 징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한 100분의 2를 징세하는 법이 어찌 있을 수 있는가.	외부대신 박제순
	1900년 10월 25일	울릉도에서 수세(收稅)한 것 중에서 우선 마련할 것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901년 5월		일본인은 벌목하면서 인정(認狀)을 받지 않았으며, 목재와 곡식 등 각종 수출입에도 세금이 없다 . 말린 전복과 해삼, 황두(黃豆) 300석 및 끈끈이 등은 모두 수출될 것이었다.	부산해관 스미스
1901년 6월 15일		화물 매각시 구전 100분의 2 를 관에 납입하고 목재에는 선척당 100냥을 납부하며 공공연히 밀무역을 하고 있다.	葛生修亮, 한국연해사정

조사일	보고일	세금 관련 또는 어로에 관한 기술 (고딕은 필자)	출처
1901~1902년	1903년	돛도리현에서 도항, 대두와 우뭇가사리를 수출한다.	한해통어지침
	1902년 4월	각도 상선(商船)으로 울릉도에 와서 물고기를 잡거나 미역을 채취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10분의 1세를 거두고, 그 밖에 출입하는 화물은 물건값에 따라 물건마다 100분의 1세를 거둬 경비에 보탬 것	울도군 절목
1902년 5월		한인이 수출하는 품목은 콩과 호태, 보리와 황백 나무 껍질, 소량의 끈끈이(黏)에 불과하고 해산물은 없다고 했다. …… 수출입 화물은 모두 도동에 모인다.	니시무라 게이조 보고
1902~1906년	1907년	조합 유지비로 화물 주인에게서 수출세의 5/1000를 징수한다.	竹島及鬱陵島
1904년 9월 25일		마쓰시마(울릉도)에서 해마다 어렵하러 오는 사람은 60~70石積의 일본배를 사용한다. 10일간 체재하며 많은 수확이 있다고 한다. 인원도 때때로 40, 50명을 초과하는 일도 있다.	軍艦新高戰時日誌
	1905년 2월 22일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 섬에서 서북 85해리에 있는 도서를 다케시마[竹島]로 칭하고, 이제부터 본현 소속 도서(島司) 소관으로 정한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1905년 4~6월	1905년 7월 31일	랑코 도의 강치잡이는 1904년경부터 울릉도민이 잡기 시작했고, 모두 3조 30인이 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스즈키 에이사쿠, 울릉도 현황
		1904년: 강치수출-가죽 800관, 기름 2석 1905년: 강치수출-가죽 800관, 기름 83상자, 절입 150관	스즈키 에이사쿠, 울릉도 현황
	1905년 12월 6일	수출입비교표(1904~1905): 대두, 규목, 마른전복, 강치가죽과 기름, 찌꺼기 1905년: 강치수출-가죽 1,275관, 기름 49석, 찌꺼기 950관 오징어는 주요 수출품이나 일본인 전유, 미역은 한인이 독점한다.	스즈키 에이사쿠, 울릉도 현황
1906년 3월 1일		잡종세: 海鹽漁-연 세금은 어획고의 1000분의 15를 부과한다.	시마네현령 8호

국문 초록

1882년에 고종이 개척령을 내리기 이전부터 울릉도를 드나들던 일본인들은 1890년대 중반부터 울릉도 침탈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울릉도에서의 벌목과 교역이 불법이므로 목재에 대해서는 벌목료 혹은 벌금의 형태로, 화물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커미션)의 명목으로 납세를 지원하면서 권리를 주장해왔다. 이런 수세 관행에 대하여 일본 외무성은 '수출세'라는 명목을 붙여 울릉도 거주권을 주장하는 데 이용했다. 1899년에 울릉도 침탈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대한제국과 일본, 제3국인 등이 울릉도를 조사했을 때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일본인들이 '수출화물'에 대해 100분의 2를 납세한다는 사실이었다. 이 100분의 2세가 1902년 「울도군 절목」에서는 100분의 1세로 인하되었다. 본래 비개항장에서의 교역은 불법이다. 그러므로 100분의 2세를 해관 관리와 한국 관리는 관세로 인정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만 묵인해줄 뿐이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 관리는 이를 '수출세'라고 주장하며 양국 간의 정당한 교역의 근거로 이용했다. 이 수출세는 일상조합(日商組合) 규약에도 명기되어 있고 조합은 1906년에도 존속했으므로 수출세 또한 존속했음을 알 수 있다.

1905년의 울릉도 수출통계에는 1904년과 1905년의 강치 수출고가 적혀 있다. 울릉도에서 일본으로 수출한 강치는 20세기 초에는 독도에서만 잡히는 동물이었다. 따라서 관행대로라면, 독도강치도 수출세 납부대상이었으므로 일본인들은 독도강치에 대한 세금을 울도군에 납세하도록 되어 있다. 울릉도의 일본인들이 독도강치에 대해 납세했다는 것은 독도를 울릉도의 속도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비슷한 시기에 독도에서 강치를 잡아 오사카 등지로 수출한 나카이 요자부로 등의 일본 어업자들은 편입 이전에는 한국 측에 납세한 사실이 없다. 시마네현이 독도강치에 잡종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은 1906년 3월 이후다. 울릉도의 일본인들이 독도강치에 대한 세금을 울도 군수에게 1905년까지 납부했고, 오키의 일본인들이 독도강치에 대한 세금을 독도를 편입한 이

후인 1906년부터 시마네현에 납부했다는 사실은 편입 이전까지는 두 지역(울릉도와 오키)의 일본인 모두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1905년 이전 독도는 무주지가 아닌 한국령이었다.

〈주제어〉

독도, 칙령 제41호, 수수료, 수출세, 실효지배, 독도강치

ABSTRACT

A Characteristic of Export Duty in Ulleungdo around the Establishment of Imperial Edict No.41 in 1900



Yoo, Mirim
Director, Korea-Asia Cultural Institute

The Japanese used to travel in and out of the island Ulleungdo until King Gojong of Korea ordered for the island to be developed. From the mid 1890s, the Japanese began to seriously pillage Ulleungdo. Because logging and trade was forbidden on Ulleungdo at the time, the Japanese attempted to assert their rights by volunteering to pay taxes on timber under the pretext of paying logging charges, fines or commission on goods. This sort of taxation practice in the name of 'export duty' was used as a basis for Japan's Foreign Ministry to declare the right to legally reside on Ulleungdo. When officials of the Korean Empire and Japan, including a French tax accountant who was working at the customs office in Busan, investigated Ulleungdo in 1899 to determine the state of pillaging, the investigators pointed out in common that the Japanese paid 2/100 tax on 'export goods.' This 2/100 tax was reduced to 1/100 according to 'Guidelines for Uldo County' (鬱島郡節目, Uldogun jeolmok) published in 1902. Since trade through a closed-port was illegal, Korean maritime customs officers did not recognize such taxes as customs duty, but overlooked them unofficially. Nevertheless, officials of the Japanese Foreign Ministry insisted that it was 'export duty' and took advantage of it as grounds for legitimizing trade. Since this 'export duty' was specified in the regulations of the Japan Merchants Association (日商組合, Nisshō kumiai), which had been operating in 1906, it can be assumed that this 'export duty' persisted until

then.

At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sea lions captured at the island Dokdo were exported from Ulleungdo to Japan. Statistics on exports from Ulleungdo in 1905 include records on the number of sea lions exported in 1904 and 1905. Accordingly, the Japanese must have followed the customary practice and paid taxes on sea lions because they were taxable items. The fact that the Japanese living on Ulleungdo paid taxes on sea lions from Dokdo signifies that they had acknowledged Dokdo as a peripheral island belonging to Ulleungdo. Japanese fishers like Nakai Yojaburo from the Oki islands captured sea lions and exported them to Osaka and other locations around that time, but did not pay taxes to the Korean Empire until Doko became incorporated by Japan. Japan's Shimane Prefecture did not begin to impose miscellaneous local taxes on sea lions until March 1906. Until 1905, the Japanese living on Ulleungdo paid taxes on sea lions they caught at Dokdo to the magistrate of Uldo county in Korea. In 1906, after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the Japanese living on the Oki islands paid taxes on those sea lions to Shimane Prefecture of Japan. These facts imply that regardless of whether they were living on Ulleungdo or the Oki islands, the Japanese recognized Dokdo as Korean territory until Japan's incorporation. Therefore, prior to 1905, Dokdo was not a terra nullius, but the territory of Korea.

Keywords

Dokdo, Imperial Edict No.41, commission, export duty, effective control, sea lions at Dokdo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의 독도 발견에 관한 연구

정인철 부산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Pierre-Emmanuel Roux 프랑스 Ecole des hautes études en sciences sociales 연구원

I. 머리말

독도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지리지, 역사적 연구, 영유권 관련 국제법 연구, 지도학 연구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결과물을 생산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물을 평가하는 데만 해도 보고서 1권의 분량에 해당할 정도다.¹ 그런데 신기하게도 서구의 지도에서 표기되고 있는 독도의 명칭인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의 발견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리앙쿠르는 19세기 동해 해역에서 고래잡이를 하던 프랑스 포경선의 이름이다. 이 배는 프랑스 르아브르(Le Havre) 항구에서 출발하여 동해에서 고래잡이를 하었는데, 1849년 1월 27일 독도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 섬의 이름을 배의 명칭을 따라 리앙쿠르암(Rochers Liancourt)으로 명한다. 이후 1854년 러시아 전함 팔라다(Palada, 선장 Poutiatine)가 다시 발견하고 메넬라이(Manalai)와 올리부차(Olivutsa)라는 명칭을 부여했고, 1855년에는 영국의 호네스트호(Hornest, 선장 Forsyth)가 다시 발견한 다음 호네스트(Hornest)암으로 명한다. 그

1 김병렬·노영구·이상근, 2009, 『독도 연구 60년의 평가와 향후 연구 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보고서.

런데 이러한 발견 중 최초의 발견이 프랑스의 리앙쿠르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외국의 많은 지도들이 독도를 리앙쿠르로 표기하고 있다.²

리앙쿠르호의 독도 발견에 관한 연구는 이진명(2005)이 부분적으로 언급한 것이 현재까지는 거의 유일하다 할 수 있다. 이진명의 연구는 유럽 자료를 이용한 독도에 관한 가장 체계적인 연구이지만, 그의 연구는 리앙쿠르호의 독도 발견보다는 고문서와 고지도 전반을 통한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독도의 발견에 관한 역사학적 관점의 맥락이 일부 빠져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료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리앙쿠르호의 독도 발견 그 자체에 초점을 둔 연구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시의 서구 국가는 제국주의 목적으로 동아시아에 대한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었다. 특히 동해는 당시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던 고래의 포획을 위한 서구의 어장이었다. 따라서 당시 많은 서구의 포경선이 동해에서 어로활동을 하었는데, 그 가운데 리앙쿠르호가 독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 흔적이 여전히 서구의 지도에 남아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리앙쿠르호는 독도에 대한 중요한 역사적 흔적을 남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리앙쿠르호의 독도 발견과 관련한 프랑스 현지자료를 조사하여, 독도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특별히 프랑스 고문서 보존고의 자료를 추가로 탐색하여 독도 발견에 대한 역사지리학적 맥락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프랑스 포경선과 동해

1. 동해 또는 고래의 바다(鯨海)

일반적으로 리앙쿠르호에서의 독도 발견과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의문의 하나는 왜 19세기 중반에 프랑스 포경선이 동해에 와서 독도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2 미국의 체로키(SS Cherokee)호가 최초로 발견했다는 설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

경위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의문에 답하는 것을 본 장의 연구목적으로 삼아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왜 리앙쿠르호가 19세기 중반에 동해에 나타났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의 포경의 역사와 서양의 포경선이 어떻게 포경을 위해 지구를 누벼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19세기 중반에 서양의 포경선이 이곳에 진출하기 이전부터 이곳에서는 포경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신석기 혹은 청동기 시대부터 한반도의 동해안에서는 활발한 포경활동이 존재하였다. 그 증거의 일부가 울산 반구대 암각화다. 그러나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포경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19세기 중반까지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 문헌에서는 고래잡이를 어업으로 기술하지는 않으며 죽어서 해안에 물려온 고래를 해체하는 내용들만 언급하기 때문이다. 물론 고래기름을 약재로 사용했던 조선의 전통을 생각할 때 어느 정도의 포경활동이 존재했다는 것 역시 가능하다.

반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조선에 비해 포경에 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역시 본격적인 포경활동이 이루어진 것은 서양의 포경선이 도입된 이후였다. 한국과 일본 이외에도 만주 동안에서도 포경활동은 10세기 이후 이루어져왔다. 그래서 많은 문헌들은 동해를 고래의 바다를 의미하는 경해(鯨海)로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송사(宋史)』에서는 정안국(定安國)에 대해 기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경해를 언급하고 있다. “정안국은 본래 마한 족속으로 요에게 패망하여 [...] 태종 때 그 임금이 여진에 조공하는 편에 표문을 올렸는데, 그 대략에, ‘신은 본래 고구려의 옛땅 발해의 유민으로 이 한모퉁이의 땅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하였는데, 태종이 답칙(答勅)하여, ‘경(卿)이 마한의 땅을 차지하여 경해 가에 끼여 있다. …….’ 라고 하였다.”³

명나라 초기에도 동해는 경해로 불렸지만 이후 이 이름은 점차 사라져갔다. 그러나 고래의 바다라는 명

3 안정복의 『동사강목』에서 재인용(유승주 외, 1979, 『국역동사강목』, 민족문화추진회 고전국역총서).

칭은 동해의 이미지에 지속적으로 각인되었다. 안정복은 『동사강목(東史綱目)』에서 18세기 말까지 고래와 관련하여 동해에 대해 언급하였다.

중국인들과는 달리 유럽인들은 예수회 선교사 또는 선원을 막론하고 고래와 관련하여 동해의 명칭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예수회 선교사들은 명나라 말기에 중국에 도착했는데, 이때는 경해라는 이름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때였다. 명나라 왕실과 접촉한 최초의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Matteo Ricci)는 오히려 『곤여만국전도』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이 사실이 17세기부터 동북아시아를 탐사하는 탐험가와 선원들이 동해를 고래와 연관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네덜란드의 하멜(Hendrik Hamel)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소속 상선을 타고 일본 나가사키로 가다가 폭풍으로 파선하여 1653년(조선 효종 4년)에 일행과 함께 조선에서 14년 동안 억류생활을 하고 귀국하였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하멜 표류기』와 『조선왕국기』를 저술하여 조선의 지리, 풍속, 정치 따위를 유럽에 처음으로 소개하였는데, 동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 나라의 동북쪽에는 넓은 바다가 위치한다. 이 바다에서는 매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작살이 낚힌 고래가 많이 발견된다. 또한 12월에서 3월 사이에는 청어가 많이 잡힌다. 12월과 1월에 잡히는 청어는 네덜란드 인근의 북해에서 잡히는 청어처럼 크기가 크며, 3월에 잡히는 청어는 네덜란드에서 튀겨 먹는 청어의 크기 정도로 작은 편이다.⁴

하멜은 한반도 북동해안에 고래가 집중적으로 서식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작살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하멜의 『조선왕국기』의 1668년 네덜란드어 원본에서는 네덜란드의 작살이란 표현만 존재하였으나 1670년 『조선왕국기』가 프랑스어로 번역되면서 프랑스의 작살 부분이 추가되었다. 하멜이 고래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많다. 그는 고래를 관

4 H. Hamel, 1670, *Relation du naufrage d'un vaisseau holandois sur la coste de l'isle de Quelpaerts, avec la description du royaume de Corée*, Paris: L. Billaine, pp. 103~104.

찰할 수 있었던 함경도 지방이나 동해안 지방은 결코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대부분의 한국 체류 기간을 고래 관찰이 어려운 전라도와 제주, 그리고 서울에서 보내었다. 이 이야기를 실제 하멜이 조선 체류 기간에 들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네덜란드에 돌아와 추가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의 이야기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동해 탐사 욕구를 자극했다는 것이다. 당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유럽에서 아시아로 항해하기 위한 북동항로와 북서항로 개발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16세기 말까지 포경은 대서양에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항해가 바렌츠(William Barents)는 유럽에서 북극해를 거쳐 아시아로 가는 북동항로를 찾는 가운데 1596년 현재의 스발바르제도(Svalbard Is.) 인근에서 새로운 고래 어장을 발견하였다. 17세기에는 이 어장으로 모든 포경선이 몰려들었으며 남획으로 인해 이 어장은 결국 황폐화되었다. 그리고 유럽의 포경선단은 새로운 어장을 발굴하기 위해 탐사 작업을 떠나게 된다. 조선 연안의 바다에서 서양 포경선의 작살을 맞은 고래를 발견했다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하멜은 아마도 스발바르제도에서 작살을 맞은 고래가 북서항로 또는 북동항로를 통해 동해로 왔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있다.⁵ 그는 당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던 포경산업계의 관심을 북서항로나 북동항로의 개척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했을 수도 있다.⁶

고래에 대한 하멜의 언급은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거의 저서는 200년이 지난 후에도 조선과 관련해서 서구제국이 획득할 수 있는 귀한 자원으로 언급되었다.⁷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하멜의 고래에 대한 언급은 먼저 동아시아에 관심을 갖던 역사학자와 지리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18세기 네덜란드의 저명한 지리학자 겸 지도제작자며 동인도회사 이사였던 빗젠(Nicolaas Witsen)이 대표적 사례다. 그는 하멜과 함께 난파되었던 아이보켄(Eibokken)의 진술을 토대로 『북동 달단(Noord en Oost Tartar-

ye)』이란 제목의 만주지리지를 기술하였다. 이 책은 당시 네덜란드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을 종합하여 기술하였는데 상당수의 지도가 포함되어 있다. 1705년 발간된 이 책의 재판에는 이 지역의 고래잡이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네덜란드 포경선의 작살 이야기 역시 수록되어 있다.⁸

한편 프랑스에서는 도빌(Contant d'Orville)이 1770~1771년에 『세계의 다양한 민족의 역사(Histoire des différents peuples du monde)』를 발간했는데, 여기에서 조선과 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다. 그렇지만 하멜의 기록은 일부 변형시켜 표현한다.

이 반도는 북동쪽에 대양을 접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이 바다에서 많은 고래를 잡는다.

⁸ Notes on Korea by Nicolaas Witsen published in Noord en Oost Tartarye, 1705., in *Hamel's World: A Dutch-Korean Encounter in the Seventeenth Century*, édité par Vibeke Roeper et Boudewijn Walraven, Amsterdam: SUN, 2003, pp. 177~182.

⁹ A. G. Contant d'Orville, 1770~1771, *Histoire des différents peuples du monde: contenant les cérémonies religieuses et civiles, l'origine des religions, leurs sectes et superstitions et les mœurs et usages de chaque nation*, Paris: Hérisant fils, Vol. 1, p. 164.

¹⁰ P. Larousse, 1868, *Grand dictionnaire universel du XIXe siècle*, [retrouver la page]; Encyclopédie du dix-neuvième siècle: Répertoire universel des sciences, des lettres et des arts, avec la biographie de tous les hommes célèbres, sous la dir. d'Ange de Saint-Priest, Paris: Bureau de "l'Encyclopédie du XIXe siècle", 1836~1853, Vol. 8, p. 760.

이 저서의 조선에 대한 부분은 고래로 시작한다. 이 로 보아 저자는 조선을 고래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곳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⁹ 19세기에 간행된 다양한 백과사전들 역시 조선에 관해서는 하멜의 영향을 받았다. 오늘날에도 발간되고 있는 라루스(Pierre Larousse) 사전의 1868년 판에는 “조선인은 청어와 고래잡이에 능한 어부들이다”라고 기술하였다.¹⁰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조선 연안을 방문한 영국 항해자들 역시 한반도의 고래에 대한 언급을 잊지 않는다. 18세기와 19세기의 변환기에 이 지역을 방문한 브루톤(William Broughton)은 1804년 출간한 『북태평양 여행기(A Voyage of Discovery to the North Pacific Ocean)』에서 이 지역의 고래에 대해 상술한다.

그는 동북아시아에 대한 3년간의 탐험을 수행한 후 1797년 10월 조선의 동안에 상륙하였다. 그는 함경도

⁵ 북동항로와 북서항로(캐나다 북쪽을 통해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항로)의 경우는 각각 1870년과 1906년이 되어야 최초로 개척된다.

⁶ 상세한 내용은 Nasu Keiji(奈須敬二)의 1990, *Hokei seisuiiki*(捕鯨盛衰記), Tōkyō: Kōrin, pp. 6~10.

⁷ W. Speer, 1872, "Corea: What shall we do with her?", *The Galaxy*, 13(3), p. 303; W. E. Griffis, 1904, *Corea: The Hermit Na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p. 216.

지역에 도착하는데, 그의 이름을 따서 원산만을 100년이 넘게 브루톤만(Broughton Bay)이라고 서양지도는 표기하였다. 그는 하멜의 기록을 언급하며 이 지역의 고래가 매우 귀중한 자원임을 강조하였다.¹¹ 레오드(John McLeod)는 조선과 류큐 연안을 탐사했던 영국 왕실 소속의 배인 『알체스타호』에 관한 기록(Voyage of His Majesty's Ship Alceste)의 1817년 판에서는 조선의 경제적 잠재력에 대해서만 간략히 언급하고, 고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1818년의 수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선의 자원으로서의 고래에 대해 언급한다.

해안은 다양한 물고기가 풍부하다. 많은 고래가 북동쪽에 서식한다. 유럽 포경선의 작살이 이들 고래에게서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이 고래들은 그린란드에서 북극해를 거쳐 아시아 북쪽 해안 또는 아메리카의 북쪽 해안을 따라와서 베링 해, 캄차카 해, 홋카이도, 일본을 거쳐 내려온 것이다.¹²

결국 고래에 대한 관심과 유럽에서 아시아로 직접 극지방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는 흥미를 유발하는데 성공하여, 이 지역은 서양의 포경업체와 유럽 각국 정부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리고 각국 정부에서 동해에 포경선을 보내게 된다.

2. 동해 또는 포경선의 바다

유럽에서의 포경산업은 오랜 기간 바스크족(Basques)이 지배해왔다. 그러나 19세기에는 미국 동안에 위치한 난터켓(Nantucket)과 뉴베드포드(New Bedford)의 미국인들이 주도하였다. 프랑스·러시아·프러시아·영국이 미국의 뒤를 따르는 국가들이었다. 미국은 당시 가장 우수한 선원과 선박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고래는 조명을 위한 연료·화장품·우산 재료 등 다양

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18세기 대서양에서 포경활동이 대폭 확장되었고, 지속적인 남획으로 인해 개체수가 감소하게 되었다. 그래서 19세기 초부터 이들은 남반구로 어장을 확대하게 되었다. 이들은 인도양과 남태평양·칠레 연안·페루 연안 등을 새로운 어장으로 개척하였다. 그리고 포경산업은 마침내 동해를 포함하는 북태평양 지역으로 확장된다. 그리고 이 시기에 포경산업은 전성기를 맞게 된다. 특히 1840~1855년까지는 미국의 포경산업의 황금기였다. 당시 약 300척의 포경선이 조선과 일본, 그리고 류큐 연안에서 활동하였다.¹³

프랑스의 경우 포경산업의 황금기는 1830~1844년 사이였다. 이 기간 뉴질랜드 근처의 남태평양이 주된 어장이었으며 북태평양도 이들의 활동 영역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1845년부터 프랑스의 포경산업은 쇠퇴한다. 그리고 1860년대 초반 프랑스 포경선이 북태평양과 동해를 떠난 이후 1868년에는 완전히 몰락하게 된다.¹⁴

북태평양이 세계 포경산업의 중심이던 기간에 일본이 점차 이 지역의 포경산업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1820년대부터 미국의 어장은 태평양 전체로 확장되었다. 미야기현 동부의 긴카산(金華山)·오가사와라

[小笠原]·류큐가 1840년대 미국의 포경기지가 되었다. 이 지역의 고래 자원이 거의 사라진 뒤에는 미국과 다른 나라의 포경선들은 새로운 어장을 찾아나섰다. 그래서 1843년에는 캄차카 반도, 1847년에는 오호츠크해, 1847년에는 베링 해로 그리고 다음에는 북극해로 진출하였다.¹⁵

동해에서의 본격적인 포경은 184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다음 해인 1849년에 독도가 발견된다. 1848년에 약 60척의 포경선이 동해에서 활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1849년에는 그 수가 두 배로 증가한다. 대부분의 배는 미국 국적이었지만 프랑스와 다른 나라 국가 선적의 선박도 상당수 있었다.¹⁶ 1850년대

11 브루톤만은 오늘날의 동한만에 해당한다. W. R. Broughton, 1807, *Voyage de découvertes dans la partie septentrionale de l'océan Pacifique*, Paris: Dentu, Vol. 2, p. 220. La Pérouse는 1797년 이곳을 지났지만 고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예수회 선교사의 말을 인용하여 조선과 만주에서는 진주양식이 가능하다고 기술하였다. 그의 언급은 19세기 중반까지 서양의 저서에 반복하여 나타난다. La Pérouse, *Voyage de La Pérouse autour du monde, op. cit.*, Vol. 3, p. 56, 145.

12 J. McLeod, 1818, *Voyage of His Majesty's Ship Alceste: Along the Coast of Corea, to the Island of Lewchew, with an Account of her Subsequent Shipwreck*, Londres: J. Murray, p. 58.

13 J. Th. du Pasquier, 1982, *Les Baleiniers français au XIX^e siècle, 1814~1868*, Grenoble: Terre et Mer; J. Heffer, 1995, *Les États-Unis et le Pacifique: Histoire d'une frontière*, Paris: A. Michel, pp. 56~72.

14 N. Poirier, 2003, *Les Baleiniers français en Nouvelle-Zélande: des ambitions coloniales de la Monarchie de juillet dans le Pacifique*, Paris: les Indes savantes.

15 L. Lacroix, 1997, *Les Derniers baleiniers français*, Rennes: Ouest-France.

16 박구병, 1995, 「미국포경선원의 한국영토 상륙과 한국인과의 접촉에 관한 연구」, 『아세아 연구』, 129쪽.

까지 포경활동이 이 지역에서 활발하였지만 이후에는 북극해로 어장이 이동하였다.

18세기에는 동해를 한국해로 서양인들이 명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19세기에 일본해가 지배적인 명칭으로 굳어지는 것이 이 동해에서의 포경활동과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다. 17세기 이후 일본에 관한 서구의 기록들 예를 들어 캄퍼(Engelbert Kaempfer), 시볼드(Philipp Franz von Siebold) 또는 툰베르크(Charles Peter Thunberg)의 저서들이 모두 일본의 포경에 대해 언급했다는 사실 역시 여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¹⁷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 입장에서 향후 심도 깊게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III. 리앙쿠르호의 출항과 독도 발견

1. 리앙쿠르호(1838~1852)의 출항

포경선 리앙쿠르호의 선주는 제러미아 윈슬로(Jeremiah Winslow, 1781~1858)이다. 리앙쿠르호는 1832년 르아브르 항(Le Havre)에서 건조되었으며 1838년부터 포경활동을 하였으며 1852년 오후츠크 해에서 좌초되었다. 먼저 리앙쿠르호의 본거지인 르아브르 항과 장비와 시설 및 선주에 대해 살펴보자.

1) 리앙쿠르호, 르아브르 그리고 제레미아 윈슬로

프랑스에는 포경선이 정박하던 항구는 많았지만 19세기 전반기에는 르아브르가 거의 유일한 포경선의 정박 항구였다. 이는 1840년대부터 시작된 포경산업의 쇠퇴와 연관된 것이다.

르아브르 항은 1517년 프랑스와 1세(François 1er) 당시에 루앙(Rouen) 상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목적과 군사적 목적에서 건설되었다. 파리는 센 강을 통해 영국인이 침입하는 것을 겁내었으며, 인근 지역인 바스센(Basse-Seine)

¹⁷ W. McOmie, 2005, *Foreign Images and Experiences of Japan. Volume I: First Century AD-1841*, Folkestone: Global Oriental, pp. 169~171.

의 항구인 옹플뢰르(Honfleur)는 퇴적으로 인해 항구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었다. 또한 신대륙과의 무역 증대로 인해 교통량은 급증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항구의 개발이 필요했다. 따라서 영국의 침입 위기를 최소화하면서도 교통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항구로 르아브르 항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일찍부터 항구는 식민지 건설과 깊은 연계를 가졌는데, 재상 콜베르(Jean Baptiste Colbert, 1661~1683)의 중상주의 정책에 힘입어 성장하였다. 항구에는 창고와 세관이 설치되었고 동인도회사와 서인도회사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르아브르 항은 17세기 프랑스가 서인도제도에 정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 기능은 여전히 10세기 이후 센 강 유역의 항구인 루앙에 종속되어 있었다. 1717년 이후에야 르아브르 항은 루앙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르아브르 항을 통과하는 식민지 무역은 번창하였고 18세기 전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노예무역과 커피, 설탕, 면화의 수입량은 당시 최고조에 달하였다. 1775년경 르아브르는 프랑스의 커피 수입에서는 두 번째 항구였으며, 설탕 수입은 네 번째, 노예 수입은 두 번째였다. 그러나 1792년 르아브르 항의 상대 무역항이던 카리브 해의 산토도밍고(Saint-Domingue, Santo Domingo)를 영국에 빼앗겼고 나폴레옹 1세의 대륙봉쇄 정책의 영향에 따라 교역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마침내 이곳에 위치하던 일부 무역상들은 파산하였고 일부는 낭트(Nantes)로 근거지를 옮겼다.¹⁸

르아브르는 1815년 이후 새롭게 성장한다. 특히 7월왕정(Monarchie de Juillet)하에서 프랑스 식민무역에서는 첫 번째 교역량을 차지하는 항구로 성장하였다. 1847년 철도가 이 항구에 연결되었으며, 도시가 팽창하였고, 세관과 창고가 계속 건설되었으며, 19세기 말에는 프랑스에서 두 번째 그리고 세계에서 8번째 항구로 성장하였다.

1815년 이후의 르아브르의 성장은 포경산업의 성장과 리앙쿠르호의 선주 제레미아 윈슬로(Jeremiah Winslow)의 역할에 의존한다. 윈슬로는 미국 태생으로 프랑스에 귀화하여 르아브르에 정착했는데 당시 프랑스

¹⁸ C. Malon, 2006, *Le Havre colonial de 1880 à 1960*, Mont-Saint-Aignan: Publications des Universités de Rouen et du Havre; Caen: Presses universitaires de Caen, pp. 18~19.

〈표 1〉 북태평양과 남태평양에 출항한 프랑스 포경선 수

	리아브르	낭트	기타 항구	계
17(1816~1829)	58(58.6)	27(27.3)	14(14.1)	99(100.0)
27(1830~1844)	294(79.7)	41(11.1)	34(9.2)	369(100.0)
37(1845~1868)	88(92.6)	7(7.4)	0(0)	95(100.0)
계	440(78)	75(13.5)	48(8.5)	563(100)

자료: Poirer, 2003.

최대의 포경선 선단을 운영하였다. 19세기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프랑스에 귀화하여 정착하였는데 리아브르는 이들의 주된 경제활동지였다. 항구에 정착한 이들은 무기산업 및 국제 금융산업과 연관된 업무에 주로 종사하였다. 리아브르의 외국인 비율은 프랑스 항구 중 가장 높았으며 국적 또한 가장 다양하였다. 포르투갈·덴마크·벨기에·영국·네덜란드·스위스 등의 국가에서 이곳으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가장 많은 수의 귀화자는 미국인들이었다. 1846년에는 이곳에서 활약한 미국인의 수가 70명을 넘었는데, 주로 중개인·선주·선장으로 활동하였다. 윈슬로는 이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다.¹⁹

윈슬로는 미국의 포경 중심항구이던 난터켓에서 보험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는 1817년 원래는 미국 선적이었으나 프랑스 선적으로 바꾼 부르봉호(Bourbon)를 가지고 리아브르로 온다. 그가 프랑스에 오게 된 것은 포경을 장려하기 위한 프랑스의 정책과 연관된 것으로 나폴레옹전쟁(1803~1815) 이후 고래기름에 대한 해외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1816년 2월 8일 법(Une ordonnance royale, du 8 février 1816)'에 따라 포경선이 출항할 경우 톤당 50프랑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윈슬로는 자신의 포경선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1821년에 프랑스로 귀화하였다.

윈슬로는 보조금 제도를 활용하여 리아브르에서 가장 큰 포경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1830년 이후 윈슬로는 8척으로 구성된 포경선단을 운영하였다. 그

¹⁹ J. Lambert-Dansette, 2001, *Histoire de l'entreprise et des chefs d'entreprise en France*, Paris: L'Harmattan, Vol. 1, pp. 78~81.



〈그림 1〉 제레미 윈슬로의 노래 악보 일부

자료: Pasquier, 1982.

는 리아브르 출신의 사라 모리스(Sarah Morris)와 결혼하여 한 명의 아들을 두었다.²⁰ 윈슬로의 큰 성공으로 인해 그는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으며 그의 활약을 담은 노래가 〈윈슬로 아버지의 노래(chanson du père Winslow)〉라는 제목으로 불려졌다. 노래 가사와 악보의 일부는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다.²¹

1829년부터는 새로운 보조금 정책이 시작되어 톤당 90프랑의 보조금을 프랑스 국적을 가진 선주에게 지급하게 되었다. 당시 17척의 미국 선적 포경선이 프랑스로 국적을 옮겼다. 이러한 유리한 조건하에서 리앙쿠르호가 1832년 리아브르에서 건조되었는데 갑판은 하나며 돛대는 두 개, 대포 역시 두 개였다. 이진명은 리앙쿠르호가 361톤이라고 주장하였지만²² 윈슬로의 후손인 파스키에(Jean Thierry du Pasquier)는 리앙쿠르호가 431톤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라크와(Louis Lacroix) 역시 그의 저서 『최후의 프랑스 포경선(Les Derniers Baleniers Français)』에서 431톤이라고 표기하였다.²³ 따라서 이 리앙쿠르호의 톤수는 431톤으로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²⁰ J. Lambert-Dansette, 2001, *Histoire de l'entreprise et des chefs d'entreprise en France*, op. cit., Vol. 1, pp. 80~81. 이외에도 두 딸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²¹ 가사는 큰 바다의 위대한 항해자며 선장인 윈슬로를 칭송하는 내용이다. 다음의 링크를 열면 노래를 직접 들을 수 있다. <http://mareeparadis.info/paroles/chansonduperewinslow.html>.

²² 이진명, 2005,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61쪽.

²³ L. Lacroix, 1997, *Les Derniers baleniers français*, Rennes: Ouest-France, p. 282.

이 외에도 중요한 사실은 리앙쿠르호는 프랑스 포경선의 일반적인 크기에 비해서는 평균이며 미국 포경선의 크기에 비해서는 크다는 것이다. 이것은 보조

금의 지급과 관련되어 있다. 보조금이 톤과 비례해 지급되었기 때문에 프랑스 포경선의 경우 600톤 심지어 700톤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²⁴

또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왜 배 이름을 리앙쿠르호로 명명하였느냐는 것이다. 파스키에에 따르면 윈슬로의 친구이면서 라페루즈(La Pérouse)의 친구였던 리앙쿠르 백작(duc de Liancourt)인 로셔포코(François Alexandre Frédéric de La Rochefoucauld, 1747~1827)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리앙쿠르 백작은 당시 정치인이며 과학자로 프랑스 과학원의 회원이었다. 그는 파리 북쪽에 그의 이름을 딴 도시 리앙쿠르(Liancourt)를

건설하고 1780년 프랑스 최초의 기술학교(École d'Arts et Métiers)를 설립하였다. 프랑스혁명 기간에는 영국으로 망명하였고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윈슬로와 리앙쿠르는 사교할 기회를 가지고 되었고 마침내 윈슬로의 포경선에 그의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다.²⁵

²⁴ P. H. de Lempis, 2006, Des Français aux îles Hawaii au XIXe siècle, in *Les Français dans le Pacifique*, sous la direction de Jean-Pierre Poussou, Paris: Presses Paris Sorbonne, p. 109.

²⁵ J. du Pasquier, 1983, 「프랑스 선의 동해 진출사」, 『영토문제 연구』 181쪽.

〈표 2〉 윈슬로 선단이 1818~1868년 사이에 포획한 고래 수

선명	개체 수
Massachusetts	257
Archimedes	323
Bourbon	248
George et Albert	281
Entreprise	211
Maryland	246
Asia	360
Woodrop Sims	76
Pallas	275
Liancourt	308
Salamandre	195
Duc d'Orleans	105
Nancy	자료없음
Winslow	90
계	2975

자료: Archives Nationales, CC5.

2) 리앙쿠르호의 항해

리앙쿠르호가 20년이나 포경선으로 사용되었지만, 1838년 이전의 포경활동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1838년에서 1852년 8월 14일 오토츠크 해에서 좌초되기 전까지 5번 항해하였다. 1832년과 1838년 사이에 한 번 또는 두 번 더 항해했음을 문헌연구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문헌을 통해 현재까지 추정한 리앙쿠르호의 선장은 다음과 같다.

1833~1834년: 카스퍼(Asa Bullard Casper, 1798~1850)

1834~1835년: 로몽(Frédéric Romon)

1835~1836년: 라폰첸느(Pierre Nicolasa Lafontaine)

1836~1840년: 넬(Etienne Sebastian Kernelle(Knell) de La Rochelle)

1840~1842, 1842~1844, 1844~1847, 1847~1850, 1850~1852년: 수자(Galotte De Souza) 일명 로페즈(Jean Lopez)

그러나 1838년 이전의 자료는 불확실하여 과연 리앙쿠르호가 포경활동을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일반 상선을 개조하여 포경선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리앙쿠르호 역시 포경활동을 하지 않았을 확률이 존재한다.

리앙쿠르호의 초대 선장은 넬(Etienne Sébastien Knell)로 초기 두 번의 항해(1838~1840과 1840~1842)를 담당하였다. 불행히도 그에 대한 정보는 없으며, 정보 파악이 가능한 것은 그의 후임인 로페즈(Jean Lopez 또는 Lasset)라 불리는 갈로트 드 수자(Galorte de Souza) 선장뿐이다.

갈로트 드 수자는 1804년 포르투갈령인 아조레스제도(archipel des Açores)의 성 조지섬(São Jorge)에서 태어났다. 아조레스제도에선 향유고래가 많아서 1760년대부터 미국의 포경선들이 포경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18세기 말에는 포경선들이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진출하게 된다. 미국인과 유럽인들은 더 이상 이 지역에서 고래를 잡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되었다.

〈표 3〉 갈로트 드 수자의 항해 경력

1830~1830	Woodrop Sims 의 작살수
1831~1832	Woodrop Sims 선원
1832~1833	Woodrop Sims 작살수
1833~1834	Liancourt 1등항해사
1834~1835	Liancourt 1등항해사
1835~1836	Liancourt 1등항해사
1836~1838	Liancourt 부선장
1838~1840	Liancourt 부선장
1840~1842	Liancourt 선장
1842~1844	Liancourt 선장
1844~1847	Liancourt 선장
1847~1850	Liancourt 선장
1850~1852	Liancourt 선장 오호츠크 해에서 좌초
1853~1856	Napoleon III 선장
1860~1863	General Teste 선장
1855년에	르아브르 선원명단(Inscription Maritime du Havre)에서는 제외됨.

자료: Archives Nationales, CC5.

이제 어장이 점점 유럽에서 멀어짐에 따라 출항기간이 길어지고 이에 따른 선원 지원자는 감소하게 되었다.²⁶ 그래서 포경선들은 선원들의 탈주나 사망 등으로 인한 선원의 보충과 장비의 보관을 중간 기착 항구에서 하고자 하였다. 아조레스제도는 어로활동을 위한 선원 수급과 물자 보충을 위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아조레스제도의 주민들은 어려서부터 바다에 익숙했으며, 또한 이곳에서는 가난한 나라 출신들이 많이 흘러들어와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 조건에도 만족하였다. 이들은 열심히 일해서 작살수가 되기도 하고 고급 선원으로 진급하기도 하였다. 19세기에 이 지역 출신으로 포경선 선장이 된 사람이 최소한 41명에 달하는 것으로 기록에 나타나 있다. 물론 상선의 선장이 된 사람도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리앙쿠르호의 선장 수자(Galorte de Souza)의 삶을 살펴보아야 한다. 수자는 1830년 르아브르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3년 동안 포경선 우드롭심호(Woodrop Sims)에서 작살수와 돛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833년에는 리앙쿠르호의 일등항해사(premier lieutenant)가 되

26 북해에서의 포경선의 평균 항해기간은 6개월이었으나 남태평양의 경우 최소 1년, 그리고 북태평양의 경우는 최소 1년 6개월이 소요되었다.

었으며 1836년에는 부선장이 되었다. 1838년에는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동시에 선장이 되었다. 그리고 1852년 리앙쿠르호가 난파할 때까지 선장직을 수행한다. 난파한 다음해부터 1856년까지는 또 다른 포경선인 나폴레옹 3세호(Napoléon III)의 선장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그는 은퇴하여 르아브르에서 생활하였으며 1883년 사망하였다.²⁷

리앙쿠르호의 출어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당시 포경 출어는 주로 남태평양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점차 태평양·동해·오호츠크 해 등으로 어장이 옮겨졌으며 평균 출어 기간은 2년이였다. 물론 출어한다고 계속 고래만 잡는 것은 아니었다. 어장 근처의 항구를 본거지로 하여 2~3달 동안 포경활동을 한 다음 항구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다시 포경활동을 하기를 3~4회 반복하는 것이 하나의 출어였다. 휴식기간이 매우 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휴식기간에는 어장으로 이동하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

이제 1838~1852년까지의 리앙쿠르호의 출어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출어는 1838~1840년 동안 이루어졌다. 르아브르를 1838년 6월 12일 떠나서 남아메리카 대륙의 말단인 케이프 혼(Cape Horn)에 도착한 다음 네 번의 어로활동을 한다. 첫 번째는 1838년 9월 19일에서 12월 21일까지로 남태평양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칠레의 탈카우아노(Talcahuano)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 1839년 1월 12일 뉴질랜드 방향으로 출발하였다. 뉴질랜드 근해에서 3월 8일에서 5월 3일, 6월 3일에서 8월 12일, 6월 21일에서 12월 6일까지 세 번의 어로활동을 하였다.²⁸ 뉴질랜드 조업 중 원주민인 마오리족(Maori)과의 갈등도 보고되었다. 1839년 6월 뉴질랜드 남섬과 북섬 사이에 있는 쿡해협 근처의 Cloudy bay에 정박하였다. 당시 인부로 마오리족도 포함되어 있었다. 8월 초에 리앙쿠르호는 정박하고 있는 유일한 포경선이었다. 하

27 M. Barré, 2003, *Les dernières chasses au cachalot: Açores*, Lille: Editions du Gerfaut, pp. 13~14.

28 AM, CC5 611, Liancourt, année 1840.

29 P. Tremewan, 2005, "French Whal-

루는 일부 마오리 인부들이 다음날 다른 마오리 인부들이 리앙쿠르호를 탈취하려 올 것이라 알려주었다. 그래서 리앙쿠르호는 즉시 돛을 올리고 출발하여 뉴질랜드 북섬에 위치한 아일랜드 만(Bay of Islands)으로 대피하였다.²⁹ 이 출항 기간 중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

명의 선원들이 탈출하였으며 이 부족분을 다른 배에서 탈출한 선원들로 보충하였다는 것이다. 이 네 번의 포경활동으로 리앙쿠르호는 완전 만선이 되었다. 2,652배럴의 고래기름을 채취했으며 477박스의 고래수염을 수집하였다. 휴식을 위해 1840년 1월 13일에서 1월 25일까지 칠레의 칼카우아노에 정박하였으며, 2월 13일 케이프 혼에 도착하였고 5월 9일 르아브르에 귀항하였다.³⁰

두 번째 출어는 1840~1842년에 이루어졌다. 첫 번째 출어를 마친 후 1년 반을 쉬고 1840년 6월 29일 르아브르를 떠나 남태평양으로 향하였다. 세 번의 포경활동을 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1840년 10월 22일에서 1841년 1월 19일까지인데 오스트레일리아 남서해안 즉 인도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1841년 3월 4일에서 5월 4일까지인데 뉴질랜드 남동쪽에서 이루어졌다. 5월 8일에서 22일간 뉴질랜드의 Port Olive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 세 번째 활동을 5월 30일에서 8월 8일까지 뉴질랜드의 Banks Peninsula 근해에서 수행하였다. 67마리의 고래를 작살로 맞혔으며 39마리를 견인하였다. 2,504배럴의 고래기름과 389박스의 고래수염을 확보하였다. 또한 한 마리의 향유고래를 잡아서 75배럴의 기름을 채취하였다. 귀항길인 8월 21일 큰돛이 파손되어 칠레의 탈카우아노에서 수리하였다. 11월 8일 출발하여 케이프 혼에 11월 27일 도착하였다. 그리고 1842년 2월 14일 르아브르로 귀항하였다.³¹

세 번째 출어는 1844~1847년에 이루어졌다. 2년간 르아브르항에 머문 후 1844년 9월 14일 남태평양으로 출항한다. 1844년 11월 6일부터 몇 마리의 고래를 잡았지만 본격적인 활동은 다음 해 봄이 되어서야 시작된다. 첫 번째 포경활동은 뉴질랜드 동쪽에서 1845년 4월 20일에서 9월 13일까지 이루어졌다. 두 달을 항해한 다음 두 번째 포경활동을 하였는데 1845년 11월 29일에서 1846년 1월 29일까지 하와이 근처에서 수행하였다. 세 번째 포경활동은 1846년 4월 13일에서 8월 14일에 타스만 해(Tasman)에서 이루

ers and the Maori," in *Pacific Journeys: Essays in Honour of John Dunmore*, Wellington: Victoria University Press., p. 138.

³⁰ AM, CC5 611, Liancourt, année 1840.

³¹ AM, CC5 611, Liancourt, année 1842.

어졌다. 점차 고래의 개체 수가 이 지역에서 감소하는 것을 체감하였지만 어획량은 만족할 수준이었다. 56마리의 고래를 작살로 맞혀서 29마리를 견인하였다. 2,844배럴의 기름을 채취하였으며 561박스의 고래수염을 획득하였다. 여기에 5마리의 향유고래를 잡아서 157배럴의 기름을 채취하였다. 12월 11일에서 12월 29일까지 탈카우아노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 출항하여 1847년 1월 25일 케이프 혼에 도착하였고 4월 1일에 르아브르에 귀항하였다.³²

네 번째 출어는 1847~1850년에 이루어졌는데 이때 독도를 발견하게 된다. 1847년 10월 26일 르아브르를 출발하였는데 이전과 달리 북태평양과 동해 그리고 오희츠크 해를 목적지로 정하였다. 고래들이 이쪽 해역으로 서식처를 옮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포경활동은 1843년 5월 21일에서 8월 30일까지 오희츠크 해에서 이루어졌다. 두 번째 포경활동에 대한 기록은 매우 부실하여 정확한 기간을 산출하기 어렵다. 1848년 10월 6일 도쿄 만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동해로 진출하여 1849년 1월 27일 독도를 발견하였다. 세 번째 어로활동은 3월 7일에서 7월 30일까지 동해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8월 9일에서 13일 사이에는 오희츠크 해를 항해하였다. 총 59마리의 고래를 작살로 맞혀서 25마리의 고래를 배에 올렸다. 2,629배럴의 고래기름을 채취하였으며 508박스의 고래수염을 획득하였다. 더구나 5마리의 향유고래를 잡아서 52배럴의 기름을 채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샌드위치 섬 쪽으로 항해한 다음 케이프 혼에 1850년 1월 30일 도착하였고 4월 19일 르아브르 항에 귀항하였다.³³ 독도 발견 당시의 리앙쿠르호의 선원 26명의 명부는 <표 4>에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 항해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1852년 8월 14일 오희츠크 해에서 좌초하였기 때문이다. 1850년대에는 보조금 삭감으로 새로운 포경선의 건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래된 포경선들은 시설낙후와 좌초 등으로 기능을 상실해갔다. 예를 들어 1851년에만 4척의 배가 좌초하였다. 프랑스 전체적으로 1856년에는 16척의 포경선이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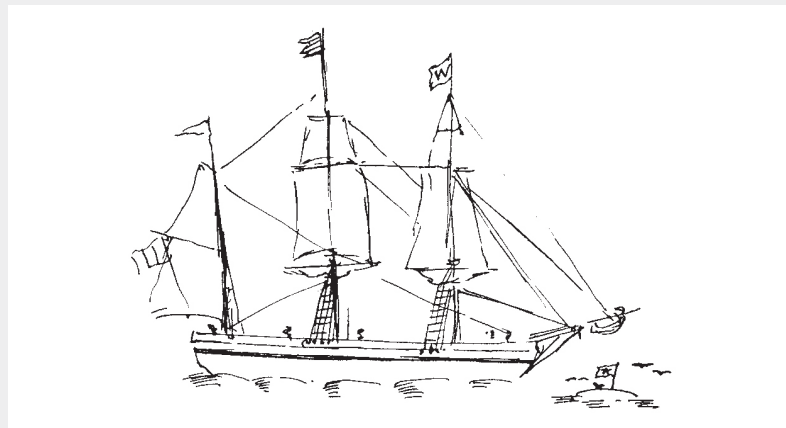
³² AM, CC5 611, Liancourt, année 1847.

³³ AM, CC5 611, Liancourt, année 1850.

〈표 4〉 독도 발견 당시 리앙쿠르호의 선원

선원	임무
De Souza Galorte, dit Lopez	선장 Capitaine
Homont, Jean Victorien	부선장 2 nd capitaine
Fleury, Jean Louis	일등항해사 1 ^e lieutenant
Tassel, Louis	이등항해사 2 ^e lieutenant
De Pons de Loliverie, Paul Joseph	의사 Chirurgien
Carlouer, Guillaume	작살 담당 Harponneur
Le Floch, Jean Marie	작살 담당 Harponneur
Rio, César Marie	작살 담당 Harponneur
Le Rolle, Pierre Mathurin	작살 및 목공 Harponneur et charpentier
Normand, Pierre Ambroise	선임 통 제조사 Maître tonnelier
Lecoq, Adolphe Edouard	이등 통 제조사 2 nd tonnelier
Perrot, Jean François	Maître d'hôtel
Rousseau, Jean	선원 Matelot
Patey, Pierre Eugène	선원 Matelot
Giraud, Pierre	선원 Matelot
Le Gardinier, Guillaume Nicolas	선원 Matelot
Catelain, Martial Eugène Auguste	요리사 Cuisinier
Menard, Jean Bénédicte Noël	돛 담당 Voilier
Barbou, Aimé Auguste	선원 Matelot
Pellec, Yves	견습선원 Novice
Allain, Yves	견습선원 Novice
Gouriou, Guillaume	견습선원 Novice
Rouy, Aimé Adolphe Désiré	견습선원 Novice
Debord, Henri Charles François	초보 목수 Novice charpentier
Vial, Joseph Gabriel	견습선원 Novice
Lacorne, Charles	mousse

자료: Archives Nationales CC5.



〈그림 2〉 리앙쿠르호의 모습을 그린 스케치

출처: Pasquier, 1982.

으나 1857년에는 좌초 등으로 인해 11척이 기능을 상실한다.³⁴

프랑스 포경선이 좌초할 경우 선원들은 호노롤루루로 이동하여 다른 배에 승선하였다. 배를 수리할 항구가 어장과 너무 먼 것이 프랑스 포경산업의 약점이었다. 하와이 주재 프랑스 영사의 주 업무는 포경선단에 대한 관리였다. 리앙쿠르호에 탑승한 선원들의 탈주도 매우 빈번하였으며 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1853년 4월 르아브르에 귀항하였다.³⁵

2. 리앙쿠르호와 독도의 발견

1) 군함이 아닌 포경선이 독도를 발견한 이유

1849년 1월 27일의 독도 발견은 동해와 한반도 동안에 대한 19세기 서양인의 시각을 보여준다. 1787년 라페루즈는 동해를 지나면서 울릉도를 발견하였고 그의 항해기에 기록하였다. 브루톤은 10년 후에 동해를 지나갔다. 그리고 러시아의 크루젠스테른(Krusenstern) 역시 1805년 동해를 지나갔으나 독도를 발견했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19세기 초에 한반도 동안은 한반도 서안에 비해 서양에 잘 알려져 있었다. 서안에 대한 정보는 하멜의 표류기 수준이었다. 그러나 동해는 19세기 중반에는 거의 잊혀진 바다였다. 오후츠크 해가 고래잡이 어장으로 개방되기 전까지는 러시아인들을 제외한 서양인들은 동해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

게다가 크림전쟁으로 인해 이 지역에 유럽 국가들은 관심을 기울일 여지가 없었다.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시베리아로 진출하기 이전까지는 이 지역의 지정학적 가치에 대해서 역시 무지하였다. 러시아인들은 1860년에는 블라디보스토크를 건설하는 등 이 지역의 지정학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서양의 포경선들은 19세기 전반에는 일본의 남쪽과 동쪽 해안을 따라 이동하였다. 1850년대 이전에는 조선과 접촉하려는 서양 선박들은 황해를 주로 이

34 N. Poirier, 2003, *op. cit.*, pp. 28~41.

35 P. H. de Lempis, *op. cit.*, p. 109.

용하였다. 1866년의 병인양요 이전에 서양인들은 서울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서울이 한반도 서쪽에 위치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또 한반도 서안은 당시 서양의 가장 큰 관심이었던 중국과 마주보는 곳이었다. 즉 황해가 동해보다 이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닌 바다였다.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현재의 동경인 에도가 위치한 일본 남부 연안과 동부 연안이 일본 서해안보다는 서양인들의 관점에서는 훨씬 가치가 있었다. 즉 현재의 동해는 조선과 접촉하려는 서양인 또는 일본과 접촉하려는 서양 선박 모두에게 무관심의 바다였다. 그래서 상선이나 군함이 아닌 포경선이 독도를 19세기 중반에야 동해 한가운데서 발견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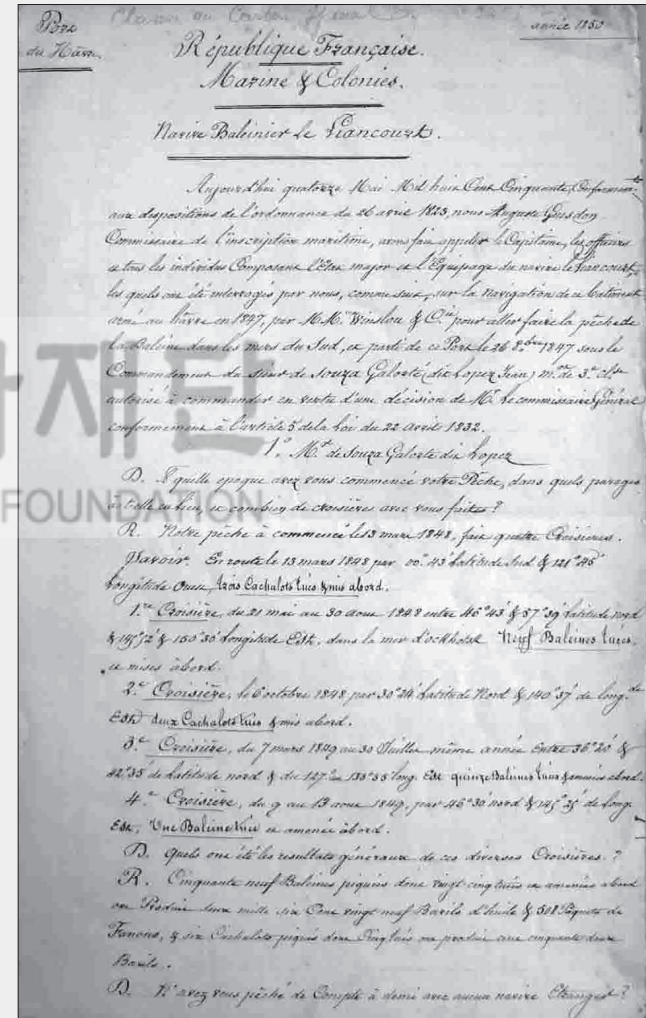
2) 로페즈 선장의 독도 발견에 대한 보고

‘1833년 4월 26일 법령(ordonnance royale du 26 avril 1833)’에 따라서 모든 포경선 선장은 그들의 어로활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다음의 질문에 대답해야만 했다. 그래서 리앙쿠르호의 귀항보고서(그림 3-5)에서 다음의 질문에 답한다.

- 어로활동은 언제 시작했으며 얼마나 많이 항해하였는가?
- 다양한 어로활동의 결과는 어떠한가?
- 외국 선적의 선박과 협력하여 조업한 적은 있는가?
- 항구에 도착하기 이전에 처분한 어획물이 있는가?
- 어로활동 중 식품과 음료수의 부족을 경험했는가?
- 병자 발생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항해와 관련되어 바다에서 특별히 발견한 것은 있는가?³⁶
- 어로활동을 마친 시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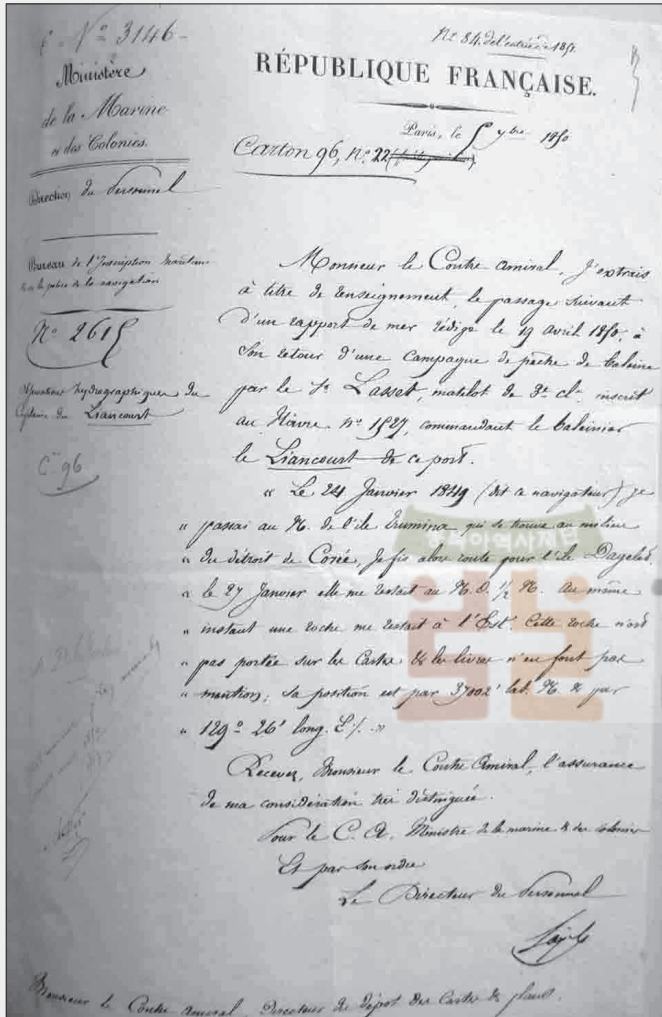
³⁶ 원문은 다음과 같다. 문법상의 오류는 있지만 그대로 옮기기로 한다.
N'avez vous faire pendant la durée de voyage aucune remarque ou découverte qui puisse intéresser la navigation?

이 가운데 일곱번째 질문이 독도와 연관된다. 귀항보고서의 2쪽에 있는 이 질문에 대해 로페즈는 ‘aucune’라고 답변했는데, 이는 특별히 발견한 것이 없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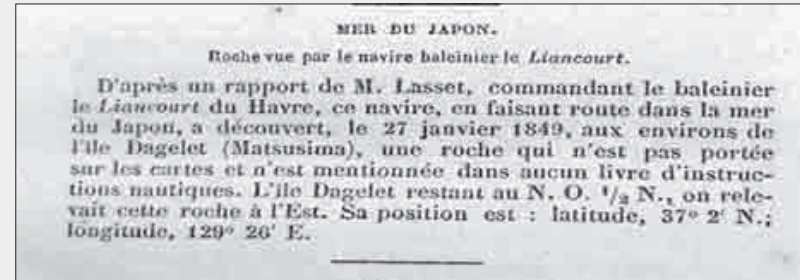
〈그림 3〉 귀항보고서 1쪽

자료: Archives Nationales, CC5.



〈그림 6〉 1851년 해군 해도국 문서
자료: Archives Nationales, Dépôt des cartes et plans de la Marine, Volume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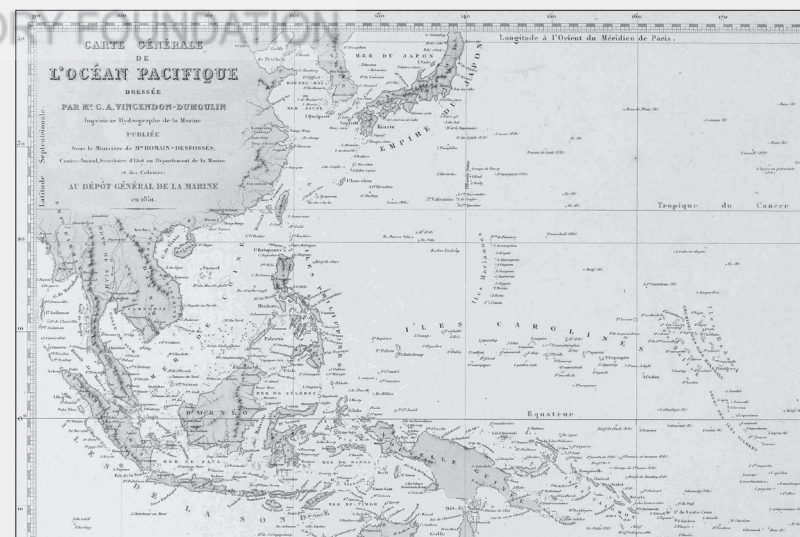
시마 북쪽을 통과한 후 다즐레(울릉도)로 향했다. 1월 27일 나는 다즐레가 북
동 1/2 북 방향으로 바라보이는 위치에 있었다. 그때 동쪽에 큰 암석 하나
가 있었다. 이 암석은 어떤 지도와 책자에도 나타나 있지 않았다. 이 암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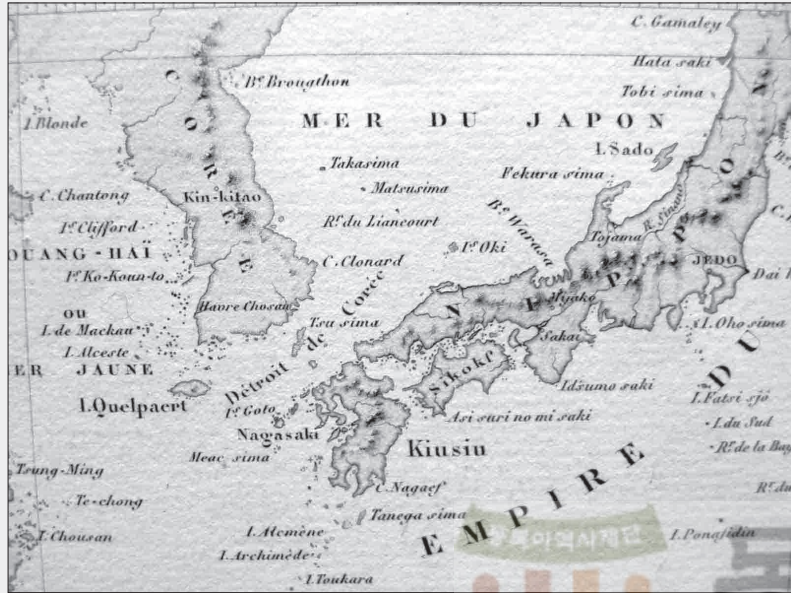
〈그림 7〉 1850(1851)년 『프랑스 수로지』 17쪽의 독도에 관한 기술
자료: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DCP Ge FF 78 c.

위치는 북위 37° 2', 동경 129° 26' 이었다.

39 Annales Hydrographiques, 1850 (1851), tome 4, p. 17, Dépôt général de la Marine, France. 그리고 이 내용은 『프랑스 수로지(1850년과 1851년 합본호)』³⁹에도 수록된다(〈그림 7〉). 또한 독도는 프랑스 해군



〈그림 8〉 그림 프랑스 해군의 태평양 지도(1851) 일부
자료: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DCP, Ge BB 3 1264-1851.



〈그림 9〉 태평양 지도의 독도 부분

자료: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의 ‘태평양 지도(Carte générale de l’Océan Pacifique)’에 1851년 리앙쿠르암이란 의미의 프랑스어인 ‘Rr. du Liancourt’의 명칭으로 표기되었다(〈그림 8·9〉). 또한 1864년 프랑스 『해군 해도첩(Cartes Hydrographiques)』 34권에 수록된 ‘아시아 동안지도(Asie, côtes orientales)’에 독도가 프랑스인이 ‘1849년 발견한 리앙쿠르 암석, 영어로는 호네스트 섬, 러시아어로 메넬라이와 올리부차’로 명기된다(〈그림 10〉). 이후 영국과 미국의 해도에 독도가 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민간 지도에도 표기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독도의 발견이 프랑스 해군성의 지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독도가 프랑스인들에게 군사적 전략 요충지의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었을까? 21세기 오늘날의 한국인에게 독도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다 과학적으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그림 10〉 1864년 프랑스 『해군 해도첩』의 독도

자료: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DCP Ge BB 3,96C 216752

19세기 포경선은 해변에 세 가지 이유로 상륙하였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과 식료품의 조달이었다. 이들은 휴식이 용이하며 접근이 쉽고 지역민이 친절함 항구를 선호했다. 동해는 대한해협에서 오후츠크 해, 그리고 베링 해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었다. 한반도의 동쪽 해안, 특별히 함경도 연안은 하멜과 브루톤이 이미 언급하였듯이 고래잡이와 관련해서는 매우 매력적인 곳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오랜 항해 기간과 선상활동의 어려움으로 선원들이 도망가는 일이 빈번하였기 때문에 선원을 보충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당시 지도의 부정확으로 인해 좌초가 빈발하여 피난과 수리의 목적으로 착륙하는 것이다.

당시 포경산업은 단순한 어업에서 벗어나 고래기름을 이용한 종합적인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포경선과 각국 정부는 지역민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항구에서의 물자조달과 선원들의 건강유지에 이들의 도움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동북아시아에서도 이러한 정책은 유지되었다.

포경산업은 당시 미국과 프랑스의 성장 동력이었다. 1850년대 중반에 일본과 류큐를 개항시키려 노력한데는 이 이유도 포함되어 있다. 개항 이전이지만 많은 포경선들이 식료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과 조난 대피를 위하여 일본 연안에 상륙하였다. 각국의 해군은 포경선들이 이들 국가에서의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하였다. 한반도는 프랑스 정부와 포경업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다. 프랑스 해군과 영사는 석유 발견 이전에 중요한 연료로 사용되었던 고래기름의 확보를 위한 포경선의 정박에 조선이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짐을 인지하고 조선의 개항에 관심을 기울였다.⁴⁰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프랑스와 달랐다. 미국의 경우는 조선은 일본에 비해 정박항으로서의 가치가 적었다. 일본이 태평양 어장, 동해, 오호츠크 해의 중심에 위치하여 미국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독도는 당시 포경선의 정박항구를 찾는 시기에 발견되었다. 그러나 독도는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곳이었다. 포경선의 보급을 위해서는 농경지·주민·정박처가 필요한데 독도는 전혀 그런 장소는 아니었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의 포경선들이 리앙쿠르호 이전에 독도를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동해를 지나는 포경선들에게 독도는 위험한 암초였지 그 이상은 아니었던 것이다.

I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리앙쿠르호가 독도를 발견하게 된 과정과 이후의 기록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선적인 리앙쿠르호가 독도를 발견하게 되고 독도를 리앙쿠르암으로 명명한 것은 결국 서양

의 에너지 및 공업자원 확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중해와 대서양의 유럽 근해에서 시작된 고래잡이가 남획으로 인한 고래의 개체 수 감소로 인해 새로운 고래 자원을 찾기 위해 어장을 이동하였고 마침내 동해와 오호츠크 해까지 진출하여 독도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결국 서구열강의 자원 확보과정에서 독도의 명칭이 결정된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세기 프랑스 포경산업과 관련해 독도를 조명한 한국 최초의 연구라는 것이다. 르아브르 항의 성장과 프랑스 정부의 포경선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산업정책을 통해 독도 발견을 조명하였다.

둘째,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문헌 자료를 발굴하여 리앙쿠르호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기록하였다. 그리고 주요 자료의 경우는 원문을 수록하여 후속 연구자의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거의 모든 고문서를 조사한 것과는 달리 고지도의 경우는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리앙쿠르와 호르네스 등 다양한 명칭이 수록된 지도를 비교하고 각 지도가 가지는 의미를 보다 세밀히 분석한다면 서양인들의 독도의 지리적 인식에 대해 보다 심도 깊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또 하나의 연구 과제는 포경선의 활동과 동해 명칭이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즉 포경선의 중간 기착 기지 및 주 활동 무대가 일본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18세기까지 한국해로 표기되던 동해가 일본해로 명칭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⁴⁰ Roux, P-E., 2009, Les baleines d'un consul en Corée: Pigüm-do, 1851, in *Mélanges offerts à Marc Orange et Alexandre Guillemoz*, Paris: Collège de France.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의 독도 발견에 관해 역사지리학적인 관점에서 조사하는 것이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국가기록원의 리앙쿠르호 관련자료를 찾아 목록을 만들었으며 이를 당시의 프랑스 포경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1816~1868년의 르아브르의 포경산업은 1816년 미국에서 이주한 윈슬로에 의해 시작되었다. 개인적 재능과 정부보조금을 활용하여 그의 포경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다. 19세기 초반에는 남부 대서양과 남태평양에서 포획활동을 하였으나 어자원의 감소로 어장을 동해와 북태평양으로 옮기게 되었다. 1818~1855년까지가 포경산업의 황금기였는데 조선·일본·류큐·시베리아 연안의 어획량이 많았다. 프랑스 포경선은 동해를 지나 오희츠크해와 베링 해에서 포경활동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독도를 1849년 발견하고 보고하였다.

또한 리앙쿠르호의 어로활동과 선장인 수자의 경력에 대해 상세히 살펴 보았다. 1850년의 『프랑스 수로지』는 이를 보고하였으며, 1851년의 태평양 지도에는 독도가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되었다. 이 영향으로 아직도 많은 서구의 지도에는 독도는 이 명칭으로 표기되고 있다.

〈주제어〉

동해, 독도, 프랑스 국립도서관, 프랑스 국가기록원, 리앙쿠르, 포경

ABSTRACT

Discovery of Dokdo by French whale ship Liancourt

Jung, Inchul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Pierre-Emmanuel Roux

Researcher, Ecole des hautes études en sciences sociales

Liancourt Rocks, the French name of the Korean island Dokdo, originates from a French whaling ship that discovered the island in 1849.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study the discovery of Dokdo by French ship Liancourt from an approach based on historical geography. A survey was conducted on old manuscripts and maps held at the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and Archives Nationale de France to compile a list of those that include descriptions of the French whale ship Liancourt and its discovery of Dokdo. The development of the French whaling industry was also examined due to its relation to the island's discovery.

The French whaling trade between 1816 and 1868 began at Le Havre by Jeremiah Winslow, an American master and Quaker from New England. He settled in France, became naturalized and quickly earned a fortune with his skills in business, strength of character and by utilizing subsidies offered by the French government.

During the first third of the nineteenth century, whales in the South Atlantic and South Pacific were exploited. When resources in those waters grew scarce, the whaling industry shifted a majority of its operations to the North Pacific including the East Sea and reaped record profits. The period between 1840 and 1855 was so profitable for whalers that it has been labeled as the 'Golden Age' of whaling, making the industry a major economic interest for Northeast Asia, particularly along the coasts of Korea, Japan, Ryūkyū islands and Siberia.

As the East Sea was on the way for whalers sailing northward to fisheries in the Sea of Okhotsk and the Bering Sea, it was frequented by numerous whalers. French whaling activity was mainly concentrated in the Pacific, where a formidable fleet operated even before any French colonies were established in the area. When the French whaling vessel Liancourt discovered Dokdo in 1849 and in April 1850, the captain reported back to Paris.

This report also covers in detail the fishing activities of the whale vessel

Liancourt and its captain Galorte de Souza. The Annals of French Hydrography published in 1850 reported the discovery of Dokdo and later editions also depict Dokdo. The Pacific Ocean map of 1851 published by the French Navy mapped Dokdo as Liancourt Rocks (Rocher du Liancourt) for the first time, which has since been contributing to the widespread naming of Dokdo as Liancourt Rocks in maps produced in the West.

Keywords

East Sea, Dokdo, BNF, ANF, Liancourt, Whaling

참고문헌

- 강준식, 1995, 『다시 읽는 하멜표류기』, 웅진닷컴.
- 박구병, 1987, 『한국포경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박천홍, 2008, 『악령이 출몰하던 조선의 바다』, 현실문화.
- 이진명, 2005,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 유승주 외 옮김, 1979, 『안정복의 국역 동사강목』, 민족문화추진회.
- 박구병, 1995, 「미국포경선원의 한국영토 상륙과 한국인과의 접촉에 관한 연구」, 『아세아 연구』 94.
- Pasquier, J. T., 1983, 「프랑스 선의 동해 진출사」, 『영토문제 연구』 1.
- Archives Nationales, Section Marine (Vincennes): CC5 611: Pêche, de la baleine. Déclaration de retour et interrogation des équipages(1840~1854).
- Barré, M., 2003, *Les dernières chasses au cachalot: Açores*, Lille: Editions du Gerfaut.
- Burcin, T., 2005, *Commodore Perry's 1853 Japanese Expedition: How Whaling Influenced the Event that Revolutionized Japan*, MA Thesis, Blacksburg: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 Griffis, W. E., 1904, *Corea: The Hermit Na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Heffer, J., 1995, *Les États-Unis et le Pacifique: Histoire d'une frontière*, Paris: A. Michel.
- Huetz de Lemps, P., 2006, Des Français aux îles Hawaii au XIXe siècle, in *Les Français dans le Pacifique*, sous la direction de Jean-Pierre Poussou, Paris: Presses Paris Sorbonne.
- Lacroix, L., 1997, *Les Derniers baleiniers français*, Rennes: Ouest-France.
- Lambert-Dansette, J., 2001, *Histoire de l'entreprise et des chefs d'entreprise en France*, Paris: L'Harmattan.
- Malon, C., 2006, *Le Havre colonial de 1880 à 1960*, Mont-Saint-Aignan: Publications des Universités de Rouen et du Havre; Caen: Presses Universitaires de Caen.
- McOmie, W., 2005, *Foreign Images and Experiences of Japan. Volume I: First Century AD-1841*, Folkestone: Global Oriental.
- Nasu Keiji(奈須敬二), 1990, *Hokei seisuiiki(捕鯨盛衰記)*, Tōkyō: Kōrin.
- Pasquier, J. T., 1982, *Les Baleiniers français au XIX e siècle, 1814~1868*, Grenoble: Terre et Mer.
- Poirier, N., 2003, *Les Baleiniers français en Nouvelle-Zélande: des ambitions coloniales de la Monarchie de juillet dans le Pacifique*, Paris: les Indes savantes.
- Roux, P. M., 2009, *Les baleines d'un consul en Corée: Pigūm-do, 1851*, in *Mélanges offerts à Marc Orange et Alexandre Guillemoz*, Paris: Collège de France.
- Speer, W., 1872, "Corea: What shall we do with her?", *The Galaxy*, vol. 13, issue 3.
- Tremewan, P., 2005, "French Whalers and the Maori," in *Pacific Journeys: Essays in Honour of John Dunmore*, Wellington: Victoria University Press.

장소특정적 미술과 독도의 문화예술적 영토

장윤정 DMZ학술원 연구위원
이호진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교수
김재한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I. 머리말

독도를 둘러싼 갈등은 역사적·국제법적·지리적·군사적·경제적·생태적·민족주의적 가치 때문에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최근 독도는 일본 정부의 강도 높은 영유권 주장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안으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제소할 것을 요구하는 등 독도에 관한 국제여론을 일본 쪽으로 기울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키나와·북방영토담당대신 산하 ‘영토주권내외발신전문가간담회(領土·主權をめぐる内外發信に關する有識者懇談會)’는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이 정당한 반면 관계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내용을 국내외에 전략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3년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오키나와·북방영토담당대신은 독도에 관한 일본인 여론조사 후 “향후 국민들이 더 정확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세밀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¹ 일본 정부뿐 아니라 일본청년회의소(日本青年會 1 《産經新聞》, 2013. 8. 2.

議所)와 같은 일본 민간단체들도 영토영해 의식의 육성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독도 관련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며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일반 시민에 홍보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홍보는 과거보다 더 강화된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독도를 점유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남의 주목을 끄는 홍보가 역설적으로 오히려 분쟁화가 되기 때문에 조용한 외교를 추진한 면도 있고, 국내적으론 식민지 이래 민족주의 의식의 충분한 고양으로 국내 홍보의 필요성이 강조되지 않은 면도 있다.

일본의 도발적 홍보에 대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 그렇다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어느 때보다 신중하면서도 창조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적·경제적·국제법적·역사적 의미의 영유권 강화 노력은 적지 않게 추진되어왔다. 이제까지 시도되지 않은 종류의 영유권 강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서의 그런 방법론은 특정한 장소에 맞춰 설치되는 예술의 한 장르인 장소특정적 미술(site-specific art)이다. 장소특정적 미술을 통한 문화예술적 독도 영유권 강화 모색이 이 글의 목적이다.

정치·경제·국제법·역사 등에 기초한 영토 개념에 비해, 문화예술적 영토는 가치의 향유에서 남을 덜 배제하고 더 공유된다는 점에서 평화에 더 가까운 개념이다. 예술은 문화적 차이를 초월하여 종교적 가치나 다른 일반적 가치를 지지하고 표현한다는 점에서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기도 한다.² 특히 주관적 요소를 강조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문화는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로 개념화되면서 명백한 산물로 관찰 가능한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³ 이런 면에서 문화예술적

영토의 경계선은 다른 의미의 경계선보다 느슨하게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고 문화예술적 영토가 경계선을 소멸시킨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더욱 강화시키는 면도 있다. 국가 간의 장벽이

2 Milton Albrecht, 1968, "Art as an Instit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33, No. 3, pp. 383~397.

3 양중희, 2005, 『문화예술사회학』, 도서출판 그린, 25쪽.

허물어지면서 각자의 문화를 고수하려는 노력은 전쟁을 방불케 한다. 문화적 정체성을 두고 문화 전쟁이 전개되기도 한다.⁴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문화예술적 영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국경이 뚜렷한 곳에서는 문화예술적 영토가 그 정치적 국경을 넘나드는 모습이라면, 정치적 국경이 느슨해진 곳에서의 문화예술적 영토는 각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구역에 따라 새로운 국경이 획정되면서 기존 국경을 대체하는 모습이다. 전자의 문화예술적 영토가 초(超)국경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후자의 문화예술적 영토는 강한 문화예술적 영토가 확대되고 약한 문화예술적 영토는 축소됨을 의미한다. 즉 문화예술은 보편성과 동시에 특수성을 지니기 때문에 문화예술적 영토는 인접국과의 영토 공유성 증대 그리고 동시에 자국의 영유권 공고화라는 양면적 속성을 지니는 것이다.

독도의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가치를 토대로 하여 고유화되 동시에 보편적인 문화예술로 영유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변 환경과 사회의식을 동반하여 예술적 가치를 실현하는 장소특정적 미술은 그런 대내외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독도의 주체성을 호소할 문화 외교의 장을 제공할 것이다. 또 국가 위상을 높이는 긍정적인 국가 브랜드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독도의 정체성을 범국민적으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적 단계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독도 고유의 장소특정 문화를 만들어 문화예술적 영유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즉, 문화예술적 영유권 강화와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문화적 공유를 통해, 경계지역인 독도의 평화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서술한다. 먼저, 사회적 상호작용을 동반하는 장소특정적 미술과 특정 지역의 성공적 결합 사례들을 살펴본다. 다음, 독도라는 특정 지역에서 가능한 장소특정적 미술을 제시한다. 독도의 영토 상징성을 문화예술로 소통하고 동시에 분쟁 이미지를 문화예술로 희석하는 것이다. 독도의 인문사회 및 자연 환경을 고려한 장소특정적 미술의 범위, 문화예술

⁴ Donald Mitchell, 2000, *Cultural Geography: A Critical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Publishing.

성으로서의 기대효과와 가치추정, 독도 인근지역의 효과 파급 등을 고려하여 독도와 문화예술이 접목할 수 있는 구체적 작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장소특정적 미술

1. 의의

장소와 부합되는 장소특정적 미술의 형태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최근 들어, 장소에 의해 규정된(site-determined), 장소 지향적인(site-oriented), 장소를 참조하는(site-referenced), 장소를 의식하는(site-conscious), 장소에 반응하는(site-responsive), 장소와 관계된(site-related) 등과 같은 용어들이 여러 미술가와 비평가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1960~1970년대에 개별 미술작품의 설치 장소를 미술작품의 생산·전시·수용의 일부로 통합하려 했던 반(反)관념주의적이고 반(反)상업주의적인 장소특정적 미술의 재등장이다.⁵

미술은 비(非)정형의 재료에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이미 형성된 재료를 갖고 재형성하는 것이다.⁶ ‘형상화(formation)’라는 개념 즉 형태를 만듦으로써 무언가 이룬다는 개념은 미술의 전이적(transitional) 성격의 한 측면이다.⁷ 초기의 장소특정적 미술은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 크리스토와 잔클로드(Christo and Jeanne-Claude)가 주도하여, 예술과 장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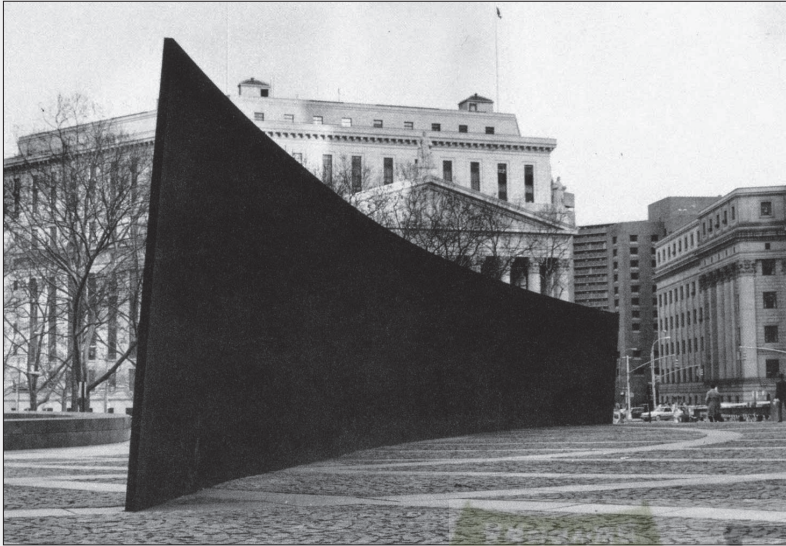
융합을 통해 장소특정화를 창조하는 데 기여하였다. 건축가이자 조각가인 리처드 세라는 당대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작품으로 단순히 공간에 놓인 미술품 자체보다 장소를 분석한 결합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1973년 리처드 세라는 “미술작품은 그 특정 장소와 재구성의 한 부분이 되고, 개념적으로나 지각적으로 그 장소의 유기적 구조로서 존재한다”⁸ 라고 하여 장소특

⁵ 권미원, 2013, 『장소 특정적 미술』, 현실 문화, 11쪽.

⁶ Laurie Schneider Adams, 1996, *The Methodologies of Art*, Reading: Westview Press.

⁷ Laurie Schneider Adams, 1996, 앞의 책.

⁸ Clara Weyergraf, 1980, *Richard Ser-*



〈그림 1〉 〈기울어진 호〉

출처: <http://www.nectarhoff.com/2014/04/the-violence-of-richard-serra.html>.

정적 미술을 정의한 바 있다. 리처드 세라는 특정 장소의 유기적인 형태에 집중하였으며 작품으로 공간 속의 공간이 존재함을 느끼게 하였다.

리처드 세라의 〈기울어진 호(Tilted Arc, 1981~1989)〉는 기존 공공미술(public art)의 장소특정 한계성에 대해 논란을 일으켰다. 뉴욕시 연방광장(Federal Plaza)에 전시된 〈기울어진 호〉는 당시 지배적이던 디자인 중시의 장소특정성을 거부하였고 또 주어진 건축에 순응하지 않았으며,⁹ 오히려 미술작품 설치 장소의 공간적 동선을 단절시켰다. 〈기울어진 호〉는 장소특정적 미술이 미학에 충실한 공공 공간 디자인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사회적 효과와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장소특정적 미술은 종종 주변 환경, 특히 자연을 이용하여 표현되어지는 환경예술(environment art)이나 대지미술(land art)과 장소 특정이라는 유사점을 갖기도 한다. 주변 환경과 예술의 결합은 특정 지역에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새로

9: Interviews, Etc. 1970~1980, Yonkers: Hudson River Museum, p. 36.

9 권미원, 2013, 앞의 책, 18쪽.

운 의미를 부여한다. 장소특정적 미술은 공공미술의 세부화된 형태로 공공 영역인 사회에 참여하는 ‘행동하는 문화(culture in action)’로 표현되기도 한다.¹⁰ 예술과 장소·지역의 결합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장소특정적 미술은 특정 장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조형적 또는 사회적 가치관을 새롭게 조명한다. 장소특정의 정의는 단순 거주 지역뿐 아니라, 순수한 자연의 형태, 역사적인 명소, 사회분쟁 지역 등 여러 범주로 이루어진다. 그 장소에 부합하는 특성의 미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정체성을 일시적으로 드러내거나, 변형 가능성을 배제하여 영구적으로 만들거나, 시공에 따라 변형되는 지속 가능한 형태로 재정의한다.

장소특정적 미술은 단순한 장소·지역의 변화에만 중점을 두지 않는다. 주류 장소특정적 예술가들은 사회적 문제들을 작품에 담았다. 장소특정적 미술은 기존 형식을 고수하는 미술계에 대해 반발하였고 상업적 미술을 거부했다. 주로 화이트큐브(white cube)라고 불리는 하얀 벽의 실내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전시 형태에서 벗어났다. 또 대중과의 직결적인 소통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급력은 매우 컸다. 장소특정적 미술이 설치되는 지역은 그 지역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그 문화를 인식하는 새로운 감성적 공동체를 형성한다. 기존의 형상학적 장소에 미술의 추상적 의도를 더하여, 감성적 힘을 극대화한다.

장소특정적 미술은 억압된 역사를 파헤치고, 소외된 집단과 쟁점을 드러내며, 지배 문화에서 무시되었던 ‘하찮은’ 장소들을 재발견할 수 있다.¹¹ 장소는 개별적이고 정체적이어서야 재발견된다. 개별 장소가 독특한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을 때 장소특정적 미술이 사회 참여로 이어진다. 또 장소특정적 미술은 장소에 대한 공공의 경험과 언어를 만들어낸다. 이런 공공장소를 통한 장소 특정성은 일상에서 존재해 있던 장소에 독특한 정체성을 부여하여 지역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초기 공공미술은 추상적인 미술품의 형태로 미술가 개인의 생각을 공동체에게 강요하는 사회적 미학으로

10 권미원, 2013, 앞의 책, ‘행동하는 문화’는 일시적인 전시 프로그램 ‘행동하는 문화: 시카고에서의 새로운 공공미술(Culture in Action: New Public Art in Chicago)’에서 나온 용어다. 그 프로그램은 1993년 5월 아침에 시카고 출신 여성 100인을 기리는 기념패가 박힌 100개의 석회암을 시카고 전역에 전시하여 큰 관심을 끌었다.

11 권미원, 2013, 앞의 책, 86쪽.

비취졌다. 소수 집단이나 전문가 집단에게 국한되었던 미술작품의 감상은 공공미술 개념의 도입으로 적극적인 사회성을 내포하게 되었지만, 지역 사회는 공공미술 작품을 여전히 독립된 미술관의 연장으로 받아들였다. 리처드 세라의 <기울어진 호>는 이러한 공공미술의 안이하고 단면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정치성 및 사회성을 띤 장소특정성을 도입하였다. “주어진 장소에 대한 사전 분석은 장소의 형태뿐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장소특정적 작품은 하나같이 스스로를 일부분으로 포괄하는 더 큰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맥락에 대한 판단을 보여준다.”¹² 즉, 장소특정적 미술은 동시대의 사회적 맥락에서 공동체와 더불어 공공장소를 공유하는 것이다.

2. 사례

네덜란드 제이볼데(Zeewolde) 지역에 설치한 <해수면(Sea Level, 1989~1996)>이라는 리처드 세라의 작품은 장소특정적 미술의 단면을 보여주는 작품 중의 하나다. 호수로 둘러싸인 이 지역의 특성인 해수면과 지면이 맞닿아 있는 경계를 다시금 인위적인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가공되지 않은 철의 투박함을 살려, 주위 자연과 자연스럽게 연계된다.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는 인공적 재질의 작품은 날씨와 계절의 자연적 변화에 따라 침수되기도 하는 과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공간의 유동성을 작품으로 표현하여, 장소의 특정성을 주었다. 인구 2만 명의 농업 소도시인 제이볼데는 리처드 세라의 작품으로 대지미술의 원리를 살린 장소특정적 미술작품이 있는 지역 공동체로 재명명되었다. 그의 작품은 인간의 인공적 산물을 자연과의 경계선으로 만들어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또 다시 그 공간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의 일부로 흡수되는 순차적인 양면성을 지녔다.

자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필요와 아름다움에 있다.¹³ 그 원리에 순응한 미술의 형태는 다시금 그 미술

¹² Richard Serra, 1994, *Writings/Interview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202.

¹³ Ralph Emerson, 1979, *Nature: Origin, Growth, Meaning*, 2nd edition.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pp. 11~14. 자연의 모든 형태와 행위는 인류에게 필수적인 것이며, 가장 근본



<그림 2> <해수면>

출처: 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Richard_Serra_Sealevel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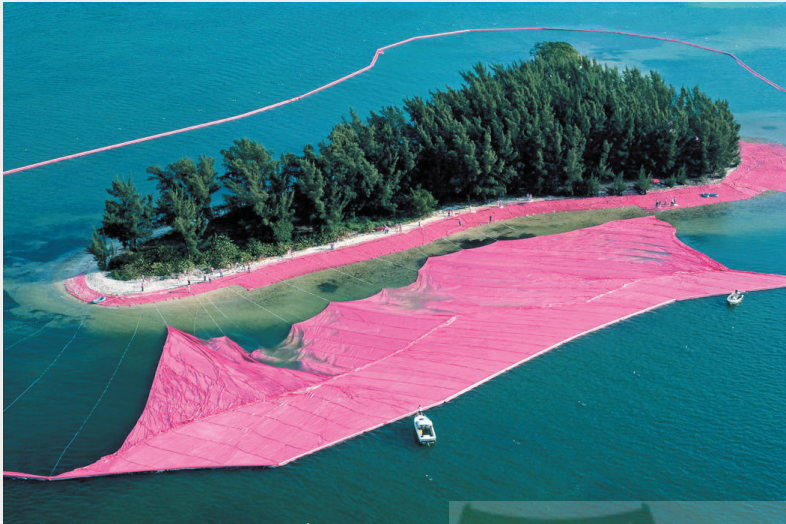
을 자연의 일부로 만드는 쌍방향적 역할을 수행한다. 자연으로 둘러싸인 고즈넉한 도시를 문화적 교감의 매개체인 장소특정적 미술로 재탄생시켰다.

크리스토와 진클로드는 장소특정의 장소 한계에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인공적인 구조물의 특정화부터, 거대한 자연과의 융합까지 장소특정적 미술의 시각화를 극대화하였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빅토리오 에마누엘 2세의 동상을 천으로 덮은 행위는 보이지 않는 존재의 시작이 모두 평등하다는 메시지를 통해 사상적인 이념을 시각화했다.

1980년에 시작하여 1983년에 완성되었던 미국 마이애미의 <천으로 둘러싸인 섬(surrounded islands)>은 1920년 초 인공으로 만들어졌던 섬의 존재를 만천하에 알렸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섬인 만큼, 섬은 사람들의 무

관심과 쓰레기더미로 뒤덮여 있었다. 크리스토와 잔클로드는 쓰레기더미를 치우고, 화려한 핑크색 천으로 섬 둘레에 스커트 형식으로 재현하여, 불모지의 섬을 다시금 살아나게 하였다. 인공적인 색깔인 핑크색

적인 원리는 필요와 아름다움이다. 예술이 휴머니즘을 토대로 작업되는 것은 자연의 기본원리에 기반을 둔 추상적 표현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림 3> 《천으로 둘러싸인 섬》 설치 과정

© 1983 Christo



<그림 4> 《천으로 둘러싸인 섬》 설치 후 전경

© 1983 Christo

은 마이애미 거주민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라틴계의 대표색, 기존에 존재하는 섬 주위 자연환경과의 차별성, 효율적인 물의 투과성 등을 내포한다. 크리스토와 잔클로드의 작품은 인류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상징 중 하나인 나일론 천을 사용하여 인간 문명과 자연환경이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조화를 일깨워준다. 비록 인위적인 형태의 재질을 이용하여 작품을 탄생시키지만 작품 주위의 동선과 생태환경 보호를 고려한 작품 과정은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섬이라는 소외적 단면의 해소, 발전 가능성의 전제, 환경과의 조화 등을 부각시킨 대표적인 사례다. <천으로 둘러싸인 섬>을 실현시키기 위해, 크리스토는 환경문제에 대해 프로젝트 진행 전 2년 반이라는 시간을 들여 심도 깊게 조사하였고, 각계각층의 반대와 탄원에 맞서 싸워야 했다. 크리스토와 잔클로드의 프로젝트는 거대한 스케일의 미학적 접근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을 시도한다.

덴마크계 아이슬란드 출신인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은 자연과 과학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장소특정적 미술을 구사한다. 올라퍼 엘리아슨



<그림 5> 《초록색 강》(스웨덴 스톡홀름)

© olafureliasson

은 정지해 있는 자연의 모습을 특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하나의 도구로 하여 장소특정이 유동적임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시리즈 중 하나인 <초록색 강(Green River)>은 무해한 안료를 흐르는 강물에 흘려보냄으로써 점차적으로 변해가는 강물의 색깔을 통해 자연이 동일한 형태로 지속될 수 없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초록색 강>은 일시적인 행위 형태를 포함한 장소특정적 미술이다. 특정 지역에 무차별적인 시간대 행위를 통해 그 지역의 사회적 문제와 공감대를 만들도록 시선을 한곳에 모으는 역할을 한다. 우리 주위에 항상 존재해 있는 자연의 재인식 과정이다.

플로렌테인 호프만(Florentijn Hofman)은 이동 가능한 작품을 통해 장소특정적 미술의 특성을 살린다. 대표적 작품인 <고무오리(Rubber Duck)> 시리즈는 2007년 프랑스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국가를 표류하고 있는 작품이다. 장소특정의 정의가 한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용이

하게 옮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사회적 문제와 환경적 문제들을 아이들 물놀이 장난감 중 하나인 고무오리를 통해 익살스럽게 표현하고 장소특정적 미술의 장소 이동의 요소를 가미했다. 초기 장소특정적 미술은 한 곳에 머무르는 형태였다면, 현재 진화되고 있는 장소특정적 미술의 형태는 장소 이동을 용이하게 한다. 기존 전시되었던 지역에서 가졌던 문제들을 용이하게 다른 곳으로 옮겨가 각기 다른 지역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각적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다.

국내에서도 장소특정적 미술이 추진되고 있다. 장소 기준으로는 접경지역 중심의 미술작품이 있다. 파주 임진각 등에 분단과 통일을 주제로 전시되었거나 전시되어 있는 미술품은 그러한 범주의 예다. 지속적인 장소특정적 미술 프로젝트의 예는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다. 인천아트플랫폼이 주관하여 2011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는 인천 지역의 의제인 평화를 화두로 인천 지역의 섬들을 답사하며, 예술 창작활동을 촉진시키는 프로젝트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인천광역시에서 구(舊)도시 재생산업의 일환으로 중구 해안동의 개항기 근대 건축물 및 인근 건물을 매입하여 조성한 복합문화예술 공간이다.¹⁴ 국내의 예술가들의 활발한 교류와 인천의 도시적 특수성을 살리는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이끄는 문화예술의 매개체다.



<그림 6> <고무오리>(홍콩, 2013)

© florentijnhofman

III. 독도의 장소특정적 미술 설치안

1. 기획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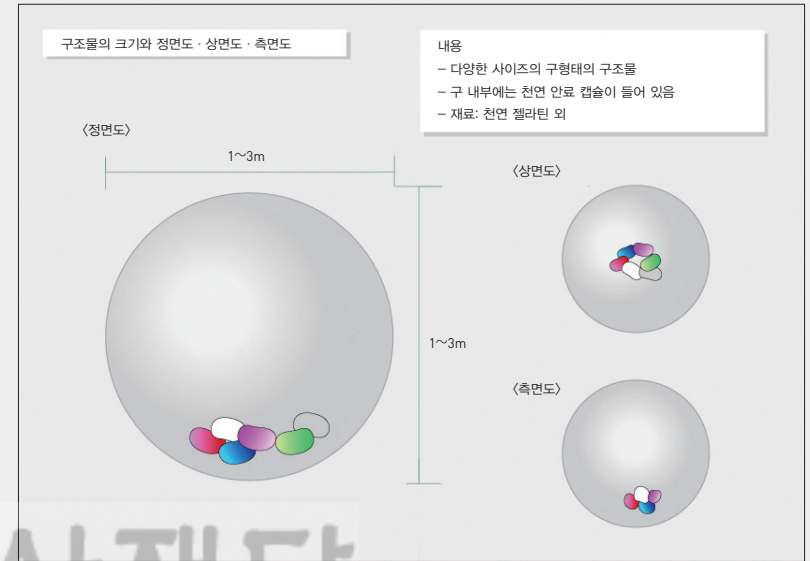
독도의 총면적은 0.2km²가 되지 않고 동도와 서도 모두 둘레가 각각 2~3km에 불과한 작은 규모의 도서(島嶼)다. 지리적 특성으로 판단하자면, 장소특정적 미술에 적합한 장소다.

독도는 독도만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있

¹⁴ www.inartplatform.kr.

다.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섬 주위에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독특한 자연환경을 이루고 있다. 독도는 지정학적이고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때문에 개발이 주장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생태적 보존을 이유로 많은 반대에 부딪혀 왔다. 특정 장소로서의 독도 문화를 만들고 독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자연친화적 가치 증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감성적 산물이 포함된 문화예술은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하는 가치 창출을 이끌어낸다. 난개발 대신에 문화예술과의 융합을 통한 지속 가능한 활동은 독도의 평화 문화 및 홍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독도라는 특정 장소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조건하의 장소특정적 미술 설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독도의 특수한 자연환경과 예술적 표현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시각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로 정치적으로 접근해왔던 기존 독도 프로젝트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공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영상·사진 기록물을 통해 독도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특정적 미술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7〉 《소멸》 캡슐 구조물 도면

2. 설치 예시 1

① 작품 제목

2020 Ongoing project: Part 1 (갈등의) 소멸

② 작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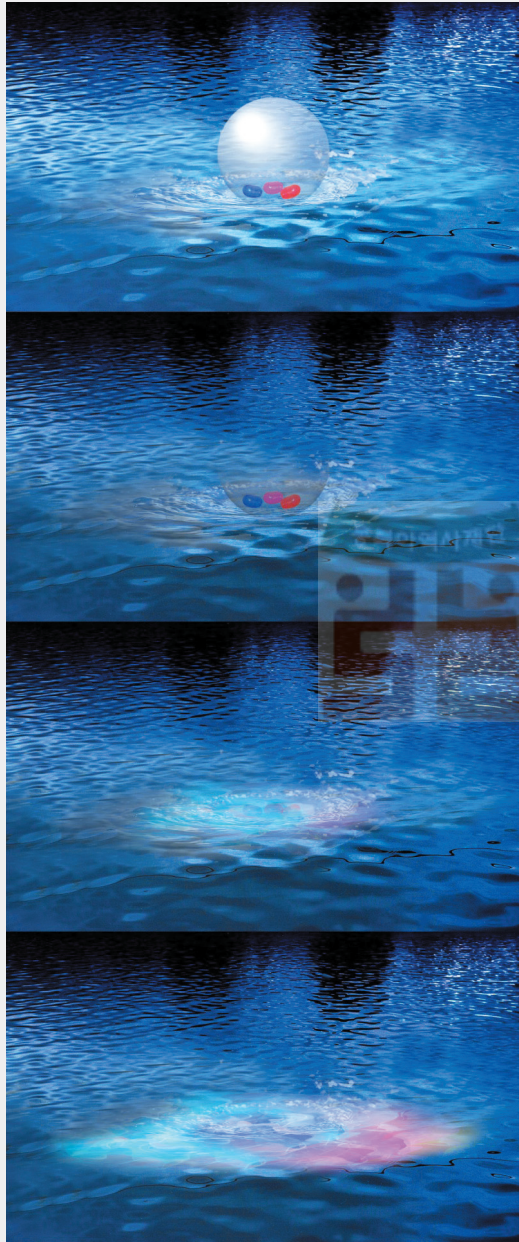
천연 젤라틴으로 제작한 구(球)형태의 구조물들(〈그림 7〉), 천연 안료 캡슐, 항공촬영 진행

③ 작품 내용

자연친화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독도 주변에 움직이는 회화 이미지를 연출하여 새로운 시각 이미지를 제공한다.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



〈그림 8〉 《소멸》 캡슐 구조물 설치 전경



〈그림 9〉 〈소멸〉 캡슐 구조물의 변화 과정



〈그림 10〉 〈소멸〉 캡슐 구조물의 소멸 전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11〉 〈소멸〉 이미지의 변천

서 작업하면서 자연 현상에 노출시킨다. 구형태로 이루어지는 <소멸> 프로젝트는 구형태의 특성을 이용하여 물결에 따라 자연스럽게 순환하면서 떠 있는 모습을 표현한다(그림 8)). 시간이 지날수록 천연 젤라틴(또는 옥수수·감자 분말)으로 제작된 구의 형태들이 점차 해체되며 구 안의 캡슐이 바다에 닿으면서 용해되고(그림 9)), 캡슐 안의 천연 안료가 바다에 퍼지면서 <소멸>의 시각 이미지를 보여준다(그림 10)). 여기서 바다는 캔버스의 역할, 안료는 물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고정된 이미지가 아닌, 바다의 흐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움직이는 캔버스 화면'이 구현되는 것이다(그림 11)). 자연에서 시작하고 소멸하여 자연으로 회귀한다는 순환을 의미한다. 날씨 상황과 자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겠지만,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기간은 대략 1개월로 예상된다. 항공촬영을 통해 작품이 변화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다른 장소 예컨대 서울 도심의 전광판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주어 공감대 형성과 장소특정을 다각화한다. 또한 사진촬영 등으로 기록하여 관람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을 관람할 수 있게 한다.

3. 설치 예시 2

① 작품 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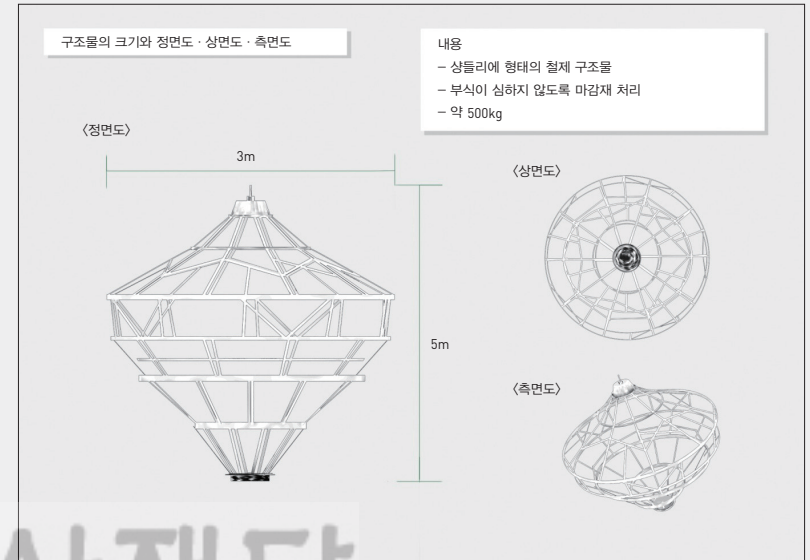
2020 Ongoing project: Part 2 (평화의) 생성

② 작품 구성

상들리에 형태의 철제 구조물(그림 12)), 수중 영상촬영, 사진촬영 진행

③ 작품 내용

독도 주변 바다 속에 투하한 구조물의 변화 모습으로 독도 생태계를 새롭게 기록한다. 상들리에 모양에서 모티브를 잡은 구조물을 제작한다(그림 13)). 구조물을 바다 속에 투하하여 2년 정도 설치하면서(그림 14)) 계절과 생태계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담는다(그림 15)). 이 과정 동안



〈그림 12〉〈생성〉 상들리에 구조물 도면



〈그림 13〉〈생성〉 상들리에 구조물 지상 설치 모습



〈그림 18〉 《생성》 상들리에 구조물 도심 설치 전경

구조물은 바다 속 생물들의 집과 같은 생태계의 한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자연에서 새로운 자연이 생성되며 계속적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나타낸다. 수중 영상촬영 등으로 작업 과정을 기록하며, 이러한 모습을 ‘소멸’ 프로젝트와 동일한 과정인, 도심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여 준다(〈그림 16·17〉). 또한 모든 작업 과정들은 기록되어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다른 장소에서 전시된다.

2년 뒤에 구조물을 끌어올려서 그 변화된 모습을 선착장과 서울 도심지에 전시하여 장소특정적 미술의 유동성을 극대화하고, 많은 관객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한다(〈그림 18〉).

4. 지속 가능한 운영

설치된 장소특정적 미술은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운영과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첫째, 설치 기간 동안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예상 불가능한 지점에서 새롭게 접할 수 있는 시각적 효과를 구현해볼 수 있다. 둘째, 변화하는 과정 자체가 작품의 일부로, 이러한 모습을 기록하여 남김으로써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의 지속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 셋째, 변화된 구조물과 그 과정을 촬영한 영상·사진 등을 독도가 아닌 다른 장소에 전시함으로써, 생태적 환경에서 나온 결과물이 이질적인 장소에서 관찰될 때 관객들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자연에서 생성되고 자연으로 소멸되는 작품 속 순환구조를 통해 독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생태와 미술의 관계를 새롭게 제시한다.

IV. 독도의 문화예술적 영토성

한국인에게 독도는 일제 치하 식민지 경험을 연상시키는 ‘ 지켜야 할 대상’으로 인식된다. 독도 이미지는 과거에 겪은 식민지 피해를 기억하게 하고 또 앞으로 싸워서 지켜내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 그러한 과거 지향적인 대결적 이미지뿐 아니라 소통과 교류를 중시하는 탈근대적(post-modern) 이미지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지만 탈근대적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배타적 고유 영토를 포기하고 국제적 공유지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더욱 아니다.

영유권을 공고히 하면서도 탈근대적 향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장소특정적 미술의 설치와 향유를 제안하는 것이다. 정치적이거나 대결적인 정서 대신에, 예술작품을 통해 독도를 더 가깝게 인식하고 호의적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다. 독도의 문화예술적 시각 이미지를 창출하여 장소특정적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고취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은 문화예술과 특정 장소의 결합을 통해 독도가 문화예술적 영토로

국제·국내 사회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지정학적 가치 외에도 풍부한 자연 가치를 지닌 독도라는 특정 지역에서 자연환경과 예술의 조합이라는 장소특정적 설치 미술을 제시하는 것이다. 소멸과 생성이라는 자연의 기본 원리에 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 초록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의 골이 깊다. 독도는 영토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한국의 공식 입장이지만 지금의 독도 이미지는 갈등 없는 평화로운 것이 이미 아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는 과거사 문제의 연장이고, 동시에 쌍방 모두 더 나아질 수는 없는 제로섬의 문제다. 이 글에서는 전통적인 정치적·경제적·국제법적·역사적 영토 개념 대신에 문화예술적 영토 개념으로 접근한다. 배타적 관할권과 특수한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 영토 개념에 비해, 문화예술적 영토 개념은 국가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에 더 가깝고 또 탈근대적 영토 개념에도 더 가깝다. 물론 문화예술적 영토라고 반드시 공존과 상생적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문화적 제국주의와 식민지가 그런 예다. 역설적으로 그런 속성 때문에 특수성과 근대성을 고수하는 측도 영유권의 문화예술적 강화 방식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이다. 독도라는 특정 지역을 장소특정적 미술과 결합하여 평화적인 문화예술적 영토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장소특정적 미술은 특정 장소의 시각적 변화를 중심으로 공공성과 예술성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기존의 장소특정적 미술 사례들을 토대로 독도에서 구현할 수 있는 장소특정적 미술 설치를 제시하였다. 갈등의 소멸과 평화의 생성을 담는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독도, 문화예술적 영토, 장소특정적 미술

ABSTRACT

A Site-specific Art in Dokdo as an Artistic Territory

Chang, Yoonjeong

Research Fellow, The Academy of DMZ Sciences

Lee, Hojin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ainting, Incheon Catholic University

Kim, Chaehan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Hallym University

Sovereignty claims Japan has been making over Dokdo has deepened the rift between Korea and Japan. Although Korea does not officially acknowledge Dokdo as an object of territorial dispute, the image the island currently portrays is no longer one of peace and free from conflict. The issue is linked to other issues originating from differing historical accounts of the past between the two countries that are impossible to resolve through a single session of negotiation. It is a zero-sum game incapable of satisfying both sides. This paper adopts a concept of territory based on art and culture instead of traditional definitions of territory according to history, politics, economy, and international law. While the traditional notion of territory assumes exclusive jurisdiction, the notion of territory according to art and culture considers transnational values, which places it closer to that based on postmodernism. Yet, as it has been proven through cultural imperialism and cultural colonialism, a territorial concept based on art and culture does not always deliver consequences of coexistence. Paradoxically, such qualities could make consolidation of sovereignty through art and culture acceptable to those who seek modern sovereignty as well those who insist on forming a transnational community. Thus, this paper aims to assess Dokdo's potential to become a peaceful land of art and culture by integrating site-specific works of art with the island. Site-specific artworks draw out the public and artistic nature of a specific site by visually transforming it, hence creating a new cultural space as a result. This paper takes previous cases of such artworks into consideration to propose two feasible site-specific artworks for Dokdo under the theme of dissolving conflict and creating peace.

Keywords

artistic territory, Dokdo, site-specific art

참고문헌

- 권미원, 2013, 『장소 특정적 미술』, 현실문화.
- 양종희, 2005, 『문화예술 사회학』, 도서출판 그린.
- 김재한·조운수·임지혜, 2013, 「민주정치와 일본의 독도정책」, 『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제5호.
- 장윤정·이호진, 2012, 「접경 지역에 대한 예술적 접근」, 『영토해양연구』 Vol. 4.
- Adams, Laurie, 1996, *The Methodologies of Art*, Reading: Westview Press.
- Eliasson, Olafur, 2006, *Olafur Eliasson: Your Color Memory*, Glenside: Arcadia University Art Gallery.
- Emerson, Ralph, 1979, *Nature: Origin, Growth, Meaning*, 2nd edition,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Kaye, Nick, 2000, *Site-specific Art*, London: Routledge.
- Mitchell, Donald, 2000, *Cultural Geography: A Critical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Publishing.
- Newhouse, Victoria, 2005, *Art and the Power of Placement*, New York: Monacelli Press.
- Serra, Richard, 1994, *Writings/Interview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erra, Richard, 2007, *Richard Serra Sculpture: Forty Years*, New York: Museum of Modern Art.
- Weyergraf, Clara, 1980, *Richard Serra: Interviews, Etc. 1970~1980*, Yonkers: Hudson River Museum.
- Albrecht, Milton, 1968, "Art as an Instit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3, No. 3.

동아시아 영토문제와 독도

고봉준 · 이명찬 · 하도형 외
(동북아역사재단, 2014년)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일어일본학과 교수

이 책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011년부터 시작한 ‘동아시아 영토문제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성과를 단행본으로 묶어낸 것이다. 최근 영토문제가 빈번히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이 책은 동아시아 영토 문제를 다룬 뛰어난 연구서로 주요 일간지에 소개되었다. 주지하다시피, 냉전 이후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수식하는 용어 가운데 ‘영토와 영해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단어로 꼽히고 있다. 동아시아 패러독스(East Asian Paradox)로 표현되는 것처럼,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었음에도, 중·일, 러·일, 중국·동남아 간 영토·영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대립과 갈등이 더욱더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 책에서 미국의 저명한 외교잡지인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의 보도를 인용하여 “발칸화하고 있는 동아시아 영토문제”로 첫 제목을 붙일 정도로, 도서영유권과 영해권 갈등은 역내 국가 간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애국심, 민족주의, 국가 위신, 에너지와 어업자원 확보, 국내정치 역학 등으로 인한 영토와 영해문제는 당사국의 일반시민, 외교부처, 정치리더, 신문과 방송, 국제기구, 민간NGO가 지닌 열기와 주장을 단숨에 흡입해버리는 마치 블랙홀 같은 괴물이 되어버린 감마저 있다.

중국·일본·러시아 등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요국이 개입된 동북아 영토와 영해를 둘러싼 대립, 방공 식별구역 설정을 둘러싼 영공문제는 지역질서 우위 선점을 향한 국익추구와 경쟁심리가 강하게 투사되면서 대립 양상이 쉽사리 가라앉기 어려운 실정이다. 각국에서 영토문제는 이미 서로 간에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 전후 질서의 수립과정에서 영토문제 원인을 제공하였고, 오늘날 초강대국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의 균형자·조정자 역할을 맡고 있는 미국은, 오바마 정권의 아시아에로 복귀(pivot to Asia),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정책에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외교정책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재정위기 상태하에서 2020년까지 무려 4,500억 달러에 이르는 국방비 감축이 불가피한 미국은, 지난 4월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 동맹국 순방시에 그저 한미·미일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쳐 실망감을 자아냈다. 국내외적 요인에 기인한 영토문제의 복잡성과 중층성이 반복되면서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불안정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중국의 국가 핵심이익으로서 설정된 다오위 다오(센카쿠제도) 문제, 강경론과 온건론을 반복하는 러시아의 쿠릴열도 영유권 주장, 우익정치가 그리고 교과서와 매스컴을 통해 만들어내는 일본의 영토 내셔널리즘, 국지전도 불사하지 않는 중국과 동남아 각국 간 도서 분쟁은 유럽연합의 통합수준과 비교할 때, 동아시아의 국제정치가 여전히 미완성이라는 현주소를 여실히 노정시키고 있다.

영토문제에 관련된 수많은 국내 연구에도 아직까지 상당 부분의 영역이 미답지로 남아 있다. 영토문제는 그저 단순히 양자간 혹은 다자간 해결하기 힘든 난제가 아니며, 동북아와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다른 문제와 달리 영토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복잡하게 국제정치를 뒤흔드는 잠재적·현재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갈등과 대립, 심지어 국지전과 영토분쟁까지 유발시키는, 파괴적인 휘발성을 높여갈 것이다. 영토·영해·영공 문제에 대한 자국주장의 근거를 공고히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냉철한 국제정치 시각에서 각국의 입장

과 상호관계, 내정과 외교의 연계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까닭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출발부터 신현실주의 관점에서 동북아 영토문제를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에서 진단해내고 있다. 각 장마다 독도 주권 수호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이 책은 영토문제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 지식계의 대외인식 영역을 한 단계 격상시킨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외 연구 가운데 독도 영유권, 독도와 간도, 한·일 어업협정, 중·일 러·일 간 영토문제, 동북아 영토갈등의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와 번역이 상당히 축적되어왔다. 초기에는 주로 국토수호에 대한 관점에서 독도와 간도 영유권에 대한 저서와 논문이 많았으나 최근 들어 동아시아 지역의 영토문제로 학술적 관심과 대상이 확대·심화되어왔다.

시대를 거슬러 역사적인 영토와 민족문제를 다루거나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가의 영토인식 조사,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중·일 간 영토문제의 국제정치, 러·일 간 쿠릴열도 영유권 문제, 남중국해 중국·동남아 각국 간 도서와 해양 갈등으로 인식의 지평이 넓어진 것이다. 분석방법도 조선시대와 대한제국기, 일본제국주의와 영토 확장, 근대와 전후 등 역사적인 측면은 물론, 해양과 영토에 대한 국제법과 판례분석, 미국과 동아시아 영토문제의 국제정치, 국내정치와 영토·영해 문제 등, 역사·법률·정치적인 접근법에 더하여 다양한 방법과 시기, 대상으로 연구수준과 내용이 깊어지고 넓어져왔다.

이 책은 지금까지 기존연구를 뛰어넘어 동아시아 영토문제에 대한 현실적 접근과 미국의 원칙, 영토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국내정치, 정치지도자의 리더십 요인이 영토문제에 미치는 영향, 중·러 영토문제 해결과 남사군도 도서영유권 갈등의 대안 모색 등, 성공적인 해결과 외교적 조정과정이 상세히 서술되고 있어서 영토문제에 대한 입체적인 설명과 전체적인 조망을 가능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장마다 개별 사례마다 기존연구에 더하여 새로운 이론적·정책적 함의가 제시되고 있어서 한국 정부가 당면한 영토·영해 해법에 대한 풍부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 책은 모든 국가가 안보와 국익을 추구하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출발하고 있다. 케네츠 왈츠(Kenneth Waltz)에 따르면 세계정부가 결여된 국제정치는 무정부상태며,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국가는 영토와 영해 수호를 중시하고 있다. 글로벌 국가 중국의 부상과 매년 12% 이상의 군사비 증액, 미일동맹 강화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 남북한 군사적 대립과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신 현실주의의 구조론과 맥락을 같이한다. 각 장은 분석수준을 정치적 리더십, 국내정치 요인, 국제정치의 구조적인 영향력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또한, 책 말미에 동아시아 영토문제를 둘러싼 관련 조약과 각국 외교부의 입장을 소개하면서 독자들이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음미하도록 1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영토문제와 직접 관련된 미국·중국·일본의 국제조약과 외교부 성명이 게재되어 있어 각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연구의 대상과 방법, 연구의 수준과 심도 면에서 이 책은 가히 영토와 영해 문제 연구 2.0에 해당하는 셈이다. 동아시아 국제정치 전반에 걸친 상수로써 영토문제를 해석해낸 점, 양자간·다자간 외교관계와 국내정치적 요소를 고려한 입체적인 분석, 갈등현실과 대안모색을 동시에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이 책은 또 하나 훌륭한 지적 자산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동아시아 영토문제를 냉철한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관찰하고 있는 점은 첫 장에서 동아시아 영유권 갈등의 핵심 주체인 미국의 관점을 소개한 데서 살펴볼 수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 영토문제의 발생, 관리, 해결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치·외교 과정에 직접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어디까지나 중립적이다. 이미 미국 국무부는 1995년 해양 분쟁과 관련된 5개 원칙으로 갈등의 평화적 해결, 평화와 안정, 항행의 자유, 영토문제의 중립성 유지, 국제적 원칙의 존중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중국과 협력적이고 갈등적인 관계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다. 2010년 들어 4년주기 국방검토 보고서인 QDR(Quadrennial Defence Review)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현재와 미래의 위협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면서,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실현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이

것은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면서, 금융 위기로 인하여 미국이 경제회복과 안정을 위하여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로서 북한 핵문제, 환경과 기후변화,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등의 현안에서 글로벌 G2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간다는 것이다.

고봉준에 따르면, 균형자이자 조정자인 미국은 전후 동아시아 질서인 바퀴축과 바퀴살(hub-spokes)의 비대칭 양자동맹 관계에서 벗어나, 최근 효율적인 안보위협 대응을 위하여 미국과 동맹국 간 안보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와 중동에서 충돌억제와 안정도모를 위한 해외 군사력 배치를 재강조하고 있다. 한국·일본·호주에 주둔하는 미군과 군사기지는 미국 개입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다. 중국과 필리핀 간 영해갈등이 지속되면서 필리핀은 4개 미군기지의 재배치를 미국에 요청한 바 있다.

미국은 2011년 상하원 결의안과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남중국해·동중국해·서해에서 평화적인 공동해결 노력을 촉구하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질서에서 소집자·보증인의 역할은, 각각 행위자들 간의 안보우대를 강화하고,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도록 네트워크화하는 것,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와 함께 대립과 갈등을 억지하고 유사시 침략을 격퇴하는 것이다. 미국이 빨빠르게 탈근대적 이행을 네트워크적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미국의 동아시아 아키텍처 구상과 미국의 정책, 역할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다오위다오(센카쿠제도) 문제를 다룬 이명찬의 글은 당사자인 중국·일본·미국의 입장을 균형잡히고 정확한 사실에 따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과 일본, 중국에서 나온 연구 성과들이 적재적소에 인용되고 있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중·일 간 국제법적·역사적 주장의 쟁점을 5개로 나누어서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제도에 대한 영유권을 각각 비교한 것은 매우 흥미롭다. 특히 센카쿠제도가 중·일 수뇌 간 대립으로 에스컬레이트되는 정치·외교적 과정이 명료하게 그려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중·일 간 인적 네트워크의 단절과 대화부족은 중·일

갈등을 더욱 고조시켰다.

2010년 9월 어선충돌 사건에 대하여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수상은 중·일 간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시부터 지금까지 양국 정상 간 암묵적인 합의 내용이었던 해결 보류론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2012년 9월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센카쿠제도 국유화 반대 요청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날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수상이 서둘러 국유화를 결정한 것은 결정적으로 중국 측의 거센 반발을 샀다. 진보적인 일본 민주당 정권에서조차 오히려 동북아 지역 내 영토 갈등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고 한 점은 새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미국 역할론에 비추어본다면, 동아시아 영토·영해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입장은 일관되어 있으며, 적절한 개입과 방기를 반복하고 있다. 센카쿠제도(중국명 다오위다오)는 미일동맹에서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이다. 센카쿠제도에 대한 미국의 중립은 중·일 양국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일본 측으로서는 영토·영해를 지키기 위하여 제공한 미군기지가 센카쿠제도를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미일동맹은 전혀 제 역할을 못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반면, 미국은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일 갈등에 말려들어 미·중 간 협력체제 내지 미일동맹의 유효성이 시험대에 올려지거나, 중·일 양국에게서 배척당하는 최악의 사태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

다만, 결론부분에서 센카쿠제도를 역사문제로 단순화시키거나 무주지선점의 논리가 현대 국제법에서 유효성이 낮다는 주장은 약간의 의문으로 남는다. 중국이 영토를 역사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수용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은 제국주의 초기였음에도 센카쿠제도 문제에서 국제법상 매우 체계적으로 접근하면서 대외팽창을 추구해온 것이 사실이다.

중국이 국제법적 차원에서 영토·영해 권한을 본격적으로 주장한 것은 1940년대 들어와서야 비로소 시작된 것이었다. 피폐해진 청나라에 대신하여 근대국가 수립이 늦어진데다 청일전쟁의 패배, 중일전쟁과 국공내전, 냉

전과 분단으로 인하여 본토와 타이완에 각각 다른 2개의 정부수립 과정을 겪으면서 영토·영해 주권을 침해당했던 중국은 국제법과 동시에 역사성을 투영시키지 않을 수 없다. 쿠릴열도를 둘러싼 구소련의 주장도 일시적으로 내란 상태하에서 변주곡을 겪은 점에서 공통된 사항이었다. 동북아의 영토 문제는 다분히 일본 제국주의가 국제법상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영토를 침탈한 것에 대한 '역사 바로세우기'가 투사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샌프란시스코조약을 비롯한 전후체제의 재구축에서, 그리고 전후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지적되었다.

다오위다오(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국의 입장은 경제적 이익의 추구하고 동시에, 중일 간 세력전이 과정에서 국가위신이 강조되고 있는 점에서 흥미롭다. 중국이 역사성 못지 않게 논쟁보류, 공동개발이라는 해결방안을 제시해 온 점은 경제적 요인이 강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만일 경제적 요인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면, 중·일 간 영토갈등은 오히려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예컨대, 중국이 일본의 센카쿠 영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일본은 중국과 공동개발권을 허용하는 것이다. 일본이나 중국은 1968년 센카쿠제도(다오위다오) 근처에서 대규모 유전 가능성이 발표된 이후에 비로소 양국 모두 주변해역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 문제를 다룬 하도형은 중·일 간 영토문제가 보다 근본적으로 파워 시프트(power shift)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1970년대 에너지와 해양자원 확보, 당면한 중·소 국경분쟁, 중·일 경제협력의 필요성은 중·일 간 영토 문제의 쟁점화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미중 G2체제의 형성과 일본에서 중국 우위로 세력전이, 중국 정부의 해양전략 강화는 중국의 대외 강경노선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다. 일본에서도 중국 부상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중국 위협론이 완전히 정착되어갔다. 2004년 이후 방위대강에서 중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한 것이 전형적인 사례다.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쿠릴열도 정책에 대한 인식도 흥미로운 주제이다. 이에 대한 국내 연구가 거의 전무에 가깝기 때문이다. 김인성에 따르

면, 러시아는 쿠릴열도를 제2차세계대전의 전리품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일본과의 협상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구소련은 1956년 일소 국교정상화에서 2개 섬을 반환한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러시아 국민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도 대다수가 쿠릴열도를 러시아 영토로 간주하면서도 약 3할 가까운 응답자가 영토문제를 협상 가능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1956년 조약에 따라 2개 섬 반환은 가능하며, 일본의 쿠릴열도 투자를 비롯한 러·일 간 경제협력을 전제로 양국 간 지속적인 협상을 강조한 바 있다.

남상구는 김인성의 연구와 반대 시각에서 쿠릴열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과 반응을 다루고 있다. 일본은 쿠릴열도 문제를 소련에 의한 전쟁피해자 인식에서 출발한다. 소련의 불가침조약 일방파기와 일본 침공, 만주에서의 민간인 학살과 일본 여성 성폭행, 구 일본군의 시베리아 억류와 노동수탈로 인한 10여만 명의 사망자, 쿠릴열도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점령은 피해자 의식을 낳고 있다. 한국이 독도를 일본의 식민지배에 따른 역사문제라는 피해자 의식과 같은 구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원래 일본에서 영토문제는 쿠릴열도 문제에 국한된 것이었다. 독도와 센카쿠제도는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영토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고, 2010년 중·일 간 어업분쟁과 다오위다오(센카쿠제도) 영유권 갈등을 겪으면서 영토와 영해 문제가 정치화·내면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일본 정부는 쿠릴열도·센카쿠제도를 두고 주변국가와 갈등을 겪으면서 개별 분리된 사례가 아닌 동일한 눈높이에서 원칙적이고 강경한 정책대응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밖에도 김동욱은 남사군도 도서와 영해 갈등에 대한 각국의 입장차를 국가별로 나누어 구체적이고 해박한 내용을 담아서 소개하고 있다. 사법적인 해결방안과 동시에 협력적인 해결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윤태룡은 동아시아 영토문제 가운데 보기드문 해결사례로 중·소 간 전바오섬 분쟁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1969년 중·소 영토갈등의 배경과 역사,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상과정에서 적용된 상호주의와 공정성, 50:50 원칙과 공동사용,

기술적·법적으로 조율된 근거와 정치적 마무리를 소개하고 있다. 신선하고 풍부한 내용과 시사점 넘치는 연구 성과들이 한 권 속에 포괄되어 있는 것이다.

국제비교와 이론적인 분석, 신뢰도 높은 자료, 국내외 정치적 연계와 상호인식 등, 탁월한 분석력과 접근법은 이 책의 장점이다. 이 책은 동북아 해양·영토 문제의 씨앗을 제공한 미국이 과거와 현재 시점에서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을 냉정하게 그려내고 있다. 영토와 영해 권한을 주장하는 각국의 기존 입장이 아닌, 갈등 당사국 간 상호 주장을 음미할 수 있도록, 상대방국의 주장과 논리, 정치적 내면을 기술한 점, 매우 균형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평가 요인이다. 실제로 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수년간 공동연구를 통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문헌의 검토와 분석, 구체적인 자료와 담당자 인터뷰를 거침으로써 밀도 높은 연구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보여진다.

다만 개별 연구가 진행되면서 체계적이고 다면적인 이해도를 그려내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이 책의 아주 작은 흠결이다. 또한 국제법상, 역사적, 양자간·다자간 대안 등이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다. 각국의 입장과 주장을 분리하여 정리하고 도표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중국·동남아, 중·일, 러·일 간 영토와 영해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책 첫머리에 동아시아 지도를 펼치고 영유권 갈등지역을 표시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얻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했다는 생각이다. 새로운 연구라기보다는 기존연구를 심화시켜서 내놓은 부분이 적지 않아서 신선미가 떨어지는 문제점도 엿보인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동북아 국제체제를 뒤흔들 시한폭탄에 가까운 영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북아 영토문제를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논점에서 다룬 점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각국 간 영유권 갈등 해결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지 못한 것은 미진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각국의 영토문제와 해결 사례에 대한 함의를 바탕으로, 결론부분

에서 현상과 대안을 본격적으로 스케치하는 정도에서라도 제대로 서술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그럼에도 몇 가지 아쉬움을 충분히 덮을 만큼 이 책은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책을 읽고 난 뒤 맨 뒷장을 덮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 책이 적어도 국내 연구서로는 처음으로 동아시아 영토·영해 문제를 동아시아화(“An East Asianization of the East Asian Territorial Dispute”) 시켰다는 인상이었다.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영토문제는 일부러 의도하였는지 여부를 제쳐두고 전후 미국이 만들어낸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지닌 중대한 결함 가운데 하나였다. 아직까지 다오위다오(센카쿠제도), 남중국해 도서와 영해 갈등에서 미국의 그림자가 여기저기 어른거리고 있으며, 미국의 발언과 행동이 영토문제 해결에 심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각국에 일상화된 영토문제는 미국이 각 사안에 개입하여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도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미국의 영향력 못지않게 결국 당사자인 각국 정부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영토문제의 관리자·해결자로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정치리더와 국내정치, 동아시아 국제레짐이라는 주체성이 담긴 자체 렌즈를 사례별로 들이댈으로써 동아시아 영토문제를 동아시아의 국제문제로 부각시켜낸 것이다. 연구자들의 노력은 필연적으로 동아시아 영토문제를 동아시아인들이 주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게 된다.

이 책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가 영토문제 해결과정에서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50:50 원칙을 중시하였으며, 이러한 공정성과 합리성의 문제가 갈등 해결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쿠릴열도 문제 해결에서도 일본 정치가들은 50:50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러·일 양국이 합의한 바 있는 2개 섬 양도론이나, 쿠릴열도 4개 섬 전체면적을 양분하여 3개섬을 일본에 양도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책을 읽고 나서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이 그동안 학술연구의 기본토대이자 지향점이었던 필자에게 여러 가지 상념이 들었던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영토문제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협력을 위하여 언젠가 해결해야 할 과제

다. 더구나 자라나는 세대들이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한 밝은 미래를 그리게 하려면 현재 세대가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감히 말하자면 필자의 단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각국의 책임 있는 당사자가 모여서 영토문제 해결을 모색하되, 첫째, 무력사용을 통한 현상변경 금지, 둘째, 대화와 타협 원칙에 따른 평화적인 해결, 셋째, 역사성이 투사된 협상을 기초로 대안 찾기를 전제로 양자간·다자간 교섭을 시도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논의를 거듭할 수 있다면 동아시아의 영토문제를 관리하고 해결하는 것이 그리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영토문제라는 가장 심각한 외교적 과제를 2005년 중·러 양국은 무려 300년 만에 해결한 바 있고, 2014년 쿠릴영토 문제를 해결하고자 러·일 양국정부는 고민 중이며, 2000년 언젠가 동아시아 영토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자세야말로 이 책이 선물한 가장 소중한 교훈이 아닐까 싶다.



영토·해양 일지

김동욱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2014년	국내	국외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일 : 정부, 인터넷 독도 동영상을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본 정치인의 야스쿠니신사 비난 7일 : 박 대통령 신년구상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언급함으로써 통일시대 대비 강조 15일 : 박 대통령, 인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수를 늘리는 데 반대한다는 의견 피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 아베 일본 총리, 새해 소감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적극적 평화주의'의 필요성을 강조, 대외 변화에 부합하는 개정을 위해 국민적 논의를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 7일 : 동북아역사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외교 및 안보 정책을 통괄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사무국인 '국가안전보장국' 설립 - 일본 영해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점이 되고 있는 약 400개의 낙도 중, 소유자 불명인 약 280개 섬을 국유화하기로 결정 11일 : 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독도와 센카쿠(尖閣)열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기술을 포함 시키기로 함 1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베 일본 총리, 센카쿠에는 주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논의의 여지가 없으며, 중국 선박의 다오위다오 순찰과 방공식별 구역의 설정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일본, 독도가 자국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중학교 교과서 제작 지침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확인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정부, 한국의 위안부 관련 기록의 세계문화유산 신청에 반대 입장 표명 - 한국 여성가족부, 위안부 증언 유네스코 '세계기억유산'에 등재 추진 1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버지니아 주 의회의 상원위원회, 공립학교 교

2014년	국내	국외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8일 : 정부, 일본 정부의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 대한 항의성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서의 표기에 '일본해'뿐만 아니라 '동해'도 병기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통과 - 필리핀 국방장관, 자국 어민들에게 중국의 남중국해 법규 무시해도 좋다고 발표 1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중근 의사 기념관 중국 하얼빈(哈爾濱) 개관 - 일본, 주일 대사관을 통해 중국·한국 양국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 건립 항의함 20일 : 중국 외교부, 안중근 의사 기념관 건립에 대한 일본의 '항의' 반박 24일 : 일본, 아마모토 영토문제 담당 장관 센카쿠, 독도, 쿠릴열도 관련 일본 정부의 홈페이지 개설 발표 27일 : 중국, 남중국해 역사 당안관 하이난(海南)성 하이커우(海口)서 개관 28일 : 일본 문부과학성, 중학교와 고교 교과서 편집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독도와 센카쿠열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명기, 2016년 교과서부터 반영됨)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주한 일본 대사관 공사 초치해 일본 다케시마의 날 행사 정부 관료 참석에 강력 항의 - 일본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 유튜브 및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에 올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 중국, 일본 《아사히신문》의 중국이 남중국해에 방공식별 구역을 설정계획 보도와 관련, "이는 일본 우익세력들이 일본의 헌법 개정과 군비 확장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 17일 : 미국 버지니아 주 동해병기법안 하원 전체회의 통과, 주지사 서명 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18일 : 시마네현, 『독도 100문 100답』 발간 22일 :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가메오카 요시타미(龜岡偉民) 내각부 정무관(차관급) 참가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 박 대통령, 3·1절 기념식사, 일본 과거 부정할수록 초라해질 것 	

2014년	국내	국외
3월	이라고 비판, 북한과 정례적인 이산 가족 상봉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일 :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유엔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위안부 문제 공론화 14일 : 아베 일본 총리,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인정한 고노 담화 수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음 16일 : 미 육군 작성 문서, '위안부는 일본군 부대시설'이라는 사실 확인 21일 : 푸틴 러시아 대통령, 크림자치공화국과 세바스토폴 특별시의 러시아 합병 조약 비준안 서명 17일 : 유엔 총회, 러시아 크림 합병 반대하는 결의안 채택 31일 : 일본 지식인 1,600여 명, 고노 담화의 계승을 요구하는 공동성명 발표
4월	4일 : 외무부, 주한 일본 대사 초치.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 발행과 초등 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에 항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일 : 일본 정부, 외교청서 및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17일 : 아베 일본 총리, 『타임』 지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 없다"고 주장 23일 : 오바마 미국 대통령,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센카쿠는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대상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일본의 입장 지지. 중국 친강 외교부 대변인, "다오위다오가 미일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는 미국의 입장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주장 28일 : 미국·필리핀 방위협력 협정 체결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일 : 뉴욕 주 상원의원, 동해병기 법안 통과 7일 : 베트남 연안경비대, 남중국해 분쟁 도서 시사 [西沙] 군도(베트남명 호양사 군도) 인근 해역에서 시추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된 중국 선박들과 충돌 8일 : 중국, 국가안보 청서, 최초 발간 11일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과 베트남의 충돌과 관련해 관계 당사국의 자제와 무력 불행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네페도 선언' 채택 1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하원조사위,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지지하는 2015년도 국방수권 법안 통과

2014년	국내	국외
5월	15일 : 정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시 한반도 관련 사항 한국 정부의 명시적 동의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외교부, 아세안 국가에 '남중국해 각국 행위 선언' 존중 촉구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총리 직속 자문기구 '안정보장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 집단적 자위권 보고서, 아베 총리에 제출 - 아베 일본 총리, 집단적 자위권 추진 공식화, 헌법 해석 변경 방침 밝힘 2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러시아 동중국해에서 연합해상군사훈련 실시(5월 20~26일) - 러시아·중국에 30년간 가스 공급하기로 합의



〔『영토해양연구』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영토해양연구』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연구노트(탄보 등),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독도와 관련된 주제
 - 2) 영토 및 해양과 관련된 주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영토해양연구』는 6월 30일, 12월 31일 매년 2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관련 전공자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영토해양연구』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 비로 한다. 이외 투고지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A)
 -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B) (A, B, B) (B, B, B) (A, A, C)
 -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B, C) (A, B, D) (B, B, C) (B, C, C) (A, C, C)
 - 4)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 (A, C, D) (A, D, D) (C, C, C) (B, B, D) (B, C, D) (C, C, D) (D, D, D)
 - 5)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영토해양연구』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의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영토해양연구』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투고 및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투고 요령]

1. 『영토해양연구』는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서평, 연구노트(단보 등), 회고와 전망, 영토·해양 관련 일지,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3월 31일 또는 9월 30일까지 투고신청서와 함께 『영토해양연구』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영토해양연구』 실무총괄담당자 메일(tas@nahf.or.kr)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해상도 300dpi 이상) 및 기타 자료는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50장 이내로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원고분량에 포함하지 않으나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국문 및 영문초록, 국문 및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필요 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인용문헌은 가급적 각주로 표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7. 각주에서 현대문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

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김홍도, 2010a, 위의 글, 78쪽.
홍길동, 2002, 앞의 글, 29쪽.

8.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시)”, “서책”, “편목”, “인용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표기 없이 서술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擁, 是人世”

9.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10.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시 인용 쪽수를 표기한다.

예) (동북인, 2006 : 24)



초판 1쇄 인쇄 2014년 6월 20일
초판 1쇄 발행 2014년 6월 30일

펴낸이 김학준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2234-3296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